ISSN 1599-6522

국제법 동향과 실무



www.mofa.go.kr

2016 Vol.15, No.4 통권 제43호
Quarterly Journal

외교부

국제법 동향과 실무 www.mofa.go.kr

2016 Vol.15, No.4 통권 제43호

외교부

국제법 동향과 실무

□□□

www.mofa.go.kr

외교부

www.mofa.go.kr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법 동향과 실무 *인터넷 열람 안내*

www.mofa.go.kr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에 게재된 전체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를 통해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된 발간부수로 인하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문의처 국제법규과

전화: (02) 2100-7529
전송: (02) 2100-7967
전자우편: kimsongeun@mofa.go.kr

국제법 동향과 실무 논문 모집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의 논문을 모집하오니, 국제법학계, 외교부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고의사**: 매분기말의 전월 초(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까지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통고
- **원고작성**: 한글(HWP) 또는 MS-Word로 작성한 원고로 A4용지 15매 내외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기타 인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한국제법학회의 논총기고요령을 참조
- **원고제출**: 매분기말의 전월 말(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논문 파일을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e-mail이나 우편으로 제출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계간지담당자 앞
전화: (02) 2100-7529
전송: (02) 2100-7967
전자우편: kimsongeun@mofa.go.kr

- **게재결정**: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외교부 국제법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법 동향과 실무

www.mofa.go.kr

2016 Vol.15, No.4 통권 제43호

Quarterly Journal

외교부

▶▶▶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6 Vol.15, No.4 통권 제43호
Quarterly Journal

Contents

▶ 특집: 모의재판 경연대회 변론서 및 Review

•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Review ····· 김성원 5
•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 8
•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일방변론서 ····· 김민효, 박소영, 송용진, 장석우 12
•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타방변론서 ····· 김민효, 박소영, 송용진, 장석우 32
•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일방변론서 ····· 김다솔, 김소연, 조훈, 황은지 53
•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타방변론서 ····· 김다솔, 김소연, 조훈, 황은지 76
•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종 경연 심사 보고 ····· 이성덕 99

▶ 조약체결 동향

• 2016년 7-9월간 발효된 양자간 조약 ····· 102
• 2016년도 3/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개관 ····· 106

▶ 논문 및 연구보고서

• 인터넷 제한조치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김승민 108
•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경 지역에서 니카라과가 수행한 행위 사건 및 산후안 강변의 코스타리카 도로 건설 사건에 관한 소고 ····· 김현주 118
• 국제법 모의재판 출전 방안 및 준비 요령 ····· 이서희 129

▶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1) UN 문서

• 총회 ····· 139
–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에 관한 결의
–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의 정치적 선언에 관한 결의
– 쿠바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경제적·상업적 및 재정적 금수조치를 종결할 필요성에 관한 결의
– 민주주의 교육 관련 결의

• 안전보장이사회 ····· 141
– 콜롬비아 상황에 관한 결의
– '테러리스트 행위로 인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항공 보안'에 관한 결의
– 중동(시리아) 사태에 관한 결의
– 유엔사무총장 임명 권고에 관한 결의
– 핵비확산/북한에 관한 결의

Contents

• 인권이사회 ····· 143
- 언론인의 안전에 관한 결의
- 인권을 침해하고 인민의 자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써 용병의 사용에 관한 결의
- 인권과 선주민: 선주민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수임에 관한 결의
- 예방가능한 모성의 사망률과 이환율 그리고 인권에 관한 결의

• 사무총장 보고서 ····· 146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의 유엔에 관한 보고서
- 인도적 지원 관계자의 안전과 안보 및 유엔 직원의 보호에 관한 보고서
-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거래에 관한 보고서
-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 아이티의 콜레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보고서

(2)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 ICJ ····· 148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인도)* 사건에 대해 인도가 제기한 관할권 항변 인정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파키스탄)* 사건에 대해 파키스탄이 제기한 관할권 항변 인정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영국)* 사건에 대해 영국이 제기한 관할권 항변 인정

• ICC ····· 163
- ICC 1심재판부 VIII, 알마흐디에 대해 역사적·종교적 문화재를 파괴한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 및 징역 9년 선고
- ICC 1심재판부 VII, 장 피에르 벰바 곰보 부통령 외 4명에 대해 사법집행 관련 위반에 대해 유죄 선고

• ITLOS ····· 171
- *M/V "Norstar" 사건 (파나마 v. 이탈리아)*에 대한 이탈리아의 선결적 항변에 관해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파나마 신청을 수락

• PCA ····· 178
- *Duzgit Integrity 중재재판(몰타공화국 v. 상투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에 대한 판정

▶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 국제법 관련 국내법 ····· 182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Contents

– 주민등록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식물방역법

• 국제법 관련 판례 ····· 192
–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게 되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 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사례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
– 과세관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본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수증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한·룩 조세조약 제21조 제1호에 위반된다거나 소득구분에서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
–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甲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사증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
–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한 외국선박 선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선박을 몰수한 사례

▶ 국제법 관련 새소식

• 외교부 소식 모음 ····· 233
•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 277
•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 279
•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 286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Review

김 성 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I.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요

대한민국 국제법역량강화의 한 방안으로써 국제법 모의재판 대회는 국제법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변론을 통해 첫째, 국제법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높이고, 둘째, 국제법적 관점에서 국내외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국제법기준 및 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마지막으로 셋째, 국제법과 국제이슈에 관심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국제법의 실제운용을 경험함으로써 장차 국제법 학자 및 실무가를 양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해관계자 및 행위자의 비약적 증가로 인해 다양한 국제법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별국가들에게는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사법적 해결 능력의 제고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 또한 폭넓은 대외활동에 따라 국제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써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우리 국익의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 등과 같은 국제사법기구에서 재판관으로써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우리 외교 역량 강화의 방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사법기구에 우리나라 법조인의 지속적인 진출 및 국제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소송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이 앞으로도 요구된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국내적으로는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즉 국외에서는 국제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국제법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한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제법 역량강화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조약국(현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는 2009년 국제법 역량강화 및 향후 국제법 연구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미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 더하여 새로운 국제법 역량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이하 '모의재판대회'라 함)를 구상하게 되었다. 모의재판대회 개최를 위하여 조약국장, 국제법규과장, 국제법규과 담당자, 국제법 교수로 구성된 모의재판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P.C.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을 모델로 하여 모의재판대회규칙, 경연대회 절차, 문제 출제 범위, 서면심사위원 및 재판관 선정 등에 관한 내부규칙이 마련되었다. 이후 대회를 거치면서 모의재판대회규칙은 모의재판대회 개최 후, Review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자들이 모의재판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모의재판대회는 2009년 제1회 모의재판대회부터 1)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참여자격을 부여하

고, 2) 서면심사를 거친 총 8개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3) 모의재판대회문제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제하되,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며, 4) 서면심사자와 재판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항목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제8회 모의재판대회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서 준비되고 진행되었다.

II.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정리

첫째, 제8회 모의재판대회는 무려 23개팀이 지원을 하여 총 15팀이 서면변론서를 제출하였고, 3인의 서면심사자의 심사를 거쳐 마침내 본선에 진출하게 될 8개팀이 결정되었다. 모의재판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의 참가가 필요한데, 제8회 모의재판대회에 서면변론서를 제출한 15개팀은 학부 11개팀, 일반대학원 및 학부 2개팀, 법전원 2개팀으로 구성되었다. 본선에 진출한 8개팀의 경우는 학부 4개팀, 일반대학원 및 학부 2개팀, 법전원 2개팀으로 구성되었다. 참여팀들의 분포를 보면 참가 학교 중 단 1개팀만이 수도권 외의 학교이어서 모의재판대회에 대한 관심이 수도권에 집중되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 제1회부터 제8회까지 모두 서울 소재 대학에서 모의재판대회가 개최되었는바, 이제는 서울 외의 지역에서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방학생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모의재판대회의 개최 장소를 서울을 벗어난 지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전원팀의 참여가 저조하였다는 점에서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 무관심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만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들이 모의재판대회에 참여하였다는 점은 반대로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제8회 모의재판대회는 제1회부터 제7회 대회를 거치면서 확립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제 출제, 문제심사, 서면 변론 및 구두 변론 절차 전반에 걸쳐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제8회 모의재판문제는 단독출제자에게 의뢰를 하여 3개월여 시간을 거쳐 초안이 작성되었다. 특히 조약법 및 국가책임법 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근거로 한 변론 능력을 주요 심사 항목으로 다룬 제8회 모의재판문제 초안은 이후 제1회부터 제7회까지 모의재판 대회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개월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 대한국제법학회 홈페이지(http://www.ksil.or.kr)를 통하여 공지되었다. 이후 서면심사위원으로 조약법 및 국가책임법을 주로 전공한 국제법학자 3인을 선정하여 서면심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제8회 모의재판대회는 5월 경연대회 문제 및 규칙공고, 6월 참가 신청, 8월 중순 서면변론서 접수, 9월 모의재판대회 개최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기존 대회와 달리 6월 접수신청마감일 전에 처음으로 사전교육 WORKSHOP을 제공하여 모의재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모의재판대회를 직접 소개하고 알리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1회부터 제5회까지 모의재판대회의 서면변론서는 제소, 피소 각각 50쪽으로 총100쪽의 분량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제6회부터 변론서의 분량을 제소, 피소 각각25쪽으로 총 50쪽의 분량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8회 모의재판대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제7회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변론서 부담의 경감에 따른 참여 증가는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향후, 변론서 분량에 대한 조정은 모의재판 대회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넷째, 제8회 모의재판대회 결선은 구두경연으로 진행되었고, 학부팀들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모의재판대회 결선은 외교부 국장 또는 심의관, 당해 년도 문제출제자, 이전 년도 문제

출제자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다. 제8회 모의재판대회 결선 재판관단은 과거 대회들과 달리 국제해양법재판소 백진현 재판관을 주심으로 하여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장, 국제법학회 전임회장 및 차기회장 그리고 현 부회장으로 구성되었다. 결선재판관단은 1)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 지식, 2) 출제된 문제에 대한 변론 내용, 3) 구두변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는데, 제8회 모의재판대회는 결선재판 후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최우수팀을 선정하였다.

III.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활성화 방안

앞서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거 국제법 연구 인력의 중심을 담당하였던 일반대학원의 국제법 전공학생의 수는 격감하게 되었다. 제8회 모의재판대회 본선에 진출한 8개팀 중 일반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팀이 전무하였다는 점은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모의재판대회 참여 독려를 위하여 학부와 법전원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제8회 모의재판대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부팀은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국제법 전공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로 모의재판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전원팀의 참여가 적지만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법전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모의재판대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다른 모의재판대회와의 차별성, 준비과정의 축소, 모의재판대회 개최 기간의 변경 등을 포함하는 모의재판대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제8회 대한국제법학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간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및 통과권 관련 일련의 사태에 연관된 사건

오리온(Orion)국/페가수스(Pegasus)국

1. 오리온(Orion)국은 연안국인 페가수스(Pegasus)국과 내륙국인 콜룸바(Columba)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이다. 오리온국이 육로로 해양에 접근하기 위하여서는 페가수스국을 통하여 가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거리도 가깝다. 오리온국의 수도는 리겔(Rigel)이고, 페가수스국의 수도는 에니프(Enif)이며, 콜룸바국의 수도는 팍트(Phact)다.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을 통과하여 해양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외교적인 협상을 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2.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여 그 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페가수스국은 콜룸바국산 석유에 의존하여 전력 생산 기타 산업 수요에 충당하고 있다. 콜룸바국이 내륙국인 관계로 페가수스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 육로 수송을 통하여 콜룸바국산 석유를 공급받아 왔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오리온국은 콜룸바국으로부터 콜룸바국이 생산하는 석유를 자국을 통하여 페가수스국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콜룸바국으로부터 페가수스국으로 석유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해주면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 국민과 물자의 육로 통과권(이하, 통과권)을 부여할 수 있으니 외교협상에 응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4. 관련 3국의 외무부장관은 페가수스국의 수도 에니프(Enif)에 모여 3국간에 콜룸바국에서 페가수스국에로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부설 문제와 오리온국의 페가수스국 통과권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협정을(이하, 에니프협정) 2014년 5월 1일에 서명했다. 동 협정에는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사이에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할 수 없으며, 동시에 오리온국의 페가수스국으로의 통과권도 페가수스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침해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협정을 통하여 오리온국은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의 국경에서 고속도로로 100km만 가면 페가수스국의 가장 큰 항구이자 수도인 에니프(Enif)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고, 콜룸바국과 페가수스국간에는 오리온국을 관통하는 200km에 이르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석유수송방법을 확보하게 되었다.

5. 에니프협정 제10조는 “체약당사국의 국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체약당사국이 비준한 날 익일부터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본 협정은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리온국은 2014년 6월 30일에, 콜룸바국은 2014년 7월 10일에, 페가수스국은 마지막으로 2014년 8월 31일에 각국의 국내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동 협정을 비준하였다. 이에 동협정은 페가수스국이 비준한 날 익일인 2014년 9월 1일에 발효하였다. 에니프협정이 발효하자마자, 동 협정은 UN헌장 제102조에 따라 UN 사무국에 등록되었다.

6. 에니프협정 제3조는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간에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페가수스국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오리온국의 통과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 2015년 2월 1일 콜룸바국 팍트 소재 오리온국 대사관에서 콜룸바국의 반체제 인사 아무르(Amur)를 비호하는 일이 발생하자, 콜룸바국은 오리온국에게 아무르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오리온국이 콜룸바국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자 동년 3월 1일부터 콜룸바국 당국은 오리온국의 대사관을 봉쇄하고 오리온국 대사관에의 일체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이에 오리온국은 콜룸바국에게 콜룸바국의 대사관 봉쇄조치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하는 국제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콜룸바국의 조치를 오리온국이 제재하는 방법은 콜룸바국에서 페가수스국으로 석유가 운송되지 못하도록 하여 콜룸바국과 페가수스국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8. 오리온국이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면 콜룸바국은 석유수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페가수스국은 전력생산 및 산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오리온국은 인지하고 있었다.

9. 이에 오리온국은 2015년 4월 1일 콜룸바국으로부터 페가수스국으로 가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0. 오리온국이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에 따라 오리온국이 향유하는 통과권을 폐쇄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부여하지 않겠다고 오리온국에 즉시 통고하였다.

11. 페가수스국이 통고한 후 정하여진 30일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온국이 폐쇄 조치를 해제하지 않자, 페가수스국은 2015년 5월 1일부로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공표하면서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였다.

12. 통과권이 정지되자 페가수스국에 소재하던 오리온국 국민들이 통과권 정지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그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여 페가수스국의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기로 결의하였다.

13. 일단의 오리온국 국민들이 페가수스국의 행정관청이 밀집한 페가수스국 수도 에니프의 피칸거리에 모여 시위를 진행하는 중에 일부 시위자들의 선동으로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페가수스국에서 통과권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내무행정부에 돌을 던지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의 행위를 집단적으로 하였다.

14. 시위 사태에 직면한 페가수스 당국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고자 하였다. 물대포와 최루가스 방출 차량을 동원한 시위 진압과정 중에 오리온국 국적을 가진 시위 참가자 수십 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15. 이러한 시위가 격화되고 오리온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조치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여겨지자, 페가수스국은 더 이상 오리온국과 에니프협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0조에 근거하여 2015년 8월 15일에 에니프협정을 종료한다고 오리온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종료통보는 콜룸바국에는 행해지지 않았으며, 페가수스국의 오리온국에 대한 종료통보에 대하여 콜룸바국은 어떠한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다.

16. 페가수스국이 에니프협정 종료를 선언하자, 오리온국은 2015년 9월 1일 페가수스국이 에니프협정 제4조에 반하여 오리온국의 통과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 주장은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7.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 주장에 대하여 오리온국이 그 적법성을 문제삼자, 오리온국을 통하여 석유를 수송받아야 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페가수스국의 기업들은 페가수스국 관련 당국과 이 사태의 해결과 관련한 협의를 한 후, 일제히 오리온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오리온국이 폐쇄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리온국에는 페가수스국에서 생산된 공산품 일체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일부 업체는 그 결의 내용을 즉시 실시하였다.

18.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 기업의 오리온국에의 수출 금지 결의는 페가수스국 당국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격렬히 항의하였다.

19. 오리온국은 통과권 행사가 봉쇄된 후, 오리온국의 국가적 사업수행과 관련한 물자를 긴급하게 수송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그 물자를 항공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운송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20. 이러한 오리온국의 국가적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물자수송이 페가수스국 항구를 통하여 제3국으로 수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오리온국은 이 물자 수송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실력에 의하여서라도 통과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판단을 하였다. 그러한 정책판단에 근거하여 관계 당국 회의를 소집하고 논의한 결과, 오리온국으로부터 페가수스국으로의 통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수송물자를 운반하는 차량과 인원을 군대로 하여금 호송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21. 마침내 오리온국 당국은 2015년 10월 7일 1개 대대 병력이 호송하는 가운데 제3국으로 수송하는 물자를 페가수스국을 통과하여 수송하는 시도를 하였다.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사이의 국경을 넘어 페가수스국으로 진입한 수송차량과 수송인력은 처음에는 별다른 충돌없이 페가수스국을 통과하였으나 페가수스국의 목적 항구 10km를 남겨두고 페가수스국의 경찰당국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오리온국의 수송물자 등을 호송하던 오리온국의 병력은 페가수스국의 경찰 제지를 제압하고 목적항구에 도달하였다.

22. 동 사태가 발생하자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에 대하여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의 영역주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이용하여 페가수스국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오리온국에 대하여 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3. 동 사태 후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은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외교협상을 수행하였으나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24. 에니프협정에는 협정의 종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룸바국은 모두 2000년 이전에 UN 및 WTO 회원국이 되었다.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룸바국 이들 모두에 대하여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각각 1980년 7월1일, 1982년 5월 31일, 1983년 10월 30일에 발효하였고,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도 각각 1970년 8월 31일, 1973년 5월 30일, 1975년 3월 31일에 발효하였다.

25.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양국 정부는 2016년 4월 15일 특별협정(*compromis*)을 체결하여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ICJ에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오리온국이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한 것인가?
2)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적법한가?
3)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4)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었는가?
5)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6)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데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일방변론서

김민효 (중앙대 행정학과), 박소영 (고려대 국제학부), 송용진 (고려대 국제학부), 장석우 (연세대 국제학부)

국제사법재판소

일방변론서

2016년 8월 15일 재판소 서기국에 접수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간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및
통과권 관련 일련의 사태에 연관된 사건
(오리온국 / 페가수스국)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Memorial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on 15 August 2016

Orion / Pegasus

내용 목차

판례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 요약

사실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I. 오리온국은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오리온국과 콜룸바국 사이에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이 발생하였다.
2. 에니프협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은 콜룸바국과 오리온국간의 비정상적 외교관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II. 페가수스의 통과권 잠정 중단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 제4조를 위반하였다.
   (1)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 제4조의 "안전 보장을 위한 목적"을 부당하게 확대해석 하였다.
   (2) 페가수스국은 안전 보장이 위협 받는 상황에 처해있지 않았으므로 안전 보장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페가수스국의 조치는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기타 국제법에 의해서 용인되지 않는다.
   (1) 페가수스국의 조치는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이하 "ILC 국가책임 초안")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항조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2) 오리온국의 조치는 VCLT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실질적 위반의 결과로서의 조약의 시행정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VCLT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정지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페가수스국의 오리온국 통과권 시행정지는 위법하다.

III.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1. 페가수스국이 무력을 동원하여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이다.

(1) 페가수스국은 UN 행동강령에 명시된 법집행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페가수스국은 UN 행동강령에 명시된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페가수스국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것은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에서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페가수스국은 피해를 입은 오리온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전배상(indemnity)의 책임을 진다.

IV. 에니프협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협정에 명시된 오리온국의 통과권 역시 유효하다.

1. 페가수스국은의 종료 통보는 VCLT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2. 페가수스국의 종료통보는 콜룸바국의 협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
3. 설령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페가수스국이 협정 종료의 근거로 주장한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60조에 따른 오리온국의 에니프협정의 '중대한 위반'의 사실이 없기에 협약은 종료되지 않았다.

V. 페가수스국은 수출금지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1.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수출 중단 결의는 국가 행위로 볼 수 있다.
2. 페가수스국의 오리온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국제법상 위법하다.
3.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의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페가수스국은 배상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추후 재발을 방지하려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VI.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지 않았으며 정지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리온국은 통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었다.
2.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 과정에서 '무력 사용의 금지'라는 강행규범의 위반이 없었다.
   (1) 군대로 하여금 물자수송을 호송하게 하는 행위는 무력의 사용(use of force)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페가수스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법성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긴급피난(necessity)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1) 긴급피난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2) 국가적 사업수행에 긴급하게 필요한 물자수송이 불가능해진 것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a grave and imminent peril)'에 해당한다.
   (3) 통과권 행사는 본질적 이익(essential interest)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조치(only way)였다.
   (4) 오리온국의 군대를 통한 호송은 페가수스국과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4. 오리온국의 군대를 통한 물자 호송과 관련하여 긴급피난의 원용을 배재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VII. 결론 및 해결방안

판례 색인 [Index of Authorities]

■ 조약(Treaties)

1943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61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UN문서(UN Document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9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0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with Commentaries, 2006

■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및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Award, May 12, 2005
Enron Corporation Ponderosa Assets, L.P.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3, Award, May 22, 2007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 v. 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LG&E Energy Corp., L&E Capital Corp., LG&E International Inc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 Decision on Liability, 2006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ement, I.C.J. Reports 1986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3
Panel Report, China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Various Raw Materials, WT/DS394/R
Panel Report, Japan — 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 WT/DS44/R
Panel Report, India —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Sector, WT/DS146/R

■ 국내/해외 논문(Articles)

김명기, "테러와의 전쟁과 국제법상 자위권", 『사회과학논총』, 제19집 (2003)
김부찬,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의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26권 (2006.9)
김석현, "UN憲章 第2條 4項의 危機 - 그 例外의 擴大와 관련하여",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1호 (2003.4)

Eileen Denza,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United Nations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 (2009)

Susan Rose-Ackerman & Benjamin Billa, *Treaties and National Security*, 40 N.Y.U.J. In't L.&POL (2008)

■ 국내/해외 단행본 및 문건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 책임』, 삼영사, 2007

김용윤, "아르헨, 대외부채 상환 종료 선언 (종합)", 연합뉴스, 2001.12.14.

김정건 외, 『국제법』, 박영사, 2010

OECD, International Investment Perspectives 2007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2007

R. Ago, *Addendum to the eighth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vol. II, Part One, YILC, 1980

관할권 진술 [Statement of Jurisdiction]

첫째,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 규정 제34조 제1항과 UN헌장 제93조 제1항에 따라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은 UN 헌장과 ICJ 규정의 당사국으로서 재판 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둘째, 본 사건에서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은 양국간의 이견을 양국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동 사건을 ICJ에 회부하는 특별협정(compromis)을 체결하였다. ICJ규정 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특별협정을 통해 양 당사국은 파이프라인 및 통과권 관련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ICJ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바이다.

제기된 문제 요약 [Questions Presented]

1.

오리온국이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가 에니프협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

3.

페가수스국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의 존재 여부

4.

2015년 8월 15일에 행해진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인한 에니프협정의 종료 여부

5.

페가수스국이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의 존재 여부

6.

오리온국이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그 과정에서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것에 대한 오리온국의 국제법상 책임의 존재 여부

사실관계 진술 [Statement of Facts]

1.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룸바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에니프협정에 서명하고 비준하였다.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룸바국은 2014년 5월 1일에 페가수스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부설 문제와 오리온국의 페가수스국 통과권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협정(이하 “에니프협정”)에 서명하였다. 이후 2014년 8월 31일 페가수스국을 마지막으로 3국 모두 국내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동 협정을 비준하였고, 2014년 9월 1일에 동 협정이 발효하였으며, UN헌장 제102조에 따라 UN 사무국에 등록하였다.

2. 오리온국은 콜룸바국의 대사관 봉쇄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폐쇄하였으며, 그에 대한 보복으로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 정지를 공표하였다.

2015년 2월 1일 주콜롬바국 오리온국 대사관은 콜룸바국의 반체제 인사 아무르(Amur)의 요청에 따라 그를 비호하였다. 콜룸바국은 아무르의 인도를 요청하였지만 오리온국 대사관은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015년 3월 1일 콜룸바국은 일방적으로 오리온국 대사관을 봉쇄하여 대사관으로의 출입을 일체 금지했다. 오리온국은 콜룸바국의 행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2015년 4월 1일 자국을 통과하는 석유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를 취하였다.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의 조치에 반발하였으며, 2015년 5월 1일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공표하고 관련 국경 봉쇄조치를 취하였다.

3. 페가수스국에 소재하던 오리온국 국민들은 페가수스국의 일방적인 통과권 정지에 대하여 반발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페가수스국 경찰에게 무력으로 강경 진압 당하였고 수십 명의 오리온국 국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페가수스국에 거주하고 있던 오리온국 시민들은 페가수스국의 일방적인 통과권 정지 통보에 분노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계획 당일 일단의 오리온국 시민들은 페가수스국의 행정관청이 밀집한 수도 에니프의 피칸거리에 모여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페가수스국은 경찰력을 투입하여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최루탄을 살포하면서 시위를 강경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오리온국 국민들이 부상을 입었다.

4. 2015년 8월 15일,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에게 서면으로 에니프협정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그와 같은 종료통보는 콜룸바국에는 행해지지 않았다.

에니프시에서의 시위 이후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조치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 오리온국에게 에니프협정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통보는 콜룸바국에 대해서는 행해지지 않았으며, 페가수스국의 오리온국에 대한 종료통보에 대하여 콜룸바국은 어떠한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다.

5. 페가수스국 기업들은 페가수스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산품 수출 금지를 결의하고 일부 시행하였다.

페가수스국 기업들은 페가수스국 당국과 이 사태와 관련하여 협의를 한 후, 일제히 오리온국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 오리온국이 페가수스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여 그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리온국의 폐쇄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오리온국에 공산품 수출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일부 기업들은 이 결의를 즉각 이행하였다.

6. 페가수스국의 일방적인 통과권 봉쇄 이후 국가적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물자수송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오리온국 정부는 페가수스국 항구까지의 통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수송물자를 군대로 하여금 호송하기로 결의하였다.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통과권 행사가 봉쇄된 후, 국가적 사업수행과 관련한 긴급할 물자를 수송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항공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운송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오리온국은 관계 당국 회의를 소집하였고 페가수스국으로의 통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송물자를 운반하는 차량과 인원을 군대로 하여금 호송하기로 하였다.

7. 2015년 10월 7일 오리온국은 1개 대대 병력이 호송하는 가운데 제3국으로 수송하는 물자를 평화롭게 페가수스국 에니프 항구까지 수송하였다.

오리온국 당국은 2015년 10월 7일 1개 대대 병력의 호송 하에 제3국으로 수송하는 물자를 페가수스국을 통과하여 수송하는 시도를 하였다. 페가수스국으로 진입한 차량과 수송인력은 별다른 충돌 없이 페가수스국을 통과하였다. 비록 목적 항구를 10km 남겨두고 페가수스국 경찰당국의 제지를 받게 되었지만, 오리온국은 이에 사상자를 내지 않는 한에서 대응하였으며 결국 목적항구에 도달하였다.

변론의 요약 [Summary of Pleadings]

I. 오리온국은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콜룸바국은 일방적인 주콜룸바국 오리온국 대사관을 폐쇄하는 국제위법행위를 범했으며 이를 말미암아 양국 간에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형성되었다. 에니프 협정 제3조에서 명시한 '비정사적 외교 상황'을 오리온국과 콜룸바국간의 외교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외교 상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오리온국과 콜룸바국 간의 외교관계에서 발생한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오리온국의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에 부합한다.

II. 페가수스국의 통과권 잠정 중단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 제4조의 '안보 예외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국제법상 통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 페가수스는 그 어떠한 군사적인 위험에 처해있지 않았고, 특별히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니프협정 제4조의 '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오리온국의 통과권을 정지할 수 없다. 또한 페가수스 당국의 조치는 그 어떤 국제위법행위의 조각 사유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III.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데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

페가수스국 당국은 오리온국 국민들의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UN행동강령인 'UN 법집행관 행동강령'과 '법집행관 및 화기 사용 기본 원칙'을 위반했으며 그 결과 수십 명의 오리온국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따라서 페가수스국 당국은 오리온국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IV.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지 않았으며, 협정에 명시된 오리온국의 페가수스국 통과권 역시 유효하다.

페가수스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에니프협정의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다. 또한 오리온국의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에니프협정 종료의 요건 또한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에니프협정은 페가수스국의 종료협정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리온국의 통과권 역시 유효하다.

V. 페가수스국은 수출금지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수출 금지 결의 조치 및 부분적인 시행은 페가수스 당국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행해진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페가수스국의 '국가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페가수스국은 동 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수출 금지·제한 조치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페가수스국은 자국의 기업들이 조속히 오리온국에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오리온국에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VI.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온국에게 부여된 통과권은 유효했다. 또한 이 통과권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오리온국은 강행규범인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

설령 다른 일부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리온국의 물자 수송은 국제위법행위의 조각 사유 중 하나인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적 사업 수행에 긴급하게 필요한 물자수송이 불가능해진 것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었고 통과권 행사는 오리온국의 본질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조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는 페가수스국과 국제 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이 경우 긴급피난의 원용을 배재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리온국은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있다.

변론 [Pleadings]

I. 오리온국은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에니프협정 제3조는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의 비정상적 외교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석유 파이프라인을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정의 목적 및 취지를 보았을 때 '오리온국과 콜룸바국' 간의 비정상적 외교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오리온국과 콜룸바국 사이에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이 발생하였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제22조는 공관 지역(premises)의 불가침을 확인하고 있는데, 콜룸바국은 공관 안녕의 교란 및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공관의 안녕은 공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남용(abuse)을 포함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1] 그러나 2015년 3월 1일 콜룸바국은 주콜룸바국 오리온국 대사관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동 협약 제22조를 위반하였다. 콜룸바국의 조치로 말미암아 대사관의 출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생겼으며, 불가침성을

1) Eileen Denza,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United Nations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 2009), p.4.

침해함으로써 공관의 품위가 손상되었다. 콜룸바국의 국제위법행위가 발생한 직후 오리온국은 국제위법행위의 일방적인 피해자로서 콜룸바국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고[2] 이로써 양국 간에 외교적 긴장 관계, 즉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하였다.

2. 에니프협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은 콜룸바국과 오리온국간의 비정상적 외교관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Law of Treaties[1969], 이하 VCLT) 제31조 1항에 따르면, 국제 조약은 "문언의 맥락과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에니프협정 등 에너지의 수송과정에서 수출국(export state)과 수입국(import state) 외에도 제3의 경유국(transit state)을 거치는 조약들의 경우, 경유국의 영토 및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유국과 에너지 운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인 수출입국 간의 외교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니프협정 제3조는 경유국과 수입국 간의 외교 관계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외교 상황을 근거로 파이프라인을 예외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다.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간의 외교 관계와 오리온국과 콜룸바국 간의 외교 관계는 경유국과 에너지 운송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외교 관계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가령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의 직접적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이 발생하여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는 경우에도 다른 당사국인 콜룸바국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에니프협정 3조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간의 외교 관계와 오리온국과 콜룸바국 간의 외교 관계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에니프협정 제3조의 예외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오리온국과 콜룸바국 간의 외교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외교상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오리온국과 콜룸바국 간의 외교관계에서 발생한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유추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오리온국의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에 부합하며 적법하다.

II. 페가수스의 통과권 잠정 중단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 제4조를 위반하였다.

(1)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 제4조의 "안전 보장을 위한 목적"을 부당하게 확대해석 하였다.

에니프협정 제4조에 따르면 "안전보장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를 침해할 수 없다. 이때 페가수스국은 자국의 판단 하에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하지만,[3] 동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Friend, Commerce, and Navigation (FCN) 조약'을 비롯하여 통과권과 관련된 조약들의 경우,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 거부를 안전 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보 예외 조항(security exception clause)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ICJ의 Nicaragua,[4] Iran Oil Platform,[5] 및 Gabčíkovo[6]의 판례

2) 2016 모의재판경연대회문제, para.7.
3) 2016 모의재판경연대회문제 para.11.
4)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ement, I.C.J. Reports 1986,* para.116.

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안보 예외 조항들의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 제21조처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considers necessary)와 같은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자의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제 재판소 등의 판례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7)]

(2) 페가수스국은 안전 보장이 위협 받는 상황에 처해있지 않았으므로 안전 보장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에니프협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장"은 군사적인 안전보장과 비군사적인 안전보장을 나눌 수 있다. 이때, 페가수스국은 어떠한 무력 침공의 위협을 받지 않았으므로 전자의 안전보장은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페가수스국의 조치가 비군사적인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비록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의 CMS v. Argentina, LG&E v. Argentina, Enron v. Argentina 판례들이 본질적 안보 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이 중대한 경제적 공황(major economic crisis)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판시했지만,[8)] 각각 '전면적 경제적, 사회적 붕괴'(total economic and social collapse),[9)] '국가 존재의 위태로움'(compromised the very existence of the state),[10)] 정부의 전면전 붕괴(total collapse of the Government)[11)]와 같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2001년 경 아르헨티나가 디폴트(default)를 선언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12)] ICSID의 세 개의 판례중 하나(LG&E)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르헨티나가 안보 예외 조항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페가수스국은 이전에도 대체 경로를 통해서 석유를 도입해 왔으며, 자국의 산업 활동이 불가능해져 국가가 붕괴할 정도로 위태로웠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더더욱 안보 예외 조항을 발동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가 페가수스국에 일부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에니프협정 제4조의 자국의 안전보장과 연결시킬 수 없다.

2. 페가수스국의 조치는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기타 국제법에 의해서 용인되지 않는다.

(1) 페가수스국의 조치는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이하 "ILC 국가책임 초안")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항조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Gabčíkovo 판결에서 ICJ가 확인한 대항조치의 요건은 상대국의 국제위법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며,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비례성의 원칙이 성립해야 하며, 상대국의 국제위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13)] 만약 이 요건들 중에서 페가수스국이 하나라도 충족하지

---

5)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3,* para.73

6)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 v. 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para 51.

7) Susan Rose-Ackerman & Benjamin Billa, *Treaties and National Security*, 40 N.Y.U.J. In't L.& &POL (2008), p. 472.

8) OECD, *International Investment Perspectives 2007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2007), p.104.

9)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Award, May 12, 2005*, para.355.

10) *Enron Corporation Ponderosa Assets, L.P.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3, Award, May 22, 2007*, para.306.

11) *LG&E Energy Corp., L&E Capital Corp., LG&E International Inc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 Decision on Liability, October 3, 2006*, para.231.

12) "아르헨, 대외부채 상환 종료 선언 (종합)", 연합뉴스, (2001.12.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121864>

못하면, 페가수스국의 조치는 적법한 대항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우선, 앞서 주장하였듯이 오리온국의 파이프라인 봉쇄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에 부합하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원인행위인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할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페가수스국은 통과권 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오리온국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만 하였으며, 성실하게 협상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페가수스국은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페가수스국이 콜룸바국 석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에니프협정 체결 전부터 육로를 통한 석유의 수입 경로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오리온국의 조치 이후에도 페가수스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계속되었다는 점, 향후 에니프협정의 종료를 희망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점에서 파이프라인 폐쇄조치가 페가수스국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페가수스국의 조치로 인하여 오리온국은 모든 국가들이 향유하는 인류의 공동유산인 바다에 관한 권리가 침해당하였다. 오리온국은 내륙국의 특성상 자국의 영토를 통해서 바다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리는 통과국의 영토를 지나는 방식으로만 보장될 수밖에 없다. 이는 '뉴욕 협약'(1965 Convention on Transit Trade of Land-locked States),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유엔 총회 결의 46/212 등에서 국제적으로 수차례 확인되어 왔다. 따라서 통과국의 영토를 지나는 것을 전제로 한 내륙국의 해양 접근권은 내륙국의 본질적인 권리와 이익에 해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페가수스국을 경유하지 않는 이상 오리온국은 현실적으로 해양을 통한 물자의 수출입이 불가능했으므로 양국의 조치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2) 오리온국의 조치는 VCLT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실질적 위반의 결과로서의 조약의 시행정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VCLT 제60조 2항은 "실질적 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 그 자신과 위반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리온국은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페가수스국은 에니프조약 일부의 시행을 정지할 수 없다.

하지만 설령 오리온국이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VCLT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실질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시행정지는 정당하지 않다. 실질적 위반은 VCLT 제60조 3항에서 "협약에 의하여 용인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이행 거부" 혹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의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오리온국은 에니프협정 그 자체의 "이행 거부"(repudiation)를 한 적이 없으며, 후에도 일관적으로 에니프협정의 지속 및 준수를 바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에니프협정 제4조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오리온국을 경유한 석유 수송'과 '페가수스국 내의 통과권'이 일부 상호 교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니프협정 제3조와 4조가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권리는 독립적인 만큼, 한 조항의 위반이 에니프협정 전체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

13) *supra.* note 6, paras.83-87.

(3) VCLT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정지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페가수스국의 오리온국 통과권 시행정지는 위법하다.

설령 오리온국의 조치가 실질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페가수스국은 동협약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정지를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동 협약 제60조에서 규정한 시행정지 요건을 만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통고의 접수 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어느 당사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시행 정지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페가수스국은 1개월이 지난 직후 통과권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였으므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페가수스국이 "특별히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페가수스국은 VCLT을 근거로 통과권을 중단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오리온국의 통과권은 유효하다.

III.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1. 페가수스국이 무력을 동원하여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이다.

(1) 페가수스국은 UN행동강령에 명시된 법집행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을 위반하였다.

페가수스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14] 비록 페가수스국의 경찰을 통한 시위진압은 자국 내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UN 행동강령 중 하나인 'UN 법집행관 행동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르면 법집행관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dignity)과 권리(rights)를 존중해야 한다.[15]

하지만 페가수스국의 경찰력에 의한 시위 진압은 UN 행동강령 중 하나인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을 위반하였기에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 기본 원칙'에 따르면 법집행관은 무력 사용 전에 가능한 모든 비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무력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해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16] 또한 페가수스국 경찰이 무력 진압 전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찾을 수 없고, 무력 사용 시 최대의 주의와 피해를 입은 시위대가 즉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볼 근거 역시 없다.

즉, 페가수스의 조치는 명백하게 위법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 페가수스국 내에서의 오리온 국민의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시위대 수십 명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힘으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문'[17]에 명시된 제3조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는 타국의 국가기관에 의해 일국의 국민이나 기업이 향유하는 일정한 권리를 침해 받은 국가의 간접 손해에 속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페가수스국은 부상을 입은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14) 김정건 외, 『국제법』, 박영사, (2010), 제13장, pp.567-572.
15) *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169, December, 1979*, Article 2.
16)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Adopted By the 8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Havana Cuba, August to September, 1990*, General provisions 4,5.
17) 김정건 외 『국제법』, 박영사, (2010). 제14장, pp.600-601.

(2) 페가수스국은 UN 행동 강령에 명시된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아가 페가수스국 경찰은 시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 기본 원칙'에서 명시된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 기본 원칙'에 따르면 법집행관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례해서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18]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새총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시민과 경찰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시위 과정에서 페가수스국 시민과 경찰이 다쳤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페가수스국은 훈련 받지 않은 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훈련된 경찰들을 투입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으며 그 결과 수십 명의 시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의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과잉조치이며 당국은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만 한다.

2. 페가수스국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것은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에서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페가수스국의 무력을 통한 시위 진압은 침해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자위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19] 자위권은 "국제법 주체 즉, 타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저지 또는 격퇴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무력 대립이 아닌 경우에 자위권의 행사는 인정받을 수 없다".[20] 둘째, 비록 자위권이 non-state actor와 state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행사가 자위권 행사로서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방위행위를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21] 즉,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으로는 위해를 피할 수 없으며, 방위행위가 무력공격의 저지 또는 격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22], 이에 따른 무력사용은 무력공격의 저지 또는 격퇴라는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23] 그러나 이 경우, 비록 새총으로 무장했지만 훈련 받지 않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훈련된 경찰력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하면서 수십 명을 부상 입힐 정도로 진압했기에 비례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ILC 국가책임 초안 제22조에 따르면 대응조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국의 국제의무의 위반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응조치는 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상대국에 대한 조치여야 한다.[24] 그러나 이 경우 페가수스국의 시위 진압에 선행하여 오리온국의 국제법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위 진압이 적법한 대응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페가수스국은 피해를 입은 오리온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전배상(indemnity)의 책임을 진다.

'외교적 보호에 관한 ILC 규정 초안'(이하 ILC 외교보호초안)에 따르면, 외교적 보호권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국민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그를 보호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

18)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Adopted By the 8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Havana Cuba, August to September, 1990*, General provisions 5(a).
19) 김명기, "테러와의 전쟁과 국제법상 자위권"『사회과학논총』제19집, (2003), p.4.
20) Georg Schwarzenberger and E.D Brown,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6th ed,* (Miton: Professional Books, 1976), p.150.
21) 김명기, '테러와의 전쟁과 국제법상 자위권'『사회과학논총』제19집, (2003), p.5
22) Ingrid Detter,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ldershot: Dartmouth 1994) p.226.
23) *Ibid,* p.266.
24)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Article 22.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외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해 ⓑ가해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한 간접손해의 발생이 있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외국의 국내적 구제완료절차를 거치고 ⓓ보호되는 개인이나 법인의 국적계속의 원칙이 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오리온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첫째, 페가수스국의 경찰력을 통한 과잉 진압은 UN 행동 강령의 위반이었다. 둘째, 페가수스국의 위법행위로 인해 수십 명의 오리온국 국민들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셋째, 비록 사실관계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ICJ에 이 쟁점에 대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는 점에서 이미 국내구제완료원칙을 따랐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 만약 오리온국이 '국내구제완료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6년 ILC에서 발표한 외교보호초안에 명시된 국내구제완료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25] 양국의 악화된 외교관계와 페가수스국 내에서 당국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제소라는 점에서 오리온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넷째, 피해자들이 오리온국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국적계속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즉, 페가수스국은 경찰력을 통해 시위를 과잉 진압하면서 수십 명의 오리온국 국민들에게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기에 배상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오리온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개시하여 페가수스국에게 오리온국 국민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indemnity)배상을 청구한다.[26] 따라서,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의 배상액을 산정하여 피해를 입은 오리온국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Ⅳ. 에니프협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협정에 명시된 오리온국의 통과권 역시 유효하다.

1. 페가수스국은의 종료 통보는 VCLT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에니프협정의 경우 별도로 종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니프협정의 종료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VCLT을 따라야 한다. VCLT는 종료 근거를 제60조에서, 종료 절차를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만 적법한 조약의 종료라고 할 수 있다. VCLT 제65조 1항은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조약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또는 그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를 원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그 주장을 통고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해당 조약에 관하여 취하고자 제의하는 조치 및 그 이유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2항에 따르면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통고의 접수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어느 당사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고를 행한 당사국은 제67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그 당사국이 제의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제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예(moratorium)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조약의 종료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종료를 지양하고 다자간의 협상 과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27] 따라서 조약의 종료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특별히 긴급한(specially urgent)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개월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히 긴급한 상황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위에서 밝힌 제65조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3개월이라는 최소한의 협의

25)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with Commentaries, 2006,* Article 15.
26) 김정건 외, 「국제법」, (박영사, 2010) 제4장, 국가책임의 구제, pp.239~241.
27) Olivier Corten & Pierre Klein, *The Vienna Conventions on the Law of Treaties: A Commentary*, *Volume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1494, para.23.

기간을 지킬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페가수스국은 종료 통보를 하는 시점에서는 그 어떠한 '특별히 긴급한' 상황에도 처해 있지 않았다. 오리온국의 파이프라인 폐쇄는 4월 1일에 이루어졌고, 종료 통보는 2015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는데, 4개월의 기간이 존재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파이프라인 폐쇄가 '특별히 긴급'하게 되어 더 이상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페가수스의 종료 통보로 인하여 에니프협정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오리온국은 종료 통보 이후에 즉시 이의를 제기한 만큼 에니프협정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협의의 대상이 된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유효하다.[28)]

2. 페가수스국의 종료통보는 콜룸바국의 협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

설령 오리온국이 에니프협정을 위반하였더라도, 다자조약인 에니프협정의 다른 당사국인 콜룸바국의 동의가 없음으로 협정은 종료되지 않는다. 페가수스국이 종료의 근거로 주장한 VCLT의 제60조 2항에 따르면 다자조약의 종료를 위해서는 위반국 외의 다른 당사국의 "전원일치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페가수스국은 콜룸바국에게 에니프협정의 종료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콜룸바국 역시 그 어떠한 동의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의 일방적인 종료 통보는 유효하지 않고, 오리온국의 통과권은 유효하다.

3. 설령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페가수스국이 에니프협정 종료의 근거로 주장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60조에 따른 오리온국의 에니프협정의 '중대한 위반'의 사실이 없기에 협약은 종료되지 않았다.

페가수스국이 조약의 종료의 근거로 제시한 VCLT 제60조에 따르면 조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조약의 실질적 위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I-2와 II-2-(2)에서 설명하였듯이 오리온국은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만약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협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은 VCLT 제60조에 근거하여 에니프협정을 종료할 수 없다.

Ⅴ. 페가수스국은 수출금지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1.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수출 중단 결의는 국가 행위로 볼 수 있다.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수출 금지 조치 및 결의는 ILC 국가책임 초안 제8조에 의한 국가에 의하여 지시 또는 통제된 행위에 해당한다. ILC 국가책임 초안 제8조에 따르면 국가에 의하여 지시 또는 통제된 행위는 국가 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WTO의 Japan — 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 판례에 따르면, 사인에 의해 조치가 취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충분한 정부의 관여가 있다면 국가 행위로 볼 수 있다.[29)] 페가수스 기업들이 페가수스 당국과 이 사태의 해결과 관련한 협의를 한 직후 일제히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수출 제한을 결의하였다는 점, 실제로 일부 기업들이 결의 내용을 즉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페가수스 당국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페가수

28) Ibid. pp.1496-7, para.27.

29) *Panel Report, Japan — 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 WT/DS44/R, adopted 1998.* p.385, para.10.49.

스 기업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수출 규모가 상당했던 오리온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제한할 자발적인 동기가 없으며, 당국의 묵시적 혹은 직접적인 지시 없이 페가수스국 기업들이 일제히 수출 중단을 결의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페가수스국의 오리온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국제법상 위법하다.

위와 같은 페가수스국의 '국가 행위'는 WTO 회원국들의 준수사항인 GATT에 위반된다. GATT 제11조는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수출 금지 결의 조치는 모든 기업들이 즉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고적(anticipatory) 조치로써 제11조에 위반되고, 수출 금지라고 볼 수 없어도 일부 기업들이 수출 금지 조치를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제한(restriction)'에 해당할 것이다. 수출품의 '제한'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30] 페가수스국은 명백히 GATT를 위반하였다.

또한 페가수스국의 조치는 GATT 제11조 2(a)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The Panel in China — Raw Materials 판례에 따르면 입증 책임은 예외 사항을 주장하는 당사국인 페가수스국에 있지만,[31]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GATT 제1조의 최혜국(MFN) 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하지 않다. 즉, 공산품의 부족 등 수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리온국에 대한 수출만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페가수스국의 국가 행위는 위법하다.

3.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의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페가수스국은 배상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추후 재발을 방지하려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오리온국이 페가수스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가수스국의 위반 행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법상 사인의 행위 역시 국가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로써 방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후에 침해된 법익에 대한 국내적 규제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의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32] 이러한 측면에서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오리온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VI.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지 않았으며 정지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리온국은 통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었다.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페가수스국의 통과권 잠정 정지 조치 및 종료 통보는 위법하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오리온국은 2015년 10월 7일에 페가수스국을 통과하여 물자수송을 할 권리가 있었다.

---

30) *Panel Report,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Sector, WT/DS146/R*, para.7.269-7.270

31) *Panel Report, China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Various Raw Materials*, *WT/DS394/R*, para.7.213.

32)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 책임』, (서울: 삼영사, 2007), 110쪽.

2.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 과정에서 '무력 사용의 금지'라는 강행규범의 위반이 없었다.

(1) 군대로 하여금 물자수송을 호송하게 하는 행위는 무력의 사용(Use of force)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전에 페가수스 당국이 무력 진압을 통하여 오리온국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이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호송 없이 통과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오리온국 호송인력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오리온국은 자국민에게 가해질 피해를 막고자 최소한의 병력을 대동하게 한 것이다.

UN헌장 제2조 4항은 무력사용(use of force)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기서 무력사용은 무기가 동원되는 힘에 한정된다고 봐야한다.[33] 오리온국의 물자 호송이 비록 군대를 동원한 호송이라고 하나, 호송 과정에서 병력이 페가수스국 국민 혹은 경찰들을 향하여 무기를 사용했다는 진술은 어디에도 없으며, 경찰의 제압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진술 역시 없으므로 이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UN헌장 제2조 4항이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을 금지한다는 관점은 지나치게 좁은 관점에서의 해석이며, 타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해하는 무력사용만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34]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오리온국의 군대 사용은 순전히 물자의 평화로운 호송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타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해하기 위함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전체 거리의 90%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일체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페가수스국 경찰이 오리온국의 적법한 통과권 행사 제한을 한 이후에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였다. 이때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엔 헌장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오리온국은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3. 페가수스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법성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긴급피난(necessity)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1) 긴급피난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는 국제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ICJ는 1997년 Gabcikovo-Nagymaros 판결에서 긴급피난은 국제의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사유로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35] 또한 ILC 국가책임 초안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원용국의 본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것과 의무이행의 상대가 되는 국가나 국가들 또는 국제 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36] 오리온국의 행위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

---

33) 김석현, "UN憲章 第2條 4項의 危機 - 그 例外의 擴大와 관련하여",『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1호, (2003.4), p.75.

34) 김부찬,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의를 중심으로",『인도법논총』, 26권, (2003.9), pp.320-321.

35) supra note 6. p.37, para.51.

36)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이하 ILC commentaries), Article 25.

(2) 국가적 사업수행에 긴급하게 필요한 물자수송이 불가능해진 것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a grave and imminent peril)'에 해당한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대하며 동시에 급박한 위험이 실존해야 한다.[37] 비록 "중대함(grave)"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진 바는 없지만, 국가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오리온국 전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 오리온국이 강제로 통과권 행사를 하는 정책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안은 중대하다. 또한 ICJ는 "급박성"이 "immediacy" 혹은 "proximity"와 동의어이며,[38] 단순한 가능성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물자수송이 불가능해진다면 국가사업 수행이 즉시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이 사안은 급박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ICJ는 위험(peril)을 "evokes the idea of risk"이라고 규정하였는데,[39] 물자수송이 불가능해질 경우 국가적 사업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므로 이 요건에도 해당한다.

(3) 통과권 행사는 본질적 이익(essential interest)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조치(only way)였다.

국가적 사업 수행은 오리온국의 본질적인 이익(essential interest)에 해당한다. 많은 시간과 돈을 요구하며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업의 특성상 한 나라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국가적 사업이 실패한다고 해서 오리온국이 존립위기에 처해질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는 '국가적 사업'의 본질적인 이익 해당 여부와 상관이 없다. R. Ago의 경우 '필수적인 국가 서비스들의 지속적인 기능(continued functioning of its essential services)'도 국가의 본질적인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서술하였으며,[40] ICJ의 판례와 ILC의 commentary 역시 국가의 존재(existence of the state)만이 국가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41] 따라서 국가사업 수행은 오리온국의 본질적인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자수송 역시 국가사업 수행 완수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접국인 페가수스국의 항구를 거치는 것만이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내륙국인 오리온국이 물자 수송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도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항공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운송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42]

(4) 오리온국의 군대를 통한 호송은 페가수스국과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오리온국의 군대를 통한 물자 호송은 페가수스국과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오리온국의 군대를 동원한 호송은 페가수스국에게 어떠한 물질적 피해도 입히지 않았으며, 사상자나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도 않았다. 비록 오리온국 군대가 호송을 저지하는 페가수스국 경찰을 제압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근거는 없으며,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오리온국이 보호하려고 했던 이익과 비교했을 때 극히 적다. 따라서 오리온국의 군대를 동원한 호송은 페가수스국의 본질적 이익에 대하여 피해를

37) *ILC commentaries* Article 25.
38) supra note 6. para.42.
39) Ibid.
40) R. Ago, *Addendum to the eighth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YILC, 1980, vol. II, Part One 1980), p.14, para.2.
41) Peter Muchlinski et. al,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476.; supra note 6. para.91.
42) 2016 모의재판문제 para.19.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제3국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자 호송과정에서 오리온국이 국제사회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오리온국의 군대를 통한 물자 호송과 관련하여 긴급피난의 원용을 배제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ILC 국가책임 초안 제25조에 따르면 긴급피난 원용 불가 사유는 첫째, 문제가 된 국제의무가 긴급피난의 원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우, 그리고 둘째 원용국이 긴급피난 상황 발생에 기여한 경우인데,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사국은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다.[43] 그러나 오리온국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첫째, 오리온국이 가입한 그 어떤 조약도 긴급피난의 원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리온국의 행동은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강행규범 중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오리온국은 긴급피난 상황의 발생에 기여하지 않았다. 오리온국이 군대를 통해 물자를 호송한 이유는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의 통과권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므로, 긴급피난 상황 발생에 기여한 것은 오히려 페가수스국이고, 오리온국은 이 긴급피난 상황 발생에 기여한 바 없다.

결론적으로 오리온국의 행위는 긴급피난 원용 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리온국은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있다.

VII. 결론 및 해결방안

위와 같은 이유로 아라곤국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1. 첫째, 오리온국이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를 폐쇄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둘째,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위법하다.
3. 셋째, 페가수스국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4. 넷째, 에니프협정은 2015년 8월 15일에 행해진 페가수스국의 종료통보로 인해 종료되지 않았다.
5. 다섯째,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6. 여섯째, 오리온국은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 하고 그 과정에서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3) *ILC commentaries*, Article 25, para.16.

특 집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타방변론서

김민효 (중앙대 행정학과), 박소영 (고려대 국제학부), 송용진 (고려대 국제학부), 장석우 (연세대 국제학부)

국제사법재판소

타방변론서

2016년 8월 15일 재판소 서기국에 접수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및
통과권 관련 일련의 사태에 연관된 사건
(오리온국 / 페가수스국)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Memorial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on 15 August 2016

Orion / Pegasus

내용 목차

판례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 요약

사실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I. 오리온국이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1. 오리온국의 파이프라인 폐쇄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간에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콜룸바국의 대사관 봉쇄조치가 국제법상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리온국의 조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
   (1) 오리온국의 국제의무위반을 '동의', '자위권', '대응조치', '불가항력'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없다.
   (2) 해당 조치는 위법성 조각사유인 '대응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적법하다.

1. 통과권 정지조치는 에니프협정 제4조에 따른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에니프협정의 위반이 아니다.
   (1) "안전보장"은 경제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포함한다.
   (2) 페가수스국은 자국의 경제적 안전보장을 위하여 오리온국의 통과권 정지조치를 취하였다.
2.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의 에니프협정 제3조 조약 위반의 결과로서, VCLT 제60조 2항 b호에 따라 에니프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할 권리를 갖는다.
   (1) 오리온국의 "실질적 위반(material breach)"이 있었다.
   (2)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의 "실질적 위반"으로 인해 "특별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다.
3. 설령 해당 조치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치는 오리온국의 국제위법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대응조치

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오리온국의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한 국제법상 위법행위이다.

(2) 페가수스국의 해당 조치는 대응조치의 요건을 충족한다.

III.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데 대하여 국가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1) 오리온국 국민의 시위는 폭력시위에 해당하므로, 페가수스국의 시위진압은 정당하다.

(2) 페가수스국의 시위 진압은 적법하였다.

2. 오리온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할 수 없다.

(1) 오리온국은 외교적 보호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IV.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었다.

1.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 통보는 VCLT 제60조 2항 a호에 근거하여 적법하다.

(1) 에니프협정의 당사국인 오리온국의 "실질적 위반"이 있었다.

(2)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의 위반국인 오리온국을 제외한 다른 당사국의 전원일치의 협의에 의하여 조약을 종료시키는 권리가 있다.

(3) VCLT 제65조에 의한 "특별히 긴급한 경우"(special urgency)에 해당한다.

V.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페가수스국 자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수출금지 조치는 국가책임법상의 국가의 행위가 아니다.

(1) 일부 기업의 수출금지 조치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며,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국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지휘 또는 통제 하에 한 행위가 아닌 자발적인 사인의 행위이다.

2. 해당 조치와 관련된 국제의무인 WTO 협정은 국가 행위만을 구율하며, 일부 기업의 자발적 수출금지는 GATT 의무 위반이 아니다.

(1) 오리온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가 없었다.

(2) 사실상의 "수출 제한 (restriction)"이나 "금지(prohibi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페가수스국은 피해 배상의 의무나 재발방지 책임이 없다.

VI.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데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오리온국의 병력을 대동한 통과권 행사는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이다.

(1) 오리온국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인 무력사용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2. 오리온국의 군사력을 이용한 통과권 행사는 페가수스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페가수스국의 "자국 영토를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jus excludendi alios)"를 침해하였다.

(2) 오리온국의 군대가 페가수스국의 공권력을 무력화함에 따라 페가수스국이 자국의 "영토의 거주민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침해하였다.

3. 오리온국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다.

(1)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유일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VII. 결론 및 해결방안

판례색인 [Index of Authorities]

■ 조약(Treaties)

1943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47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UN문서(UN Document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 II

United Nations,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9

United Nations, *Joint Compilation with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31st session, 29 February-24 March,* A/HRC/31/66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twenty third session,* A/HRC/23/39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0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United Nations, *Report of Human Rights Committee, Lee v. the Republic of Korea, eighty-fourth session,* 1119/2002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with commentaries. 2006

■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및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C.J. Merits, Judgment, 26 February 2007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Award, May 12, 2005

Difference Relating to Immunity from Legal Process of a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dvisory Opinion, I.C.J.Reports 1999 (I)

Gabchikovo-Nagymaros Project (Hungary v. 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ement, I.C.J. Reports 1986

Panel Report, Japan — 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 WT/DS44/R, adopted 1998

Petrolane, Inc. v.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ran-U.S. C.T.R., Vol 27

Responsabilité de l'Allemagne en raison des actes commis postérieurement au 31 juillet 1914 et avant que le Portugal ne participât à la guerre (Portugal contre Allemagne), RIAA, vol. II, p.1057.

■ 국내/해외 논문(Articles)

김해중, "시위 진압용 최루제제 및 가스 분사기에 대한 국내·외 법적규제", *Korean Journal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vol.8, no.4 (2014)

김현주, "조약 관계에서의 신의성실원칙",『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2015.6)

서정범,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공법학연구』, 제9권 제2 (2008.5)

오시진, "국제테러와 국가책임법-국가 귀속 법리에 대한 고찰",『강원법학』, 제37권 (2012.10)

M. Prost, "Article 65: Procedure to Be Followed with Respect to Invalidity, Termination, Withdrawal from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in Olivier Corten, Pierre Kelien(ed.),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A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국내/해외 단행본 및 문건

김석현,『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박노형 외,『국제경제법』, 박영사, 2015

안토니오 카세스 저, 강병근·이재완 譯,『국제법』, 제3판, 삼우사, 2014

Bruno Simma 외 (ed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Vol.I,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Emer de Vattel, *The Law of Nations*, Vol.3, 1964

R. Lansing, *The Peace Negotiations-A Personal Account, H*oughton Mifflin Co, 1921

■ 기타 자료

조선일보, "쇠구슬 쏜 '새총 시위꾼'구속", 2008.08.26.
중앙일보, "시위대, 새총까지 들고 경찰 조준 폭력성 도 넘었다", 2008.06.27.
한겨레21, "시민을 폭도로 몰아붙이다", 2015.11.23.

관할권 진술 [Statement of Jurisdiction]

첫째, 페가수스국과 오리온국은 2000년 이전에 UN(United Nations) 회원국이 되었고,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 규정 제34조 제1항과 UN 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제93조 제1항에 따라 UN 헌장과 ICJ 규정의 당사국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둘째, 본 사건에서 페가수스국과 오리온국은 양국 간의 이견을 양국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동 사건을 ICJ에 회부하는 특별협정(compromis)을 2016년 4월 15일 체결하였다. ICJ 규정 제40조 1항에 의거하여, 양 당사국은 석유 파이프라인과 통과권에 대한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ICJ의 관할권을 수락하였다.

제기된 문제 요약 [Questions Presented]

1. 오리온국이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가 에니프협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
3. 페가수스국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의 존재 여부
4. 2015년 8월 15일에 행해진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인한 에니프협정의 종료 여부
5. 페가수스국이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의 존재 여부
6. 오리온국이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그 과정에서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것에 대한 오리온국의 국제법상 책임의 존재 여부

사실관계의 진술 [Statement of Facts]

1.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룸바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에니프협정에 서명하고 비준하였다.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룸바국은 2014년 5월 1일에 페가수스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부설 문제와 오리온국의 페가수스국 통과권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협정(이하 "에니프협정")에 서명하였다. 이후 2014년 8월 31일 페가수스국을 마지막으로 3국 모두 국내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동 협정을 비준하였고, 2014년 9월 1일에 동협정이 발효하였으며, UN헌장 제102조에 따라 UN 사무국에 등록하였다.

2. 콜룸바국 소재의 오리온국 대사관은 콜룸바국 반체제 인사 아무르를 비호하며 인도요청에 응하지 않자, 콜룸바국은 오리온국 대사관을 봉쇄하였으며, 오리온국은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5년 2월 1일 콜룸바국 소재 오리온국 대사관에서 콜룸바국의 반체제 인사 아무를 비호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콜롬바국은 아무르의 인도를 요청하였지만 오리온국 대사관은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동년 3월 1일부터 콜룸바국 당국은 오리온국의 대사관을 봉쇄하고 오리온국 대사관에의 출입을 금지하였고, 오리온국은 동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 페가수스국은 2015년 5월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공표하면서 국경 봉쇄조치를 취하였다.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에 30일 이내에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오리온국이 향유하는 통과권을 잠정적으로 부여하지 않겠다고 즉시 통고하였으나, 오리온국은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폐쇄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페가수스국은 2015년 5월 1일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공표하고 국경 봉쇄조치를 취하였다.

4. 페가수스국은 2015년 8월 15일에 에니프협정을 종료한다고 오리온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2015년 5월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의 국민과 물자의 육로 통과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후, 페가수스국 소재의 오리온국 국민들은 이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 시위대는 페가수스국의 행정관청이 밀집해 있는 수도 에니프의 피칸거리에서 집단적으로 돌을 던지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의 폭력 시위를 전개하였다. 페가수스국은 시위가 격화되고 파이프라인 폐쇄조치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오리온국과 에니프협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0조를 근거로 동 협정의 종료를 서면 통보하였다.

5. 오리온국은 2015년 10월 1개 대대 병력을 대동하여 페가수스국 국경을 통과하여 제 3국으로 물자를 수송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페가수스국 경찰 제지를 제압하고 목적항구에 도달하였다.

오리온국은 2015년 10월 7일 1개 대대 병력과 물자 수송 차량 및 인력을 대동하여 페가수스국 국경을

넘어 물자를 수송하고자 시도하였다. 호송 인력은 페가수스국 국경을 넘어 항구를 향하였으며, 이에 페가수스국 당국 경찰은 오리온국의 병력을 제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오리온국의 병력은 페가수스국의 경찰 제지를 무력으로 제압했으며, 목적항구에 도달하였다.

6. 페가수스국과 오리온국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ICJ에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국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의 외교협상을 수행하였으나,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에 도달할 수 없었다. 결국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양국 정부는 2016년 4월 15일 특별협정(*compromis*)을 체결하여 ICJ에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변론의 요약 [Summary of Pleadings]

I. 오리온국이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에니프협정 제3조가 규율하는"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에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파이프라인 폐쇄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에 대한 위반이다. 설령 콜룸바국의 대사관 봉쇄 조치가 국제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그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II.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적법하다.

페가수스국이 통과권을 잠정적으로 봉쇄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4조에 따른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조약의 위반이 아니다. 또한, 페가수스국의 해당조치는 오리온국의 에니프협정 제3조 조약 위반의 결과이므로, 페가수스국은 VCLT 제60조 2항 b호에 따라 에니프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할 권리를 갖는다. 설령 해당 조치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오리온국의 국제위법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대응조치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III.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오리온국 국민들은 페가수스국의 행정기관과 인구가 밀집한 수도 피칸거리에서 돌을 던지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난사하는 폭력적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이는 페가수스국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페가수스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21조에 따라 시위를 진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페가수스국은 UN행동강령인 '법집행관 행동강령'과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으며, 국제위법행위가 없으므로 오리온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은 국제법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IV.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인하여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었다.

오리온국은 석유 파이프라인을 자의대로 폐쇄함에 따라 에니프협정 제3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다. 이에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의 조약 위반을 사유로 에니프협정 종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는 VCLT 제60조 2항 a호에 근거하여 적법하다. 페가수스국은 동 협약 제65조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히 긴급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하게 종료통보를 하였다.

V.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당 행위는 국가책임법상 국가기관의 행위나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행위가 아니며,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에 의한 행위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으므로 국가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일부 기업이 즉시 수출 금지 조치를 한 것과 달리, 대부분의 기업들의 수출 금지 결의는 곧바로 수출 금지로 이어지지 않은 사실은 행위의 주체로서 해당 기업들의 자율성이 존재함을 입증한다. 관련 GATT 규정은 국가의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페가수스국 정부가 수출금지 관련 조치를 제정한 적이 없는 점, 그리고 사인을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GATT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VI.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데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오리온국은 병력을 대동하여 실력에 의해 통과권을 확보하고, 페가수스국의 경찰을 제압함에 따라 국제법상 강행규범인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해당 행위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한,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의 사전 동의 없이 국경을 넘어 페가수스국의 "자국 영토를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jus excludendi alios)를 침해하였으며, 공권력을 무력화함에 따라 '영토의 거주민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해하고 경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해당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변론 [Pleadings]

I. 오리온국이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이하 파이프라인 폐쇄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

1. 오리온국의 파이프라인 폐쇄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간에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리온국은 에니프협정 제3조에 따른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간에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하지 않

았음에도 파이프라인을 폐쇄하였으므로, 에니프협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 동 협정 제3조는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에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1] 에니프협정 제3조의 대한 해석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VCLT) 제31조에 의한 조문 해석의 일반적 규칙에 따라야 한다. 이는 조약의 해석에 있어 통상적인 의미와, 문면이 사용된 맥락 및 조약의 목적의 관점에 비추어 신의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2]

에니프협정의 체결 목적은 "콜룸바국이 생산하는 석유를 오리온국을 통하여 페가수스국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석유 수송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며,[3] 오리온국에는 통과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콜룸바국으로부터 원활히 석유를 수송 받아야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페가수스국은 경유국인 오리온국의 협조가 불가결하다. 이에, 파이프라인 폐쇄의 요건을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의 외교상황 변화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오리온국과 콜룸바국의 외교관계 변화 또는 악화에 의해서 페가수스국으로의 석유 수송에 대한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협정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에서 석유 수송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제3조),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에게 통과권을 부여 (제4조) 한 것으로 봄이 마땅함으로, 오리온국은 콜룸바국과의 외교상황과는 무관하게 페가수스국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를 수송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무를 지닌다.

콜룸바국 주재 오리온국 대사관을 봉쇄한 조치는 콜룸바국과 오리온국의 비정상적 외교상황이라 볼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페가수스국과의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통상적인 의미로부터 유추해낼 수 없는 해석이다. 이는 당사국의 신뢰에 반하는 해석이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오리온국의 조치는 동 협정 제3조의 위반을 구성한다.

2. 콜룸바국의 대사관 봉쇄조치가 국제법상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리온국의 조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

(1) 오리온국의 국제의무위반을 '동의', '자위권', '대응조치', '불가항력'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없다.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ILC 국가책임 초안)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총 6가지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의 ⓑ자위권 ⓒ대응조치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이다. 오리온국의 행위는 위에 열거된 사유 중 그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충족하지 못한다. ⓐ, ⓑ, ⓓ, ⓔ, ⓕ의 사유는 본 사안과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4] 이하에서는 ⓒ대응조치 해당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해당 조치는 위법성 조각사유인 '대응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째, 오리온국의 해당 조치는 대응조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대응조치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선행된 위법행위에 책임 있는 국가를 상대로 취해졌어야 한다.[5] 제3국을 상대로 취해지는 의무위반 행위는 대응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위반 행위에 의하여 "제3국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또는 결과적으

1)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6.
2) 김현주, "조약 관계에서의 신의성실원칙",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2015.6), 1-20쪽.
3)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3.
4) 안토니오 카세스 저, 강병근·이재완 譯, 『국제법』, 제3판, (서울: 삼우사, 2014), 315쪽.
5) ILC 국가책임 초안 제49조.

로"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대응조치로서 정당화되지 않는다.[6] 이는 이미 1930년 Cysne 사건의 "오로지 도발국에 대하여 취해지는 복구만이 허용된다"는 판시에 따라 확인된 바 있다.[7] 오리온국의 조치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페가수스국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조치이므로, 오리온국은 대응조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둘째, 오리온국은 석유파이프라인을 봉쇄하기 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UN 헌장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8] 오리온국은 해당 조치 이전에 책임국가인 콜룸바국에 대하여 위법행위 중단, 또는 피해회복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여야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곧바로 파이프라인을 폐쇄하였다. 따라서 오리온국이 해당 조치 외에 다른 선택사항이 있는지"신의 성실히 고려하고"[9] 대응조치를 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II.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통과권 정지조치)는 적법하다.

1. 통과권 정지조치는 에니프협정 제4조에 따른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에니프협정의 위반이 아니다.

(1) "안전보장"은 경제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포함한다.

에니프협정 제4조는 페가수스국의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일 경우 통과권 침해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다. 동 협정 제4조에 명시된 "자국의 안전보장"은 페가수스국의 안전보장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안전보장"은 단순히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경제적 위기 또한 국가의 안전(security)를 위협하는 요소이므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안전보장도 포함한다. CMS Tribunal은 "security의 의미가, 즉각적인 (immediate) 정치적 군사적 문제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맺은 BIT의 해당 규정에 불균형적인 이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10] 이는 에니프협정에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제관습법의 맥락이나 에니프협정의 목적과 대상 그 자체만으로는 안전(security)에서 경제적 위기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는 없다.[11]

(2) 페가수스국은 자국의 경제적 안전보장을 위하여 오리온국의 통과권 정지조치를 취하였다.

오리온국이 석유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페가수스국에 경제적 위기를 야기하였다. 페가수스국이 콜룸바국산 석유에 의존하여 전력 생산 및 기타 산업 수요를 충당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러한 사실을 오리온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면, 예고 없이 취해진 오리온국의 해당 조치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페가수스국의 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를 제한하였다.

---

6)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 책임』, (서울: 삼영사, 2007), 260쪽.
7) *Responsabilité de l'Allemagne en raison des actes commis postérieurement au 31 juillet 1914 et avant que le Portugal ne participât à la guerre*, *RIAA*, *vol.II*, p.1057;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260쪽.
8) UN 헌장 제2조 3항.
9) 안토니오 카세스 저, 강병근·이재완 譯, 『국제법』, 제3판, (서울: 삼우사, 2014), 375쪽.
10)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08*, *12 May 2005*, para.359.
11) *Ibid.*, para.360.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의 통과권을 잠정적으로 제한한 조치는 페가수스국의 경제적 "안전 보장을 위한 목적"을 수행한다. 통과권의 제한은 오리온국으로 하여금 파이프라인을 재개하기 위한 압박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내륙국인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이 부여한 통과권에 의해서 에니프 항구를 접근할 수 있는 등 통과권 확보가 해양 접근을 위해 필수적이다. 페가수스국은 이를 잠정적으로 제한하여 오리온국의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파이프라인을 재개하고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해당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4조가 보장하고 있는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취해진 예외적인 통과권 제한이다.

2.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의 에니프협정 제3조 조약 위반의 결과로서, VCLT 제60조 2항 b호에 따라 에니프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할 권리"를 갖는다.

VCLT 제60조 2항은 다자조약의 어느 당사국에 의한 '실질적 위반'은 관계 당사국에게 a, b, c호에 규정되어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b호에 따르면, 어느 당사국의 "실질적 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그 자신과 위반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를 갖는다.[12] 페가수스국이 이러한 권리를 갖는지에 대한 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1) 오리온국의 "실질적 위반(material breach)"이 있었다.

오리온국은 제60조 3항 b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위반"의 조건을 충족한다. 에니프협정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을 위반하였다. 위의 쟁점에서 증명하였듯이, 오리온국의 2015년 4월 1일 석유 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의 외교 상황이 비정상적이지 않았음에도 폐쇄하였기 때문에 에니프협정 제3조의 위반이다.

또한, 에니프협정 제3조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이다. 협정의 당사국인 콜룸바국과 페가수스국은 석유 수출과 수입을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석유수송방법"을 위해 오리온국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오리온국에게 외교 협상에 응하라는 제안을 하였다.[13] 이는 해당 조약의 목적이 석유 수송 파이프라인의 설치임을 명백히 드러내며, 이 파이프라인의 폐쇄에 관한 규정이 제3조이므로, 이는 에니프협정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수적 규정이다.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 석유를 수송하게 해주는 대가로서 페가수스국이 통과권을 부여하기로 협상한 것이므로,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이 에니프협정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니프협정 3조의 위반은 오리온국의실질적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2)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의 "실질적 위반"으로 인해 "특별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다.

페가수스국은 콜룸바국산 석유에 의존하여 전력 생산 및 기타 산업 수요에 충당하고 있을 정도로, 콜룸바국산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해야만 국가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리온국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콜룸바국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던 페가수스국은 폐쇄조치로 인해 전력생산 및 산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해당 조치가 국가 산업 전반과 끼친 손실을 따졌을 때, 페가수스국은 "특별한 영향"을 받는

12) VCLT 제60조.
13)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4.

당사국이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은 위반 당사국인 오리온국과의 관계에 있어 제60조 2항 b호에 근거하여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에니프협정의 일부인 오리온국 통과권을 잠정적으로 제한한 조치는 적법하다.

3. 설령 해당 조치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오리온국의 국제위법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대응조치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오리온국의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한 국제법상 위법행위이다.

1.~2.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오리온국의 파이프라인 폐쇄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에 대한 위반이며,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 페가수스국은 대응조치의 요건을 충족한다.

국제관습법상 어느 한 국가의 위법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며, 관련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ILC 국가책임 초안 제22조에도 명시되어 있다.[14] ILC 국가책임 초안 제3부 제2장에 따라 그 타국에 대하여 취해진 대응조치를 구성하는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페가수스국의 잠정조치는 대응조치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한다.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국이다. 오리온국이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함에 따라, 산업 및 기타활동에 있어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다. ⓑ페가수스국의 해당 조치는 오리온국의 위법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페가수스국은 석유 공급의 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이프라인을 재개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위법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 ⓒ페가수스국의 해당 조치는 강행규범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다. ⓓ페가수스국은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대응조치는 국제위법행위의 심각성과 문제되는 권리를 참작하여, 입은 피해와 비례해야 한다. 애초 에니프협정의 체결 시,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룸바국에 의하여 오리온국의 파이프라인의 설치와 페가수스국의 오리온국에 대한 통과권 부여가 양국에 동등한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고려되었으므로, 페가수스국의 해당 조치는 비례성을 충족한다. 따라서, 설령 페가수스국의 통과권 행사의 잠정조치가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대응조치의 요건을 위와 같이 충족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III.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1.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데 대하여 국가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1) 오리온국 국민의 시위는 폭력시위에 해당하므로, 페가수스국의 시위진압은 정당하다.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법은 위 권리를 인정하여 집회는 적법한(lawful) 것으로 추정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14) ILC 국가책임 초안 제22조.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 제21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15]

동 협약 제21조에 따르면,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인정되며, '국가의 안전, 공공의 안녕, 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의 목적으로 집회는 제한될 수 있다. 오리온국 시민들이 행한 시위는 폭력성을 지니고 있었고, 위 조항이 규율하는 집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집회에 대한 제한의 사유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보호를 원용하는 경우, 국가는 그 위협의 상세한 성격과 제기되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입증해야 한다.[16] 오리온국 시민들의 시위는 다음의 내용으로 폭력적인 시위를 전개하였고, 페가수스국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였다.

첫째, 오리온국 시위자들은 집단적으로 돌을 던지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난사하는 방식을 동원하였으며,[17]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폭력적 및 불법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돌을 던지는 행위' 및 '쇠구슬 난사행위'는 인명피해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이므로 폭력적 행위에 해당하며,[18] 이는 위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개별국가의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확인된 바가 있다.[19]

둘째, 오리온국 시위자들은 "행정관청이 밀집한 페가수스국 수도 에니프의 피칸거리에서 모여 내무행정부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난사하였다.[20] 행정관청을 겨냥하여 돌 및 쇠구슬을 던지는 행위는 페가수스국의 주요 국가운영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오리온국의 시위자들이 특정 타인을 겨냥한 폭력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돌 및 쇠구슬 발사 행위의 특성상 (사물 및 건물에 튕겨서) 결과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시위의 제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봐야 한다. 또한, 인구가 밀집한 수도에서 벌인 시위이므로 타인의 안전 위협 및 수도 내의 교통의 혼란 등을 야기할 우려가 높았다.

따라서 오리온국 시민들이 행한 시위는 페가수스국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위협하였으며, 폭력시위로서 진압되어야 마땅한 시위이다.

(2) 페가수스국의 시위 진압은 적법하였다.

페가수스국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물대포와 최루가스 방출 차량을 동원하여 오리온국 국민들의 시위를 진압하였으며, 이는 UN 행동강령인 '법집행공무원의 행동수칙'(UN 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이하 CCLEO)과,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UN Basic Principles for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부합한 조치이다.

CCLEO 제3조는 법집행공무원의 무력사용의 요건으로 필요성(necess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을 제시하고 있다.[21] 또한,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의 제4조, 제5조(a)도 필요성과

---

15)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twenty third session, A/HRC/23/39, para.50.

16) United Nations, Report of Human Rights Committee, Lee v. the Republic of Korea, eighty-fourth session, 1119/2002, para.7.3.

17)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13.

18) 중앙일보, "시위대, 새총까지 들고 경찰 조준 폭력성 도 넘었다", 2008.06.27. <http://news.joins.com/article/3205020?cloc=joongang%7Carticle%7Cissue>, [최종방문일: 2016.07.30]

19) 조선일보, "쇠구슬 쏜 '새총 시위꾼' 구속", 2008.08.26.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26/2008082600009.html>, [최종방문일: 2016.07.30]

20)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13.

21) 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169 of 17 December 1979, Article 3.

비례성의 원칙을 규율하고 있으므로,[22] 페가수스국 경찰의 무력사용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i) **필요성(necessity)**

III-1-(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는 다수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명백히 위협하였으므로, 시위자들의 행위 중단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또한, 과열된 시위 상황을 비추어 보아, 무력을 배제한 경찰의 해산명령 혹은 단순 제지는 시위 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물대포 및 최루가스를 사용하여 효과적 진압이 필요하였다.

ii) **비례성(proportionality)**

페가수스국의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시위의 진압 수단으로써 사용하였는데, 시위통제용 제제인 최루가스를 "불법집회 현장에서 흥분하여 해산에 불응하는 시위 군중을 해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로 정의하며,[23] 집회시위관리용 물포란 기동장비 중 특수용 차량으로써 "군중의 해산을 목적으로 고압의 물줄기를 분사하는 장비"를 말한다.[24] 물대포와 최루가스의 목적을 비추어 보아, 페가수스국 경찰이 선택한 수단은 '시위 중단'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페가수스국의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가스 방출 차량을 동원한 조치는 오리온국 시위자들이 돌을 던지고 쇠구슬을 난사한 행위보다 위험 소지가 현저하게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페가수스국은 비례성과 관련한 원칙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 따라서, 페가수스국 경찰의 시위 진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조치였으므로 오리온국 시위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오리온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할 수 없다.

(1) 오리온국은 외교적 보호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외교적 보호에 관한 ILC 규정 초안'(이하 ILC 외교보호초안)에 따르면, 외교적 보호권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국민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그를 보호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가리킨다.

오리온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외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해 ⓑ가해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한 간접손해의 발생이 있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외국의 국내적 구제완료절차를 거치고 ⓓ보호되는 개인이나 법인의 국적계속의 원칙이 달성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1.의 내용에 따라, ⓐ본국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을 상대로 인권침해 혹은 외국인 보호의 의무위반 등의 국제위법행위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오리온국은 외교적 보호권의 첫 번째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설령 오리온국이 ⓐ의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

22)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Adopted By the 8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Havana Cuba, 27 August to September 1990, General provisions 4, 5.

23) 김해중, "시위 진압용 최루제제 및 가스 분사기에 대한 국내·외 법적규제", Korean Journal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vol.8, no.4, 2014, pp.265~276.

24) 한겨레21, "시민을 폭도로 몰아붙이다", 2015.11.23.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0709.html>, [최종방문일: 2016.08.03]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오리온국이 부담한다.

IV.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었다.

1.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 통보는 VCLT 제60조 2항 a호에 근거하여 적법하다.

(1) 에니프협정의 당사국인 오리온국의 "실질적 위반"이 있었다.

II.2.(1)에서 서술하였듯이, 오리온국은 에니프협정에 필수적인 목적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함으로써 VCLT의 제60조에 의한 "실질적 위반"요건을 충족한다.

(2)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의 위반국인 오리온국을 제외한 다른 당사국의 전원일치의 협의에 의하여 조약을 종료시키는 권리가 있다.

VCLT 제 60조 2항 a호에 의하면 다자조약의 어느 당사국에 의한 실질적 위반은 "다른 당사국이 전원일치의 협의에 의하여" 제2목에 규정된 "모든 당사국 간에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정지 시키거나 또는 그 조약을 종료시키는 권리"를 원용할 수 있다.[25] 본 사안에서, 위반국을 제외한 당사국인 콜룸바국과 페가수스국의 전원일치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콜룸바국의 협정 종료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가 없었으므로, 암묵적으로 협정 종료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오리온국이 콜룸바국의 반체제 인사를 비호하고 인도 요청에 불응한 사실과, 파이프라인 폐쇄조치를 통해 콜룸바국의 석유 수출에 차질을 빚고, 해당 폐쇄조치가 장기화된 사실로 보아, 콜룸바국으로서는 석유 수송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오리온국과의 악화된 관계로 인해 에니프협정을 유지할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콜룸바국은 석유 수송 파이프라인을 유지함에 따라 이익 받는 당사자로서, 에니프협정을 통해 파이프라인으로 석유 수출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익을 없애는 협정 종료 통보에 부정적인 의사표명하지 않았다. 위 사실은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에니프협정을 유지하는 의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사국에게 주요 의무과 권리를 부과한 에니프협정 제3조와 제4조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에니프협정은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의 종료에 해당한다.

(3) VCLT 제65조에 의한 "특별히 긴급한 경우"(special urgency)에 해당한다.

VCLT 제65조는 조약의 종료에 관하여 취해지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조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사유를 원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그 주장을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히 긴급한 경우'(special urgency)를 제외하고 그 통고의 접수 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느 당사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약의 종료에 따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26]

페가수스국은 2015년 8월 15일 에니프협정의 종료를 오리온국에 서면 통보하였고, 오리온국은 그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페가수스국은 VCLT 제65조 2항이 규정하는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었다.

25) VCLT 제60조.
26) VCLT 제65조.

위의 예외적 경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약에 대한 "급작스럽고 심각한 위반(sudden and serious breach)"이 있어야 한다.[27]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에 어떠한 예고도 없이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하였으며, 파이프라인 폐쇄조치로 인하여 페가수스국은 석유 수입에 차질이 생겨 전력 생산 및 산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므로, 급작스럽고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

오리온국의 위반에 따라, 페가수스국이 대응하며 취한 통과권 정지조치에 대하여 페가수스국 영토 내에서 시위가 격화되어 공공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과 더불어, 전력 생산 및 산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으므로, 이러한 혼란을 긴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에니프협정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페가수스국이 처한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오리온국의 "급작스럽고 심각한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페가수스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으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VCLT의 제65조 2항에 명시된 3개월의 기간을 지키길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unreasonable)하다.[28]

Ⅴ.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페가수스국 자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수출금지 조치는 국가책임법상의 국가의 행위가 아니다.

(1) 일부 기업의 수출금지 조치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며,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국제법상 국가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법행위가 국가의 행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ILC 국가책임 초안 제4조와 ICJ 권고적 의견은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국가기관 귀속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29] 수출금지를 취한 일부 페가수스국의 기업들은 공산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The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s 에서는 사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정부권한의 요소가 있을 시 해당 행위를 국가 책임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30] 페가수스국은 수출에 관련된 법 제정, 조치 부여나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31] 해당 사인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해당 행위는 정부의 권한 없이도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이 사업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2) 국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지휘 또는 통제 하에 한 행위가 아닌 자발적인 사인의 행위이다.

ILC 국가책임 초안은 제8조에 따르면 사인이 국가에 의해 지휘, 지시, 통제를 받았다면 이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됨을 명시하고 있다. ICJ는 Nicaragua 사건에서 국가의 지휘, 지시, 통제를 판단하는 실효적 통제의 기준을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의존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

---

27) M. Prost, *Article 65: Procedure to Be Followed with Respect to Invalidity, Termination, Withdrawal from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in Olivier Corten, Pierre Kelien(ed.),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A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1485-1489.

28) *Ibid.*

29) *Difference Relating to Immunity from Legal Process of a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9 (I)*, p.87, para.62.

30) *Petrolane, Inc. v.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ran-U.S. C.T.R., vol. 27*, p.64, at p.92 (1991).

31) ILC Commentary, 2001, p.43, para.3.; 오시진, "국제테러와 국가책임법-국가 귀속 법리에 대한 고찰", 『강원법학』, 제37권 (2012.10), 215-246쪽.

로 해당 행위가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고 보았다.[32]

본 사안에 적용하여 살피건대, 페가수스국의 기업들이 단지 수출 금지 결의 전 "페가수스국 관련 당국과 이 사태의 해결과 관련한 협의"[33]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Bosnia Genocide Case에서 언급한 사인의 국가에 대한 '완전 의존'을 증명하기 어렵다.[34] 또한, 일부 기업이 즉시 오리온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한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기업들이 곧바로 수출 금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오히려 행위의 주체로서 해당 기업들의 자율성이 존재함을 입증한다.

2. 해당 조치와 관련된 국제의무인 WTO 협정은 국가 행위만을 구율하며, 일부 기업의 자발적 수출금지는 GATT 의무 위반이 아니다.

(1) 오리온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가 없었다.

페가수스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WTO 협정을 따를 의무를 지닌다. 수출 금지에 관해서는 WTO 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하 GATT)' 11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며,[35] 해당 조항은 WTO 회원국에 대하여 "수입과 수출에 대한 수량제한조치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있다.[36] 페가수스국은 해당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쿼터(quota)나 자격(license)을 부여하여 수출 제한이나 금지를[37] 시도한 적이 없으며, 이 외에도 오리온국으로 공산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기업들이 수출 금지를 결의하도록 하는 관련 법규를 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GATT 1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2) 사실상의'수출 제한(restriction)'이나 '금지(prohibi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수량제한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de-facto) 수량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Japan-Film 사건에서 WTO 패널은 사인의 행위더라도 '정부의 충분한 간섭'이 있을 시에 이는 정부 행위의 성격을 띤다고 판시한 바 있다.[38] 페가수스국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오리온국에 공산품 수출 금지를 결의하게끔 지시하거나 통제한 바 없으며, 앞서 일부 기업의 수출 금지 조치는 페가수스국의 국가행위에 귀속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사실상의 (de-facto) 수출 제한이나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페가수스국은 피해 배상의 의무나 재발방지 책임이 없다.

ILC 국가책임 초안은 책임국가가 피해국을 상대로만 이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39] 이 사안의 경우 페가수스국의 기업의 조치는 국가책임에 귀속되지 않으며,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방지를 할 의무는 국제의무를 위반한 위법국가가 지는 의무이므로, 페가수스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

---

32)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ara.110.; 오시진, "국제테러와 국가책임법-국가 귀속 법리에 대한 고찰", 『강원법학』, 제37권(2012.10), 215-246쪽.

33)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17.

34)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C.J. Merits*, *Judgment*, *26 February 2007*, para.406.

3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11조.

36) 박노형 외, 『국제경제법』, (서울: 박영사, 2015), 150쪽.

37)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11조.

38) *Panel Report on Japan Film*, para.10.56.

39) ILC 국가책임 초안 제2부; 안토니오 카세스 저, 강병근·이재완 譯, 『국제법』, 제3판, (서울: 삼우사, 2014), 322쪽.

VI.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데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오리온국의 병력을 대동한 통과권 행사는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이다.

(1) 오리온국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인 무력사용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으로 진입한 수송차량과 수송인력에 대한 경찰의 제지를 제압하였으며, 자국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타국의 국경을 넘어 침입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인 무력사용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위법하다. 해당 원칙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ICJ Nicaragua 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40]

UN 헌장 제2조 4항에서는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동 조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한정하여 무력 사용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폭넓게 해석되어야 마땅하다.[41]

설령 오리온국의 병력이 페가수스국의 경찰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있어 무기를 동원하여 공격하는 등 실질적인 무력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군대로 하여금 차량과 인원을 페가수스국으로 호송하는 행위는 언제든 그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무력의 위협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리온국의 자국 병력을 동원한 물자 수송 및 경찰의 제압은 설령 일시적이고 침략의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UN 헌장 제2조 4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무력사용금지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앞서 설명한 강행규범은 절대규약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가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2. 오리온국의 군사력을 이용한 통과권 행사는 페가수스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페가수스국의 "자국 영토를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jus excludendi alios)"를 침해하였다.

UN 헌장 제2조 1항에서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권평등은 국제법상 하나의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42] 주권에는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국 영토를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jus excludendi alios)"가 포함되어 있다.[43] 오리온국은 병력을 대동하여 물자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페가수스국의 사전 동의 없이 국경을 침범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페가수스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 대신에 사전에 페가수스국과 협의를 하는 등 평화적이고 공식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했을 것이다.

---

40)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ement* (*Separate Opinion Judge Singh*), *I.C.J. Report 1986*, p.153;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Separate Opinion Judge Elaraby*), *I.C.J. Reports 2004*, p.254;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II*, p.247.

41) Bruno Simma 외 (ed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vol.I*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art.2(4), para.37.

42) UN 헌장 제2조.

43) 안토니오 카세스 저, 강병근·이재완 譯, 『국제법』, 제3판, (서울: 삼우사, 2014), 65쪽.

(2) 오리온국은 군대가 페가수스국의 공권력을 무력화함으로써 페가수스국의 "영토의 거주민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침해하였다.[44]

페가수스국은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거주민을 위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45] 특히, 경찰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경찰력은 페가수스국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오리온국의 병력은 국경을 위법하게 침범하고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함에 따라,[46] 페가수스국의 공권력을 무력화하여 페가수스국 경찰로 하여금 "①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② 객관적인 법질서, ③ 국가의 존속과 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와 행사"[47]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오리온국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다.

긴급피난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가 "해당 국가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 필수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48] 오리온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다.

(1)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리온국의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한 제3국으로의 물자 수송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ICJ는 Gabch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긴급피난을 원용하고자 하는 행위 시에 실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49] 물자수송을 하지 못하여 오리온국의 국가적 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구성한다는 것은 오리온국의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위험이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유일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오리온국의 행위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고 본질적 이익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수단이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유일한 수단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으며 문제의 행위가 불가피한 수단이었어야 한다. 즉, 다른 가용한 수단이 있는 경우 그것이 보다 부담되고 곤란하더라도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다. 오리온국은 사전에 페가수스국에 자국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하여 통과권을 요청할 수 있었고, 양국 모두 UN 회원국이 때문에 UN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설령 일시적인 물자 수송이 필요했을지라도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리온국은 자국 내에서만 관계 당사국 회의를 소집하고 논의하였을 뿐 다른 대안들을 시도한 바가 없다. 따라서 군대호송을 통해 페가수스국으로 진입한 것은 긴급피난의 요건인 유일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오리온국은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로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으며 배상 책임을 진다.

---

44) *Ibid*, 65쪽.
45) *R. Lansing*, *The Peace Negotiations-A Personal Account* (*Boston and N.Y.:houghton Mifflin Co.*, *1921*), pp.102-103.
46)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para.21.
47) 서정범,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2008.5), 331-352쪽.
48) 안토니오 카세스 저, 강병근·이재완 譯, 『국제법』, 제3판, (서울: 삼우사, 2014), 319쪽.
49)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ement*, *I.C.J. Reports 1997*, para.54.

VII. 결론 및 청구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페가수스국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1. 첫째, 오리온국이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
2. 둘째,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적법하다.
3. 셋째,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넷째,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었다.
5. 다섯째,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6. 여섯째, 오리온국은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그 과정에서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것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일방변론서

김다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소연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조훈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황은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016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간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및 통과권 관련 일련의 사태에 연관된 사건

(오리온 / 페가수스)

오리온국 변론서
MEMORIAL OF ORION

내용 목차

판례 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의 요약

사실 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I.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에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오리온국의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의 위반이 아니다.

1.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근거한 조약 해석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의 해석
(2)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근거한 에니프협정 해석
(3) 소결

2.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의 발생

(1)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적용 여부
(2) 소결

II.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

1. 에니프협정 제4조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에 대한 불합치

2. 조약의 운용정지로서 잠정조치의 유효성

(1) 조약의 운용정지
(2) 운용정지의 절차상 요건
(3) 소결

3. 결론

III.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페가수스국 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책임 원용 요건의 충족

(1) 국가책임의 요건
(2) 국가귀속 요건의 성립
(3) 국제의무 위반 요건의 성립
가. 국제의무 위반의 의미
나.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의 고려
다. 국가책임 원용 가능 국가
라. 사안의 검토

2. 페가수스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외교보호의 행사

(1) 외교보호의 행사
(2) 청구국적 원칙의 적용
(3) 국내적 구제수단 완료 원칙의 미적용

3. 결론

IV.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지 않았다.

1. VCLT 제60조에 의거한 에니프협정 종료 요건의 불성립

(1) VCLT 제60조 2항 a호의 규정
(2) 조약의 실질적 위반의 불성립
(3) 소결

2. VCLT 제67조에 의거한 에니프협정 종료 절차요건의 불성립

(1) VCLT 제65조의 규정
(2) 소결

3. 결론

V.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 페가수스국 기업 행위의 페가수스국 귀속

(1)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8조의 해석

(2) 국가책임 귀속을 위한 국가의 지시에 관한 판결
(3) 국가책임 귀속을 위한 국가의 지도 또는 통제 수준에 관한 판결
(4) 소결

2. WTO법 위반에 따른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1) WTO법상 GATT 제11조 1항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 위반
(2)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의 불성립
가.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나. GATT 제21조 원용요건
(3) 소결

3. 결론

VI.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데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오리온국의 국제의무위반 불성립

(1) 에니프협정의 존속과 협약 상의 권리
(2) 에니프협정상 명시된 권리와 이의 해석
가. 조약상 권리의 부여 대상
나. 국가 정규군의 국적
다. 사안의 검토

2.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성립

(1) 국제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중 긴급피난
(2) 긴급피난의 결과에 대한 보상문제

3. 결론

V. 결론 및 해결방안

판례 색인 (Index of Authorities)

■ 조약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an Francisco, 26 June 1945, in force 24 October 1945); p. 15.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eneva, 30 October 1947, in force 14 April 1967); pp. 20-22.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Geneva, 8 June 1977, in force 7 December 1978); p. 23.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Vienna, 18 April 1961, in force 27 January 1971); p. 12.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ies (Vienna, 23 May 1969, in force 21 January 1980); pp. 11, 13-14, 18-19, 24-25.

■ 사법판결 및 권고적 의견

Ahmadou Sadio Diallo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reliminary Objections, Judgement, I.C.J. Reports 2007*, p. 582; p. 16.
D. Earnshaw and Others (Great Britain) v. United States (Zafiro case), 30 November 1925,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VI, pp. 160-165; p. 20.
Difference Relating to Immunity from Legal Process of a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9, p. 62; p. 15.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 / 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p. 7; pp. 18, 24.
Interhandel Case, *Judgement, I.C.J. Reports 1959*, p. 6; p. 17.
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Advisory Opinion,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Series B. B04, 1923; p. 17.
Prosecutor v. Dusko Tadic, ICTY Appeals Chamber, Judgment of 15 July 1999, IT-94-1-A; pp. 20-21.

■ 자료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6*, vol. II; pp. 16-17.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p. 15-17, 19, 20-22, 24-25.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44 (40).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on 13 December 1985; p. 15.
Summary Record to the Twenty-Second Meeting,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CP.3/SR.22; p. 22.
World Trade Organization, “Guide to GATT 1947/2261994, Analytical Index”, (1995), Part II Article XXI ; accessed on 1 August 2016,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gatt_ai_e/art21_e.pdf; p. 21.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 II; pp. 11, 14.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0, vol. I; p. 16.

■ 저서

김대순,『국제법론』, 제18판 (서울: 삼영사, 2015); pp. 16-17, 24.
정인섭,『신 국제법강의』, 제16판 (서울: 박영사, 2016); p. 24.
한국국제경제법학회,『신국제경제법』, (서울: 박영사, 2013); p. 22.

■ 편집된 책

H. Krieger, "Article 65. Procedure to be followed with respect to invalidity, termination, withdrawal from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in O. Dorr and K. Schmalenbach (ed.),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Berlin: Springer, 2012), pp. 1131-1150; p. 14.

O. Dorr, "Article 31.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in O. Dorr and K. Schmalenbach (ed.),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Berlin: Springer, 2012), pp. 521-570; pp. 12, 14.

■ 논문

김석현,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의 의의와 그 평가",『국제법학회논총』제56권 제1호 (2011), 11-62쪽; p. 11.

Alexander Kees,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Private Actors",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11); p. 19.

Ian Cameron, "Treaties, Suspensio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7); p. 13.

James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6); p. 14.

Jan Klabbers, "Treaties, Object and Purpos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6); p. 12.

Riyaz Dattu and John Boscariol, "GATT Article XXI, Helms-Burton and the Continuing Abus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Canadian Business Law Journal* vol. 28, 1997, pp. 198-209.

관할권 진술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은 2016년 4월 15일자로 체결한 특별협정(*compromis*)에 의거하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재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특별협정에 의한 재판소에 대한 사건의 제기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40조 1항을 만족한다. 그러므로 ICJ는 동 규정 제36조 1항에 따라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의 사건에 관할권을 가진다.

제기된 문제의 요약

쟁점	시점	관련 국가행위
1) 오리온국의 에니프협정 제3조 위반 여부	1970. 8. 31.	오리온국 VCDR 발효
	1973. 5. 30.	페가수스국 VCDR 발효
	1975. 3. 31.	콜룸바국 VCDR 발효
	2014. 9. 1.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룸바국에 에니프협정 발효
	2015. 4. 1.	오리온국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
2) 통과권 정지의 적법성 여부	1980. 7. 1.	오리온국 VCLT 발효
	1982. 5. 31.	페가수스국 VCLT 발효
	1983. 10. 30.	콜룸바국 VCLT 발효
	2015. 4. 1.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의 파이프라인 폐쇄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오리온국이 향유하는 통과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겠다고 통고
	2015. 5. 1.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 잠정적으로 정지
3) 시위 진압 과정에서 페가수스국의 국가책임 여부	2015	페가수스국 소재 오리온국 국민 페가수스국 수도 에니프에서 대규모 시위
	2015	페가수스 당국 시위 진압 과정 중 오리온국 국적 시위 참가자 수십명 상해 입음
4) VCLT 제60조에 근거한 에니프협정 종료 여부	2015. 8. 15.	페가수스국 오리온국에 서면으로 에니프협정 종료 통보
	2015. 9. 1.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에니프협정 종료 주장 무효 주장
5)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수출금지 조치에 의한 페가수스국의 국가책임 여부	2000년 이전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룸바국 WTO 가입
	2015	페가수스국 기업 페가수스국 관련 당국과 협의 후 오리온국에 대한 공산품 일체 수출 금지 조치 결의 및 실시
6) 오리온국의 페가수스국 통과 및 물자 수송 과정에서의 오리온국 국가책임 여부	2015. 10. 7.	오리온국 자국 병력 호송하에 페가수스국을 통과하여 페가수스국 경찰당국 제지 제압 후 물자 수송

사실 관계의 진술

1. 내륙국인 오리온국은 연안국인 페가수스국과 내륙국인 콜룸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해양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페가수스국, 콜룸바국과 체결한 에니프협정을 통하여 확보한 사실.

페가수스국은 콜룸바국과 양 국 사이에 오리온국을 통과하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설치를 희망하였고, 이에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으로부터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설치를 허가하면서 오리온국 국민과 물자의 육로 통과권(이하 통과권)을 부여받도록 하는 외교협상을 제안 받았다.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룸바국은 석유수

송 파이프라인 부설문제와 오리온국의 페가수스국 통과권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협정을 2014년 5월 1일에 서명하였고, 각각 2014년 6월 30일, 동년 8월 31일, 동년 7월 10일에 비준하여 동년 9월 1일에 발효하였다.

2. 콜룸바국에 소재한 오리온국 대사관이 콜룸바국 당국에 의해 봉쇄당하자 콜룸바국의 조치를 제재하기 위하여 콜룸바국으로부터 페가수스국으로 가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사실.

콜룸바국 소재 오리온국 대사관에서 콜룸바국 반체제 인사 아무르(Amur)를 2015년 2월 1일자로 비호하였다. 이에 대한 콜룸바국의 인도 요청을 오리온국이 거절하자, 콜룸바국은 동년 3월 1일 오리온국 대사관을 봉쇄하고 오리온국 대사관에의 일체의 출입을 금하였다. 콜룸바국의 조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본국은 동년 4월 1일 콜룸바국으로부터 페가수스국으로 가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를 정지한 것에 대한 반발로 페가수스국에 소재하던 오리온국 국민들의 시위를 행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동원된 페가수스 경찰의 진압과정 중에 오리온국 국적의 시위 참가자 수십명이 상해를 입은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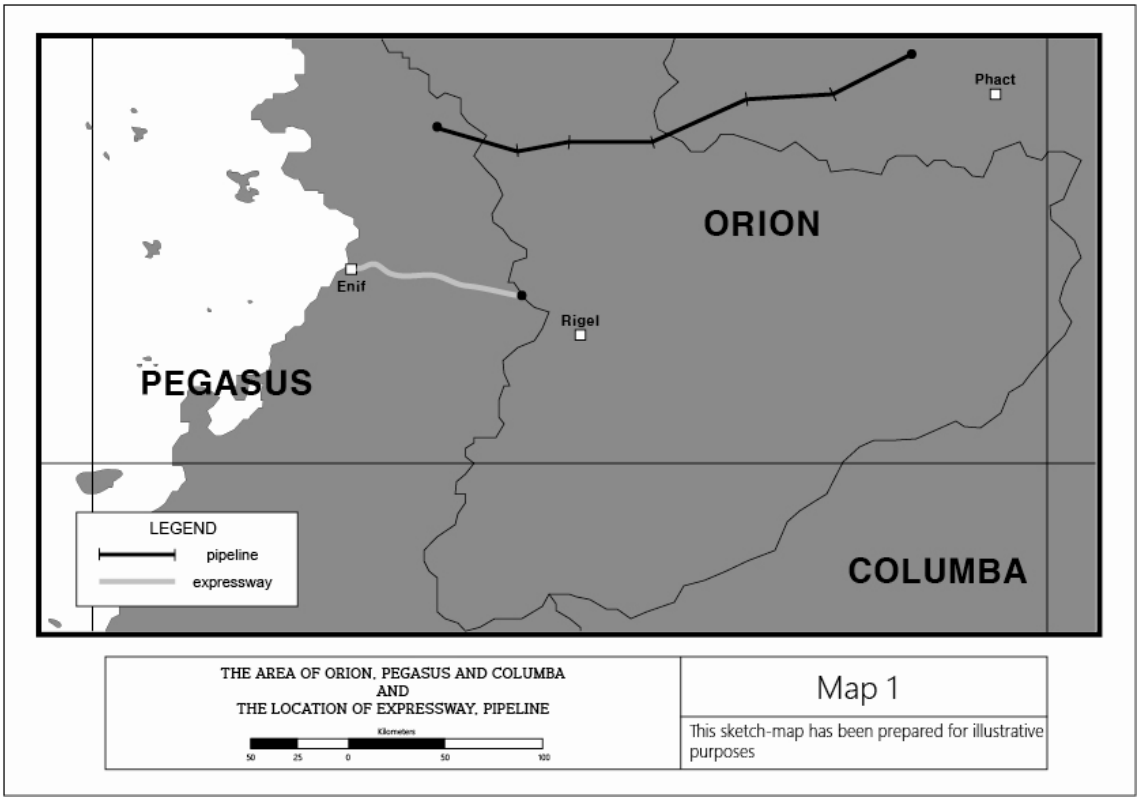
오리온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조치에 대하여 페가수스국은 2015년 5월 1일부로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공표하였다. 이에 페가수스국에 소재하던 오리온국 국민들은 페가수스국의 통과권 정지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시위를 실시하였다. 시위를 진행하던 중 일부 시위자들의 선동으로 시위가 과격해졌고, 페가수스국 당국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페가수스국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물대포와 최루가스 방출차량을 동원하였고, 이 과정 중에 오리온국 국적을 가진 시위 참가자 수십명이 상해를 입었다.

4. 페가수스국이 에니프협정 종료를 선언하고, 페가수스국의 기업들이 오리온국에 대한 공산품 수출 금지를 결의 및 실시하자 오리온국이 병력의 호송을 통해 페가수스국을 통과하여 수송하고,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사실.

오리온국은 2015년 8월 15일에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 선언을 서면으로 통보받았다. 또한 페가수스국 기업들은 오리온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오리온국에의 공산품 수출 금지를 결의 및 실시하였다. 이에 본국은 페가수스국 기업의 수출 금지 결의가 페가수스국 당국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항의를 한 바 있다. 오리온국은 국가적 사업수행과 관련한 물자를 긴급하게 수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물자를 항공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운송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이를 병력의 호송을 통하여 수송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10월 7일 오리온국은 1개 대대 병력이 호송하는 가운데 물자 소송을 시도,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하고 목적항구에 도달하였다.

5. 양 국 정부가 체결한 특별협정에 의해 ICJ에 재판을 요청한 사실.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양 국 정부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4월 15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ICJ에 재판을 요청하였다.



변론의 요약

I.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에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오리온국의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의 위반이 아니다.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ies; 이하 VCLT) 제31조 1항의 해석에 따르면 조약 내에서 명시적으로 그 대상과 목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조약 전문을 읽고 상식과 유연성을 가지고 신의성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파악한 에니프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따르면 에니프협정 제3조는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룸바국간에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할 시에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2. 콜룸바국의 대사관 봉쇄 및 출입금지조치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이하 VCDR) 제22조의 위반으로 이는 오리온국과 콜룸바국간의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의 발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리온국의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의 위반이 아니다.

II.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국제법상 위법이다.

1. 페가수스국의 통과권 정지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4조 상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에 불합치한다.
2. 페가수스국의 조치는 VCLT 제57조 (a) 의 조약 규정에 의거한 운용정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오리온국의 조치는 VCLT 제65조 상 절차상 요건의 면제사유인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위반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의 운용정지는 적법하지 않다.

III.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페가수스국의 행위는 외국인의 인권을 포함한 인권존중이라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지고 있는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 의무의 위반에 특별히 영향을 받은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의 국가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
2. 본 사안은 청구국적원칙의 충족과 국내적 구제수단 완료 원칙의 예외적 적용으로 외교보호 요건을 충족하므로,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에 대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IV.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지 않았다.

1. VCLT 제60조에 의거 오리온국의 행위는 2항 (a)호에 대한 조약에 대한 실질적인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료통보 사유는 (b) 및 (c)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VCLT 제65조에 명시된 조약의 종료에 관하여 취해져야 하는 절차는 페가수스국에 의하여 적법하게 준수되지 않았다.

V.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수출금지조치는 페가수스국의 지시를 받고, '전반적인 통제'를 받아 행해진 위법행위이므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8조에 의해 페가수스국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2. 페가수스국의 국가책임으로 인한 수출금지조치는 WTO법상 GATT 1994 제1조 및 제11조의 위반에 해당하며 제21조에 의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VI.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데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에니프협정이 종료되지 않음에 따라 오리온국에 부여된 통과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오리온국 군대는 오리온국 국민으로서 통과권을 향유할 수 있다.
2. 오리온국이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으로 인해 그 위법성이 조각되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론

I.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에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오리온국의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의 위반이 아니다.

1.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근거한 조약 해석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의 해석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근거한 조약 해석 시,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에는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이 발생하였다. VCLT 제31조 1항에 따르면,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이 조항은 첫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둘째, 당사자들이 사용한 용어의 통상적 의미(ordinary meanings)로부터 추정될 수 있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언적 접근(textual approach)을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용어의 통상적 의미는 추상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결정되어야 한다.[1] 즉, 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약의 문맥만이 아니라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근거한 해석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일반적으로는 조약의 전문(全文), 조항, 이름을 통해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약 내에서 명시적으로 그 대상과 목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조약 전문을 읽고 상식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신의성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3] 결과적으로 조약을 해석하기 위해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파악함에 있어 조항 개별 해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석해야함을 뜻한다.[4]

(2)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근거한 에니프협정 해석

따라서 에니프협정은'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근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에니프협정은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만이 아니라 콜룸바국까지 총 3개국을 포함한 다자협정으로서 그 목적은 콜룸바국에서 페가수스국에로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부설과 오리온국의 페가수스국 통과권 문제의 해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은 오리온국, 콜룸바국, 그리고 페가수스국의 영토에서 부설되었는데, 이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에 관한 조항의 대상에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만이 아니라 콜룸바국 또한 포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에니프협정 제3조는 에니프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3) 소결

에니프협정 제3조는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간에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할 시에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에니프협정이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에만 체결 및 발효된

---

1)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 II, p. 221, (12).
2) 김석현,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의 의의와 그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1호 (2011), 18쪽.
3) Jan Klabbers, "Treaties, Object and Purpos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6), para. 21.
4) O. Dorr, "Article 31.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in O. Dorr and K. Schmalenbach (ed.),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Berlin: Springer, 2012), p. 548.

양자협정이 아니라 콜룸바국까지 포함한 다자협정이라는 점, 그리고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부설이 3국 영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3조는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만이 아니라 콜룸바국도 포함한다. 즉 제3조는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룸바국간에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할 시에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위 해석이 3개국을 통과하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의 부설의 합의를 이끌어낸 에니프협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의 발생

(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적용 여부

VCDR은 오리온, 페가수스국, 콜룸바국 모두에 대하여 각각 1970년 8월 31일, 1973년 5월 30일, 1975년 3월 31일에 발효하였다. 그러므로 2015년 3월 1일자로 발생한 콜룸바국 주재 오리온국 대사관 봉쇄와 출입금지조치에 대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2) 소결

오리온국과 콜룸바국의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은 2015년 3월 1일 발생한 콜룸바국 주재 오리온국 대사관 봉쇄와 출입금지조치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러한 콜룸바국의 조치는 VCDR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관의 불가침권을 위반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오리온국과 콜룸바국간에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의 발생은 에니프협정 제3조에 의한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의 조건을 만족한다.

II.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

1. 에니프협정 제4조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에 대한 불합치

에니프협정 제4조는 "페가수스국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오리온국의 통과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육로를 통하여 콜룸바국과 직접 석유를 거래하며 전력생산과 기타 산업의 수요를 충당했었기에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대체하는 다른 석유 공급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의 폐쇄는 페가수스국의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페가수스국은 통과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를 에니프협정 제4조에 의거한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로 원용할 수 없다.

2. 조약의 운용정지로서 잠정조치의 유효성

(1) 조약의 운용정지

조약의 운용정지는 조약운용의 전체 또는 부분의 일시적인 중지를 의미하며[5] 그 효과는 조약의 당사국들이 운용정지 기간 동안에 그 조약(규정)을 수행할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VCLT 제57조에 따르면 조약의 운용은 (a)그 조약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 또는 (b)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에 언제든지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정지될 수 있다.

---

5) 이하 Ian Cameron, "Treaties, Suspensio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7) 참조.

(2) 운용정지의 절차상 요건

VCLT 제65조에 1항에 따르면 조약의 운용정지를 위한 사유를 원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그 주장을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는 제67조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 조약 제65조 2항에 의거,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고의 접수 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어느 당사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고를 행한 당사국은 해당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조약의 당사국에 의한 갑작스럽고 실질적인 조약의 위반은 상기한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포함된다.[6)]

(3) 소결

본 사안에서 페가수스국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과 VCLT상 조약의 운용을 정지할 수 있는 VCLT 제57조 (a)를 원용하여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페가수스국의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4조 상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VCLT 제57조 (a)의 조약 규정상의 운용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오리온국의 행위는 동조 2항의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갑작스럽고 실질적인 조약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조 동항에 명시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페가수스국은 제67조에 의거한 서면통고의 요건 또한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통고는 VCLT 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결론

페가수스국의 행위는 에니프협정 제4조 상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은 조약 규정상의 운용정지인 VCLT 제57조 (a)를 원용할 수 없다. 또한 페가수스국은 VCLT 제65조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오리온국의 행위가 VCLT 제65조 2항 상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의 통과권 정지조치는 적법하지 않다.

III.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 페가수스국 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책임 원용 요건의 충족

(1) 국가책임의 요건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가 2001년 제53차 회기에서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7)]은 국제관습법을 성안한 문서로 인정받고 있다.[8)] 동 초안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는 국제위법행위가 "(a)국제법 아래 국가에 의해 기인하며 (b)국가의 국제의무를 위반할 때" 성립된다고 명시하였다. 위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피해국은 가해국가의 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

---

6) 1차 출처: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 II., pp. 49-50, 2차 출처: H. Krieger, "Article 65. Procedure to be followed with respect to invalidity, termination, withdrawal from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in O. Dorr and K. Schmalenbach (ed.),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Berlin: Springer, 2012), p. 1137.

7)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8) James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6), para. 31.

(2) 국가귀속 요건의 성립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4조 1항은 "그 기관이 입법적, 집행적, 사법적 또는 다른 어떠한 기능을 행하든, 국가조직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든, 그리고 중앙정부 혹은 영토국가의 기관으로서 어떠한 성질을 띠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국가기관의 행위도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9년 ICJ는 이를 두고 "확립된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어떠한 국가기관의 행위도 해당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라 명시하였다.[9] 이상으로 판단해볼 때 페가수스국 경찰의 행위는 곧 페가수스국의 행위로 간주된다.

(3) 국제의무 위반 요건의 성립

가. 국제의무 위반의 의미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12조는 국제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국제의무 위반은 "의무의 성질이나 연원에 관계없이 국가의 행위가 그 국가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나.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의 고려

1986년 UN 총회는 결의 40/144인 "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10]을 채택하며 외국인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하였다. 동 선언 제5조 1항 (a)에서는 외국인이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 선언 제6조는 어떠한 외국인도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혹은 존엄을 훼손하는 대우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 선언 제5조 2항은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을 인정하면서, 방문국가의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공보건 또는 도덕이나 타인의 자유와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다. 국가책임 원용 가능 국가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42조는 국가책임을 원용할 수 있는 피해 국가를 규정하고 있는 바, (b)피해국가를 포함한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i)특별히 영향을 받은(specially affected) 국가는 위반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 또한 UN 헌장 제1조 3항은 UN의 목적이 "...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를 포함하고 있는 바, 동 헌장 제2조에 의하여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라. 사안의 검토

총회는 UN 헌장의 목적 실현을 원조하기 위하여 연구와 발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는 바, 1986년 총회

9) *Difference Relating to Immunity from Legal Process of a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9*, para. 67.

10)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44 (40).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on 13 December 1985.

결의로 채택한 "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은 UN헌장 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선언이라 볼 수 있다. 인권 보호의 의무가 대세적 의무의 성질을 가짐을 고려할 때[11], 국가는 외국인의 인권을 포함하여 대상의 차별 없이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오리온국 국민 시위대의 행위는 페가수스국의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를 위협할 만한 행위라 볼 수 없다. 더욱이 같은 이유로 오리온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국제의무인 인권존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은 외국인의 인권을 포함한 인권 존중이라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지고 있는 국제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에 특별히 영향을 받은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

2. 페가수스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외교보호의 행사

(1) 외교보호(diplomatic protection)의 행사

본 사건은 페가수스국 경찰의 진압행위로 외국인인 오리온국 국민이 상해를 입은 국가책임의 간접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교보호의 선행요건이 충족된다면 피해국가는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12] 외교보호는 한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외국인이 침해를 입은 경우 위법행위를 한 국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적국가의 권리를 의미한다.[13] 2006년 ILC 제58차 회기에서 채택한"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14] 제1조에 명시된 외교보호의 권리는 2007년 *Ahmadou Sadio Diallo* 사건에서 ICJ에 의하여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었다.[15]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44조는 청구의 허용성의 두 원칙을 규정하면서 청구국적의 원칙과 국내구제수단 완료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해국이 외교보호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2) 청구국적 원칙의 적용

외교보호에 관한 ILC 초안 제4조는 자연인의 국적국가를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출생, 혈통, 귀화, 국가승계 혹은 다른 방법으로 국제법과 부합하여 취득한 국적의 국가라고 설명한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는 1923년 *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국적은 국내관할권에 유보된 영역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16] 본 사안에서 오리온국 국민들의 국적은 오리온국 국적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적이었고, 상해를 입을 당시에도 오리온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보호 행사 상 청구국적의 원칙이 성립한다.

(3) 국내적 구제수단 완료 원칙의 미적용

외교보호에 관한 ILC 초안 제14조 1항은 국적국가는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모든 국내구제수단을 완료하기

---

11)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0, vol. I, p. 43, para. 60.
12) 김대순, 『국제법론』, 제18판 (서울: 삼영사, 2015). p. 761.
13) 上揭書, p. 821.
14)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6*, vol. II.
15) *Ahmadou Sadio Diallo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reliminary Objections, Judgement, I.C.J. Reports 2007*, para. 39.
16) *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Advisory Opinion,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Series B. B04, 1923*, p. 24.

전까지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9년 ICJ는 *Interhandel* 사건에서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이 확립된 국제관습법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17] 한편, 동 초안 제15조는 국내구제수단 완료 원칙의 예외적 상황들을 규정하면서 그들 중 하나로 (e)피고국가가 본 원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본 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이 원칙을 포기할 수 있는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으로 표현되거나 피고국가의 행동으로 추론될 수 있다.[18] 동 초안은 제15조에 대한 주석을 통해, 국내 구제수단 완료 원칙의 포기는 분쟁이 발생한 후 피고국가가 해당 분쟁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한다는 협정을 체결했다면, 그 협정에서 해당 원칙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하더라도 더 쉽게 암시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9]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은 본 사안을 포함한 6개 문제에 대하여 ICJ에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특별협정을 2015년 4월 15일에 체결한 바 있다. 이는 본 사안을 국제재판에 회부하여 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고자 한 의도의 실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페가수스국은 본 사안에 대한 국내적 구제수단 완료 원칙을 포기하고자 한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3. 결론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31조 2항은 손해(injury)는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페가수스국 경찰의 진압행위는 오리온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부상, 상해 등 물질적인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 만 아니라 인권, 인간의 존엄,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같은 정신적인 피해 역시 발생시켰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은 자국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오리온국 국민의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IV.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지 않았다.

1. VCLT 제60조에 의거한 에니프협정 종료 요건의 불성립

(1) VCLT 제60조 2항 a호의 규정

VCLT 제60조 2항은 다자조약의 경우 어느 당사국의 실질적인 위반이 있을 시 관계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조 2항(a)는 "다자조약의 어느 당사국에 의한 실질적 위반은 ... 다른 당사국이 전원일치의 협의에 의하여, (i)그 다른 당사국과 위반국간의 관계에서, 또는 (ii)모든 당사국간에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정지 시키거나 또는 그 조약을 종료시키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약의 실질적 위반(material breach)의 불성립

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ICJ는 조약 종료의 근거로 원용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조약 자체의 실질적인 위반이라고 보았다.[20] VCLT 제60조 3항에 의하면 실질적 위반이란 "(a)협약에 의하여 용인되지

17) *Interhandel Case*, *Judgement, 1959: I.C.J. Reports 1959*, p. 27.
18) 김대순, 前揭書, p. 775
19)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6*, vol. II, p. 85, (16).
20) *Gabcikovo-Nagymaros Project (Hungary / 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p. 65, para. 106.

아니하는 조약의 부인, 또는 (b)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조항의 위반"으로 규정된다.

오리온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조치는 당사국과 콜룸바국 간의 외교적 마찰로 인한 것이자 에니프협정 제3조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로서 VCLT 제60조 3항에 규정된 조약의 실질적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소결

VCLT에 의거할 때 어느 당사국의 실질적 위반이 있을 경우 다른 당사국은 이를 원용하여 조약의 시행정지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오리온국은 협약에 의하여 용인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부인한 적이 없고,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조항을 위반한 사실 또한 없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의 VCLT 60조를 원용한 에니프협정 종료는 적법하지 않다.

2. VCLT 제65조에 의거한 에니프협정 종료 절차요건의 불성립

(1) VCLT 제65조의 규정

VCLT 제65조는 조약의 부적법·종료·탈퇴 또는 시행정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 1항은 조약의 종료를 위한 사유를 원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그 주장을 통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2항은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통고의 접수 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느 당사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소결

페가수스국은 2015년 8월 15일에 에니프협정 종료를 오리온국에게 통보를 하였고, 오리온국은 2015년 9월 1일에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는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 선언 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VCLT 제65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부합되지 않는다. 더욱이 본 사안은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된 3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 조치의 실행은 VCLT 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조치이다.

3. 결론

오리온국은 조약 종료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실질적인 위반도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페가수스국은 VCLT 제60조를 원용한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본 사안은 동 조약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가수스국이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에니프협정 종료 선언은 적법하지 않으며, 동 선언에 의하여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지 않았다.

Ⅴ.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 페가수스국 기업 행위의 페가수스국 귀속

(1)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8조의 해석

사인의 행위는 본래 국가책임으로 귀속되지 않으나,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에 따르면 사인 또는 사인

집단과 국가 간에 '특별한 사실적 관계(special factual relationship)'이 있는 경우 사인의 행위가 국가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 이 중 동 초안 제8조는 "사인 또는 사인 집단이 행위를 함에 있어 사실상 국가의 명령이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그 사인 또는 사인 집단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한다.[21] 이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뜻하는데, 첫째는 국가의 지시(instruction) 하에 진행된 사인의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둘째는 좀 더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도(direction) 또는 통제(control) 하에 사인이 행동하는 상황을 의미한다.[22] 이때, 사인의 행위는 제8조의 지시, 지도, 통제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그 위법행위가 국가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23]

(2) 국가책임 귀속을 위한 국가의 지시에 관한 판결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8조의 첫 번째 경우인 사인의 위법행위가 국가의 지시에 의해 국가책임으로 귀속된 판결로는 *D. Earnshaw and Others (Great Britain) v. United States (Zafiro case)*[24]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마닐라만에 정착해있던 상선의 중국인 선원들의 약탈행위는 미국의 국가책임으로 귀속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 해군 제독 듀이의 지휘 하에 있던 해군 소위 피어슨과 4명의 해병이 상선 내에서 듀이 제독의 지시를 받아 상선을 지휘했던 것으로 밝혀져, 해당 상선이 미 해군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간주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듀이 제독이 피어슨 소위에게 해당 상선의 해로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듀이 제독의 지휘가 상선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지시였음이 증언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선언들의 위법행위가 미국의 국가책임으로 귀속된 바 있다.[25]

(3) 국가책임 귀속을 위한 국가의 지도 또는 통제 수준에 관한 판결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8조의 두 번째 경우인 사인의 행위로부터의 국가책임 귀속에 있어서 필요한 국가의 지도 또는 통제의 수준은 사건에 따라 '전반적인 통제(overall control)'만으로도 국가책임 귀속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의 *Tadic* 사건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는 국가책임 귀속을 위한 국가의 지시 또는 통제의 수준은 ICJ의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판결에서 제시한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26] 즉, 문제된 행위와 국가의 지시 또는 통제 수준의 관계와 사인의 위법행위의 국가책임 귀속 문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함을 뜻한다.[27] 또한, 조직되고 위계질서가 형성되어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에 비하여 조직 내의 규칙과 권위의 상징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보다 적은 수준의 통제로도 국가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28]

---

21) Alexander Kees,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Private Actors",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11), para. 14.
22)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 47, (1).
23) *Ibid.,* p. 48, (7).
24) *D. Earnshaw and Others (Great Britain) v. United States (Zafiro case),* 30 November 1925,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VI, pp. 160-165.
25) *Ibid.,* p. 161.
26) Prosecutor v. Dusko Tadic, ICTY Appeals Chamber, Judgment of 15 July 1999, IT-94-1-A, para. 116.
27)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 48, (7).
28) Prosecutor v. Dusko Tadic, ICTY Appeals Chamber, Judgment of 15 July 1999, IT-94-1-A, para. 120.

(4) 소결

페가수스 기업들의 수출금지조치는 당국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한 페가수스국의 지시와 '전반적인 통제'를 받은 위법행위이며 이는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8조에 의해 페가수스국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특히, 페가수스국 기업들은 개인에 비하여 조직되고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일반 개인에게 필요한 통제의 수준보다 적은 '전반적인 통제'로도 국가책임 귀속이 가능한 조직이다. 그러므로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항의 성명과 수출 금지 결의가 페가수스 당국과의 협의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양자 간의 협의의 목적이 원활한 사태 해결이었다는 점에서, 페가수스국은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수출금지 조치를 지시하고 '전반적인 통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WTO법 위반에 따른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1) WTO법상 GATT 제11조 1항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 위반

GATT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항은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WTO회원국은 상호간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쿼터 및 금수조치(zero quota)를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GATT 제11조의 위반은 GATT 제1조 1항 일반적 최혜국 대우 의무의 위반 또한 해당된다.

(2)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의 불성립

가.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GATT 제21조는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29]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b)항은 '체약국이 자국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b)항에 해당되는 조치는 (i)핵분열성물질 또는 이로부터 유출된 물질에 관한 조치, (ii)무기, 탄약 및 전쟁기재의 거래 및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하여지는 기타의 물품 및 원료의 거래에 관한 조치, (iii)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긴급 시에 취하는 조치다. 위 조치에는 GATT협정 상 의무의 적용이 배제된다. GATT 제21조는 제1조 1항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를 내포하며[30] 예외가 인정되면 제11조는 물론 제1조상의 의무가 면제된다.

나. GATT 제21조 원용요건

먼저 회원국의 조치가 제21조 (b)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결정은 그 국가의 단독 재량사항이며 '중대한 안보이익'이란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침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국의 이익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GATT 규범의 객체와 목적상 GATT 제21조의 자의적 원용을 막기 위해 동 조를 원용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31]

---

29) World Trade Organization, "Guide to GATT 1947/2261994, Analytical Index", (1995), Part II Article XXI; accessed on 1 August 2016,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gatt_ai_e/art21_e.pdf.

30) 1차 출처: *Summary Record to the Twenty-Second Meeting,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CP.3/SR.22, p. 9, 2차 출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서울: 박영사, 2013), p. 98.

첫 번째로 안보 위협 그 자체의 적실성 또는 안보 위협 자체에 대한 설득력 여부와 둘째로 취해지는 조치가 조치국이 주장하는 안보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비례성이 있는지, 즉 조치가 과중한 지를 판단해야 한다.

(3) 소결

페가수스국은 공산품이라는 '산품'의 수출을 금지하여 제11조를 위반하였고 뿐만 아니라 원산지에 따른 차별로 제1조에 따른 최혜국대우 의무 또한 위반하였다. 한편 GATT 제21조의 안보예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때 제Ⅱ문에서 다룬 것과 같이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에 대해 취한 조치는 제21조 (b)에 따른 중대한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아니다. 또한 페가수스국이 인식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비하여 공산품 수출 자체를 금지한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다. 이에 페가수스국이 인식하는 국가 안보 위협의 적실성과 조치가 비례하지 않으므로 페가수스국의 GATT 제21조의 원용은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오리온국의 파이프라인 폐쇄는 (b)(iii)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긴급시'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페가수스국은 GATT 제21조의 안보상의 예외를 원용하여 의무면제를 받을 수 없다.

3. 결론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공산품 수출금지 조치는 페가수스국의 전반적인 통제에 의해 취해진 것으로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8조에 의거 페가수스국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은 모두 WTO회원국이기 때문에 페가수스국의 수출금지 조치는 WTO법상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페가수스국의 수출금지 조치는 GATT 제1조 1항 일반적 최혜국 대우 위반 및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 위반이며 페가수스국은 GATT 제21조의 안보상의 예외를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은 자국의 수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VI.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데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오리온국의 국제의무위반 불성립

(1) 에니프협정의 존속과 협약 상의 권리

페가수스국에 의한 '오리온국 국민과 물자의 육로 통과권'은 에니프협정에서 일괄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오리온국의 국민과 물자들은 페가수스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통과할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다. 2015년 8월 15일,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에 통보한 에니프협정의 일방적 종료는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바,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지 않고 발효 중인 조약이다. 따라서 오리온국의 국민과 물자가 페가수스국을 통과할 권리 역시 소멸되지 않았다.

---

31) Riyaz Dattu and John Boscariol, "GATT Article XXI, Helms-Burton and the Continuing Abus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Canadian Business Law Journal* vol. 28, 1997, p. 206.

(2) 에니프협정 상 명시된 권리와 이의 해석

가. 조약상 권리의 부여 대상

에니프협정을 통하여 오리온국에게 부여된 권리는 '오리온국 국민과 물자의 육로 통과권'이다. 따라서 오리온국의 국적을 가진 자들과 오리온국의 관할권 아래 속하는 물자들은 페가수스국을 통과할 수 있다.

나. 국가 정규군의 국적

통상적으로 한 국가의 정규군대라 함은 자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들 중에서 징집되거나 모집된 병력을 의미한다. 이는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제1추가의정서[32]에서도 추론할 수 있는 바, 동 조약 제47조 2항은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통치되는 영토의 주민이 아닌 자"를 용병(mercenaries) 요건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용병이 아닌 정규군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거나 통치되는 영토의 주민인 자로 구성된 병력이라 판단해볼 수 있다.

다. 사안의 검토

본 협정에서 페가수스국 내로의 통과권이 인정되는 대상은 '오리온국의 국민과 물자'라고 한정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제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Rights of Passage* 사건에서도 ICJ는 포르투갈이 무장병력, 무장경찰, 무기 그리고 병기와 관련된 통과권을 1954년 해당 사건에서 갖지 않았다고 판결했을 뿐[33], 무장병력의 통과권 금지에 관한 포괄적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을 체결할 당시 관련 조항에 대한 단서조항이나 유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구속적 동의를 하였으며, 이는 VCLT 전문(前文)에 포함되어있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에니프협정 자체가 발효되고 있는 한 오리온국 국민인 오리온국 병력의 페가수스국 통과는 적법하다.

2.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성립

(1) 국제법상 위법성 조각(阻却)사유 중 긴급피난

위법성 조각사유는 행위 자체는 위법인 행위이지만, 이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법규 외부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유이다.[34]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면 국가책임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다.[35] 그 중 긴급피난은 국가의 본질적인(essential) 이익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의해 위협받고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인 상황에서 사용된다. ICJ는 1997년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 판결에서 긴급피난을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였다.[36]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의 해설서는 본질적인 이익이란 "국가와 국민의 특정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체 전체의 이익까지 포함한다.[37]"라고 설명하고

32)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Geneva, 8 June 1977, in force 7 December 1978).

33) *Case concerning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Merits), *Judgement of 12 April 1960: I.C.J. Reports 1960,* p. 46.

34) 김대순, 前揭書, p. 792.

35)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 제16판 (서울: 박영사, 2016), p. 406.

36)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 / Slovakia), Judgement, I.C.J. Reports 1997*, para. 51.

37)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 83, (15).

있다. 오리온국은 국가적 사업수행과 관련한 물자를 긴급하게 수송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페가수스국을 관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페가수스국 경찰당국의 제지는 오리온국의 본질적인 이익을 중대하고 급박하게 침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제지를 제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긴급피난의 원용으로 인하여 조각된다.

(2) 긴급피난의 결과에 대한 보상문제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27조 (b)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원용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물질적 손실(material loss)에 대한 보상(compensation)문제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동 초안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물질적 손실이 피해(damage)의 개념보다 좁은 의미를 내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38] 본 사안에서 오리온국 병력은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하였을 뿐, 페가수스국 경찰에 대한 상해 혹은 경찰 소유의 장비나 물품에 대한 손실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결론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 통보 및 선언은 무효하기에 오리온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오리온국 군인은 통과권을 향유한다. 또한 본국의 통과권 행사를 제지하는 페가수스국 경찰을 제압한 행위의 위법성은 긴급피난으로 인하여 조각된다. 더욱이 오리온국의 행위는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25조 2항이 제시하고 있는 긴급피난 원용 불가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고, 동조 1항 (b)에서처럼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압 행위가 페가수스국의 본질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온국의 긴급피난 원용은 적법하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에 대하여 배상 및 사죄를 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론 및 해결방안

위와 같은 사유로 본국은 존경하는 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1.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따른 해석에 의거할 때 오리온국이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에 부합한다는 선언.

2.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4조에 명시된 페가수스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선언.

38) *Ibid.*, p. 86, (4).

3. 페가수스국 경찰의 진압행위로 상해를 입은 오리온국 국민에 대해 오리온국의 외교보호 행사가 적법하다는 선언과, 본 사안에서 페가수스국의 국가책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상해를 입은 오리온국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4.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는 VCLT 제60조, 제67조와 부합하지 않아 종료되지 않았다는 선언.

5.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만으로도 국가책임 요건 상 국가귀속이 될 수 있다는 선언과 GATT 1994 제1조 및 제11조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고 금수조치 해제와 추후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판결.

6. 에니프협정이 종료되지 않음에 따라 오리온국 국민인 오리온국 군대는 페가수스국을 통과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행위는 오리온국의 본질적인 이익 수호를 위해 택할 수밖에 없던 유일한 조치로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해당되기에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

상기(上記) 내용을 정히 청구함.

특 집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타방변론서

김다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소연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조훈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황은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016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간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및 통과권 관련
일련의 사태에 연관된 사건

(오리온 / 페가수스)

페가수스국 변론서
MEMORIAL OF ORION

내용 목차

판례 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의 요약

사실 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I.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에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오리온국의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의 위반이다.

1.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근거한 조약 해석을 통한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의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 발생 여부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의 해석

(2) 소결

II.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적법하다.

1. 에니프협정 제4조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에 대한 합치

(1) 불간섭원칙 위반으로 인한 타국에 대한 주권 침해

(2)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간접적 간섭

(3) 소결

2. 조약의 운용정지로서 잠정조치의 유효성

(1) 조약의 운용정지

(2) 운용정지의 절차상 요건

(3) 특별히 긴급한 경우

(4) 소결

3. 결론

III.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국가책임 원용을 위한 제반 요건의 불성립

(1) 국가책임의 요건

(2) 국제의무 위반의 불성립

가. 국제의무 위반의 의미

나. 국가 주권의 실현으로서 집행관할권

다. 국가와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과의 관계

라. 집행관할권 면제사유 성립요건의 검토

마. 사안의 검토

(3) 국제의무 위반 요건의 성립

가. 국제의무 위반의 의미

나.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의 고려

다. 국가책임 원용 가능 국가

라. 사안의 검토

2. 페가수스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선행 원칙상의 흠결

(1) 외교보호의 행사

(2) 국내적 구제수단 완료의 원칙

(3) 사안의 검토

3. 결론

IV.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었다.

1. VCLT 제60조에 의거한 에니프협정 종료 요건의 성립 여부

(1) VCLT 제60조 2항에 의거한 종료 요건의 성립

(2) 조약의 실질적인 위반

(3) 소결

2. VCLT 제65조와 67조에서 명시된 조약 종료 절차의 준수

(1) VCLT 제4절 절차

(2) 소결

3. 결론

Ⅴ.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1. 국가책임 요건 상 국가귀속의 불성립

(1)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8조의 해석
(2) 국가책임 귀속을 위한 국가의 지시에 관한 판결
(3) 국가책임 귀속을 위한 국가의 지도 또는 통제 수준에 관한 판결
(4) 소결

2. 국가책임 요건 상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의 불성립

(1) GATT 제11조 1항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2)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의 성립
가.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나. GATT 제21조 원용요건
(3) 소결

3. 결론

Ⅵ.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데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국가책임 요건 상 국가귀속요건의 성립

2. 병력을 동원한 수송행위의 위법성

(1) 조약의 종료로 인한 통과권 소멸
(2) 주권평등의 원칙 위반
(3)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 원칙 위반

3. 경찰 제지 제압행위의 위법성

(1) 국가의 집행관할권
(2) 불간섭 원칙의 위반

4. 결론

Ⅴ. 결론 및 해결방안

판례 색인 (Index of Authorities)

■ 조약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an Francisco, 26 June 1945, in force 24 October 1945); pp. 23-24.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eneva, 30 October 1947, in force 14 April 1967); pp. 21-22.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Geneva, 8 June 1977, in force 7 December 1978); p. 23.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Vienna, 18 April 1961, in force 27 January 1971); p. 16.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ies (Vienna, 23 May 1969, in force 21 January 1980); pp. 11, 13-14, 17-19, 23, 25.

■ 사법판결 및 권고적 의견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2010*; p. 24.

D. Earnshaw and Others (Great Britain) v. United States (Zafiro case), 30 November 1925,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VI, pp. 160-165; p. 20.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 / 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p. 7; p. 18.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 14; pp. 12, 20.

The Case of the S.S. "Lotus", Judgment,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Series A. A10, 1927; pp. 15, 24.

■ 자료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p. 15-16, 19-21, 23.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6*, vol. II; p. 17.

Draft Declara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with commentaries in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49*; p. 15.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31 (XX). Declaration on the inadmissibility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state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on 21 December 1965; p. 1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25 (XXV).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States on 24 October 1970; pp. 12, 23-24.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281 (XXIX).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on 12 December 1974; p. 1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44 (40).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on 13 December 1985; p. 15.

Minutes of Meeting,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82, c/m/157; p. 22.

Summary Record to the Twenty-Second Meeting,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CP.3/SR.22; p. 22.

World Trade Organization, "Guide to GATT 1947/2261994, Analytical Index", (1995), Part Ⅱ Article ⅩⅩⅠ ; accessed on 1 August 2016,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gatt_ai_e/art21_e.pdf; p. 21.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 II; pp. 12-13.

■ 저서

김대순,『국제법론』, 제18판 (서울: 삼영사, 2015); pp. 12, 15-16, 24.

정인섭,『신 국제법강의』, 제16판 (서울: 박영사, 2016); p. 15.

한국국제경제법학회,『신국제경제법』, (서울: 박영사, 2013); p. 22.

John H. Currie, *Public International Law*, (Toronto : Irwin Law Inc., 2001); p. 15.

■ 편집된 책

H. Krieger, "Article 65. Procedure to be followed with respect to invalidity, termination, withdrawal from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in O. Dorr and K. Schmalenbach (ed.),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Berlin: Springer, 2012); pp. 13-14.

■ 논문

김석현,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의 의의와 그 평가",『국제법학회논총』제56권 제1호 (2011), 11-62쪽; p. 11.

Alexander Kees,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Private Actors",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11); p. 20.

Ian Cameron, "Treaties, Suspensio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7); p. 13.

James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6); p. 14.

Jan Klabbers, "Treaties, Object and Purpos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6); p. 12.

Rene E. Browne, "Revisiting "national security" in an interdependent world : The GATT Article XXI Defense After Helms-Burton", *Georgetown Law Journal,* vol. 86, no. 2, 1997; p. 22.

관할권 진술

페가수스국과 오리온국은 2016년 4월 15일자로 체결한 특별협정 (*compromis*)에 의거하여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재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특별협정에 의한 재판소에 대한 사건의 제기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40조 1항을 만족한다. 그러므로 ICJ는 동 규정 제36조 1항에 따라 페가수스국과 오리온국 간의 사건에 관할권을 가진다.

제기된 문제 요약

쟁점	시점	관련 국가행위
1) 오리온국의 에니프협정 제3조 위반 여부	2014. 9. 1.	페가수스국, 오리온국, 콜룸바국에 에니프협정 발효
	2015. 4. 1.	오리온국이 콜룸바국으로부터 페가수스국으로 가는 석유 수송 파이프라인 폐쇄
2) 통과권 정지의 적법성 여부	2015. 4. 1.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의 파이프라인 폐쇄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오리온국이 향유하는 통과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겠다고 통고
	2015. 5. 1.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 잠정적으로 정지
3) 시위 진압 과정에서 페가수스국의 국가책임 여부	1970. 8. 31.	오리온국 VCDR 발효
	1973. 5. 30.	페가수스국 VCDR 발효
	2015	페가수스국 소재 오리온국 국민 페가수스국 수도 에니프에서 대규모 시위
	2015	페가수스 당국 시위 진압 과정 중 오리온국 국적 시위 참가자 수십명 상해 입음
4) VCLT 제60조에 근거한 에니프협정 종료 여부	1980. 7. 1.	오리온국 VCLT 발효
	1982. 5. 31.	페가수스국 VCLT 발효
	1983. 10. 30.	콜룸바국 VCLT 발효
	2015. 8. 15.	페가수스국 오리온국에 서면으로 에니프협정 종료통보
	2015. 9. 1.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에니프협정 종료 주장 무효 주장
5)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수출금지 조치에 의한 페가수스국의 국가책임 여부	2000년 이전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룸바국 WTO 가입
	2015	페가수스국 기업 페가수스국 관련 당국과 협의 후 오리온국에 대한 공산품 일체 수출 금지 조치 결의 및 실시
6) 오리온국의 페가수스국 통과 및 물자 수송 과정에서의 오리온국 국가책임 여부	2015. 10. 7.	오리온국 자국 병력 호송하에 페가수스국을 통과하여 페가수스국 경찰당국 제지 제압 후 물자 수송

사실관계의 진술

1. 연안국인 페가수스국은 내륙국인 오리온국과 콜룸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3국 간 에니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국은 오리온국에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통해 콜룸바국산 석유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오리온국에게 본국으로의 통과권을 부여한 사실.

연안국인 페가수스국은 콜룸바국산 석유를 보다 저렴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양 국 사이에 오리온국을 통과하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설치를 희망하였고, 이에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으로부터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설치를 허가하면 오리온국 국민과 물자의 육로 통과권(이하 통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외교협상을 제안하였다. 3국은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부설문제와 통과권 문제를 타결하는 협정을 2014년 5월 1일 서명, 동년 9월 1일 일괄적으로 발효하였다.

2. 2015년 4월 1일 오리온국이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데 대하여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에 따라 오리온국이 폐쇄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오리온국이 향유하는 통과권을 폐쇄조치가 취해진 날로부터 30일 간 잠정적으로 정지하겠다고 즉시 통고한 사실.

오리온국이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함으로써 페가수스국은 전력생산 및 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이 폐쇄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에니프협정에 따라 통과권을 잠정적으로 부여하지 않겠다고 오리온국에 즉시 통고하였다. 페가수스국이 통고한 30일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 오리온국이 폐쇄조치를 해제하지 않자 페가수스국은 2015년 5월 1일부로 오리온국의 통과권 행사의 잠정적 정지를 공표하고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였다.

3. 페가수스국 소재 오리온국 국민들이 통과권 정지에 대한 반발로 페가수스국 수도 에니프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하는 중에 시위가 과격해짐에 따라 페가수스국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한 사실.

페가수스국이 통과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하자 페가수스국에 소재하던 오리온국 국민들이 페가수스국의 행정관청이 밀집한 수도 에니프의 피칸거리에서 항의 시위를 하던 중 일부 시위자들의 선동으로 페가수스국에서 통과권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내무행정부에 돌을 던지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를 감행한 바 있다. 본국은 시위를 진압하고자 물대포와 최루가스 방출 차량을 동원한 경찰력을 사용하였고, 진압 과정 중에 오리온국 국적을 가진 시위 참가자 수십 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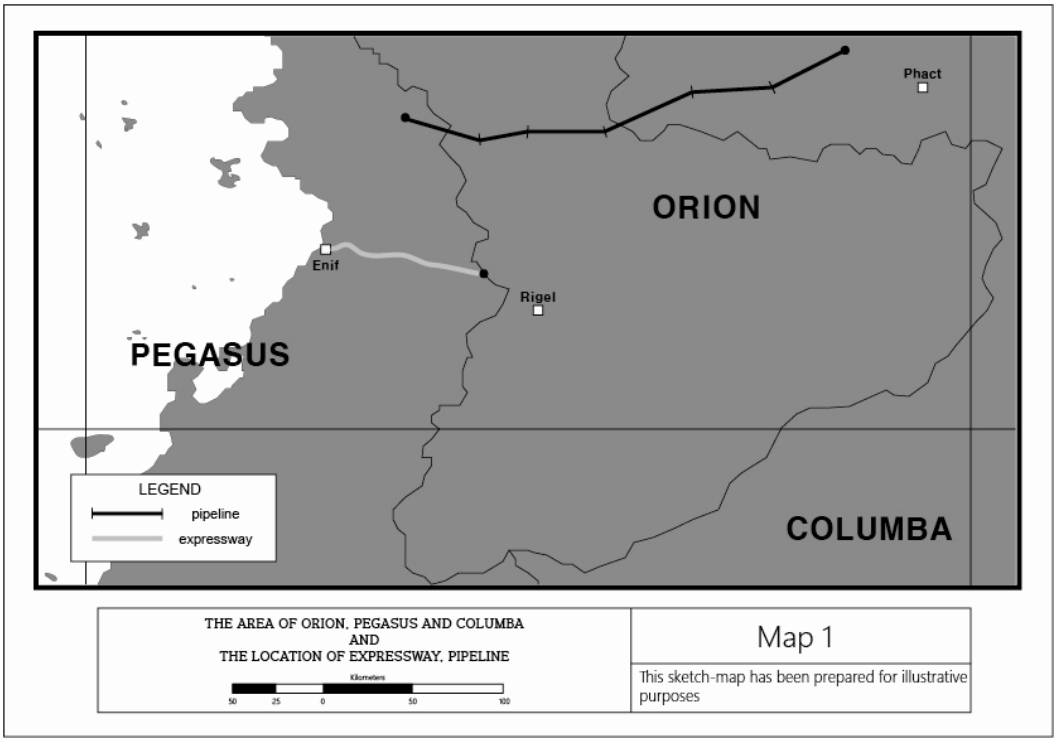
4. 2015년 8월 15일 페가수스국이 에니프협정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페가수스국의 기업들이 오리온국에 대한 공산품 수출 금지를 결의 및 실시하자 오리온국이 병력의 호송을 통해 본국을 통하여 물자를 수송하고, 그 통과를 강행하던 과정 중 본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사실.

페가수스국 내 시위가 격화되고 오리온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조치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자 페가수스국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ies; 이하 VCLT) 제60조에 근거하여 에니프협정 종료를 오리온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또한 페가수스국 기업들은

오리온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조치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오리온국에의 공산품 수출 금지를 결의 및 실시하였다. 오리온국은 국가적 사업수행과 관련한 물자를 긴급하게 수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물자를 항공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운송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이를 병력의 호송을 통하여 수송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10월 7일 오리온국은 1개 대대 병력이 호송하는 가운데 본국을 통과하여 물자 수송을 시도, 본국 경찰당국의 제지를 제압하고 목적항구에 도달한 바 있다.

5. 양국 정부가 체결한 특별협정에 의해 ICJ에 재판을 요청한 사실.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양국 정부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4월 15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ICJ에 재판을 요청하였다.



변론의 요약

I.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에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오리온국의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의 위반이다.

1. 당해 에니프협정 제3조는 규정상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에니프협정 제3조는 오리온국, 페가수

스국간의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할 시에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오리온국과 콜룸바국에 발생한 사건은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의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리온국의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의 위반이다.

II.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적법하다.

1. 오리온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조치는 페가수스국의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간접적 간섭을 구성하기 때문에 페가수스국의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4조상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에 합치한다.
2. 페가수스국의 잠정조치는 오리온국이 페가수스국의 안전보장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VCLT 제57조 (a) 의 조약 규정에 의거한 운용정지로 볼 수 있다. 또한 오리온국의 조치는 VCLT 제65조 상 절차상 요건의 면제사유인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위반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의 운용정지는 적법하다.

III.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페가수스국의 행위는 페가수스국에게 필수적인 조치로 페가수스국의 집행관할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이로 인한 페가수스국의 국제의무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국가책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오리온국 국민의 피해에 대해 오리온국 외교보호 행사 요건인 청구국적원칙은 성립하지만 국내적 구제수단 완료 원칙에 대한 흠결로 오리온국은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IV.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었다.

1. VCLT 제60조에 의거 오리온국의 행위는 2항 (a)호에 대한 조약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대한 의무의 위반이다.
2. VCLT 제65조 및 제67조에 명시된 조약의 종료에 관하여 취해져야 하는 절차는 페가수스국의 상황의 긴급성에 의하여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

V.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1.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수출금지조치는 페가수스국의 책임으로 귀속될 만한 지시나 지도 및 통제를 받은 행위가 아니므로 페가수스국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2.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수출금지조치는 WTO법상 GATT 1994 제21조의 안보예외 조항에 의한 예외에 해당된다.

VI.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데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에니프협정의 체결로 오리온국이 향유하게 된 페가수스국 통과권은 에니프협정의 종료로 무효화 되었으며 병력을 동원한 오리온국의 수송행위는 주권평등의 원칙 및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오리온국이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 행위는 국가의 집행관할권 행사를 무력화한 불간섭 원칙의 위반에 해당한다.

변론

I.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에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오리온국의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의 위반이다.

1.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근거한 조약 해석을 통한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의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 발생 여부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에 대한 해석

조약의 해석에 관한 VCLT 제31조 1항은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에 기반한 조약 해석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조약의 대상과 목적'뿐만 아니라 '조약문의 문맥'도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조약의 통상적 의미가 모호한 경우 조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의미하지, 조약 규정이 명확한 경우 규정과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약 규정이 명시적일 때, 규정의 명확한 의미와 충돌되는 해석을 할 경우, 이는 VCLT 제31조 1항의 조약 해석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1)]

또한 '조약의 대상과 목적'은 조약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바라보아야한다. 이는 조약 규정을 서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경우 하나의 조약 내에서 복수의 견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31조 1항에 포함시킨 것이며, 이러한 시각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의 *Competence of the ILO to Regulate Agricultural Labour* 권고적 의견에서도 강조되었다.[2)] 이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은 분리해서 바라보기 보다는 하나의 개념으로 바라봄이 적합하다는 시각과 일맥상통한다.[3)]

(2) 소결

에니프협정 제3조가 명시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의 발생 당사국은 명확히 페가수스국과 오리온국이다. 그러나 에니프협정 제3조의 통상적 의미(ordinary meanings)는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조항의 명확한 의미에 반하는 해석은 올바른 조약 해석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에니프협정의 전문(全文)을 분석하였을

1) 김석현,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의 의의와 그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1호 (2011), 21쪽. 11-62쪽.
2)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 II, p. 221, (12).
3) Jan Klabbers, "Treaties, Object and Purpos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6), paras. 7-8.

때, 콜룸바국과 오리온국간의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의 발생은 페가수스국과 오리온국간의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을 뜻하지 않는다.

II.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적법하다.

1. 에니프협정 제4조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 에 대한 합치

(1) 불간섭원칙 위반으로 인한 타국에 대한 주권 침해

UN총회 간섭금지선언[4]과 우호관계선언[5]등에 의하여 명문화되고 국가 간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6]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온 국제법상 기본원칙인 불간섭원칙[7]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정치, 경제적 또는 기타 유형의 조치를 사용, 타국을 겁박하여 타국의 주권행사를 간섭할 수 없다.

(2)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간접적 간섭

1986년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8]에서 니카라과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행위 의도를 바탕으로 미국의 자국에 대한 간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 ICJ는 이 주장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1985년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재인용,[10] 미국의 반군에 대한 지원의 의도는 최소한 니카라과의 정부 정책 또는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상당히 추구한 것으로써 반군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 훈련 등 일련의 간접적 지원은 니카라과 내정에 대한 간접적 간섭을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11]

(3) 소결

오리온국의 조치는 페가수스국 자국의 경제에 대한 조치로서 정치, 경제적 또는 기타 유형의 조치를 사용하여 타국을 겁박하여 주권행사를 간섭하는 타국의 주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 및 간섭이다. 따라서 오리온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조치는 페가수스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구성하며 페가수스국의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4조 상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에 의한 조치이다.

2. 조약의 운용정지로서 잠정조치의 유효성

(1) 조약의 운용정지

조약의 운용정지는 조약운용의 전체 또는 부분의 일시적인 중지를 의미하며,[12] 그 효과는 체약국들이

4)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31 (XX). Declaration on the inadmissibility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state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on 21 December 1965.
5)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25 (XXV).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States on 24 October 1970.
6)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281 (XXIX).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on 12 December 1974.
7) 김대순, 『국제법론』, 제18판 (서울: 삼영사, 2015), pp. 440-444.
8)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 14.
9) *Ibid.,* paras. 239-245.
10) *Ibid.,* para. 96.
11) *Ibid.,* para. 240.
12) 이하 Ian Cameron, "Treaties, Suspensio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7) 참조.

운용정지 기간 동안에 그 조약(규정)을 수행할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VCLT 제57조에 따르면 조약의 운용은 (a)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에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 조약의 운용을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2) 운용정지의 절차상 요건

VCLT 제65조 1항에 따르면 조약의 운용정지를 위한 사유를 원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그 주장을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동 조 2항에 따르면 통고의 접수 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어느 당사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고를 행한 당사국은 제67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그 당사국이 제의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3) 특별히 긴급한 경우(special urgency)

VCLT 제65조 2항은 동조 1항에 명시된 통고에 대하여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특별히 긴급한 경우는 관행상 조약의 당사국에 의한 갑작스럽고 실질적인 조약의 위반에 해당된다.[13] 또한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VCLT 제65조 2항에서 명시된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은 1달에서 2주까지도 단축될 수 있다.[14]

(4) 소결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 제4조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의 명문을 근거로 VCLT 제57조(a)를 원용하여 조약을 운용정지하였다. 또한 당해 조치를 시행하기 전 VCLT 제65조에 의거, 2015년 4월 1일부터 30일 동안 오리온국에게 시정기간을 부여하였다. 본 사안에서 오리온국은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의 폐쇄를 통하여 갑작스럽고 실질적으로 조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VCLT 제65조 2항에 따른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조치 및 통고의 유예기간은 3개월보다 짧을 수 있다. 반면 오리온국은 30일의 유예기간 동안 페가수스국이 요구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가수스국은 VCLT 제65조 2항에 의거, 조약의 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다.

3. 결론

오리온국의 페가수스국에 대한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는 페가수스국의 경제적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페가수스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따라서 에니프협정 제4조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에 의해 페가수스국은 VCLT 제57조 (a)를 원용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VCLT 제65조 2항의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VCLT 제65조의 운용정지의 절차상 요건의 예외를 구성한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의 조치는 적법하다.

---

13) 1차 출처: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 II, pp. 49-50, 2차 출처: H. Krieger, "Article 65. Procedure to be followed with respect to invalidity, termination, withdrawal from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in O. Dorr and K. Schmalenbach (ed.),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Berlin: Springer, 2012), p. 1137.

14) H. Krieger, *Ibid.,* p. 1146.

III.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국가책임 원용을 위한 제반 요건의 불성립

(1) 국가책임의 요건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가 2001년 제53차 회기에서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15] 은 국제관습법을 성안한 문서로 인정받고 있다.[16] 동 초안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초안 제2조는 국제위법행위는 "(a)국제법 아래 국가에 의해 기인하며 (b)국가의 국제의무를 위반할 때" 성립된다고 명시하였다. 동 조항은 국제위법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상기한 위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제의무위반의 불성립

가. 국제의무위반의 의미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12조에 따르면 국제의무 위반은 "의무의 성질이나 연원에 관계없이 국가의 행위가 그 국가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나. 국가 주권의 실현으로서 집행관할권

집행관할권은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17] 자국 영토 내에서 국가의 집행관할권 행사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18] 이는 *Lotus*호 사건에서 PCIJ가 "관할권은 확실히 영토적이며,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으로부터 기인한 허용적 규칙에 의하지 않는 한 관할권은 국가의 영토 밖에서 행사될 수 없다."[19] 라고 언급한 것에서 뒷받침된다.

다. 국가와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과의 관계

일반국제법규에 의거할 때, 외국인은 방문국의 국내법을 존중 의무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의무이다.[20] 이는 1986년 UN 총회 결의 40/144로 채택된 "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에서 조항 제4조를 통하여 "외국인은 그들이 거주하거나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국가의 국민들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뒷받침된다.[21] 동 선언 제5조 2항은 국가가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자국 법에 의하거나

---

15)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16) James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6), para. 31.

17)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 제16판 (서울: 박영사, 2016), p. 209.

18) 김대순, 前揭書, p. 512.

19) *The Case of the S.S. "Lotus", Judgment,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Series A. A10, 1927,* pp. 18-19.

20) 1차 출처: John H. Currie, *Public International Law*, (Toronto : Irwin Law Inc., 2001), p. 305, 2차 출처: 김대순, 前揭書, p. 525.

2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44 (40).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on 13 December 1985.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공보건, 공공도덕, 타인의 권리와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라. 집행관할권 면제사유 성립요건의 검토

1949년 ILC는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초안" 제2조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토와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면제에 종속된다."라고 언급하며, 그에 대한 해설로 면제는 외교사절, 국제기구의 직원 등에게 부과된다고 명시하였다.[22] 페가수스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이하 VCDR) 제31조에서 명시한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제31조, 제37조에 의거하여 외교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과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그들의 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게 부여할 수 있다.

마. 사안의 검토

페가수스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인 오리온국 국민들은 방문국의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UN 총회 결의 40/144에서 뒷받침 되듯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페가수스국 관청에 돌을 던지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행위는 방문국의 국내법을 준수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들의 행위가 페가수스국 공공의 안전과 질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본국의 제한과 진압은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사안에서 페가수스국 경찰 진압의 대상이 된 오리온국 국민들은 VCDR 제31조와 제37조 상 집행관할권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페가수스국의 집행관할권이 행사되지 않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페가수스국의 국제의무위반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한 국가책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페가수스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선행 원칙상의 흠결

(1) 외교보호(diplomatic protection)의 행사

본 사건은 페가수스국 경찰의 진압행위로 외국인인 오리온국 국민이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이른바 국가책임의 간접침해(indirect injury)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책임을 추궁함에 있어 외교보호의 선행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3] 2006년 제58차 회기에서 ILC가 채택한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24] 제1조에 의하면, 외교보호는 한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외국인이 침해를 입은 경우 위법행위를 한 국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적국가의 권리를 지칭한다.[25]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44조는 "청구의 허용성"의 두 원칙을 규정하면서 청구국적의 원칙과 국내구제수단 완료의 원칙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국가책임이 원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본 재판에서 오리온국은 상해를 입은 자국 국민에 대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하고자

22) 1차 출처: Draft Declara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with commentaries in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49,* p. 287, Article 2, 2차 출처: 김대순, 前揭書, p. 542.
23) 김대순, 前揭書, p. 761.
24)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6*, vol. II.
25) 김대순, 前揭書, p. 821.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청구국적의 원칙과 국내구제수단 완료의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 국내적 구제수단 완료의 원칙

외교보호에 관한 ILC 초안 제14조 1항은 국적국가는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모든 국내구제수단을 완료하기 전까지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9년 ICJ는 *Interhandel* 사건에서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이 확립된 국제관습법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26] 한편, 동 초안 제15조는 국내구제수단 완료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a)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이 없거나 합리적인 배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b)구제 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c)상해가 발생한 때에 상해를 입은 사람과 피고국가 사이에 적절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d)구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명백하게 방해받는 경우, (e)피고국가가 본 원칙을 포기하는 경우 에는 본 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3) 사안의 검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해볼 때, 오리온국 국민은 페가수스국 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오리온국은 그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만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페가수스국의 상황은 외교보호에 관한 ILC 초안 제1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교보호 예외 상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구제수단 완료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적절한 관련성에 대하여 동 초안 주석서는 "자발적으로 해당 국가에 실재하는 것(voluntary physical presence)"을 상기한 적절한 관련성의 예로 설명하였다.[27] 본 사안에서 상해를 입은 오리온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페가수스국에 소재하였으므로 위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상기한 두 원칙을 적용할 때, 먼저 오리온국 국민의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본안에서 청구국적의 원칙상 흠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구제수단 완료의 원칙에 의거, 오리온국이 외교보호를 행사하기 전에 상해를 입은 오리온국 국민들은 페가수스국 내에서 모든 구제수단을 완료하여야 한다. 하지만 오리온국 국민들이 페가수스국 내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구제수단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없고, 본 상황은 국내구제수단 완료의 원칙의 예외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상해를 입은 오리온국 국민들의 국적국가인 오리온국은 제반 원칙 상 흠결로 인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

IV.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었다.

1. VCLT 제60조에 의거한 조약 종료 요건의 성립 여부

(1) VCLT 제60조 2항에 의거한 종료 요건의 성립

VCLT 제60조 2항은 다자조약의 경우 어느 당사국의 실질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관계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조 2항(a)는 "다자조약의 어느 당사국에 의한 실질적 위반은 ... 다른 당사국이 전원일치의 협의에 의하여, (i)그 다른 당사국과 위반국간의 관계에서, 또는 (ii)모든 당사국

26) *Interhandel Case*, *Judgement of March 21st, 1959: I.C.J. Reports 1959*, p. 27.
27) *Ibid.*, p. 48, (8).

간에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정지 시키거나 또는 그 조약을 종료시키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약의 실질적 위반 (material breach)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ICJ는 조약 종료의 근거로 원용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조약 자체의 실질적 위반이라 보았다.[28] VCLT 제60조 3항에 의하면 실질적인 위반이란 "(a)협약에 의하여 용인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부인, 또는 (b)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조항의 위반"으로 규정된다.

(3) 소결

에니프협정 제3조는 오리온국이 페가수스국과의 관계에 있어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의 운용에 관한 조항으로 협정의 '필수적인'조항에 해당된다. 하지만 페가수스국과 오리온국 사이에는 동 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오리온국의 조치는 에니프협정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의 협정 종료는 VCLT 60조 2항 a호 (i)에 의거, 적법한 행위이다.

2. VCLT 제65조와 67조에서 명시된 조약 종료 절차의 준수

(1) VCLT 제4절 절차

VCLT 제4절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65조 1항은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조약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또는 그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를 원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그 주장을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2항은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고접수 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느 당사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통고를 한 당사국은 타방당사국들에게 전달되는 문서를 통하여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를 선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67조 1항은 "제65조 1항에 따라 규정된 통고는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소결

페가수스국은 VCLT 제60조를 근거로 에니프협정의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동 협약 제65조와 제67조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과의 관계에 있어 에니프협정을 종료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15일에 오리온국에게 VCLT 제65조에 의거한 조약 종료를 통고하였으며, 이 통고는 VCLT 제67조 1항에 의거한 서면형식의 통고였다. 또한 본 사안에서 오리온국은 에니프협정의 갑작스럽고 실질적인 위반을 행한 바, 이는 VCLT 제65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 통고와 그 조치의 실행은 VCLT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조치였다.

---

28)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 / 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p. 65, para. 106.

3. 결론

에니프협정의 대상과 목적은 오리온국을 관통하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의 정상적인 운용 보장과 페가수스국을 통과하는 통과권의 부여이다. 그러나 오리온국은 에니프협정에 의해 허용된 폐쇄조치가 아닌 조치를 취한 바, 이는 에니프협정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조항의 위반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은 VCLT 제60조에 의거, 오리온국과의 관계에 있어 에니프협정을 종료시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페가수스국이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에니프협정 종료 통고는 상기된 VCLT 제60조에서 보장된 권리의 실현이자, 동 협약 제65조와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통고이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이 행한 에니프협정 종료 통고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었다.

Ⅴ.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1. 국가책임 요건 상 국가귀속의 불성립

(1)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8조 해석

사인의 행위는 본래 국가책임으로 귀속되지 않으나,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에 따르면 사인 또는 사인 집단과 국가 간에 '특별한 사실적 관계(special factual relationship)'이 있는 경우 사인의 행위가 국가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 동 초안 제8조는 "사인 또는 사인 집단이 행위를 함에 있어 사실상 국가의 명령이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그 사인 또는 사인 집단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한다.[29] 이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뜻하는데, 첫째는 국가의 지시(instruction) 하에 진행된 사인의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둘째는 좀 더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도(direction) 또는 통제(control) 하에 사인이 행동하는 상황을 의미한다.[30] 이때, 사인의 행위는 제8조의 지시, 지도, 통제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그 위법행위가 국가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31]

(2) 국가책임 귀속을 위한 국가의 지시에 관한 판결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8조의 첫 번째 경우인 사인의 위법행위가 국가의 지시에 의해 국가책임으로 귀속된 판결로는 *D. Earnshaw and Others (Great Britain) v. United States (Zafiro case)*[32]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마닐라만에 정착해있던 상선의 중국인 선원들의 약탈행위는 미국의 국가책임으로 귀속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 해군 제독 듀이의 지휘 하에 있던 해군 소위 피어슨과 4명의 해병이 상선 내에서 듀이 제독의 지시를 받아 상선을 지휘했던 것으로 밝혀져, 해당 상선이 미 해군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듀이 제독이 피어슨 소위에게 해당 상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

29) Alexander Kees,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Private Actors",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11), para. 14.

30)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 47, (1).

31) *Ibid.,* p. 48, (7).

32) *D. Earnshaw and Others (Great Britain) v. United States (Zafiro case),* 30 November 1925,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VI, pp. 160-165.

이 피어슨 소위의 증언을 통해 밝혀져, 국가책임 귀속이 가능하였다.[33]

(3) 국가책임 귀속을 위한 국가의 지도 또는 통제 수준에 관한 판결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8조의 두 번째 경우인 사인의 위법행위가 국가의 지도 또는 통제 하에 국가책임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특정 작전을 지도 또는 통제하여 문제된 행위가 그 작전의 불가결한 부분이어야 한다.[34]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35]에서 ICJ는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의 위법행위가 미국의 국가책임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콘트라 반군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미국이 반군의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작전에 대한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ICJ는 미국의 반군에 대한 돈과 장비의 지원이 실효적 통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통제(overall control)'만이라고 간주했고, 이것만으로는 반군의 위법행위를 미국의 국가책임으로 귀속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밝혔다.

(4) 소결

수출금지 결의를 한 기업들은 페가수스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 또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8조에 의해 국가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 또한, 기업들의 수출금지조치가 페가수스국의 국가책임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가의 지도를 바탕으로 하는 '전반적인 통제'만이 아니라 해당 조치에 대한 페가수스국의 '실효적 통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페가수스국과 페가수스국 기업들 간의 협의는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행위에 대한 페가수스국의 '전반적인 통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페가수스국의 기업들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있었다고 입증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오리온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조치에 대한 협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행위를 페가수스국의 국가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2. 국가책임 요건 상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의 불성립

(1) GATT 제11조 1항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GATT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항은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WTO회원국은 상호간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쿼터 및 금수조치(zero quota)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GATT 제11조의 위반은 GATT 제1조 1항 일반적 최혜국 대우의 위반 에도 해당된다.

---

33) *Ibid.,* p. 161.

34)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 47, (3).

35)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aras. 115-116.

(2)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의 성립

가.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GATT 제21조는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36], 동조 (b)항은 '체약국이 자국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에 포함되는 조치로 (i)핵분열성물질 또는 이로부터 유출된 물질에 관한 조치, (ii)무기, 탄약 및 전쟁기재의 거래 및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하여지는 기타의 물품 및 원료의 거래에 관한 조치, (iii)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긴급 시에 취하는 조치를 규정하였다. 위 조치에는 GATT협정상의 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며, GATT 제21조가 제1조 1항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37] 제11조와 제1조상의 의무가 면제된다.

나. GATT 제21조 원용요건

회원국의 조치가 제21조 (b)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결정은 그 국가의 단독 재량사항이며 중대한 안보이익이란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침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국의 이익을 의미한다. 즉 무엇이 자국에 중대한 안보이익인가는 WTO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 조치를 발동하는 국가는 사전에 통보와 조치의 정당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WTO 또는 그 회원국들로부터 사전승인이나 추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38] 1982년 포클랜드 전쟁관련 아르헨티나 제품에 대한 무기한 수입금지조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점이 인정된 바 있다.[39] 또 1996년 Helms-Burton Act를 둘러싸고 발생한 EU와 미국 간의 WTO 통상분쟁 해결 사례에서도 미국은 패널이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들어 당해 사건에 대한 패널 설치를 거부하였다.[40] 한편 제21조 (b)의 세부조항 또한 WTO 회원국이 무역제한조치를 취하기 전에 물리적 침입 또는 무력공격과 같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WTO회원국은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이 실재적 위험은 물론 잠재적 위험에 의해 위협받을 때에도 제21조 (b)를 원용할 수 있다.

(3) 소결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에 대해 취한 조치는 제21조 (b)에 따른 중대한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이 중대한 안보이익은 상기 제II문에서 검토하였듯이 페가수스국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WTO법상 GATT 제21조의 안보예외 조항에 의해 정당한 예외를 구성하며 GATT 제1조와 제11조 준수 의무를 면제시킨다. GATT 제21조는 회원국이 안보상의 예외를 원용할 경우에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무엇이 자국에 중대한 안보이익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당 국가에 맡기고 있으며 이 조치는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일방적 조치이다. GATT 제21조의 원용은 당사국간의 합의가 없는 한 패널의 판단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

36) World Trade Organization, "Guide to GATT 1947/2261994, Analytical Index", (1995), Part II Article XXI ; accessed on 1 August 2016,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gatt_ai_e/art21_e.pdf.

37) 1차 출처: *Summary Record to the Twenty-Second Meeting,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CP.3/SR.22, p. 9, 2차 출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서울: 박영사, 2013), p. 98.

38) 한국국제경제법학회, 上揭書, p. 186.

39) *Minutes of Meeting,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82,* c/m/157, p. 10.

40) Rene E. Browne, "Revisiting "national security" in an interdependent world : The GATT Article XXI Defense After Helms-Burton", *Georgetown Law Journal,* vol. 86, no. 2, 1997, pp. 407-409.

3. 결론

수출금지 결의를 한 기업들은 페가수스국에 의해 지시를 받거나 실효적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 및 증거가 없다. 따라서 페가수스국 기업들의 행위를 페가수스국의 국가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또한 페가수스국의 WTO법상 의무는 GATT 제21조에 의거 면제된다. 따라서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조치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VI.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데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국가책임 요건 상 국가귀속요건의 성립

오리온국의 병력은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제1추가의정서[41] 제43조에서 "자기 부하의 지휘에 관하여 동국에 책임을 지는 지휘관 휘하에 있는 조직된 모든 무장병력, 집단 및 부대로 구성된다."로 규정된 군대에 해당된다. 본 사안에서 오리온국 병력은 오리온국 정부의 결정에 의거, 이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페가수스국 영역주권을 침해하였다. 일국의 군대는 국가 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제4조에 의거하여 오리온국 병력의 행위는 국가책임 요건 상 국가귀속요건을 충족시킨다.

2. 병력을 동원한 수송행위의 위법성

(1) 조약의 종료로 인한 통과권 소멸

페가수스국은 2015년 8월 15일, VCLT 제60조에 근거하여 에니프협정 종료를 선언하고 이를 오리온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이로써 에니프협정을 통하여 오리온국에 부여되었던 오리온국 국민과 물자의 페가수스국 통과권은 소멸되었다.

(2) 주권평등의 원칙 위반

UN 헌장 제2조 1항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을 UN의 기초라 규정하였다. 주권평등원칙은 UN 총회에서 채택된 "UN헌장에 따른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선언(이하 우호관계선언)[42]"에도 포함되었다. 우호관계선언은 주권평등 원칙에 각 국가가 주권의 고유한 권리들을 향유한다는 것과 다른 국가의 법인격을 존중할 의무를 지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오리온국과의 국경으로부터 에니프에 이르는 고속도로는 페가수스국의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기에 본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오리온국은 UN 회원국으로서 페가수스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을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우호관계선언의 원칙들이 ICJ에 의하여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43]을 바탕으로 판단해볼 때,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UN 헌장상 의무와 국제관습법을 위반했다.

---

41)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Geneva, 8 June 1977, in force 7 December 1978).

4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25 (XXV).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States on 24 October 1970.

43)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2010*, para. 80.

(3)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 원칙 위반

UN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명시하였다. 우호관계선언 역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ICJ에 의하여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었다.[44]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을 관통하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대의 호송을 선택한 바, 이는 무력을 동원하여 페가수스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페가수스국의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행위였다.

3. 경찰 제지 제압행위의 위법성

(1) 국가의 집행관할권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국가주권의 실현이며, *Lotus*호 사건에서 PCIJ가 언급했듯 이는 확실히 영토적이다. 따라서 페가수스국 경찰이 페가수스국 영토를 통과하는 오리온국 병력과 물자를 제지한 것은 페가수스국 집행관할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2) 불간섭 원칙의 위반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우호관계선언에 포함된 원칙이며 국제관계의 보편적 원칙들 중 하나로, 이는 주권평등원칙에 대한 논리적 귀결이다.[45] 본 사안은 페가수스국 영역을 통과하는 사람과 물자를 다루는 문제로 페가수스국의 국내문제에 해당된다. 이는 에니프협정의 종료로 오리온국의 통과권이 소멸된 이후 발생한 문제로, 조약의 내용 등과 같은 국제법상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영토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인원과 물자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는 국내문제에 대한 집행관할권의 행사이다. 그러나 오리온국 병력은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하며 페가수스국의 집행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이는 페가수스국의 주권과 집행관할권 행사를 무력화 한 불간섭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

4. 결론

에니프협정이 종료되었음에도 본국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대를 동원한 오리온국의 행위는 UN 헌장,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따라서 오리온국은 국가책임 성립요건을 충족하므로 국제법상 배상 및 사죄해야 한다.

Ⅴ. 결론 및 해결방안

위와 같은 사유로 본국은 존경하는 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1. 오리온국이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한 조치라는 선언.

---

44) *Ibid.*
45) 김대순, 前揭書, p. 440.

2. 오리온국이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페가수스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조치이므로,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4조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선언.

3. 오리온국 시위대를 진압한 행위는 페가수스국의 집행관할권 행사에 해당하고, 오리온국은 외교보호를 주장함에 있어 국내구제수단 완료의 원칙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보호 행사의 흠결이 존재하며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

4. 2015년 8월 15일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선언은 VCLT 60조에 의거한 적법한 종료이기 때문에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었다는 선언.

5.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만으로는 국가책임 요건 상 국가귀속이 될 수 없다는 선언과,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

6. 에니프협정이 종료됨에 따라 페가수스국의 영역을 침해한 오리온국의 병력과 물자의 통과는 오리온국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선언과, 주권평등원칙, 무력의 위협 및 사용 금지의 원칙, 불간섭의 원칙 등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에게 배상하고 사죄하여야 한다는 판결.

상기(上記) 내용을 정히 청구함.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종 심사 보고

이 성 덕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면서

제8회 국제법 모의재판 문제출제를 의뢰받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발생함 직하면서도 중요한 국제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구성해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데, 출제자는 그러한 사례를 만들어낼 만큼 풍부한 상상력이 없음을 며칠간의 고민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국제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가상 사례를(그것의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은 논외로 하고)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방점을 법적 쟁점 부분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상 논의될 수 있는 국제법 쟁점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출제자는 국제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와 관련한 쟁점을 추출하는 것이 국제법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택한 분야가 조약법과 국가책임법입니다.

모의재판 문제는 모두 6개의 청구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청구취지는 조약법과 국가책임법에서 논의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취지에 나타난 바를 문제의 사실관계를 활용하여 법적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내용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평가는 결국 모의재판 참가자인 판단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분석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자의 주관적인 주장에 대하여 재판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청구취지 별 쟁점

청구취지 1) “오리온국이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3조를 위반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조약의 해석과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약법조약상의 조약의 해석과 관련한 조항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변론서에 나타나 있으면 될 것입니다.

청구취지 2)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적법한가?”라는 질문은 에니프협정 제4조에 비추어 그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니프협정 제3조 위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통과권의 정지가 가능한 것인지? 협정상 교환된 양국 간의 권리 의무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청구취지 3)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국가가 사인에게 위법행

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부담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행위가 국제위법행위가 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국가 행위의 피해자가 사인인 경우, 사인의 본국이 가해국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의 의미 및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청구취지를 재판하여 달라고 특별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국내구제완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청구취지 4)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종료 통보를 통하여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조약의 일방당사국이 조약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조약법조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자조약의 종료 혹은 시행정지 사유와 시행정지 혹은 종료의 절차적인 방법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약법조약상의 조약 규정의 중대한 위반에 근거한 조약의 종료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논의 등을 검토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동시에 조약법조약에는 조약의 종료를 주장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절차 규정에 비추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종료가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청구취지 5)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국가책임법 중에서 행위의 국가귀속성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입니다. 물론 수출금지 조치가 국제의무를 위반한다는 판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경우 WTO/GATT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혹은 반대로 수출금지가 WTO/GATT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국가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사인 혹은 사기업이 한 행위가 국가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시 통제에 의한 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본 사안에서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기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본 사안은 WTO체제하에서 무역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것보다 WTO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취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인용 여부를 불문하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청구취지 6)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데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오리온국이 페가수스국 영역에서 자국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국가영역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국제위법행위의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사유가 존재할 수는 없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오리온국이 국가책임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 불가항력이나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있고, 그러한 원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검토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동시에 오리온국이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하는 경우에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의 병력에 의한 호송행위는 무력사용에 해당하여 강행규범 위반으로 평가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 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는 아닌지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맺으면서

대다수의 청구취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여지가 늘 개입하고 있습니다. 어느 당사자가 더 논리적 체계와 법리적 정밀성을 갖추고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있는지가 주된 평가의 대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모의재판 당일 재판관의 일원으로 모의재판경연장에서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참가자들은 상당한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어서 참가자들의 실력에 감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여되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이 되는 아주 기초적인 국제법 지식에 대한 질문을 받은 참가자들은 상당수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이론이나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하는 분야가 아닌 아주 초보적인 국제법 지식에 대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조약법과 국가책임법에 대하여 깊이 있게 준비한 참가자들이 국제법의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를 수 있는가 하는 의아한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알고 있지만, 경연에 참가한 학생들이 너무 긴장하여 사뭇 당황하여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염하 중에 많은 즐거움을 포기하고 연구에 매진한 모든 참가자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시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참가자도 있지만, 노력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느끼는 참가자도 있을 것입니다. 상의 수상만이 보상은 아닐 것입니다. 모의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익힌 지식,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쌓게 된 동료들과의 유대, 행사장에서의 발표를 통한 실전 경험 등이 모두 앞으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9월간 발효된 양자간 조약

I. 2016년 7-9월 신규 발효조약 목록

○ 2016년도 7-9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조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201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공무 및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정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

II. 조약별 개관

1.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04월 14일 브뤼셀에서 서명
- 발효일 : 2016년 07월 01일 (조약 제2296호)
- 관보게재일 : 2016년 06월 29일

● 주요내용

- 각 당사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대국 국민에게 12개월의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함
- 각 당사자의 참가자는 체류기간 동안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으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학습 또는 훈련에 참여할 수 없음
- 매년 최대 200명의 각 당사자의 국민들이 이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6월 02일 뉴욕에서 서명

- 발효일 : 2016년 07월 12일 (조약 제2301호)
- 관보게재일 : 2016년 07월 18일

● 주요내용
-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의 법적 능력, 소속 직원의 권리·의무 및 우리 정부의 기여 범위 등을 규정

3.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3년 02월 21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 2016년 07월 15일 (조약 제2299호)
- 관보게재일 : 2016년 07월 13일

● 주요내용
- 상품 관세의 단계적 인하 또는 철폐 등을 통해 양국간 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시킴.
- 상대 당사국의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 투자 및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
- 상호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대우를 부여

4.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07년 09월 09일 시드니에서 서명
- 발효일 : 2016년 07월 20일 (조약 제2302호)
- 관보게재일 : 2016년 07월 26일

● 주요내용
- 양국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 또는 물건의 취득, 형사사건에 있어서 정보·서류·증거물의 제공과 수색·압수 요청의 이행 등 상호 협력 제공
-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피요청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법공조를 거절 가능
-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경우 공조제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되, 거절 또는 연기를 하는 이유를 요청국에 통보
-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동의 없이는 공조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 조약의 규정 적용

5. 201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8월 01일 및 2016년 08월 03일 싱가포르에서 각서교환
- 발효일 : 2016년 08월 10일 (조약 제2303호)
- 관보게재일: 2016년 08월 18일

● 주요내용
- HS 기준 전환(HS 2007→HS 2012)에 따라 협정 부속서 4A, 4B 및 4C상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을 HS 2012 기준으로 재분류

6.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06월 10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 2016년 09월 08일 (조약 제2305호)
- 관보게재일 : 2016년 09월 19일

• **주요내용**
-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대국 납세 의무자의 계좌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함.
- 교환된 계좌 관련 정보는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비밀 유지 규정을 통해 보호됨.
-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금융계좌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 우리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 제1471조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 우리나라는 미 국세청의 30% 원천징수 유예조치 해당국으로 포함

7.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05월 18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 2016년 09월 12일 (조약 제2306호)
- 관보게재일 : 2016년 09월 22일

• **주요내용**
- 협정 대상 세목을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하고 인도는 소득세 및 소득부가세로 하여 양국 현행 세목에 부합하도록 개정
- 해운소득에 대한 소득원천지국 면세 비율을 현행 10%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개정
- 배당, 이자소득 및 사용료에 대한 소득원천지국(투자유치국) 제한세율* 인하

* 제한세율 :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2호)

- 양국간 금융정보 교환 규정 및 조세징수에 관한 협조 제공 규정 신설

8.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12월 30일 자그레브에서 서명
- 발효일 : 2016년 09월 15일 (조약 제2308호)
- 관보게재일 : 2016년 09월 26일

• **주요내용**
-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짐.
- 국제항공운항에 관여된 항공기에 대하여 자국 영역의 입국이나 출국, 또는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적용됨.
-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함.
-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함.

9.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공무 및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9월 21일 뉴욕에서 서명
- 발효일 : 2016년 09월 21일 (조약 제2310호)
- 관보게재일 : 2016년 09월 28일

• **주요내용**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 입국사증 없이 자국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국 영역에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하는 것을 허용
- 각 당사자는 기피인물이거나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여권 소지자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이나 체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 각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을 사유로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 가능

10.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07월 08일 홍콩에서 서명
- 발효일 : 2016년 09월 27일 (조약 제2307호)
- 관보게재일 : 2016년 09월 22일

• **주요내용**
-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홍콩특별행정구는 이윤세, 급여세 및 재산세로 함.
- 협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양도소득 등으로 하며, 대상 소득별로 거주지국 또는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기업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내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기업보다 불리한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 양측은 이 협정의 이행이나 조세 관련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

11.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3년 0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
- 발효일 : 2016년 09월 28일 (조약 제2309호)
- 관보게재일 : 2016년 09월 27일

• **주요내용**
- 양국은 상대국에 진출한 국민과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중복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함.
- 상대국 국민과 기업에게 자국민과 기업보다 불리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양국 간 조세 정보를 교환하여 탈세를 방지함.

III. 고시류 조약

1.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7월 13일 콜롬보에서 서명
- 발효일 : 2016년 07월 13일 (고시 제887호)
- 관보게재일 : 2016년 07월 21일

2016년도 3/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개관

I. 2016년도 3/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목록

○ 2016년도 3/4분기 대한민국 정부가 신규로 가입한 다자조약은 다음과 같다.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
-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II. 협약 개관

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발효(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06년 03월 27일 (싱가포르에서 채택)
- 발효일 : 2009년 03월 16일
- 기탁처 : WIPO 사무국

• 우리나라 관련사항
- 가입서 기탁일 : 2016년 05월 01일
- 발효일 : 2016년 07월 01일
- 관보게재일 : 2016년 06월 29일

• 주요내용
-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에 따라 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표시로 구성된 표장에 이 조약을 적용함.
- 체약당사자는 통보의 전송 수단 및 통보의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통보의 내용이 국제 표준서식에 부합하는 경우 적법한 통보로 인정함.
-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대하여 출원이나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에 관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 구제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구제조치를 허용함.
- 체약당사자의 법에서 사용권 기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규칙에 따라 사용권 기록, 사용권 기록에 대한 수정 또는 취소 신청서 및 근거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권을 기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용권의 대상인 표장 등록 및 보호의 유효성이나 사용권자의 특정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이 조약과 1994년의 상표법조약 모두의 당사자인 체약당사자들 간에는 이 조약만이 적용됨.

2.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 발효 (Cooperation Agreement On a Civi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n one part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other part)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06년 09월 09일 (헬싱키에서 서명)
- 발효일 : 2016년 07월 01일

- 기탁처 :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 **우리나라 관련사항**
- 발효일 : 2016년 07월 01일
- 관보게재일 : 2016년 06월 29일

• **주요내용**
- 이 협정은 한국과 유럽의 민간 위성항법시스템에서의 양 당사자 간 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임.
- 이 협정에 의한 협력 활동 분야는 전파 스펙트럼, 과학 연구 및 훈련, 산업 협력 등이며, 수출통제 및 비확산 규제 조치에 속하는 민감 기술 및 품목 등은 협력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을 조정·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의 공식적인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립함.
-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함.

3.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발효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3년 06월 27일 (마라케쉬에서 채택)
- 발효일 : 2016년 09월 30일
- 기탁처 : FAO 사무국

•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5년 10월 08일
- 발효일 : 2016년 09월 30일
- 관보게재일 : 2016년 09월 12일

• **주요내용**
- 체약당사자는 승인받은 실체가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수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두도록 함.
- 체약당사자는 승인받은 실체가 권리자의 승인 없이 수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다른 체약당사자의 승인받은 실체 또는 수혜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함.
- 체약당사자는 승인받은 실체 또는 수혜자가 권리자의 승인 없이 수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제한조치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김 승 민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법학박사)

I. 머리말

오늘날 인터넷은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제반에서 혁신과 창의를 부양하는 '소통'과 '교역'의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인터넷이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개방성 그 자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법규범은 부재하는 현실이다. 오히려 상당수의 국가들이 인터넷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기술과 법제도를 고도화(高度化)하면서 글로벌 인터넷의 분열과 지역화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인터넷에 대한 국가주권의 행사가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제인권의 관점에서 인터넷 제한조치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제한조치에 대한 국제인권 논의동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인터넷 제한조치를 규율함에 있어 현존하는 국제인권규범 접근방식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먼저 인터넷 제한조치의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터넷 제한조치와 관련된 국제인권 논의동향을 약술한다. 이어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ICCPR 제19조를 중심으로 국제인권규범을 통한 인터넷 제한조치의 규율가능성 및 한계를 논하고, 마지막으로 맺음말을 통하여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되는 함의와 소견을 정리한다.

II. 인터넷 제한조치 관련 국제인권 논의동향

가. 인터넷 제한조치의 유형과 주요사례

자유롭고 개방적인 글로벌 인터넷을 위협하는 인터넷 제한조치는 크게 '인터넷 검열'과 '데이터현지화'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 유형은 주로 인터넷 필터링 또는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및 인터넷 셧다운과 같은 조치를 통해서 구현된다. 이 가운데 '인터넷 필터링'(internet filtering)과 '접속차단'(site blocking)은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검색엔진과 같은 호스팅 서버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 및 주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1] 동 조치는 인터넷 제한조치의 표적이 된 콘텐츠와 서비스 그 자체에 영향력을 행하사기 보다

* 본고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인터넷 제한조치 규제와 WTO 법의 역할: 국가의 인터넷 검열 및 데이터현지화 조치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의 일부를 발췌하여 발전시킨 것입니다.

1) Google, "Enabling Trade in the Era of Information Technologies: Breaking Down Barriers to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Google* (2010), avaliable at http://googlepublicpolicy.blogspot.kr/2010/11/promoting-free-trade-for-internet.html (2016.12.01.방문) 참조.

는 조치대상에 대한 자국 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주로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자국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2] 이에 비하여 '게시물 삭제' 및 '인터넷 셧다운'(internet shutdown)은 통제의 대상이 된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 정보 등이 더 이상 인터넷상에 존립하지 못하도록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 또는 중단하거나 관련된 게시물과 내용을 삭제, 제거 또는 폐기하는 형태를 조치를 말한다. 앞서 설명한 필터링과 접속차단의 경우는 조치대상 서비스와 콘텐츠의 실존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와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등의 우회기술을 통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게시물 삭제' 및 '인터넷 셧다운'은 조치대상의 실존을 형해화(形骸化)하기 때문에 우회기술을 통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더욱 강력하고 종국적인 인터넷 제한수단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로 '데이터현지화'(data-localization)는 특정한 영토 내에 구축된 인터넷 설비 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한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만을 허용하는 인터넷 제한조치를 의미한다.[3] 동 조치는 주로 국내산 네트워크 설비의 구축을 강제하는 것에서부터 국내법인 또는 내국인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를 불법화하는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된다. 이에 더하여 데이터현지화 요건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성, 취득, 가공된 정보 및 데이터의 국외반출이 금지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된다.[4]

이상에서 설명한 인터넷 제한조치의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 검열은 주로 정치와 언론, 표현의 자유가 미약한 비민주적인 권위주의 국가에서 오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종파간의 정치적 갈등과 종교탄압이 존재하는 무슬림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경한 인터넷 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란의 경우는 선거 직후 '트위터', '구글' 등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차단되고 있으며,[5] 터키의 경우는 망인이 된 특정 정치인의 명예보호를 위하여 유투브 서비스가 2년 이상 금지된 적이 있다.[6] 그밖에 일당독재로 유명한 중국 역시 세계 최대의 방화벽 시스템인 '황금방패'(Golden Shield)를 구축하고 자국의 국제인터넷 '라우터'(router)를 통과하는 '패킷'(packets)중에서 당국이 금지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주제어를 전방위적으로 탐지하여 차단하고 있다.[7]

다음으로 데이터현지화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들 수 있다. 동 개정법에는 러시아인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러시아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서버에서만 저장 및 처리될 것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기

2) Cynthia Liu, "Internet Censorship as a Trade Barrier: A Look at the WTO Consistency of the Great Firewall in the Wake of the China-Google Dispute",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2, Issue 4 (2010), p. 1207.

3) Albright Stonebridge Group, "*Data Localization: A Challenge to Global Commerce and The Free Flow Information", Albright Stonebridge Group* (2015), avaliable at http://www.albrightstonebridge.com/files/ASG%20Data%20Localization%20Report%20-%20September%202015.pdf (2016.12.01.방문), p. 3.

4) Anupam Chander & Uyen P. Le, "Breaking the web: data localization vs. the global internet", *Emory Law Journal, Forthcoming; UC Davis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378 (2014) 참조.

5) Google, *supra* note 1, p. 7.

6) 오늘날의 터키공화국의 Founder로 불리는 Kemal Ataturk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유투브(YouTube)에 게재되자 당국은 사자의 명예에 관한 국내법의 위반을 근거로 전체 사이트를 2년 이상 셧다운(shutdown)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Simon Lacey, "Trade rules and their limits: internet restrictions as actionable trade barriers (Working Paper)" (May 2012),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2072854 (2016.12.01.방문), p. 13; Google, *supra* note 1, p. 6.

7) 이러한 중국의 방어벽 시스템은 중국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시장퇴출을 초래할 만큼 강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도 우리나라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카카오톡(Kakaotalk)을 포함하여 구글(Google), 유투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등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정상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의 인터넷 제한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pennet Initiative, Internet filtering in China (August 9, 2012), available at http://access.opennet.net/wp-content/uploads/2011/12/accesscontested-china.pdf (2016.12.01.방문), pp. 271, 274 and 282 참조.

존에는 자국 또는 제3국의 인터넷서버를 사용했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현재는 반드시 러시아 국적의 데이터 센터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러시아 영토 내에 독자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8] 이와 함께 특정한 유형의 정보만을 선별하여 국경간정보이동을 금지하는 다소 완화된 형태의 데이터현지화 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컨대 호주의 '개인통제전자건강기록법'은 전자화된 건강정보가운데 개인정보 및 식별가능정보의 국외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9] 뉴질랜드, 캐나다, 대만,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주로 건강, 금융, 지도 등과 같은 특정한 영역의 정보에 대해서 국경간정보이동을 금지하고 있다.[10]

나. 인터넷 제한조치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논의동향

불과 10년 전만 하여도 개인의 의사표현과 소통에 있어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역할은 모바일 핸드폰을 통한 메일전송이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등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광대역 무선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반한 문자·사진·음성의 실시간 통신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은 단순한 사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을 뛰어넘어 공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자신의 사상을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일상적이며 핵심적인 의사표현의 도구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여, 앞에서 설명한 인터넷 검열 혹은 데이터현지화 등을 통해 인터넷을 제한하는 것이 사상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11]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12]

부연하면 종래로 인터넷 제한조치에 관한 인권논의는 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자유권규약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인권위원회'로 표기)의 '일반논평 34'[13] 및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UN인권이사회(United Nation Human Rights Council)의 2009년도 결의[14]는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보호되었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인터넷 환경에서도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인권위원회 및 총회에 제출된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15]는 인터넷 검열과 데이터현지화 조치 등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주된 장애요소로 지목하고 의사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터넷 접근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명시적으로 공표하였다.[16]

8) Sergei Blagov, "Multinationals to meet Russia data localization rules", *Privacy & Data Security Law Resource Center*, September 8, 2015, available at http://www.bna.com/multinationals-meet-russia-n17179935650/(2016.12.01.방문);
Kimberly Gold and Vera Shaftan, "Russia's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delayed for Facebook, Google and Twitter", *Data Protection Report*, Norton Rose Fulbright Blog Network, September 7, 2015, available at http://www.dataprotectionreport.com/2015/09/russias-data-localization-requirements-delayed-for-facebook-google-and-twitter/(2016.12.01.방문) 참조.

9) Section 77.1 of the Personally Controlled Electronic Health Records Act 2012 (Act No. 63),

10) Albright Stonebridge Group, *supra* note 3, pp. 5-14.

11) Ben Wagner, et al., *Surveillance and Censorship: The Impact of Technologies on Human Rights* (Brussels: Policy Department, Directorate-General for External Policies of European Parliament, 2015), available at http://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html?reference=EXPO_STU(2015)549034 (2016.12.01.방문), p. 9

12) Itay Wand, "Coordinating Trade and Human Rights Policy in the Online Age: Freedom of Expression, Internet Services and the Case of China", *Paterso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3 (2013) 참조.

13)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34, Article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Doc. CCPR/C/GC/34 (2011).

14)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f the 12th sess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Doc. A/HRC/RES/12/6 (2009).

15)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U.N. Doc. A/HRC/17/27 (2011).

16) 특히 동 보고서는 부분별한 인터넷 필터링과 과도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보호 조치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2012년 7월에는 UN 인권이사회를 통하여 '인터넷상의 인권의 증진, 보호 및 향유에 관한 결의'[17]가 채택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기존의 오프라인상에서 보장되던 모든 국제인권이 온라인상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18] 그밖에 동 결의는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인터넷의 속성을 인정하였으며,[19] 인터넷 접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하였다.[20] 이상의 내용은 그동안 인터넷에 대한 인권담론이 주로 표현의 자유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인터넷이 다른 모든 인권의 행사 및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 공식화되고,[21] 무엇보다 인터넷의 국제성과 개방성을 인터넷 그 자체의 속성으로서 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동일한 내용들이 2014년 결의에서 재차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30일에 채택된 2016년 결의에서는 인터넷 접속의 제공 및 확대를 위해 포괄적인 인권기반 접근방식 적용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22] 이에 더하여 인터넷상의 정보접근 및 정보의 배포를 의도적으로 방해 또는 교란하는 조치가 국제인권법 위반의 차원에서 정죄되었으며, 국가들이 그러한 인터넷 제한조치를 자제 또는 중단할 것이 촉구되었다.[23]

다. 인터넷 제한조치에 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련 논의동향

앞에서는 인터넷의 의사소통 및 표현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여 자유권적 인권에 대한 논의동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인터넷은 점차 통신수단의 의미를 넘어서 물 또는 전기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부연하면 인류가 생산, 기록, 저장, 교환하는 정보의 대부분이 디지털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소통되기 시작하면서,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 취득, 교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선택, 노동, 건강, 복지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24]

이러한 배경에서 앞서 언급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인용되며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25] 2014년 및 2016년에는 보다 발전

우려가 높다는 것을 지목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U.N. Doc. A/HRC/17/27 (2011), paras. 29-32 and 53-59 참조.

17)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f the 20th session,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U.N. Doc. A/HRC/20/L.13 (2012).

18) *Id*., para. 1: "Affirms that *the same rights that people have offline must also be protected online*, in particular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applicable regardless of frontiers and through any media of one's cho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강조추가)[.]"

19) *Id*., para. 2: "*Recognizes the global and open nature of the Internet* as a driving force in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development in its various forms(강조추가)[.]"

20) *Id*., para. 3: "*Calls upon all States to promote and facilitate access to the Interne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imed at the development of media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in all countries(강조추가)[.]"

21) *Id*., para. 5: "*Decides to continue its consideration of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in other technologies, *as well as of how the Internet can be an important tool for development and for exercising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its programme of work(강조추가)."

22)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f the 32nd session,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U.N. Doc. A/HRC/32/L.20 (2016), para 5, "*Affirms also the importance of applying a comprehensive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providing and in expanding access to Internet* and requests all States to make efforts to bridge the many forms of digital divides(강조추가)[.]"

23) *Id*., para 10, *"Condemns unequivocally measures to intentionally prevent or disrupt access to o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lin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calls on all States to refrain from and cease such measures (강조추가)[.]"

24) Ben Wagner, et al., *supra* note 11, p. 12.

된 '인터넷상의 인권의 증진, 보호 및 향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 채택된 결의에서는 교육권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상의 정보 접근을 촉진할 것이 촉구되며 인터넷 접근의 사회권적 속성이 표명되었다.[26] 나아가 2016년에 채택된 결의를 통해서는 글로벌 오픈 인터넷이 UN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가속하는 추진력이 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공표되었다.[27]

그밖에 유럽지역에서도 일찍이 인권보장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를 통하여 인터넷 접근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한 '1987 결의'(resolution 1987)[28]가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동 결의는 "모든 사람은 유럽인권협약하의 인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29] 이러한 인터넷 접근권은 오로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표현의 자유에 열거된 사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0] 또한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는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에 관한 권리와 같은 다른 인권의 행사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회원국이 법적·실제적으로 인터넷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31] 특히 "장애 혹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청되었다.[32]

한편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터넷 접근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려는 국가들의 관행이 집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프랑스의 헌법위원회는 인터넷 접근이 기본적 인권인 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동의어가 되었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사법심사를 결여한 HADOPI[33]의 행정명령에 기반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자의 인터넷 접속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적 대응(graduated response)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34] 더 나아가 그리스는 2001년 헌법을 개정하여 "모든 사람의 정보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동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였으며.[35] 코스타리카의 헌법재판소 역시 2010

25)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U.N. Doc. A/HRC/17/27 (2011) 참조.

26)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f the 26th session,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U.N. Doc. A/HRC/26/L.13 (2014), para. 4.

27)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f the 32nd session,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U.N. Doc. A/HRC/32/L.20 (2016), para 2.

28) Council of Europe, Resolution 1987 of the 14th Sitting of Parliamentary Assembly, The Right to Internet Access, (2014), avaliable at http://assembly.coe.int/nw/xml/XRef/Xref-XML2HTML-en.asp?fileid=20870&lang=en(2016.12.01. 방문).

29) *Id*., para. 5.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Internet access a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exercising right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30) *Id*., para. 5.2: "*the right to Internet access includes the right to access*,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the Internet *without interference from public authorities, regardless of frontiers and subject only to the limitations laid down in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for democratic societies, *any such limitations should be clearly and narrowly defined*(강조추가)[.]"

31) *Id*., para. 5.4: "*as Internet access is also essential for the exercise of other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the right to private and family life*, *member States should recognise the fundamental right to Internet access in law and in practice*(강조추가)[.]"

32) *Id*., para. 5.10: "member States should increase their efforts to ensure Internet access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and disadvantaged Internet users[.]"

33) 동 행정기관의 정식명칭은 '인터넷상의 저작물 배포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구'(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이다.

34) 해당 사건의 영문 결정본은 Conseil Constitutionnel, Decision n°2009-580 of June 10th 2009, avalable at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root/bank_mm/anglais/2009_580dc.pdf (2016.12.01.방문) 참조.

35) Art. 5A.2 of the Constitution of the Greece, as revised by parliamentary resolution of April 6th 2001 of the VIIth Revisionary Parliament: "*All persons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formation Society. Facilitation of access to electronically transmitted information, as well as of the production, exchange and diffusion thereof, constitutes an obligation of the State*, always in observance of the guarantees of articles 9, 9A and 19(강조추가)."

년 인터넷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남겼다.[36] 그밖에 에스토니아는 2000년 2월 통신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접근을 '보편적서비스'(universal service) 목록으로 편재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터넷 접근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37] 스페인 역시 브로드밴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보편적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있다.[38]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필터링, 접속차단, 인터넷 셧다운, 데이터현지화 등과 같은 조치는 자유권적 인권과 사회권적 인권의 행사에 가장 유용한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과 UN인권이사회의 '인터넷상의 인권의 증진, 보호 및 향유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지 않은 국가들 내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39]

III. 국제인권권법을 통한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가능성: ICCPR 제19조를 중심으로

가. ICCPR 제19조의 적용가능성

이상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제한조치가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국제사회의 문제인식을 비롯하여,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제한조치에 관한 인권문제가 점차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개별적 인권 중심에서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인권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인터넷 관련 인권논의의 중추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또는 'ICCPR'과 혼용)[40] 제19조를 중심으로 해당 규정이 인터넷 제한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국제규범이 과연 인터넷 제한조치를 규제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논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인터넷이 개발되기 전인 1966년에 채택된 자유권규약이 그보다 후행하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ICCPR 제19조는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후행하는 제2항을 통하여 동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1] 해당 문면의 통상적인 의미(ordinary meaning)에 비추어 볼 때, ICCPR 제19조는 인터넷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36) 코스타리카의 헌법재판소는 "통신시장의 개방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헌법상의 권리, 헌법 제33조에 따른 평등권 및 디지털 격차해소에 관한 권리, 소비자의 선택 및 기업과 교역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인터넷 접근권 등과 같은 기본권의 행사와 향유에 타격이 발생"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인터넷 접근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됨을 인정하였다. Nicola Lucci, "Internet Governance and Human Rights", *Vand. J. Ent. & Tech. L.* Vol. 16, No. 4, p.848.

37) Art. 5.2 of the Telecommunication Act of Estonia: "Internet service which universally available to all subscribers regardless of their geographical location at a uniform price."

38) Ley 2/2011, de 4 de marzo, de Economía Sostenible, available at http://www.boe.es/diario_boe/txt.php?id=BOE-A-2011-4117 (2016.12.01.방문) 참조.

39) 실제로 지난 1월 유럽인권재판소는 법률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수감자의 인터넷 이용이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유럽인권협상 제10조)가 침해되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동 사건의 피고인 에스토니아는 인터넷 이용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항변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당초 법률정보의 확인을 위한 인터넷 이용 허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동 사건의 원고인 Kalda가 인터넷에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제한할 만큼 비용과 보안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Kalda v. Estonia, Judgement of 19 January 2016,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no.17429/10, 1980 참조.

40)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999 UNTS 171.

41) Art. 19 of the ICCPR.

특단의 개정이 필요 없이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항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당사국 간의 공동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42]

실제로도 위와 같은 해석론은 UN의 인권관련기구 차원에서도 공인되고 있다. 즉 인권위원회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General Comment 34)를 통하여[43], 그리고 UN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2009년 10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결의'를 통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고 이행할 당사국의 의무를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44] ICCPR 제19조가 1940년대 후반에 초안된 문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45] 통시적이며 동시대적인 기술의 변화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광범위한 표현을 채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나. 의무의 성격과 내용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은 ICCPR 제19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련된다. 인권논의 초창기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인권은 국가에게 해당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은 오로지 국가의 간섭과 침해를 자제하는 소극적인 의무만을 요구한다는 이분법적인 관념이 우세하였다.[46] 하지만 1980년대를 기점으로 이러한 절연적이고 이분법적인 구분이 실제적인 인권보장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존중의 의무', '이행의 의무', '보호의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47]

향후 이러한 다중적인 접근방식은 1908년대 식량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었던 Asbjørn Eide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으며,[48] 추후 국제인권기구들의

42) Art. 31.1 of the VCLT 참조.

43)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34, Article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Doc. CCPR/C/GC/34 (2011).

44)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f the 12th sess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Doc. A/HRC/RES/12/6 (2009).

45) M. J. Bossuyt, *Guide to the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ordrecht: M. Nijhoff Publication, 1986); S. Joseph, J. Schultz and M. Casta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2nd edition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46) Sarah Joseph, "An overview of Human Rights accountability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Menno Kamminga & Saman Zia-Zarifi (eds.), *Lia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0) 참조;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20세기 자유주의철학 내에서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분석적인 논쟁이 과열되면서 전통적인 자유권의 목록에서 오늘날의 사회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별도로 구분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특히 1958년 Isaiah Berlin은 자유의 두 개념'(Two Concepts of Liberty)을 소개하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분하였는데, 이것이 Berlin의 의도와 무관하게 시민적·정치적 자유와 사회적·경제적 자유를 구분하는 사상적 토대가 되어 향후 권리실현의 현실적 한계를 옹호하는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연미, "자유주의와 복지권",「법학논총」제29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499-502면 및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참조.

47) 기존의 '소극적 의무' 대 '적극적 의무'의 이분법적 구분을 비판하며 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의무를 '존중의 의무' '이행의 의무', '보호의 의무'의 다중적인 것으로 소개하는 Henry Shue의 연구 및 그에 대한 분석은 Henry Shue, *Basic rights: subsistence, affluence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Michael Payne, "Henry Shue on Basic Rights", *Essays in Philosophy*, Vol. 9, No. 2 (2008); Ida Elisabeth Koch, "Dichotomies, Trichotomies or Waves of Duties?", *Human Rights Law Review*, Vol.5, Issue 1 (2005) 참조.

48)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Food as a Human Right: Final Report submitted by Asbjørn Eide, U.N. Doc. E/CN.4/Sub.2/1987/23 (1987) paras. 67-69 참조; 이러한 3분법적 구분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한 의무를 단순히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소극적인 부작위 의무에 한정하기 보다는 각 인권규범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nature)에 부합하는 의무이행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부각시켜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M. Magdalena Sepúlveda & Sepúlveda Carmona María Magdalena, *The Nature of the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Vol. 18 (Oxford,

유권해석을 통해서 재확인되었다.[49] 특히 '보호의 의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는 '일반논평 31'(General Comment 31)을 통하여, 자유권규약에 대한 주의의무를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당사국에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50]

이에 따르면 ICCPR 제19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단순히 당사국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존중의 의무'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무에서 더 나아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이행의 의무'까지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더하여 사적주체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침해상황에 관한 방지, 처벌 또는 조사를 진행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같은 논리로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은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서도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이행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필터링, 검열, 접속차단, 삭제, 데이터현지화 등과 같은 인터넷 제한조치의 운영을 자제하는 소극적인 '존중의 의무'에 더하여,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들이 자의 또는 타의로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열, 차단,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 처벌, 조사, 구제절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 의무'도 함께 이행될 것이 요구된다.[51]

다. 실효성의 문제

앞선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본고에서 언급한 인터넷 제한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당수가 ICCPR 제19조와 불합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인권규범 위반의 문제는 대개 당해 행위를 한 국가와 자국민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타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3국이 개입하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52]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 제한조치 증가의 문제를 규율함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이 실질적인 이행강제 및 권리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인권조약 중에는 다른 당사국의 인권규범 위반에 대해서 제3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53] 특히 본고에서 살펴본 자유권규약은 동 규약상의 인권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통해 다른 당사국의 협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국가간 통보절차를 제공하고 있다.[54] 하지만 유의할 것은 이

New York: Intersentia nv, 2003) 참조.

49)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는 CESCR, General Comment 12, The Right to Adequate Food, U.N. Doc. E/C.12/1999/5 (1995);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6, The right to life, U.N. Doc. U.N. Doc. HRI/GEN/1/Rev.1 at 6 (1994);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3, 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U.N. Doc. HRI/GEN/1/Rev.1 (1981): "The Committee considers it necessary to draw the attention of States parties to the fact that *the obligation under the Covenant is not confined to the respect of human rights, but that States parties have also undertaken to ensure the enjoyment of these rights to all individuals under their jurisdiction.* This aspect calls for specific activities by the States parties to enable individuals to enjoy their rights(강조추가)" 참조.

50) 당사국이 사인 또는 사적 집단에 의한 침해행위를 방지, 처벌, 조사, 피해구제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협약이 보장하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은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31, Nature of the General Legal Obligation Imposed on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U.N. Doc. CCPR/C/21/Rev.1/Add.13 (2004), para. 8; 서철원, 장복희, 서윤호, 김형구,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3), 17면.

51)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tion and Expression, U.N. Doc. A/HRC/17/27 (2011);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f the 12th sess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Doc. A/HRC/RES/12/6 (2009), Section (p)(iii); Joanna Kulesza, *International Internet Law* (New York: Routledge, 2012), p. 48 참조.

52) Andreas Zimmermann, "Dispute resolution, compliance control and enforcement in human rights law," in Geir Ulfstein, Thilo Marauhn & Adreas Zimmermann (eds.), *Making Treaties Work: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Arms Contr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39; 김정건, 이재곤, 장신, 박덕영 「국제법」 (서울: 박영사, 2010), 612면.

53) Andreas Zimmermann, *Id*., p. 20.

러한 국가간 통보절차는 모든 당사국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다른 당사국의 통보를 수리 및 심리할 권한을 승인하는 별도의 선언을 한 국가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있다는 점이다.[55] 더욱 심하게는 실제로 자유권규약 제41조상의 국가간 통보를 활용한 사례 및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없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자국에 특별한 피해가 없는 한 다른 국가 내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발제도를 이용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동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6]

한편 자유권규약은 동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침해로써 피해를 입은 개인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개인통보'의 이용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동 제도 역시 별도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원용이 가능하다. 또한 설사 선택의정서에 비준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서면절차가 적용된다는 점, 동 절차에 따른 최종견해(view)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 역시 제도적인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57]

이에 더하여 자유권규약은 당사국들이 인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8] 부연하면 자유권규약의 체약국은 비준 또는 가입 후 1년 이내에 최초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는 4년 마다 정례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59] 이러한 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검토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와 해당 국가의 보고서 작성을 주관하는 기관 간에 구체적인 질의답변이 진행되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가 채택된다.[60]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국가보고서의 제출 및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사항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절차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에 기하여 인권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가보고서 제출의 지연 또는 거부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61] 하지만 최종견해에서 요구하고 있는 권고사항 이행의 문제는 또 다시 이행조치에 대한 보고제도의 운영으로 회귀하고 있어, 결국 조약위반에 대한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V. 맺음말

앞서 인터넷 제한조치의 주요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강경한 인터넷 검열을 유지하던 국가들이 주로 독재 또는 권위주의 정부였던 반면, 오늘날 데이터현지화 조치를 도입 및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등의 측면에서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사이버 공격과 범죄', '인터넷 감시와 정보수집'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는 당분간 쉽게 가

54) Art. 41 and Art. 42 of the ICCPR.

55) Art. 41 of the ICCPR: "본 규약의 당사국은 *당사국 가운데 일국이 본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다른 당사국의 통고를 수리하고 심리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하는 것을 본 조항에 따라서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강조추가)."

56) Martin Schein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ir Ulfstein, Thilo Marauhn & Adreas Zimmermann (eds.), *Making Treaties Work: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Arms Contr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56 참조.

57) Martin Scheinin, *Id*., pp. 60-64 참조.

58) Art. 40 of the ICCPR.

59) Art. 40.1 of the ICCPR; 김대순, 「국제법론」, 제18판 (서울: 삼영사, 2015), 978면.

60) Martin Scheinin, *supra* note 56, pp. 57-59 참조; 서철원, 장복희, 서윤호, 김형구, *supra* note 50, 45면.

61)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30, Reporting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U.N. Doc. CCPR/C/21/Rev.2/Add.12 (2002) 참조.

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62]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우선적으로 인터넷 제한조치의 유형과 주요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한조치 증가의 문제가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국제사회의 문제인식과 논의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가운데 눈여겨 볼만한 변화는 UN을 중심으로 인터넷 제한조치에 관한 인식이 과거 표현의 자유라는 개별적인 자유권 보장의 문제에서 점차 총체적인 인권보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이 인터넷 제한조치를 규제함에 있어서 독자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는 보편적인 국제인권으로서의 인터넷 접근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특히 UN인권이사회의의 결의와 인권위원회가 도출한 일반논평 등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결여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ICCPR 제19조와 같이 인터넷 제한조치에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한 국제인권규범이 존재하고는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협정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문제가 되는 제한조치를 철회 또는 수정할 것을 강제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재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제한조치에 관한 이슈가 국제인권 차원의 논의로 확대 및 발전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동안 글로벌 오픈 인터넷에 대한 담론이 일부 선진국과 전문가에 의해서 기술중심, 시장중심으로 진행되던 것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대상과 주제를 포괄하는 총체적이고 글로벌한 이슈로 전환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63] 그밖에 UN인권이사회 및 개별 인권조약상의 위원회 등에서 도출되는 결의와 일반논평 등은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결여하고 있지만, 유엔헌장 및 해당 인권조약하의 인권감시기관이라는 지위와 역할에 기하여 인권조약에 관한 유권적 해석 혹은 관련 이슈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관행 또는 법적의사를 확인하는 자료로서 원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64]

끝으로 기술과 관련된 이슈들은 일면 '인권'과는 전혀 무관하게 존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인권의 향유 및 보호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동시대의 사람들이 널리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용가능성의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65]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국제인권 논의의 시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인권정책의 수립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

62) Albright Stonebridge Group, *supra* note 3, p. 6; 유러피언 클라우드(European cloud) 및 남미-유럽 간 해저케이블 사업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지난 2000년에 체결되어 약 15년 동안 지속되어온 세이프하버(Safe harbor)협정을 무효화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및 EU의 새로운 '데이터 보호규칙' 등은 인터넷의 분리와 지역화를 향한 각국의 관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Maximil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Case (C-362/14), Judgement ECLI: EU:C:2015:650, 6 October 2015; Agreement on Commission's EU data protection reform will boost Digital Single Market, IP/15/6321, 15 December 2015 참조.

63) 동일한 관점에서 인터넷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논의의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은 Alberto Cerda, "Internet Freedom is Not Enough: Towards an Internet Based on Human Rights", *SUR International Journal on Human Rights*, Vol. 10, No. 18 (2013) 참조.

64) The Article 31(3) of the VCLT; 서철원, 장복희, 서윤호, 김형구, *Id*., 14-15면 참조.

65) David P. Filder, "Cyberspace and human rights" in Nicolas Tsagourias & Russell Buchan (eds.), *Research handbook on international law and cyberspac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2015), p. 95 참조.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경 지역에서 니카라과가 수행한 행위 사건 및 산후안 강변의 코스타리카 도로 건설 사건에 관한 소고

김 현 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I. 들어가며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만큼 자주 국제 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많은 소송을 제기하여왔다. 이 두 국가는 지난 20년 동안 네 번 이상 소송당사국으로서 서로 대립하였는데 가장 최근의 판결은 2015년 12월 16일자의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의 국경하천인 산후안 강에서 니카라과가 수행한 특정 활동 사건 및 강변을 따라 코스타리카에서 건설한 도로에 관한 사건의 병합사건이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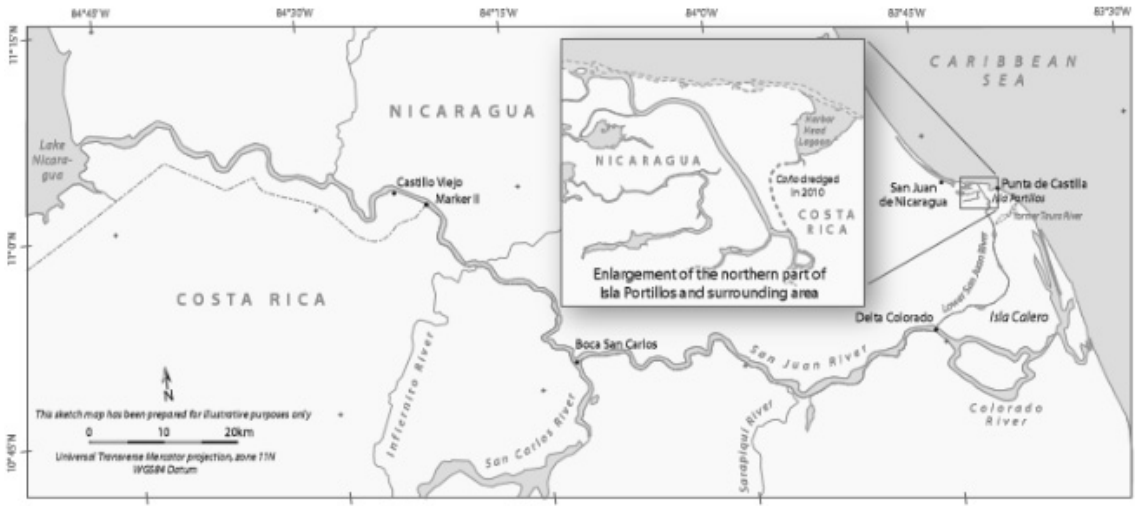
양국의 대립은 니카라과 호수에서부터 카리브해 쪽으로 흐르고 있는 국경하천인 산후안 강(San Juan River)과 관련되어 있다. 산후안 강은 남부 니카라과와 북부 코스타리카 사이의 동쪽 국경 역할을 한다.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는 1858년 까나스 헤레즈(Canas-Jerez)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국경을 획정하고 산후안 강의 이용에 대해 조약에서 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 이상 산후안 강에 관해 분쟁을 겪어왔다.

일련의 분쟁들로 결국 2010년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의 수로 준설 행위 및 코스타리카영토에 속하는 산후안 강 지역의 니카라과 군대 파견 행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니카라과 역시 2013년 코스타리카의 산후안 강변도로 건설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16일 국제 사법 재판소는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의 국경하천인 산후안 강에서 니카라과가 수행한 특정 활동 및 강변을 따라 코스타리카에서 건설한 도로에 관한 병합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에 대해서는 코스타리카 영토 불법 침입 및 영토주권 침해, 코스타리카의 산후안 강 항행권 침해를 인정하고 금전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코스타리카에 대해서는 도로 건설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일반국제법상의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판시하였다.

이하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사실관계, 법적 쟁점 및 판시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결이 가지는 국제법상의 의의를 살펴본다. 특히 일반국제법하에서 국경하천과 같은 공유자원 이용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절차적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16 DECEMBER 2015 JUDGMENT.



〈지도 1: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의 분쟁지역〉[6]

II. 사건의 사실관계

1. 분쟁지역 산후안 강 및 이슬라 뽀르띠요의 지리적 특징

먼저 산후안 강의 지리적 특징부터 살펴본다. 산후안 강은 니카라과의 서쪽에 위치한 니카라과 호수(Lake Nicaragua)에서 발원한 강이다. 산후안 강은 니카라과 호수에서 카리브해까지 약 205km 흘러 "코스타리카 삼각지"라고 알려진 지점에서 남북으로 두 지류가 나뉘어진다. 콜로라도 강은 남쪽 지류에 해당한다. 남쪽 지류인 콜로라도 강으로 현재 산후안 강물의 약 90퍼센트가 흘러들어가며, 나머지 10 퍼센트는 산후안 강 하류로 합류한다.[2] 콜로라도 강은 코스타리카를 가로지르며 카리브해로 흐른다.

콜로라도 강과 산후안 강 하류사이에 위치한 지역은 이슬라 까레로(Isla Calero)라고 불리는 약 150 평방 킬로미터의 지역이다. 이 지역 안에는 코스타리카에서는 이슬라 뽀르띠요(Isla Portillos)로 부르고, 니카라과에서는 하버 헤드(Harbor head)라고 부르는 대략 17평방 킬로미터의 작은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3] 이슬라 까를로 지역은 1996년 코스타리카가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일명 람사협약)'[4] 하의 국제 중요 습지로 지정한 우메달 카리베 노레스테(Humedal Caribe Noreste, 북동부 카리브 해 습지)와 산후안 강 야생동물 보호구역(Refugio de Vida Silvestre Rı´o San Juan)의 일부이다. 뿐만 아니라 산후안 강과 강 왼쪽 둑에 접한 폭 2km의 땅을 포함하여 인접한 지역은 니카라과가 2001년 람사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신청하여 선정된 지역이다.[5]

코스타리카는 2010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며 니카라과를 수많은 다른 국제법 위반 중에서도 산후안 강 준설과 코스타리카의 북동부 카리브해 습지를 가로 지르는 인공 수로 건설을 통해 보호 습지에 피해를 입히며 람사협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국경하천 이용에 따른 초국경적 피해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는 국제환경법 관련 사건이다.

2) I.C.J. Reports 2015, para. 56.

3) I.C.J. Reports 2015, para. 57. 판결문에서는 '이슬라 뽀르요'라고 지명을 통일하여 지칭하고 있다.

4) 1971년 02월 02일 람사에서 채택, 1975년 12월 21일 발효.

5) I.C.J. Reports 2015, para. 58.

6) I.C.J. Reports 2015, p. 31.

2. 분쟁의 역사적 기원

산후안 강에 대한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양국간의 분쟁은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스타리카는 독립 직후 기존 국경을 변경했기 때문에 분쟁이 촉발되었다. 양국간의 경계를 획정한 1858년 까나스 헤레즈(Canas-Jerez) 조약은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양국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했다. 이 분쟁이 21세기로까지 확대되었으며 2010년에는 무력 분쟁에 가까운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1) 1888년 중재

1858년 까나스 헤레즈(Canas-Jerez) 조약의 모호함과 양국 정부 간의 의견 불일치에 근거하여 1888년에 미국 대통령을 통해 중재에 들어갔다. 그 결과 1888년 미국의 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대통령에 의한 중재 및 1916년 중앙아메리카재판소(Central American Court of Justice(Case Costa Rica v. Nicaragua))에서 다음의 내용이 재확인되었다. 즉, 니카라과는 산후안 강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스타리카는 강의 일부분을 무역을 할 권리 및 항행할 권리가 있을 뿐이다. 다만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필요에 따라 밀수감시선을 동반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 조약은 또한 상호 합의에 의해 동의한 물품을 제외하고 코스타리카 무역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항행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권리는 상업화물에 국한되어 있으며 운반용 무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중재의 결과 양국간에는 국경선 설정위원회(National Demarcation Commission)가 설치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1897년-1900년까지 5차례의 국경선 설정 결정을 내렸다.[7)]

7) Cameron A. Miles, "Introductory Note to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Costa Rica v. Nicaragua)/Construction of a Road In Coa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I.C.J.)", *ILM*, 2016, vol.3, p.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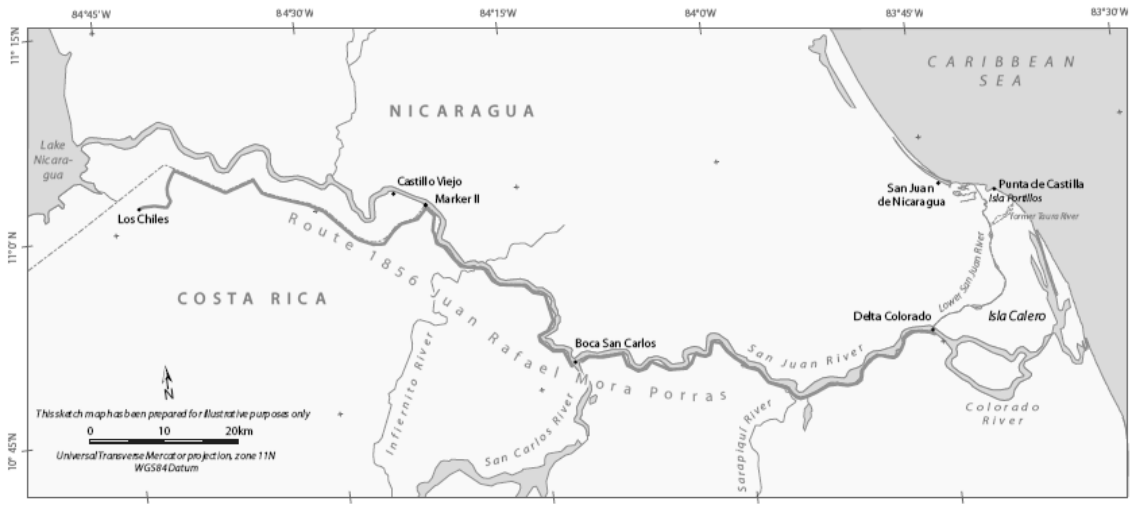
(2) 1940년대 코스타리카의 산후안 강 준설 작업

그 후 산후안 강 이용의 문제는 양국 정부 사이의 지속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코스타리카는 산후안 강을 통과하는 운하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니카라과는 이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였다. 결국 1940년대 코스타리카는 일방적으로 산후안 강의 지류인 콜로라도 강에서 준설 작업을 수행했다. 이 준설 작업으로 산후안 강물과 콜로라도 강물의 흐름이 완전히 변경되었고, 현재 두 강 유역의 대부분의 물은 산후안 강의 북쪽 지류로 흐르고 있다. 강물이 코스타리카 영토쪽으로 보내지면서 니카라과측의 산후안 강의 하류의 마지막 37 킬로미터 지점은 유수량이 적어지고 침전물 및 기타 퇴적물로 막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니카라과는 귀중한 수자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준설작업으로 기존 영토를 상실하게 되어 버렸다.

(3) 2010년 니카라과의 산후안 강 준설 작업

과거 코스타리카의 준설작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고자 2010년부터 니카라과는 물의 흐름을 원래의 과정으로 되돌리고 물과 토지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후안 강을 준설하는 작업을 착수하였다. 니카라과 준설작업의 목적은 코스타리카가 설치한 수로(caño라고 지칭)를 제거하여 산후안 강의 원래의 자연적 흐름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공개적으로 니카라과의 준설 작업을 반대하였다. 그 근거로서 콜로라도 강 대부분이 국립 야생동물 피난처(Barra del Colorado 지역)를 통과하기 때문에 준설 작업이 진행된다면 잠재적으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코스타리카는 과거 자국의 준설 이후 증가된 유수량에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된 야생 생물에게 환경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0년 10월이 준설 프로젝트는 거의 국경 분쟁



〈지도2: 코스타리카 1856번 도로〉[8)]

을 무력 충돌의 상황에 가까운 상황으로까지 발전되었다. 2010년 10월 8일 니카라과 정부는 산후안 강 33km에 해당하는 부분에 준설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으며, 작업은 지휘관 에덴 파스토라(Edén Pastora)가 주도하였다. 2010년 10월 20일 코스타리카 정부는 니카라과 군대가 코스타리카 영토인 이슬라 까레로(Isla Calero) 습지에 침입하고 준설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권 침해 주장을 하며 니카라과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섬의 일부인 했다. 니카라과는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실제로 코스타리카 인들이 자신의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니카라과의 부통령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토를 침범 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10월 22일에 경찰청장 인 La Fuerza Publica를 이슬라 까레로(Isla Calero)에서 가장 가까운 타운인 코스타리카 북동부의 Barra del Colorado 마을로 70명의 경찰을 보냈다. 니카라과는 이슬라 까레로(Isla Calero)에서 약 50명의 병사를 주둔시켰다. 해당 지역에 파견된 코스타리카의 경찰관들과 니카라과 군은 충돌할 뻔 하였으나 실제 무력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4) 코스타리카의 1856번 도로 건설

한편 2010년 12월부터 코스타리카는 1856번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 도로는 산후안 강을 따라 160km 길이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2011년 2월 21일 코스타리카는 이 지역이 긴급상황임을 선언하는 행정부령을 채택하고 도로 건설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니카라과는 2011년 12월 22일자로 도로 건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사건 절차

상기의 사실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이하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본다.

(1) 국경지역에서 니카라과가 수행한 행위 사건의 진행

2010년 11월 18일 코스타리카 공화국은 니카라과 공화국을 상대로 첫 번째 소송(국경지역에서 니카라과가 수행한 행위 사건)을 제기하였다. 코스타리카가 주장한 사항은 (1)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

8) I.C.J. Reports 2015, p. 34.

영토를 침입 및 점유, 해당 지역에 수로 건설 (2) 산후안 강의 준설 작업을 특히 지칭하며 이러한 니카라과의 작업 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임을 주장하였다.

동 소송의 관할권의 근거로 코스타리카는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간 조약(American Treaty on Pacific Settlement)[9]의 제31조를 원용하였다.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의 1929년 9월 24일자 상설국제재판소 규정 제36조의 선언 및 1973년 2월 20일자 ICJ 규정 제36조 제2항 선언 역시 관할권의 근거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이슬라 까레로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습지협약(람사협약) 당사국에게도 내용이 통보되었다.[10]

분쟁당사국 모두 국적재판관이 없어서 특별재판관이 선임되었다. 코스타리카측에서는 존 두가드(John Dugard), 니카라과 측에서는 길버트 길로움(Gilbert Guillaume)을 각각 선임하였다.

2010년 11월 18일자 소 제기와 함께 코스타리카는 ICJ 규정 제41조의 잠정조치도 함께 청구하였다. 2011년 3월 8일자 명령에서 양 국가 모두에게 잠정조치가 명령되었으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요구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람사협약 사무국과 협의하여 양 당사자가 문제의 영역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공통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주의와 함께 잠정 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이 습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보다 폭넓은 양자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11] 2011년 3월 8일자 명령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에게 분쟁지역(caño 포함)에 대해 민간인, 경찰, 군대인지를 불문하고 여하의 사람의 파견 및 유지를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12] 그러나 이후 9월 니카라과 당국은 해당 습지에서 2 개의 새로운 수로를 파기 시작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이러한 행위가 더 많은 환경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는 2013년 11월 22일 니카라과에게 새로운 수로 관련 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새로운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13]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심화되었다.

(2) 산후안 강변 도로 건설에 관한 사건 진행

한편 2011월 12월 22일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에 대하여 산후안 강변 도로 건설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니라카과는 (1) 니카라과 주권 침해 및 니카라과 영토에 대한 심각한(중대한) 환경 피해를 주장하였다. (2) 특히 산후안 강을 따라 두 국가의 국경지역에 도로 건설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수개의 국제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도로 건설로 인접한 생물권과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습지를 포함한 지역 생태계에 중대한(grave) 환경 피해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 군부가 산후안 강을 항행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국경 지역 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대응으로, 강과 평행을 이룬 약 160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는 중이었다고 주장하였다.

2011월 12월 22일 소송의 관할권 근거로 니카라과 역시 보고타협약 제31조를 원용하였다. 니카라과 역시 재판소 관할권 수락 선언 역시 관할권 확립 근거로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람사협약 및 1992년 중앙아메리카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우선순위 야생지역 보호 협약 당사국에게 소 제기 사실이 통보되었다. 또한 이 사건도 국적재판관이 없으므로 니카라과는 길버트 길로움(Gilbert Guillaume)을, 코스타리카는 브루노 짐머(Bruno Simma)를 특별재판관으로 선임하였다.

9) 1948년 4월 30일 보고타에서 채택. 일명 '보고타 규약(pact of Bogotá)'이라고 칭한다.

10) I.C.J. Reports 2015, para. 5.

11)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Costa Rica v. Nicaragu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8 March 2011, I.C.J. Reports 2011, para. 53 이하.

12)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8 March 2011, I.C.J. Reports 2011, para. 86.

13)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2 November 2013.

니카라과가 주장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코스타리카는 도로 건설로 야기된 산후안 강 항행의 훼손과 파괴에 대해 니카라과에게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2) 국제사법재판소에게 니카라과가 산후안 델 노르테(San Juan del Norte) 만을 점유한 뒤 유일한 주권자임을 선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니카라과는 1858년 조약 체결 당시 존재한 항행가능성 조건이 재확립되기 전까기 콜로라도 강의 자유항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4)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가 국제사법재판소의 2011년 3월 8일자 명령의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14]

2013년 4월 17일자 2건의 별도 명령에 따라, 재판소는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대 니카라과 대 코스타리카 사건에 병합하였다.[15] 그에 따라 니카라과 대 코스타리카 사건에서 코스타리카가 특별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던 짐머 판사는 같은 날짜로 법원에 사임 결정을 통보했다. 그 후, 기존의 특별재판관 중 길로움 판사와 두가드 판사만이 병합 사건에서 특별재판관이 되었다.

III. 분쟁지역의 영토 주권과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코스타리카는 분쟁지역의 영토주권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분쟁지역의 영토주권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분쟁지역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영토에 대한 권원의 문제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분쟁지역은 이슬라 뽀르띠요의 북쪽 부분, 즉 3 평방킬로미터의 습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1858 조약에 따르면 산후안 강 입구부터 국경이 시작되어 오른쪽 둑까지 이어진다.[16]

2010년 10월 18일 니카라과는 강의 항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준설작업을 시작하였다. 해당 지역은 이슬라 뽀르띠요의 북쪽 부분이다. 코스타리카는 이 지역은 코스타리카의 영토라고 주장하였고, 니카라과는 자국 영토내 기존의 수조를 제거하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며 군대를 파견하기 까지 하였다.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가 1858년 조약에서 정한 국경 및 국경설정위원회에서 정한 국경을 부인하고 코스타리카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886년 두 건의 중재를 언급하였다.[17]

양국간의 국경선을 획정한 1858년 조약의 효력은 1886년 중재에서 이미 재확인된 바 있다. 중재자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대서양 쪽의 양국의 국경선은 "1858년 4월 15일에 존재하는 산후안 강 쪽 니카라과 강의 입구인 푼타 테 까스띨라(Punta de Castilla) 지역의 제일 끝에서 시작한다"고 확인하였다. 이 중재판정에서는 또한 니카라과가 산후안 강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 니카라과에게 산후안 강물의 흐름을 변환하지 못하도록 할 조건, 코스타리카와 상의를 먼저 하지 않고서는 영토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 허락이 부여되지 않음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도 판정을 내렸다.[18] 본 중재판정 이후 Pacheco-Matur 협약에 따라 1896년 국경 획정 위원회(Demarcation Commission)가 설치되었는데 동 위원회의 결정은 종국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19]

중재에서는 특히 양국의 국경선은 산후안 강 하류라고 부르는 지류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국경선의 자연적 종점은 항구 입구의 오른쪽 곶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조약에서 강은 무역을 위한 출구로서 취급되고 간주되고 있다. 이는 평균적인 물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항행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14) I.C.J. Reports 2015, para. 15.
15) I.C.J. Reports 2015, para. 19.
16) I.C.J. Reports 2015, para. 71.
17) I.C.J. Reports 2015, para. 65.
18) I.C.J. Reports 2015, para. 60.
19) I.C.J. Reports 2015, para. 61.

니카라과는 2010년 준설작업을 시작하며, 준설 작업을 하는 지역의 현재의 수로는 과거의 수로가 변경된 이후 자연적으로 생성된 수로이기 때문에 과거의 수로를 대체하며 양국간의 국경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20]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의 수로는 전적으로 인공시설물이며 2010년에서야 비로소 건설된 것이므로 양국간의 국경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양국간의 국경에서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1856년 조약에 대한 1888년 중재 판정 및 국경위원회의 3개의 판정건을 검토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간의 국경 획정에 대해 1858년 조약 및 1896년 설치된 국경 획정 위원회(Demarcation Commission)의 판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1858년 조약 제6조에 따르면 코스타리카는 자유로이 항행할 권리가 있다. 동 조약상 강은 무역을 하기 위해 항행할 수 있는 출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로(cano)는 '무역을 하기 위하여 항행할 수 있는 출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경을 형성할 수 없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코스타리카의 주장과 같이 산후안 강 하류 지역의 오른쪽 둑이 양국의 국경을 이룬다고 판시하였고, 따라서 분쟁지역은 코스타리카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21]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 영토인 이슬라 뽀르띠요에 침입하여 수로를 설치한 행위는 코스타리카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며, 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22] 니카라과는 2013년에 두 개의 수로를 추가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군대를 파견한 행위는 2011년 3월 8일자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되었다. 또한 니카라과는 1858년 조약의 제6조의 코스타리카의 산후안 강 항행권을 침해했다.[23]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 영토에 대한 니카라과의 불법 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해에 대해 코스타리카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기 보상은 2016년 12월 16일 이전에 당사자간에 합의되거나 또는 합의가 실패한 경우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20) I.C.J. Reports 2015, para. 78.
21) I.C.J. Reports 2015, paras. 76, 92.
22) I.C.J. Reports 2015, para. 93.
23) I.C.J. Reports 2015, para. 136.

IV. 국제환경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검토

근래 들어 그 영향이 한 국가의 국경을 넘는 개발 사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사업으로 초국경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일반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발동하기 위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문제는 점점 중요한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양당사국은 각각 타방 당사국의 행위가 초국경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양국가 모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1.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

먼저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가 준설 작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해 코스타리카에 통보 및 협의할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의 영토에 초국경 피해를 끼치지 않을 국제환경법상의 의무(실질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24]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 역시 도로 건설전에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25]

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의 준설 작업은 심각한 초국경 피해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였다. 반면 코스타리카의 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심각한 초국경 피해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24) I.C.J. Reports 2015, para. 100.
25) I.C.J. Reports 2015, para. 146.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증거만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발동 기준이 될 초국경피해 위험의 존재를 판단하였다.[26] 재판소는 과학적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다. 반면 실체적 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코스타리카의 도로 건설의 실질적 유해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2. 일반국제법상의 사전환경영향평가 의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초국경적 피해 예방 의무에 대해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즉, 각 당사국은 국제하천일지라도 자국관할권 내의 영역에서 가지는 이익을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를 계속 견지하고 있으며, 공유자원인 국경하천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초국경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새로운 국제관습법규범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발전이 있다.

(1) 절차적 의무 판단 검토 – 펄프밀 사건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법리와 비교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2010년 펄프밀(Pulp Mills) 사건[27]에서 논한 바 있다. 펄프밀 사건에서는 "사전"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실시될 의무를 강조하였다.[28] 그리고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필요한 경우 사업 진행 기간 동안 계속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29]

그러나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일반국제법상 의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2010년의 펄프밀 사건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국경하천인 우루과이강의 이용에 관해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두 국가간의 1975년 조약에서 정한 용도로 강을 사용하기에 앞서 이행해야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환경영향평가가 해당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이제는 제안된 산업행위가 초국경적으로, 특히 공유자원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해야 할 일반국제법상의 요건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일반국제법상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반국제법상 환경영향평가의무를 독립적인 의무로 보지 않고[30], 대신 1975년 조약에서 규정되어 있던 '심각한 수준의 초국경적 피해를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한 주의의무(the general obligation of due diligence)'로부터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즉, 사전 환경영향평가 의무는 조약상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31]

펄프밀 사건에서는 절차적 의무로서 주의의무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1) 위험의 확인, (2) 위험의 평가, (3) 통보 및 협의 의무가 바로 3단계이다. 이 3단계는 연속적 단계 의무이다. 즉 1단계

26) I.C.J. Reports 2015, paras. 108, 109.

27)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Judgment, I.C.J. Reports 2010, p. 14. 펄프밀 사건에 대해서는 정진석, "펄프공장사건(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 판결의 국제환경법적 함의",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1 및 이세련, "국제법상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에 대한 고찰-ICJ의 Pulp Mill 의 사건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26권 제2호, 2010을 참고.

28) I.C.J. Reports 2010, para. 205.

29) Edouard Fromageau,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the Obligation to Consult: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In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3rd ed.), S. Cassese, B. Carotti, L. Casini, E. Cavalieri & E. MacDonald, IRPA-IILJ, 2012. p. 81.

30)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may now be considered a requirement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to undertake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ere there is a risk that the proposed industrial activity may have a significant adverse impact in a transboundary context, in particular, on a shared resource) 라고 말한 바 있다. I.C.J. Reports 2010, para. 104.

31) I.C.J. Reports 2010, para. 204.

의무를 충족하면 2단계 의무 이행으로 넘어가고 2단계 의무 조건을 충족하면 3단계 의무 이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국제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첫 번째 단계인 환경피해의 위험을 확인하고 난 뒤 두 번째 단계인 위험을 평가하는 단계에 포함된다.

산후안 강 사건에서도 펄프밀 사건의 주의의무의 구성단계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인용하며 사안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첫째,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위험을 평가할 의무를 촉발할 정도로 심각한 초국경적 피해의 위험을 수반하는지를 확인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32]

니카라과의 강 준설 작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국제관습법상의 절차적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니카라과는 2006년 수행한 연구를 먼저 선행하였다. 니카라과가 초국경 피해를 야기하였는지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코스타리카가 준설 작업으로 습지에 해를 입히거나 콜로라도 강 흐름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카라과의 프로젝트 그 자체는 심각한 초국경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해당 연구 이후 계획한 준설프로그램은 중대한 초국경 피해의 위험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33] 따라서 니카라과는 초국경 피해 방지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34]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에 통보하고 협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코스타리카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코스타리카는 2013년 위험평가를 이미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도로 건설이 결정되었으며 도로 건설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없다고 평가되었다고 말하며, 주의의무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였다.[35]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코스타리카가 그러한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36] 펄프밀 사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환경영향평가이어야 하며 동시에 필요한 경우 사업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그대로 원용하며 코스타리카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도로가 건설되는 기간(3년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음을 지적하였다.[37]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태도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위험한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초국경적 피해 방지에 관한 초안(2001 Draft Articles on the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38] 초안에서는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국가의 위험 평가(환경영향평가 포함) 및 평가 결과 심각한 피해위험이 나타나면 영향을 받을 국가에 대한 통보 및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위원회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초안 및 펄프밀 사건에서의 입장과의 차이는 보자면, 초안 및 펄프밀 사건과는 달리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국가의 자발적인 위험평가의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관습법으로서 3단계 절차적 기준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2) 실체적 의무 판단 검토

실체적 의무 위반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국제사법재판소는 코스타리카에게 심각한 국경을 넘는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에서는

32) I.C.J. Reports 2015, para. 156.
33) I.C.J. Reports 2015, para. 105.
34) I.C.J. Reports 2015, para. 105
35) I.C.J. Reports 2015, para. 154.
36) I.C.J. Reports 2015, para. 154.
37) I.C.J. Reports 2015, para. 161.
38) 본 초안의 입장에 대해서는 김대순, "적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이론의 정립을 향하여: 2001년 ILC 초안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03, 제48권 제3호 참고.

코스타리카가 건설한 도로의 위치, 규모, 발생 퇴적물, 자연재해의 발생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코스타리카가 건설하고 있는 도로는 강에 너무 가까운 위치이고, 경사지에 건설중인 도로는 그로 인한 퇴적물이 강으로 쌓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았다. 코스타리카는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한 코스타리카는 긴급상황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코스타리카에게 일반국제법상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사전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후속 단계의 의무, 즉 통지나 협의의무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다.

이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코스타리카의 도로 건설로 실제 초국경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실체적 판단을 하였다. 특히 전문가의 증거를 통해 도로 건설로 발생하는 퇴적물을 산후안 강에 유기한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퇴적물이 유해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39] 코스타리카의 도로 건설로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상한 퇴적물의 양을 고려하건대 하천의 자연적인 퇴적물의 총량에 2%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유기물로 인하여 중대한 초국경적 피해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40] 또한 도로의 건설로 산후안 강의 형태 및 항행, 니카라과의 준설 작업 프로그램, 수질 및 수중 생태계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3) 소결

국제사법재판소의 검토에서 초국경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여전히 모호하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만한 '중대한 환경피해의 우려'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보다 명료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가 제기한 주장 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여전히 '환경피해 여부', '중대한 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개별 사건에 따라 검토하며, 국제사법재판소는 적극적으로 초국경적 환경 피해 위험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국가는 어떻게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초국경적 피해의 위험이 있을지를 알 수 있는가? 국가 스스로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통하여 결정하면 족한가? 아니면 객관적, 과학적 기준에 따라 초국경적 피해의 위험이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판단은 각 국가의 재량에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는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즉, 각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결정할 재량이 있다. 재판소는 당사국이 충분한 주의를 다하며 잠재적으로 환경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영향을 받을 국가에게 통보하고 협의할 의무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역할에 그친다.[41] 추후 환경영향평가 발동 요건 발전과 관련하여 미국 국내법의 사례가 참고할 만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한다. 제안된 사업으로 유해환경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미국 환경위원회는 연방정부기관들에게 공중보건에 대한 영향, 지역의 지리적 특징, 행위의 선행 효과, 사업의 논란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후에, 이들의 중요도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실제로는 이러한 과정이 간이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미국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결국 언제나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가 되며, 다만 환경영향평가

39) I.C.J. Reports 2015, paras. 177-178.
40) I.C.J. Reports 2015, paras. 153-156.
41) I.C.J. Reports 2015, para. 104.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가 될 뿐이다. 본질적으로 중대한 환경상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성공적으로 저감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은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기관이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거나 저감을 통해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간이환경평가를 시행한다. 현행 미국 환경위원회 규제는 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절차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이 절차는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로 시작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에 대한 간단한 분석이다. 환경평가(EA)는 또한 제안된 행위의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연방정부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심각한 영향 부재 확인(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FONSI))"을 하여야 한다.[42] 이러한 미국법의 법리는 추후 일반국제환경법상의 환경영향평가 발동 기준을 설정할 때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실질적 의무 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는 마찬가지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초국경적 피해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프로젝트의 규모, 사업이 수행된 목적(보호지역의 크기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할 기준을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법재판소의 2014년 남극해포경 사건에서 일본의 과학조사포경프로그램이 국제포경규제협약상의 상업포경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과학조사포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한 평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준을 확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즉, 재판소 스스로 적극적 기준 제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 법기술상 의도적으로 피하는 상황일 수 있다.[43]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당사국들의 판단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주장과 근거를 '충분한 주의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V. 나가며

이 사건은 펄프밀 사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할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초국경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발동하는 요건을 검토하며 당사국들의 주장과 당사국들이 제시한 증거를 중심으로 이 쟁점을 검토하였다. 즉, 국제사법재판소 스스로가 초국경 피해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 및 위험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이르진 못하였다. 아직까지 국제사법재판소는 초국경적 환경 피해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하여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환경영향평가 발동 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기준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과학적 기준에서 검토하기 보다는 분쟁당사국이 제시한 증거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의 법리를 통해 추후 일반국제법상의 사전 환경영향평가 발동 요건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또한 중대한 초국경적 환경피해의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보다 명료한 기준을 논할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4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Daniel A. Farb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What Have We Learned Since 1970?", 2016년 12월 9일, 환경법학회 발표문 참고.

43) Jacob Katz Cogan,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10, 2016, p. 326.

국제법 모의재판 출전 방안 및 준비 요령

이 서 희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I. 서론

최근,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길 원하거나, 국내·외 로스쿨을 진학하여 향후 법조인의 길을 가길 원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개최하는 국제법 모의재판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 대회에 출전하였고, 이후 조언자(advisor)로서 다양한 국제법 모의재판 대회 팀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회에 참여하고 싶지만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서 막막해 하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필자는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 경험자로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모의재판 대회 준비 과정이 힘들었던 만큼 배울 수 있었던 값진 무언가를 공유하고, 대회 참가를 추천하고 싶은 바람으로 국제법 모의재판 출전 방안 및 준비 요령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II. 대회 소개

국제법 모의재판의 사용언어는 영어와 한국어가 있다. 영어 대회의 경우, International Law Students Association에서 주최하는 Philip C. Jessup 국제법 모의재판 대회와,[1]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국제경제법학회가 주관하는 WTO모의재판 경영대회가 있다.[2]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있다.[3] 한국어 대회로는 외교부가 주최하고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하는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4] 한국해양재단에서 주최하고 국제해양법모의재판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가 있다.[5]

III. 사전 작업

1. 팀원 선발

일반적으로 모의재판 팀 구성은 가장 먼저 대회에 나가기로 결정한 학생이 공고를 내거나 지인들을 중심으로 팀원을 선발하여 진행된다. 팀원 선발은 준비 과정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팀원의 자격요건으로서 영문 자료를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 국제법 기본지식을 꼽을 수 있으며, 추가 요건으로 이전 모의재판 참가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성실성과 협동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서면 및 구두 변론서를 작성한 이후 대회

1) Philip C. Jessup국제법 모의재판 대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www.ilsa.org/jessuphome
2) WTO 모의재판 경영대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ksiel.or.kr/sobis/kjiel.jsp
3)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redcross.or.kr/ihl/main/main.do
4)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ksil.or.kr/main.asp
5)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koreamaritimefoundation.or.kr

당일 날 진행되는 구두 변론을 고려한다면, 발표력 또한 팀원의 중요한 자질이 될 것이다. 영어 대회인 경우, 원어민 수준의 영어실력을 요한다.

필자는 모의재판 참가 시 해당 학생의 영어실력, 국제법 기초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팀원들을 배려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인성이 팀원의 자격요건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운다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팀원으로 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의재판 대회는 그 어떤 팀 작업보다 높은 수준의 협동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팀원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 대부분 팀 작업의 경우, 1-2명의 무임 승차자(Free rider)가 있다고 하더라도, 팀장이나 다른 적극적인 팀원들이 그 자리를 메꿔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의재판 대회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모의재판 문제는 자신이 맡은 부분을 제 시간에 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각각 다른 쟁점의 문제를 맡게 되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당자는 팀원 선발 시 여러 자격요건을 잘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사람과 함께 팀을 구성해야 한다.

2. 사안 분석

서면 변론서를 쓰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의재판대회 문제 즉 사안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한 단어, 한 문장에도 출제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 국제법과 관련된 논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도 일방과 타방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당사국의 입장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팀원들 간 생각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이 문제 단락별로 표를 작성하여 사안의 내용과 관련된 국제법 쟁점을 찾아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간 별로 사건 순서를 작성해 볼 수도 있다.

시간별 사건 순서 작성의 예

1938년 4월 14일 : A국과 R국은 MC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
2011년 말 : ILSA의 과학자 팀들은 M물질이 이전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수 만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에 90%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했다.
2012년 2월 1일 : A국 총리는 MC조약을 종료할 것을 제안했다.
2012년 2월 21일 : R국의 대통령은 MC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종료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하였다.

사안 단락별 작성 분석의 예

단락	사안	내용 정리	쟁점
8	Riesland National Television is a state-owned and operated corporation, which provides public broadcasting services across Riesland. In accordance with the Broadcasting Treaty, Riesland established a new division of the corporation, The Voice of Riesland ("VoR"), to operate in Amestonia. The inaugural program of the new station and its Amestonian counterpart, a combined performance by the two countries' national orchestras of Vivaldi's "The Four Seasons," aired on 22 December 1992. VoR broadcast a variety of award-winning documentaries and highly-acclaimed programs for the next 22 years.	- Riesland National Television은 국영방송국. - 방송조약과 관련해서 R국은 VoR을 분리하여 A국에서 운영. - 1992년 12월 22일 개회기념프로그램으로 양국을 혼합하여 구성된 국립오케스트라가 비발디 사계를 방영.	- Riesland National Television이 국영방송국 VoR을 A국에서 분리하여 설립. - New division은 무엇일까? 별도의 회사는 아니지만 파견사무소 비슷하게 운영. - 국가책임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음. - VoR은 annex의 적용을 받으며 R국에 귀속됨.

3. 작업 분담

사안분석이 끝난 후, 각 팀원들은 자신이 작성할 서면 변론서 문제를 분담해야 한다. 이 때 팀원들의 작업 속도와 국제법 기초 지식을 고려하여 문제를 분담해야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다. 왜냐하면 팀원 중 누가 어떤 문제를 맡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팀원들이 서면 변론서를 쓸 부분을 분담하는지는 서면 변론서 작성 및 제출과 모의재판 대회 당일 구두 변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질문 4개가 주어지는데, 서면 변론서는 일방 변론서와 타방 변론서 모두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총 8개 질문에 대한 변론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팀원이 4명일 경우, 각각 2개의 쟁점을 맡아서 서면 변론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분담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설명하고, 각 예시의 장단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서면 변론서 분담 방식

예시 1)

	일방변론서	타방변론서
1번문제	팀원 1	팀원 1
2번문제	팀원 2	팀원 2
3번문제	팀원 3	팀원 3
4번문제	팀원 4	팀원 4

예시 2)

	일방변론서	타방변론서
1번문제	팀원 1	팀원 3
2번문제	팀원 1	팀원 3
3번문제	팀원 2	팀원 4
4번문제	팀원 2	팀원 4

예시 3)

	일방변론서	타방변론서
1번문제	팀원 1	팀원 2
2번문제	팀원 2	팀원 1
3번문제	팀원 3	팀원 4
4번문제	팀원 4	팀원 3

대부분의 모의재판 팀은 예시 1 방식을 선택하여 변론서를 작성한다. 이 방식은 한 명의 팀원이 한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서면 변론서 작성이 상대적으로 쉽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서면 변론서 작성은 시간이 부족하고 매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예시 1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구두 변론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예시 2 방식을 추천한다. 팀원들이 각각 2명씩 일방과 타방으로 나뉘어져 구두 변론을 할 때, 예시 1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팀원 1 은 팀원 2가 쓴 2번 문제의 서면 변론서를, 팀원 2는 팀원 1이 쓴 1번 문제의 서면 변론서를 다시 공부해서 구두 변론서를 작성하고 준비해야 한다. 반면, 예시 2의 방식을 선택하면, 자신이 쓴 서면 변론서를 기초로 구두 변론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자신이 서면 변론서를 쓰면서 해당 내용을 모두 파악한 부분이 그대로 구두 변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회 당일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시 2는 서면 변론서 작성 기간 내에 한 팀원이 두 개의 쟁점을 공부하고 변론서를 써야 한다는 측면에서 각 팀원의 변론서 작성 부담이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예시 3 방식의 경우, 이는 팀원 전체가 국제법 기본지식이 풍부하고 대회 경험이 많다는 전제 하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팀원 1과 팀원 2가 서로 논의하면서 서면 변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 팀원 1이 타방 2번 쟁점을 서면변론서로 쓰고, 일방 2번을 구두 변론서로 작성하면 상대국의 주장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므로 좀 더 전략적인 구두 변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예시 3 방식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예시 2 방식 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변론서 작성 과정에서 상대방 국가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계속 새로운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부담이 각 팀원들에게 가중되어 오히려 팀 전체가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4. 자료 수집

사안을 분석하고 작업을 분담하는 일이 완료되면, 자료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 자료를 읽을 때 영문 자료부터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본인이 한글보다 영어가 더 편한 경우라면 영문 자료를 먼저 읽어도 괜찮겠지만, 국제법 기본 개념과 내용을 더 빠르게 파악하려면, 한글 자료부터 읽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국내 논문을 검색할 때 변론서에 나오는 핵심 개념 "단어"와 "국제법"을 함께 검색하면 관련 논문을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6] 해외 논문 및 자료는 구글(Google)학술검색을 활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검색하면 된다. 또한, 국제법 용어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막스 플랑크 국제법 백과사전(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과,[7] 옥스퍼드 국제공법(Oxford Public International Law)을 추천한다.[8]

IV. 서면 변론서 작성

1. 근거 찾기

서면 변론서를 작성할 때 변론서 전체의 논리 흐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변론서 작성 시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사안을 파악하고 관련 국제법 내용을 찾아본 후, 팀원들 간 논의를 통해 변론서 기본 논리를 세울 수 있으며 변론서를 작성하면서 계속적으로 논리를 수정해나가야 한다. 이 논리에 따라 자국의 "주장"을 작성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써주고 마지막에 사안을 "적용"하면 하나의 단락이 완성된다. 즉, 기본적으로 서면 변론서의 한 단락은 "주장", "근거", "사안의 적용" 순으로 구성할 수 있다. 물론 내용에 따라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근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주장"에 대한 "근거"는 자신의 생각대로 쓸 수 없으며, 국제법 연원에 따라 자료를 찾아 반드시 "각주"로 해당 출처를 표기해주어야 한다. 주장의 근거는 국제법 연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규정 제38조 제1항[9]에 따라 국제협약(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사법판결 및 학자들의 견해의 순서로 찾으면 된다.

1) 조약

조약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 체결되는 것으로,[10] 여러 국가가 체결한 다자조약과 두 국가 사이에 체결된 양자조약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1] 우리나라가 가입한 모든 조약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12] 유엔에 등록된 모든 조약은 유엔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13]

2) 국제관습

대부분 사람들은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6)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http://www.riss.kr),한국학술정보 KISS(http://kiss.kstudy.com), 누리미디어 DBpia(http://www.dbpia.co.kr)에서 한국논문을 검색할 수 있다.

7) 막스플랑크 국제법 백과사전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opil.ouplaw.com/home/EPIL

8) 옥스퍼드 국제공법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opil.ouplaw.com/

9) ICJ 규정 제38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a.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b.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c.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d.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1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1항 (a)에 따르면,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11) 김대순, 『국제법론』, 제18판 (삼영사, 2015), 81면.

12) 우리나라가 가입한 모든 조약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information/bilateral/index.jsp?mofat=001&menu=m_30_50_40

13) 유엔에 등록된 전 세계의 조약은 유엔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treaties.un.org/Pages/AdvanceSearch.aspx?tab=UNTS&clang=_en

조약의 규정은 비교적 쉽게 찾아내지만, 국제관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제관습이 성립하려면, 국가관행과 법적확신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4] 그렇다면 국가관행과 법적확신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국제기구결의와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이하 "ILC")초안 또는 ILC가 제시한 조약 초안에 대한 국가의 코멘트에서 찾을 수 있다.[15]

첫째, 국제기구결의는 국가들이 회의를 통해 합의를 한 결과물로, 이 문서에서 국가관행과 법적확신을 찾을 수 있다.[16] 국제기구결의 중에서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총회결의가 대표적이다. 유엔총회결의는 국가관행과 법적확신의 증거로써 기존 국제관습법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 형성에 기여하고 이를 창설하기도 한다.[17]

둘째, 유엔헌장 제13조 제1항 (a)[18]은 유엔총회의 목적으로 법전화(codification)와 점진적 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실현을 위해 설치된 유엔총회의 보조기관인 ILC에서는 34명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성문화 작업을 한다. 성문화 작업이란, 국가관행 및 법적확신 그리고 국제관습법을 찾아서 이를 글로 써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원들이 작업한 ILC초안 또는 ILC가 제시한 조약 초안에 대한 국가의 코멘트에서 국제관습법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관행은 외교서한, 정책천명, 보도자료, 정부법률고문관들이 국내회의나 국제회의에서 제시한 의견, 정부의 공식편람, 행정행위, 국내입법에서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19]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의 일반원칙

ICJ 규정 제38조 제1항 (c)에 규정된 "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은 그 성격이 일반적이며 모든 문명국의 국내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칙을 의미한다.[20] 법의 일반원칙이 명확히 무엇을

14) 김대순, 앞의 책, 48면.

15) *Ibid.*, 58면.

16) *Namibia*사건의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유엔총회결의의 법적 효력은 "권고적"이라고 하였다.(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ara 105.) 그러나, 유엔총회결의는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경우, *Corfu Channel* 사건에서 알바니아가 이 사건의 해결을 ICJ에 부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Reports of Judge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The Corfu Channel Case*,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1949, p. 24.)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한 "상황과 경우에 한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결의는 "경우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다는 결론이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Hugh Thirlway,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22, para 2.)

17) *Barcelona*사건, *Fisheries Jurisdiction*사건, *Nicaragua*사건에서 ICJ는 국제기구와 유엔총회 결의 및 국제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의 태도는 국가관행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Belgium v. Spain)(New Application : 1962), Separate of Opinion of Judge Ammoun, ICJ Reports 1970, p. 302 ;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v. Iceland), Reports of Judge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ICJ Reports 1974, p.26, para. 58 ;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1986, p. 26, para 32. : ICJ는 *Legality of the T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과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유엔총회결의에 동의하는 국가들의 태도로부터 법적확신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하였다.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 p. 254~255, paras. 70 ;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1986, para. 188. : 유엔총회결의 제3232(XXIX)호와 국제법학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에서도 국제기구의 결의안은 국제관습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UN General Assembly, Review of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2 November 1974, A/RES/3232(XXIX); Hugh Thirlway, *Ibid.*, p. 79, para 5.

18) 유엔헌장 제13조 제1항 (a)는 다음과 같다.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a.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19) 김대순, 앞의 책, 58면.

20) *Ibid.*, 92면.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들에서 Fouad Ammoun판사는 "문명국"이라는 표현은 소수 서유럽국가들이 국제법을 확립하던 과거 식민지시대의 유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오늘날 이 규정에서 "문명국"은 국제사회의 모든 주권국가를 의미한다. *Case concerning*

의미하는지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이를 국내법의 공통된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각 국의 국내법을 주장의 근거로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법 판결

ICJ 규정 제38조 제1항 (d)에 규정된 "법규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판례는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사회의 모든 재판소의 판례를 포함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ICJ 판례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21] 이처럼 판례 자체가 법규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기도 하지만, 판결문은 물론이고 판사의 개별의견, 반대의견에서도 국제관습법의 내용 및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물론, 국제법에서 선례구속원칙이 존재하지 않지만,[22] 판례를 통해 국제재판소가 해당 사건에서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는 법을 선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23] 따라서 사안의 쟁점을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 주장의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

국내법원 판례 역시 ICJ규정 제38조 제1항(d)에 포함되는 연원이며, 동시에 법적 논점의 조사와 자료 검토를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24] 다만, 국내법원 판례의 지위는 제각각이며 국내법적 관점에서 제시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25]

5) 학설

학설은 법규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26] ICJ 재판에서 당사국 대표들은 자국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계에서 권위 있는 학자의 저서를 인용하기도 한다.[27] 따라서 유명 학자들의 저서에 서술된 그들의 주장이나 견해를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6) 강행규범

위의 국제법 연원을 근거로 쓰기 전에 해당 주장이 강행규범과 관련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강행규범은 ICJ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28] 이는 조약, 국제관습의 상위에 있는 규범으로 국제 공동체 모두가 수락하며 인정하는 규범을 의미한다.[29] 예를 들어, 영토보전의 원칙이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이라면 이것이 강행규범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해당 원칙이 강행규범일 경우, 사안에서 체결한 조약이 이를 위반하는 내용이면 비엔나 협약 제53조[30]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 Netherlands), Separate Opinion of Judge Fouad Ammoun, ICJ Reports, 1968, p. 133~135.

21) Hugh Thirlway, *supra* note 16, p.120.

22) ICJ규정 59조에 의하면 "본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국 간에 있어서만, 그리고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에서 선례구속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3) Hugh Thirlway, *supra* note 16, p.121, para.1.

24) Ian Brownlie, 정영진, 황준식역, 『이안 브라운리 국제법』, (현암사, 2004), 51면. ; ICJ규정 제38조 제1항(d)에 규정된 판례는 국제법원의 판례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내법원의 판례도 포함한다. Hugh Thirlway, *Ibid*., p. 124, para. 1.

25) Ian Brownlie, 정영진, 황준식역, 앞의 책, 52면.

26) Hugh Thirlway, *supra* note 16, p. 126, para. 2.

27)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5판 (박영사, 2014), 61면.

28) 강행규범의 경우 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제법 연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만약 포함된다면,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이외의 새로운 연원으로 봐야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ICJ는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사건에서 "본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고문 금지는 국제관습법의 일부이고 또한 강행규범이 되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처럼 ICJ는 강행규범을 국제관습법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고 있다. Questions relating to the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Belgium v. Senegal), ICJ Reports 2012, p.457, para.99.

29) 이성덕, "국제강행규범과 대세적 효력 원칙 개념의 비교", 『중앙법학』 제13집 제3호(2011. 9.), 384~385면 참고.

30) 비엔나 협약 제53조에 따르면,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변론서 예시[31)]

예시 1)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Prosperia 국의 행위는 주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적 행위에 원용되는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권으로서의 자결권은 스스로 자유롭게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된 실체로서 정치적 법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인민 또는 민족의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Prosperia국의 Parvus족 살해행위와 같이 민족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유엔인권규약인 ICCPR과 ICESCR모두 동 규약 1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위반하며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국가면제가 원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국가들의 일관된 관행과 확신을 통해 입증된다. 2000년 그리스 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범죄를 행한 독일에 대한 자국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독일의 국가면제를 부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독일이 행한 위법행위는 강행규범을 위반하므로 국가면제가 원용되는 주권행위로 볼 수 없으며, 독일이 묵시적으로 국가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Prosperia 국의 본 사건 강행규범 위반 행위는 주권남용 행위이므로 국가면제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Prosperia국이 스스로 국가면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예시 2) Montania국의 체포영장 발부 행위는 강행규범 위반 시, 국제관습법인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강행규범 위반 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는 각국의 국내법과 사건에서 나타나며 Montania국의 이 사건 행위는 국제관습법인 보편적 관할권을 기초로 하므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유고연방재판소(ICTY)는 Furundzija 사건에서는 고문금지를 강행 규범화하였다. 이를 기초로 피노체트 사건의 Brown-Wilkinson판사는 고문의 강행 규범적 성질 때문에 범죄 발생지를 불문하고 보편적 행사가 정당화 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캐나다는 형법전 제7절에서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를 캐나다 밖에서 저지른 누구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이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Restatement of Foreign Relations Law는 국제 관습법상 제노사이드에 대해서는 보편적 관할권이 확립되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대법원 Cvjetkovio사건에서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각국의 국내입법 따라서, 강행규범 위반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입법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판례가 존재함이 확인된다. 법적확신은 외부로 나타난 국가들의 주관적 태도 즉 국가관행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강행규범 위반 시 보편적 관할권 행사는 국제관습법 상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Montania국이 제노사이드를 지시한 Ambitiono에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는 강행규범 위반 시 보편적 관할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2. 문단 작성

위의 변론서 예시를 살펴보면, 예시 1에서는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Prosperia국의 행위는 주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적 행위에 원용되는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예시 2에서는 "Montania국의 체포영장 발부 행위는 강행규범 위반 시, 국제관습법인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작성하였다. 위 주장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사법판결 및 학자들의 견해를 순서로 그 근거를 작성하면 될 것이나, 이 중 찾지 못한 근거는 넘어가면 된다. 예시 1에서는 조약에 해당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조"와 사법판결에 해당하는 "그리스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예시 2에서는 사법판결에 해당하는 "구유고연방재판소(ICTY)의 Furundzija 사건"과 이에 대한 "ICJ사건의 판사 개별 의견, 국내법과 국내 판결"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3. 각주 및 형식정리

서면 변론서를 쓰다보면 본인이 간과했던 부분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면서 내용수정에만 주력하게 되고, 각주 및 형식 정리는 뒤로 미루게 된다. 필자는 제출일 전날까지도 내용을 고치다가 각주 및 형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마감시간에 맞추어 변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를

31) 외교부, 국제법 동향과 실무 제31호, Vol. 12, No. 3·4, p. 33, 38 발췌.

방지하기 위해, 변론서를 쓰는 과정 중간에 팀원 간 서로 변론서를 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용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내용 작성을 중단하고 각주 및 형식 정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변론서를 처음 써 보는 사람은 대부분 각주 및 형식정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인지하지 못하며, 대략 제출일 하루 전 날부터 시작하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변론서를 써 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듯, 각각의 팀원이 쓴 글을 마치 한 사람이 쓴 글처럼 합본을 만들어서 각주를 정리하고 형식을 맞추는 작업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한다. 특히, 각주 하나 하나 원문 내용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인용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변론서라고 해도 각주 및 형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변론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고 감점을 받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최소한 서면 변론서 제출일 일주일 전부터 각주 및 형식 정리를 시작할 것을 권한다.

V. 구두 변론 준비

1. 구두 변론서 작성

대회 당일 구두 변론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서면 변론서를 제출 한 후, 팀원 모두 최대한 빨리 구두 변론서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 물론, 서면 변론서 작성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많이 지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면 변론서 제출 후, 곧바로 구두 변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구두 변론을 준비하려면, 최대한 빨리 구두 변론서 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최근, 대부분의 모의재판대회에서는 심사를 진행할 때, 서면 변론서 점수보다 대회 당일 구두 변론 점수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서면 변론서 작성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따라서 설령 서면 변론을 기대치보다 잘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두 변론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다면, 서면 변론서 점수를 만회하고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구두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모의 구두 변론

구두 변론서 초안이 어느 정도 작성되면, 팀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팀의 조언자에게 판사역할을 부탁하여 여러 차례 모의 구두 변론을 진행해 보길 권한다. 만약 조언자가 없는 경우, 팀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의 구두 변론을 진행하여 서로 평가 및 검토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두 변론 연습 때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구두 변론서의 양을 잘 맞춰야 한다. 가령, 한 사람 당 구두 변론 시간이 15분이 주어졌다면, 대회 당일에는 긴장해서 말의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의 구두 변론을 할 때 분량을 정확히 15분에 맞춰서는 안 된다. 연습을 할 때는, 다소 천천히 말한다는 느낌으로 분량을 10분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실제 대회 시 변론 중간에 심사위원이 질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면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주어진 시간 내에 준비한 변론을 모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시간이 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러 상황에 대비한 8분, 10분, 12분 분량의 구두 변론을 각각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실전 대회에서 구두 변론 중간에 심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경우, 특히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라면, 이와 같은 경험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크게 당황하기 쉽다. 어떤 질문에도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10개 중 1개는 모르는 질문이 나오기 마련이다. 실전 대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순발력 있게 넘길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르는 질문이 나오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모의재판 대회는 실제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변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국제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은 서면 및 구두 변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기초 지식을 질문하기도 한다. 가령, 유엔총회결의안의 법적 구속력, ILC 국가책임초안의 법적 지위, 국제관습법의 구성요소에 관한 내용은 국제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질문할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넷째, 구두 변론서는 구두 변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핵심만 전달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팀원 모두가 구두 변론서를 모두 암기해서 변론한다면, 심사위원들에게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

다섯째, 모든 팀원들은 예의를 갖춰서 구두 변론에 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의 구두 변론 시 인사하는 태도, 호칭, 답변을 하지 못했을 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 모두 미리 연습 해두어야 한다.

여섯째, 예상 질문과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구두 변론서를 작성하고 모의 구두 변론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나올 것 같은 질문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완벽하게 숙지해야 할 것이다. "~조약에 따르면", "~판례에 따르면"이라고 시작함으로써 답변 내용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하게 생각합니다" 또는 "~것 같습니다"와 같은 확신이 없어 보이는 표현은 지양하되,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답변을 길게 할 수는 있으나, 말이 길어질수록 핵심이 흐려지거나 잘못된 내용을 언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짧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한다.

3. 반론서 작성

대회마다 다르지만 대회 측에서는 대회 당일 하루 전에서 3일 전에 상대편의 변론서를 팀원들에게 발송해 준다. 상대편의 변론서를 받으면, 모의 구두 변론 일정을 중단하고 반론서를 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상대편의 서면 변론서에 대한 반론서를 작성해 간다고 해도, 막상 대회 당일에 가보면 상대편 또한 서면 변론서의 주장을 고쳐서 구두 변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반론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뒤, 상대국의 구두 변론을 들었을 때 변경된 논리나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미리 준비해 온 반론서를 고쳐나가면 된다. 주의할 점은 반론서를 급히 고치다가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아 당황함으로써 제대로 반론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반론 시간은 대체로 5분 내외이기 때문에 서로의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두 명 중 순발력과 대처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반론을 하도록 미리 정해야 할 것이다. 순발력 있고 조리 있게 반론 시간을 쓰는 능력이 곧 대회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VI. 결론

모의재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다 못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므로, 필자는 이를 끝낼 때마다 다시는 대회에 참여하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그러나 국제법 실력을 비롯하여 자료를 찾아서 연구하고 이를 글로 써내는 능력과 발표력이 놀랍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싶은 열정과 욕심에서 매 번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다른 팀원을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를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마음가짐, 학문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태도를 배운 것이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의재판대회에 참가하여, 그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국제법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

UN 총회 문서

I. 제71차 유엔총회 결의

제71차 유엔총회 회기 중 작성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에 관한 결의
-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의 정치적 선언에 관한 결의
- 쿠바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경제적·상업적 및 재정적 금수조치를 종결할 필요성에 관한 결의
- 민주주의 교육 관련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에 관한 결의 (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 A/RES/71/1)

유엔총회는 2016년 9월 19일자 결의를 통해 난민과 이주민들의 대규모 이주 문제를 다룬 고위급회의의 결과물인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는 모든 난민과 이주민의 평등하고 완전한 인권 보호, 아동 이주자와 난민들에게 기본적인 건강, 교육 및 사회심리 발달의 제공 및 영토내 출생 등록, 성과 성별에 근거한 폭력 예방 및 성 및 생식보건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공, 이주민·난민 대규모 수용국 지원,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인정한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주거 및 재정착 지원, 이주 문제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를 유엔의 관련기구(related organization)로의 편입 환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의 정치적 선언에 관한 결의 (Politic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antimicrobial resistance, A/RES/71/3)

유엔총회는 2016년 10월 5일자 결의를 통해, 2016년 9월 21일에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에서 승인된 정치적 선언을 채택하였다. 동 정치적 선언은 항생제 남용과 내성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항생제의 효과적이고 신중한 사용이 글로벌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품질 좋고 안전하며, 저렴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항생제의 보존·사용 및 판매를 효과적으로 감시·감독 및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 진단, 백신 및 기타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해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한 기금 마련 및 관련 기반 시설 강화 등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였다.

3. 쿠바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경제적·상업적 및 재정적 금수조치를 종결할 필요성에 관한 결의 (Necessity of ending the economic, commercial and financial embargo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Cuba, A/RES/71/5)

유엔총회는 2016년 10월 26일자 결의를 통해 쿠바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경제적·상업적 및 재정적 금수조치를 종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해마다 채택된 동 결의에 대해 항상 반대 표시를 해오던 미국은 처음으로 결의 채택에 대해 기권하였고, 이날 동 결의는 찬성 187, 반대 2, 기권 3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총회는 동 결의를 통해 미국이 가능한 한 자국의 법 체제 내에서 금수조치를 폐지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한 법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4.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결의 (Education for democracy, A/RES/71/8)

유엔총회는 2016년 11월 16일자 결의를 통해 인권교육, 훈련 및 학습과 민주주의 교육의 상호 보완과 상호 강화를 강조하며,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체계를 결정하려는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과 개인의 사람의 모든 측면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동 결의는 사무총장 및 유네스코,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유엔개발계획, UN-Women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 유엔기관이 교육을 통해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 증진과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과 사법을 존중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장려하였다. 총회는 또한 동 결의를 통해 회원국과 국가 및 지역의 교육 관련 당국이 가능한 한 민주주의 교육과 함께 시민교육, 인권 교육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교육을 통합시킬 것을 강력히 권장하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I. 주요 결의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결의는 다음과 같다.[1)]

- 콜롬비아 상황에 관한 결의
- '테러리스트 행위로 인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항공 보안'에 관한 결의
- 중동(시리아) 사태에 관한 결의
- 유엔사무총장 임명 권고에 관한 결의
- 핵비확산/북한에 관한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콜롬비아 상황에 관한 결의 (Identical letters dated 19 January 2016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Colomb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2016/53), S/RES/2307 (2016))

안보리는 2016년 9월 13일 결의를 통해, 2016년 8월 24일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인민부대(FARC-EP) 간의 분쟁 종식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최종 합의를 환영하며, 50년을 넘는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결정을 칭찬했다. 안보리는 또한 콜롬비아 정부와 FARC-EP가 삼자 모니터링과 검증 메커니즘(MVM)을 규정한 "종전(終戰)과 적대행위 중지 및 무기사용 중지에 관한 협정"(he Agreement on the Bilateral and Definitive Ceasefire and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Laying down of Arms)을 환영하였다. 안보리는 MVM의 국제 부분 및 조정자로서 12개월 동안 참여할 정치적 임무단(the Mission)을 설치하는 안보리 결의 2261을 상기하며, 유엔과 콜롬비아 정부간의 임무 협정(a Status of Mission Agreement(SOMA))의 향후 결론에 대한 기대를 표하였다. 안보리는 사무총장 보고서 S/2016/729를 환영하며, 정치적 임무단(the Mission)의 규모, 운영 및 위임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승인하였다. 또한 MVM의 신속한 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임무단(the Mission)이 토지 이전 지역의 정상화를 위한 준비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콜롬비아와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참고로 1906년대에 토지소유권 문제로 시작된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좌파 반국간의 무력 분쟁으로 그 동안 무려 26만명이 숨졌고 4만5000명이 실종되었으며 피난민도 700만명이 발생했다.

1)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는 총 16개이다.

2. '테러리스트 행위로 인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항공 보안'에 관한 결의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errorist acts: Aviation security, S/RES/2309 (2016))

안보리는 2016년 9월 22일, 전 세계 공항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보안 검색 강화 외에도 테러 관련 정보를 회원국끼리 공유하고, 자국 영토에서 운항하는 항공사는 영토의 출국, 또는 입국을 시도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 비행기 탑승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안보리는 동 결의에서 테러리스트 집단이 생명의 손실, 경제적 타격 및 국가들 간의 연계 파괴를 목표로, 민간 항공을 매력적인 타겟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테러리스트가 민간 항공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공격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3. 중동(시리아) 사태에 관한 결의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Syria), S/RES/2319 (2016))

안보리는 2016년 10월 31일 결의를 통해,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을 허락한 세력의 배후 조사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35에 따라 설치된 합동수사반(the Joint Investigative Mechanism, JIM)의 임무 수행 기한을 2016년 11월 18일까지 연장하였다. 안보리 결의 2235에 따르면 합동수사반의 임기는 2016년 10월 31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임무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임무 수행 기간을 2주 더 연장하였다.

4. 유엔사무총장 임명 권고에 관한 결의 (Recommendation for the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RES/2311 (2016))

안보리는 2016년 10월 6일 결의를 통해 유엔 차기 사무총장으로 포르투갈 출신의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의 임명을 총회에 권고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은 유엔헌장 제97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는 결의 71/4를 통해 안토니오 구테헤스를 새 유엔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새 유엔사무총장의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5. 핵비확산/북한에 관한 결의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RES/2321 (2016))

안보리는 2016년 11월 30일 결의를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해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 및 강화하였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안보리 결의의 구체적인 제재 사항은 이번 동향과 실무에 실린 외교부 새소식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2016. 11. 30)"을 참고.)

UN 인권이사회 문서

I. 제33차 정기회기 결의

유엔인권이사회 제33차 정기회기(2016. 9. 13 - 2016. 9. 30)에서 채택된 결의는 다음과 같다.

- 33/1,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including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HRC/33/L.2
- 33/2, The safety of journalists, A/HRC/33/L.6
- 33/3, Promotion of a democratic and equitable international order, A/HRC/33/L.7
- 33/4,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A/HRC/33/L.8
- 33/5,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HRC/33/L.9
- 33/6, The role of prevention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HRC/33/L.12
- 33/7, Unaccompanied migran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human rights, A/HRC/33/L.13
- 33/8,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A/HRC/33/L.14/Rev.1
- 33/9,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A/HRC/33/L.15
- 33/10, The human rights to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A/HRC/33/L.19
- 33/11, Preventable mortality and morbidity of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as a human rights concern, A/HRC/33/L.20
- 33/12, Human rights and indigenous peoples: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HRC/33/L.23
- 33/13, Human rights and indigenous peoples, A/HRC/33/L.24
- 33/14, The right to development, A/HRC/33/L.29
- 33/15,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HRC/33/L.17/Rev.1
- 33/16,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for Yeme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HRC/33/L.5
- 33/17, Assistance to Somalia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HRC/33/L.11/Rev.1
- 33/18, Preventable maternal mortality and morbidity and human rights, A/HRC/33/L.3/Rev.1
- 33/19, Human rights and transitional justice, A/HRC/33/L.10
- 33/20, Cultural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HRC/33/L.21
- 33/21,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HRC/33/L.27/Rev.1
- 33/22, Equal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affairs, A/HRC/33/L.28
- 33/23,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Syrian Arab Republic, A/HRC/33/L.30

- 33/24,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Burundi, A/HRC/33/L.31
- 33/25, Expert Mechanism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HRC/33/L.25
- 33/26,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to improve human rights in the Sudan, A/HRC/33/L.4
- 33/27,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A/HRC/33/L.16
- 33/28, Enhanc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building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HRC/33/L.18
- 33/29,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for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HRC/33/L.26
- 33/30, Arbitrary detention, A/HRC/33/L.22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언론인의 안전에 관한 결의 (The safety of journalists, 33/2, A/HRC/33/L.2)

인권이사회는 2016년 9월 29일 채택된 이 결의에서 언론인의 안전과 면제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최근 보고서를 환영하고, 살해, 고문, 강제 실종, 자의적 체포 및 임의 구금, 추방, 협박, 괴롭힘, 위협 및 기타 폭력 행위를 포함하여 언론인 및 언론관련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테러집단과 범죄조직을 포함한 비국가행위자들에 의한 언론인 안전의 위협이 점차 커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인권이사회는 국가들이 자국 영역안에서의 언론인에 대한 폭력, 위협 및 공격을 방지하고, 언론인에 대한 위협 및 공격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권이사회는 또한 언론인이 부당한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촉구하였다.

2. 인권을 침해하고 인민의 자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써 용병의 사용에 관한 결의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33/4, A/HRC/33/L.8)

인권이사회는 2016년 9월 29일 채택된 이 결의에서, 용병의 고용 및 이들의 모집, 자금 조달, 보호 및 훈련은 모든 국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며, 유엔헌장이 명시한 목적 및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인권이사회는 무력충돌, 테러리즘, 무기 밀거래 및 제3국에 의한 은밀작전(covert operations)이 특히 국제시장에서 용병과 민간 군사 및 보안 회사에 대한 수요를 촉진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모든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용병의 활동에 의해 야기된 위협에 대해 최대한 주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권이사회는 또한 모든 국가가 자국의 영역과 자국의 통제하에 있는 타국의 영역 및 자국민이, 자결권을 저해하거나 어느 국가의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주권 국가 및 독립국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단합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해체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용병의 고용, 모집, 자금 조달, 훈련, 보호 및 이송에 이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권이사회는 이 결의를 통해 2008년 3월 28일 7/21결의와 이 주제에 관한 기타 모든 결의에 따라 인권이사회가 정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실무그룹의 수임을 3년 갱신하였다.

3. 인권과 선주민: 선주민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수임에 관한 결의 (Human rights and indigenous peoples: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33/12, A/HRC/33/L.23)

인권이사회는 2016년 9월 29일 채택된 이 결의에서 선주민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수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선주민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원주민의 권리를 완전하고 충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모범적 사례를 확인하고, 교환하며, 이를 홍보해야 한다. 또한 선주민 권리의 침해 및 침해 혐의에 대해 관련 정부, 선주민 및 그들의 공동체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 요청, 접수 및 교환해야 한다. 선주민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선주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및 활동에 대해 권고하고 제안해야 하며, 업무에 관한 연례 프로그램에 따라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임무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예방가능한 모성의 사망률과 이환율 (罹患率, morbidity) 그리고 인권에 관한 결의 (Preventable maternal mortality and morbidity and human rights, 33/18, A/HRC/33/L.3/Rev.1)

인권이사회는 2016년 9월 29일 채택된 이 결의에서, 1990년 이래로 모성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여성과 소녀에 대한 산모 사망은 30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이것은 때때로 평생 지속되며, 이러한 상태는 인권과 전반적인 복지의 향유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인권이사회는 모든 국가가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가능한 모성 사망률 및 이환율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약속을 갱신하고 이중·삼중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성(性) 및 생식보건 시설, 서비스, 상품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며,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권이사회는 제34차 정기회기에서 예방가능한 모성 사망률 및 이환율에 관한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생식보건 및 재생산권 간의 연계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UN 사무총장 보고서

I. 보고서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유엔 기구의 업무 관련 보고서와 안보리·총회·경제사회이사회의 요청에 따른 보고서가 있다. 2016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무총장이 제출한 국제법 관련 주요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의 유엔에 관한 보고서
- 인도적 지원 관계자의 안전과 안보 및 유엔 직원의 보호에 관한 보고서
-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거래에 관한 보고서
-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 아이티의 콜레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보고서

II. 주요 보고서 내용

1.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의 유엔에 관한 보고서 (The United Nations in global economic governance, A/71/378, 14 September 2016, 유엔총회에 제출)

유엔총회 결의 67/289에 따라 제출된 이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의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2015년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아디스아바바 행동 아젠다(Addis Ababa Action Agenda) 및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채택을 상세히 설명한다. 동 보고서는 이 보편적 합의들이 모든 회원국들의 각기 다른 국가적 현실과 역량 및 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들에 의한 17개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글로벌 프레임 워크를 수립한다고 설명한다. 이 보고서는 유엔 체제, 주요 국가별 그룹핑, 국제 금융 및 무역기구가 국제 금융과 유엔 주도의 이러한 성과들과 그들의 사업 계획을 일치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설명한다.

2. 인도적 지원 관계자의 안전과 안보 및 유엔 직원의 보호에 관한 보고서 (Safety and security of humanitarian personnel and protection of United Nations personnel, A/71/395, 21 September 2016)

유엔총회는 결의 70/104를 통해 사무총장에게 인도적 지원 관계자의 안전과 안보 및 유엔 직원의 보호와 권고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총회 제71차 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총회는 또한 사무총장에게 안전 및 안보 위험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안전과 안보 분야에서의 유엔 체제의 정책, 전략 및 이니셔티브의 개발, 이행 및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안보 환경의 개오, 유엔 직원에 대한 관련 보안 위협 및 영향,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보고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안보 추세에 대한 분석과 유엔 직원에 대한 영

향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안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필요한 추가 요구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회의 검토가 필요한 의견과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3.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거래에 관한 보고서(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 all its aspects, A/71/438, A/CONF.192/BMS/2016/1, 4 October 2016)

유엔총회는 70/49 결의에서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거래 방지,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유엔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5차 격년회의(the Fifth Biennial Meeting of States to 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Action to Prevent)에서 나온 권고와 요청사항을 고려하면서. 사무총장에게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71차 정기회기때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소형 및 경화기의 불법거래와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거래 방지,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유엔행동계획」의 일반적인 이행; (b)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기술, 디자인 및 제조의 최근 발전과 이것이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표지 및 추적에 관한 국제문서」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미치는 영향; (c) 2001년 이후,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및 장비의 이전을 포함하여 재정 및 기술 지원의 적절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4.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71/439, 7 October 2016)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70/172 및 69/188에 따라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 및 유엔 및 북한 정부의 개입에 관해 개관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정보는 심각한 인권 침해 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의 해결과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제공한다.

5. 아이티의 콜레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보고서 (A new approach to cholera in Haiti, A/71/620, 25 November 2016)

2016년 8월 19일, 유엔사무총장은 아이티의 콜레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했다. 그는 공개 성명을 통해, 콜레라 감염병으로 인하여 아이티 국민들이 겪었던 심각한 고통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하며, 유엔이 콜레라 감염병의 희생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고 아이티가 전염병을 극복하고 안전한 물과 위생 및 보건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아이티에서 콜레라는 퇴치하기 해서는 아이티 정부와 국제공동체의 완전한 이행과, 결정적으로 이 공동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로운 접근법은 투트랙 방식인데, 첫 번째 트랙은 콜레라 감염병의 발병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종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치료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아이티의 물과 위생 및 보건체계의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두 번째 트랙은 콜레라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아이티인들에게 물질적 도움과 지원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의 개발을 포함한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감염병 피해자와 그 가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들이 콜레라를 퇴치하고 감염병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제공을 증진함으로써 아이티 주민들과의 연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투트랙 접근법—트랙 1과 트랙2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행과 관련된 도전과제를 확인하면서 이행의 기한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인도)* 사건에 대해 인도가 제기한 관할권 항변 인정

2015년 10월 5일, ICJ는 마셜군도가 제소한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인도) 사건에 대해 인도의 관할권 항변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ICJ는 9대 7로 두 당사국 간에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인도가 제기한 관할권 항변을 인정하였고, 10대 6으로 이 사안의 본안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참고로 동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2014년 4월 24일 마셜군도는 NPT에서 인정하는 핵 보유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과 잠재적 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4개국, 총 9개국이 핵 군축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NPT 위반이라며 9개국을 상대로 각각 별개의 제소를 하였다. (관련 기사: ICJ Press Release No. 2014/18, 25 April 2014) 이 중 마셜군도의 제소 이전에 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영국, 인도,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사건 목록(General List)에 기재되었고, 나머지 6개국의 경우에는 마셜군도의 소제기에 응하지 않아 사건이 사건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후 영국, 인도, 파키스탄은 ICJ에 관할권 등에 관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16/29
5 October 2016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Marshall Islands v. India)

The Court upholds the objection to jurisdiction raised by India, based on the abs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nd finds that it cannot proceed to the merits of the case

THE HAGUE, 5 October 2016.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today delivered its Judgment on the objections raised by India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in the case regarding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Marshall Islands v. India).

In its Judgment, which is final and without appeal, the Court

(1) Upholds, by nine votes to seven, the objection to jurisdiction raised by India, based on the abs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2) Finds, by ten votes to six, that it cannot proceed to the merits of the case.

The Court's reasoning

The Court recalls that the Marshall Islands filed an Application against India alleging a failure to fulfil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India raised several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and the Marshall Islands requested the Court to reject these objections. The Court first considers India's objection based on the alleged abs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The Court observes that the exist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s a condition of the Court's jurisdiction. It recalls that, in order for a dispute to exist, the two sides must hold clearly opposite views concerning the question of the performance or non-performance of certain international obligations. It states that a dispute exists when the evidence demonstrates that the respondent was aware,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that its views were positively opposed by the applicant. It notes that the existence of a dispute is to be determined in principle as of the date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The Court turns to the Marshall Islands' assertion that its statements in multilateral fora show that there was a dispute between it and India. It observes that the Marshall Islands refers to two such statements: a statement made at the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Nuclear Disarmament, on 26 September 2013 by its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urg[ing] all nuclear weapons states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their responsibilities in moving towards an effective and secure disarmament", and a statement made by its representative at Nayarit, Mexico, on 13 February 2014, in the context of the Second Conference on the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which reads as follows:

> "[T]he Marshall Islands is convinced that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achieving and sustaining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are long overdue. Indeed we believe that States

possessing nuclear arsenals are failing to fulfil their legal obligations in this regard. Immediate commencement and conclusion of such negotiations is required by legal obligation of nuclear disarmament resting upon each and every State under Article VI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Court finds that the first statement is formulated in hortatory terms and cannot be understood as an allegation that India was in breach of any of its legal obligations. As to the second statement, the Court notes that it was made at a conference dealing not with the question of negotiations with a view to nuclear disarmament, but with the broader question of the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Moreover, the statement is a general criticism of the conduct of all nuclear-weapon States and does not specify the conduct of India allegedly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The Court holds that, given its very general content and the context in which it was made, that statement did not call for a specific reaction by India, so no opposition of views can be inferred from the absence of any such reaction. The Court concludes that, on the basis of those two statements — whether taken individually or together — it cannot be said that India was aware,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that the Marshall Islands was making an allegation that India was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These statements were thus insufficient to bring into existence a legal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 Court then considers the Marshall Islands' argument that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and the Parties' positions during the proceedings show the existence of a dispute. The Court states that although statements made or claims advanced in or even subsequently to the Application may be relevant for various purposes — notably in clarifying the scope of the dispute submitted — they cannot create a dispute de novo, one that does not already exist.

Finally, the Court turns to the Marshall Islands' argument that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an be inferred from India's conduct. The Court recalls that neither of the Marshall Islands' statements made in multilateral fora offered any particulars regarding India's conduct. In this context, the Court concludes that India's conduct cannot show an opposition of views and does not provide a basis for finding a dispute between the two States.

The Court therefore concludes that India's objection to jurisdiction based on the abs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must be upheld. It further concludes that, lacking jurisdiction under Article 36, paragraph 2, of its Statute, it cannot proceed to the merits of the case. Given this conclusion, the Court finds no need to consider the other objections raised by India.

*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Abraham; Vice-President Yusuf; Judges Owada,

Tomka, Bennouna, Cançado Trindade, Greenwood, Xu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Judge ad hoc Bedjaoui; Registrar Couvreur.

President ABRAHAM and Vice-President YUSUF append declarat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OWADA and TOMKA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BENNOUNA and CANÇADO TRINDADE append dissenting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XUE, DONOGHUE and GAJA append declarat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SEBUTINDE and BHANDARI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ROBINSON and CRAWFORD append dissenting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ad hoc BEDJAOUI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

A summary of the Judgment appears in the document "Summary No. 2016/3". This press release,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nd its full text can be found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Cases".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r. Boris Heim,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J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파키스탄)* 사건에 대해 파키스탄이 제기한 관할권 항변 인정

2015년 10월 5일, ICJ는 마셜군도가 제소한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파키스탄) 사건에 대해 파키스탄의 관할권 항변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ICJ는 9대 7로 두 당사국 간에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파키스탄이 제기한 관할권 항변을 인정하였고, 10대 6으로 이 사안의 본안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16/30
5 October 2016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Marshall Islands v. Pakistan)

The Court upholds the objection to jurisdiction raised by Pakistan, based on the abs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nd finds that it cannot proceed to the merits of the case

THE HAGUE, 5 October 2016.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today delivered its Judgment on the objections raised by Pakistan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in the case regarding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Marshall Islands v. Pakistan).

In its Judgment, which is final and without appeal, the Court

(1) Upholds, by nine votes to seven, the objection to jurisdiction raised by Pakistan, based on the abs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2) Finds, by ten votes to six, that it cannot proceed to the merits of the case.

The Court's reasoning

The Court recalls that the Marshall Islands filed an Application against Pakistan alleging a failure to fulfil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Pakistan raised several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and the Marshall Islands requested the Court to reject these objections. The Court first considers Pakistan's objection based on the alleged abs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The Court observes that the exist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s a condition of the Court's jurisdiction. It recalls that, in order for a dispute to exist, the two sides must hold clearly opposite views concerning the question of the performance or non-performance of certain international obligations. It states that a dispute exists when the evidence demonstrates that the respondent was aware,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that its views were positively opposed by the applicant. It notes that the existence of a dispute is to be determined in principle as of the date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The Court turns to the Marshall Islands' assertion that its statements in multilateral fora show that there was a dispute between it and Pakistan. It observes that the Marshall Islands refers to two such statements: a statement made at the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Nuclear Disarmament, on 26 September 2013 by its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urg[ing] all nuclear weapons states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their responsibilities in moving towards an effective and secure disarmament", and a statement made by its representative at Nayarit, Mexico, on 13 February 2014, in the context of the Second Conference on the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which reads as follows:

> "[T]he Marshall Islands is convinced that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achieving and sustaining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are long overdue. Indeed we believe that States possessing nuclear arsenals are failing to fulfil their legal obligations in this regard. Immediate commencement and conclusion of such negotiations is required by legal obligation of nuclear disarmament resting upon each and every State under Article VI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Court finds that the first statement is formulated in hortatory terms and cannot be understood as an allegation that Pakistan was in breach of any of its legal obligations. As to the second statement,

the Court notes that it was made at a conference dealing not with the question of negotiations with a view to nuclear disarmament, but with the broader question of the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Moreover, the statement is a general criticism of the conduct of all nuclear-weapon States and does not specify the conduct of Pakistan allegedly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The Court holds that, given its very general content and the context in which it was made, that statement did not call for a specific reaction by Pakistan, so no opposition of views can be inferred from the absence of any such reaction. The Court concludes that, on the basis of those two statements — whether taken individually or together — it cannot be said that Pakistan was aware,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that the Marshall Islands was making an allegation that Pakistan was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These statements were thus insufficient to bring into existence a legal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 Court then considers the Marshall Islands' argument that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and the Parties' positions during the proceedings show the existence of a dispute. The Court states that although statements made or claims advanced in or even subsequently to the Application may be relevant for various purposes — notably in clarifying the scope of the dispute submitted — they cannot create a dispute de novo, one that does not already exist.

Finally, the Court turns to the Marshall Islands' argument that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an be inferred from Pakistan's conduct. The Court recalls that neither of the Marshall Islands' statements made in multilateral fora offered any particulars regarding Pakistan's conduct. In this context, the Court concludes that Pakistan's conduct cannot show an opposition of views and does not provide a basis for finding a dispute between the two States.

The Court therefore concludes that Pakistan's objection to jurisdiction based on the abs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must be upheld. It further concludes that, lacking jurisdiction under Article 36, paragraph 2, of its Statute, it cannot proceed to the merits of the case. Given this conclusion, the Court finds no need to consider the other objections raised by Pakistan.

*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Abraham; Vice-President Yusuf; Judges Owada, Tomka, Bennouna, Cançado Trindade, Greenwood, Xu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Judge ad hoc Bedjaoui; Registrar Couvreur.

President ABRAHAM and Vice-President YUSUF append declarat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OWADA and TOMKA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BENNOUNA and CANÇADO TRINDADE append dissenting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XUE, DONOGHUE and GAJA append declarat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SEBUTINDE and

BHANDARI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ROBINSON and CRAWFORD append dissenting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ad hoc BEDJAOUI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

A summary of the Judgment appears in the document "Summary No. 2016/4". This press release,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nd its full text can be found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Cases".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r. Boris Heim,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J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영국)* 사건에 대해 영국이 제기한 관할권 항변 인정

2015년 10월 5일, ICJ는 마셜군도가 제소한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영국) 사건에 대해 영국의 관할권 항변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ICJ는 8대 8, 가부동수로 재판장의 결정투표(casting vote)를 통해 두 당사국 간에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영국이 제기한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인정하였고, 9대 7로 이 사안의 본안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16/31
5 October 2016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Marshall Islands v. United Kingdom)

The Court upholds the first preliminary objection to jurisdiction raised by the United Kingdom, based on the abs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nd finds that it cannot proceed to the merits of the case

THE HAGUE, 5 October 2016.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today delivered its Judgment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United Kingdom in the case regarding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Marshall Islands v. United Kingdom).

In its Judgment, which is final and without appeal, the Court

(1) Upholds, by eight votes to eight, by the President's casting vote, the first preliminary objection to jurisdiction raised by the United Kingdom, based on the abs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2) Finds, by nine votes to seven, that it cannot proceed to the merits of the case.

The Court's reasoning

The Court recalls that the Marshall Islands filed an Application against the United Kingdom alleging a failure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VI of the 1968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correspond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The United Kingdom raised five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and the Marshall Islands requested the Court to reject these preliminary objections. The Court first considers the United Kingdom's preliminary objection based on the alleged abs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The Court observes that the exist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s a condition of the Court's jurisdiction. It recalls that, in order for a dispute to exist, the two sides must hold clearly opposite views concerning the question of the performance or non-performance of certain international obligations. It states that a dispute exists when the evidence demonstrates that the respondent was aware,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that its views were positively opposed by the applicant. It notes that the existence of a dispute is to be determined in principle as of the date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The Court turns to the Marshall Islands' assertion that its statements in multilateral fora show that there was a dispute between it and the United Kingdom. It observes that the Marshall Islands refers in particular to a statement made at the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Nuclear Disarmament, on 26 September 2013 by its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urg[ing] all nuclear weapons states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their responsibilities in moving towards an effective and secure disarmament", and a statement made by its representative at Nayarit, Mexico, on 13 February 2014, in the context of the Second Conference on the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which reads as follows:

> "[T]he Marshall Islands is convinced that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achieving and sustaining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are long overdue. Indeed we believe that States possessing nuclear arsenals are failing to fulfil their legal obligations in this regard. Immediate commencement and conclusion of such negotiations is required by legal obligation of nuclear disarmament resting upon each and every State under Article VI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Court finds that the first statement is formulated in hortatory terms and cannot be understood as an allegation that the United Kingdom was in breach of any of its legal obligations. As to the second statement, the Court notes that it was made at a conference at which the United Kingdom was not

present, and which was dealing not with the question of negotiations with a view to nuclear disarmament, but with the broader question of the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Moreover, the statement is a general criticism of the conduct of all nuclear-weapon States and does not specify the conduct of the United Kingdom allegedly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The Court holds that, given its very general content and the context in which it was made, that statement did not call for a specific reaction by the United Kingdom, so no opposition of views can be inferred from the absence of any such reaction. The Court also observes that none of the other more general statements relied on by the Marshall Islands supports the existence of a dispute. The Court concludes that, on the basis of those statements — whether taken individually or together — it cannot be said that the United Kingdom was aware,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that the Marshall Islands was making an allegation that United Kingdom was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These statements were thus insufficient to bring into existence a legal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 Court then considers the Marshall Islands' argument that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and the Parties' positions during the proceedings show the existence of a dispute. The Court states that although statements made or claims advanced in or even subsequently to the Application may be relevant for various purposes — notably in clarifying the scope of the dispute submitted — they cannot create a dispute de novo, one that does not already exist.

The Court then examines the Marshall Islands' argument that a dispute may be established based on the Parties' voting records in multilateral fora on nuclear disarmament. In the Court's view, considerable care is required before inferring the existence of a dispute from votes cast on resolutions before political organs such as the General Assembly. It concludes that a State's vote on resolutions containing a number of propositions cannot in itself establish the existence of a dispute between that State and another State regarding one of those propositions.

Finally, the Court turns to the Marshall Islands' argument that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an be inferred from the United Kingdom's conduct. The Court recalls that none of the Marshall Islands' statements made in multilateral fora offered any particulars regarding the United Kingdom's conduct. In this context,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United Kingdom's conduct cannot show an opposition of views and does not provide a basis for finding a dispute between the two States.

The Court therefore concludes that the United Kingdom's first preliminary objection must be upheld. It further concludes that, lacking jurisdiction under Article 36, paragraph 2, of its Statute, it cannot proceed to the merits of the case. Given this conclusion, the Court finds no need to consider the other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United Kingdom.

*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Abraham; Vice-President Yusuf; Judges Owada, Tomka, Bennouna, Cançado Trindade, Greenwood, Xu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Judge ad hoc Bedjaoui; Registrar Couvreur.

President ABRAHAM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Vice-President YUSUF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OWADA and TOMKA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BENNOUNA and CANÇADO TRINDADE append dissenting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XUE, DONOGHUE and GAJA append declarat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SEBUTINDE and BHANDARI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s ROBINSON and CRAWFORD append dissenting opinions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Judge ad hoc BEDJAOUI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

A summary of the Judgment appears in the document "Summary No. 2016/5". This press release,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nd its full text can be found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Cases".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r. Boris Heim,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 ICC 1심재판부 VIII, 알마흐디에 대해 역사적·종교적 문화재를 파괴한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 및 징역 9년 선고

상황: 말리공화국
사건: *The Prosecutor v. Ahmad Al Faqi Al Mahdi*

2016년 9월 27일, **ICC** 1심재판부 VIII는 *The Prosecutor v. Ahmad Al Faqi Al Mahdi*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2012년 6월과 7월에 팀북투(Timbuktu)와 말리에 있는 역사적·종교적 문화재를 고의로 파괴한 전쟁범죄의 공범으로 알마흐디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문화유산의 파괴를 전쟁범죄로 처벌한 ICC 최초의 사례이다. 재판부는 알마흐디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알 마흐디가 이끄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안사르 디네'는 말리 북부 투아레그 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알카에다 연계 단체로, 2012년 6월 30일부터 2012년 7월 11일 사이에 팀북투에 있는 이슬람 사원과 영묘 9곳을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파괴했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7 September 2016 | العربية

ICC Trial Chamber VIII declares Mr Al Mahdi guilty of the war crime of attacking historic and religious buildings in Timbuktu and sentences him to nine years' imprisonment

ICC-CPI-20160927-PR1242



© ICC-CPI

Today, 27 September 2016, Trial Chamber VI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delivered

its Judgment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Ahmad Al Faqi Al Mahdi*. The Chamber unanimously found Mr Al Mahdi guilty beyond reasonable doubt as a co-perpetrator of the war crime consisting in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religious and historic buildings in Timbuktu, Mali, in June and July 2012. The Chamber sentenced Mr Al Mahdi to nine years' imprisonment. The time he has spent in detention since his arrest upon the ICC warrant issued on 18 September 2015 will be deducted from the sentence.

ICC Trial Chamber VIII is composed of Judge Raul C. Pangalangan (Presiding Judge), Judge Antoine Kesia-Mbe Mindua and Judge Bertram Schmitt. In an open session the Presiding Judge read a summary of the judgment and sentence.

Admission of guilt

On 22 August 2016, at the opening of the trial, Mr Al Mahdi admitted guilt to the war crime consisting in attacking 10 historic and religious monuments in Timbuktu, Mali, between around 30 June 2012 and 11 July 2012. In its Judgment, the Chamber was satisfied that the Accused understands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admission of guilt and that his admission was voluntarily made after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Defence counsel and is supported by the facts of the case.

Factual findings

In January 2012, a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ook place in the territory of Mali. In the context of and in relation to that conflict, armed violence took place and led to different armed groups taking control of the north of the country. In early April 2012, following the retreat of Malian armed forces, the groups Ansar Dine and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AQIM) took control of Timbuktu. From then until January 2013, Ansar Dine and AQIM imposed their religious and political edicts on the territory of Timbuktu and its people. They did so through a local government, which included an Islamic tribunal, an Islamic police force, a media commission and a morality brigade called the *Hesbah*.

Mr Al Mahdi was viewed as an expert on matters of religion, and was consulted in this capacity, including by the Islamic tribunal. Mr Al Mahdi was very active in aspects of the Ansar Dine and AQIM administration. He led the *Hesbah* from its creation in April 2012 until September 2012 and wrote a document on its role and objectives.

In late June 2012, the leader of Ansar Dine – Iyad Ag Ghaly – made the decision to destroy the mausoleums, in consultation with two prominent AQIM members – Abdallah Al Chinguetti and Yahia Abou Al Hamman. Mr Al Mahdi was also consulted by the governor of Timbuktu, Abou Zeid, before this decision was made and expressed his opinion that all Islamic jurists agree on the prohibition of any construction over a tomb, but recommended not destroying the mausoleums so as to maintain

relations between the population and the occupying groups. Nevertheless, Ag Ghaly gave the instruction to proceed to Abou Zeid, who in turn transmitted it to Mr Al Mahdi in his capacity as the chief of the *Hesbah*. Despite his initial reservations, Mr Al Mahdi agreed to conduct the attack without hesitation on receipt of the instruction. Mr Al Mahdi wrote a sermon dedicated to the destruction of the mausoleums, which was read at the Friday prayer at the launch of the attack. He personally determined the sequence in which the buildings were to be attacked.

The attack itself was carried out between around 30 June 2012 and 11 July 2012. Ten of the most important and well-known sites in Timbuktu were attacked and destroyed by Mr Al Mahdi and other individuals. All these sites were dedicated to religion and historic monuments, and were not military objectives.

Mr Al Mahdi's role

In respect of the role played by Mr Al Mahdi, the Chamber considered that Mr Al Mahdi's contributions collectively qualify as essential.

The Chamber found that Mr Al Mahdi knew that he exercised joint control over the attack and was fully implicated in its execution. He was the head of the *Hesbah*, one of four primary institutions established by Ansar Dine and AQIM upon occupying Timbuktu. He had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execution phase of the attack, supervising the execution of the operations, using the *Hesbah's* members and determining the sequence in which the buildings would be destroyed, making the necessary logistical arrangements and justifying the attack to the broader world through media interviews. He also was present at all of the attack sites, giving instructions and moral support, and he personally participated in the attack that led to the destruction of at least five sites.

Sentence

To determine the nine-year sentence, the Chamber took into consideration the gravity of the crime, Mr Al Mahdi's culpable conduct and his individual circumstances. The Chamber also noted that, even if inherently grave, crimes against property are generally of less gravity than crimes against persons. The Chamber also considered that the targeted buildings were not only religious buildings but had also a symbolic and emotional value for the inhabitants of Timbuktu. The mausoleums of saints and mosques of Timbuktu were an integral part of the religious life of its inhabitants and constitute a common heritage for the community. They reflected their commitment to Islam and played a psychological role to the extent of being perceived as protecting the people of Timbuktu. Furthermore, all the sites but one were UNESCO World Heritage sites. As such, the attacks on them appear to be of particular gravity as their destruction does not only affect the direct victims of the crimes but also people throughout Mali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hamber also considered five mitigating circumstances, namely:

1. Mr Al Mahdi's admission of guilt, and the fact he showed honest repentance and provided a detailed account of his acts. The Chamber noted that his admission of guilt may also further peace and reconciliation in Northern Mali by alleviating the victims' moral suffering through acknowledgement of the significance of the destruction;
2. Mr Al Mahdi's cooperation with the Prosecution despite potential security implications for his family in Mali, and the fact that he took responsibility for his actions as early as the first day of his interviews with the Prosecution, which enabled the parties to reach an agreement sufficiently early in the proceedings;
3. Mr Al Mahdi's remorse and the empathy he expressed with the victims, including his call on people not to become involved in similar conduct and his offer to reimburse the cost of a door at the Sidi Yahia Mosque. Mr Al Mahdi has expressed his 'deep regret and great pain' and insisted that the remorse he was feeling was for the damage caused to his family, his community in Timbuktu, his countr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4. Mr Al Mahdi's initial reluctance to commit the crime and the steps he took to limit the damage caused by advising against the use of bulldozers to attack the buildings so as not to damage the graves next to the mausoleums and making sure the attackers showed respect for the constructions next to the mausoleum while carrying out the attack; and
5. Even if of limited importance, Mr Al Mahdi's good behaviour in detention.

In order to sufficiently and adequately reflect the moral and economic harm suffered by the victims of the case and fulfil the objectives of sentencing, the Chamber imposed a sentence that it deemed proportionate to the gravity of the crime and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culpability of Mr Al Mahdi.

Background

On 24 March 2016, ICC Pre-Trial Chamber I confirmed against Ahmad Al Faqi Al Mahdi the war crime charge concerning attacks against historic and religious monuments in Timbuktu, Mali, and committed Mr Al Mahdi to trial. He was a member of Ansar Dine, a movement associated with AQIM, and had worked closely with the leaders of the two armed groups in the context of the structures and institutions they established. Until September 2012, he was the head of the *Hesbah* (a body set up in April 2012 to uphold virtue and prevent vice). He was also associated with the work of the Islamic tribunal of Timbuktu and involved in executing its decisions. The warrant of arrest against him was issued by ICC Pre-Trial Chamber I on 18 September 2015 and he was surrendered to the ICC on 26 September 2015.

For more information on this case, click here.

Summary of the verdict and sentence in the Al Mahdi case

Judgment and Sentence

Audio-visual material – "Ask the Court" programme: Al Mahdi case, Verdict, 27 September 2016

English: YouTube for viewing; Video for download; Audio for download

French: YouTube for viewing; Video for download; Audio for download

Arabic: YouTube for viewing; Video for download; Audio for download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Fadi El Abdallah, Spokesperson and Head of Public Affairs Uni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y telephone at: +31 (0)70 515-9152 or +31 (0)6 46448938 or by e-mail at: fadi.el-abdallah@icc-cpi.int.

You can also follow the Court's activities on YouTube and Twitter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C

- ICC 1심재판부 VII, 장 피에르 벰바 곰보 부통령 외 4명에 대해 사법집행 관련 위반에 대해 유죄 선고

상황: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건: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2016년 10월 19일, ICC 1심재판부 VII은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et al.* 사건에 대해 사법집행에 대한 여러 위반 사항에 대한 5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반의 내용은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Main Case) 사건에서 벰바 자신의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증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매수를 시도한 것이다. 사건 당사자 (검사와 피고측)은 「로마규정」과 「절차 및 증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유죄 판결에 따른 형은 차후에 선고한다. 참고로 ICC가 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려 한 시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관련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9 October 2016

Bemba et al. case: ICC Trial Chamber VII finds five accused guilty of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CC-CPI-20161019-PR1245



Judges of Trial Chamber V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at the delivery of the judgement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on 19 October 2016: (left to right) Judge Marc Perrin de Brichambaut,

Judge Bertram Schmitt, Presiding Judge, and Judge Raul Cano Pangalangan ©ICC-CPI

Situation: Central African Republic

Case: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Today, 19 October 2016, Trial Chamber V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delivered its judgment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and found the five accused guilty of various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se offences related to the false testimonies of defence witnesses in another case before the ICC: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Main Case).

The judgment was delivered during a public hearing in the presence of all five accused: Jean-Pierre Bemba Gombo; his former counsel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a former member of Mr Bemba's Defence team); Fidèle Babala Wandu (a political ally of Mr Bemba in the Parliament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Narcisse Arido (a potential Defence witness in the Main Case who ultimately did not testify).

Findings: Trial Chamber VII found that Messrs Bemba, Kilolo and Mangenda were guilty, as co-perpetrators, for having jointly committed the offences of intentionally corruptly influencing 14 defence witnesses, and presenting their false evidence to the court.

Furthermore, Mr Bemba was found guilty of soliciting the giving of false testimony by the 14 defence witnesses; Mr Kilolo was found guilty of inducing the giving of false testimony by the 14 defence witnesses; and Mr Mangenda was found guilty of aiding the giving of false testimony by two defence witnesses and abetting the giving of false testimony by seven defence witnesses. Mr Mangenda was found not guilty of having aided, abetted or otherwise assisted in the giving of false testimony by the five other witnesses.

In addition, the Chamber found Mr Babala guilty of aiding the corrupt influencing of two defence witnesses. However, Mr Babala was found not guilty of having aided, abetted or otherwise assisted in the giving of false testimony by the 12 other witnesses and not guilty of presenting their false evidence to the court. Mr Babala was acquitted of those charges. Mr Arido was found guilty of corruptly influencing four defence witnesses. He was found not guilty of having aided, abetted or otherwise assisted in the presentation of false evidence by the four witnesses and not guilty of giving their false testimony to the court. Mr Arido was acquitted of those charges.

Appeal and Penalties: The Prosecutor and the Defence may appeal the judgment within 30 days. For these types of offences, according to the Rome Statute, the judges may impose a term of imprisonment

not exceeding five years and/or a fine. The Chamber shall pronounce the penalties at a subsequent stage.

Background: The trial of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for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pened on 29 September 2015 before Trial Chamber VII. On 29 April 2016, the Chamber closed the submission of evidence in the case and the trial's closing oral statements took place between 31 May and 1 June 2016. In the course of 46 days of hearings, Trial Chamber VII heard 13 witnesses and expert witnesses called by the Prosecution, and 6 called by the defence teams for the five accused. The Chamber examined numerous evidentiary materials, including audio recordings of intercepted telephone communications, and documentary evidence. Trial Chamber VII issued 266 written orders and decisions and 80 oral decisions. Trial Chamber VII is composed of Judge Bertram Schmitt, Presiding Judge, Judge Marc Perrin de Brichambaut and Judge Raul Cano Pangalangan.

Further information on this case can be found here.

Summary of the judgement in the *Bemba et al.* case

Public Redacted Version of Judgment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Statute

Audio-visual material – "Ask the Court" programme: *Bemba et al.* case, Judgement, 19 October 2016

English: YouTube for viewing; Video for download; Audio for download

French: YouTube for viewing; Video for download; Audio for download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Fadi El Abdallah, Spokesperson and Head of Public Affairs Uni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y telephone at: +31 (0)70 515-9152 or +31 (0)6 46448938 or by e-mail at: fadi.el-abdallah@icc-cpi.int.

You can also follow the Court's activities on YouTube and Twitter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제해양법재판소)

- *M/V "Norstar" 사건 (파나마 v. 이탈리아)*에 대한 이탈리아의 선결적 항변에 관해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파나마 신청을 수락

2016년 11월 4일, 재판소는 *M/V "Norstar" 사건 (파나마 v. 이탈리아)*에 대해 이탈리아가 지난 3월 11일에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해,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파나마의 재판 신청을 수락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탈리아는 파나마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양 당사국 간에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둘째, 이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인적관할의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ITLOS의 재판관할권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17일, 파나마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파나마 국적 선박인 MV Nostar의 나포 및 억류에 관한 이탈리아와의 분쟁을 ITLOS에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파나마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MV Norstar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해 밖의 공해에서 초대형 요트에 경유를 공급하는 일에 참여해왔다. 파나마는 신청서에서, 이탈리아가 초대형 요트에 경유를 공급하는 것은 이탈리아법 위반이라며 스페인에게 MV Norstar의 나포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1998년 9월 24일, 스페인이 팔마데마요르카(Palma de Mallorca) 만에서 MV Norstar를 나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파나마는 신청서에서, 1998년 MV Norstar의 불법 나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이탈리아가 금전배상(compensation)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청의 근거로서, 파나마는 이탈리아가 유엔해양법협약의 여러 규정을 위반—특히, 제33조, 제73조 제3항 및 제4항, 제87조, 제111조, 제226조, 제300조—하였으며, 특히 항해의 자유를 침해 주장하였다.

이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87항에 따라 파나마와 이탈리아가 행한 선언에 근거하여 회부되었다. 이 사건은 ITLOS 사건 목록에 "Case No. 25"로 접수되었다.

〈 관련 보도자료 〉

ITLOS/Press 254*
4 November 2016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Press Release

THE M/V "NORSTAR" CASE (PANAMA V. ITALY)

TRIBUNAL DECIDES ON ITALY'S PRELIMINARY OBJECTIONS,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TO ADJUDICATE THE DISPUTE AND THAT PANAMA'S APPLICATION IS ADMISSIBLE

The Judgment of the Tribunal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Italy on 11 March 2016 in *The M/V "Norstar" Case (Panama* v. *Italy)* was delivered today. The Tribunal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to adjudicate the dispute and decides that Panama's application is admissible.

Proceedings in the case were instituted by an Application filed by Panama on 17 December 2015.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the dispute concerns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V "*Norstar"*, a Panamanian-flagged oil tanker. From 1994 until 1998, the M/V "*Norstar"* was engaged in supplying gasoil to mega yachts in an area described by Panama as "international waters beyond the Territorial Sea of Italy, France and Spain" and by Italy as "off the coasts of France, Italy and Spain". On 11 August 1998, the Public Prosecutor at the Court of Savona, Italy, issued a Decree of Seizure against the *M/V "Norstar",* in the context of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eight individuals. The vessel was seized by Spanish authorities at the request of Italy when anchored at the bay of Palma de Mallorca, Spain, in September 1998.

The public hearing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was held from 20 to 22 September 2016. In its final submissions, Italy requested the Tribunal to adjudge and declare that:

"a. The Tribunal lacks jurisdiction with regard to the claim submitted by Panama in its Application filed with the Tribunal on 17 December 2015;

And / or that

b. The claim brought by Panama against Italy in the instant case is inadmissible."

In its final submissions, Panama requested the Tribunal to adjudge and declare that:

FIRST

- the Tribunal has jurisdiction over this case;
- the claim made by Panama is admissible; and

SECOND, that as a consequence of the above declarations the Written Preliminary Objections made by the Italian Republic under Article 294,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are rejected."

Objections to jurisdiction

Existence of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taly submits that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Convention"). Panama contends that a dispute falling under the scope of the Convention does exist.

In dealing with this objection, the Tribunal examines a number of communications which were sent to Italy concerning the detention of the *M/V "Norstar"*. It concludes that "since 31 August 2004,

when Italy received the first note verbale of Panama, it cannot validly question that Mr Carreyóo was duly authorized to represent Panama in all exchanges relating to the detention of the *M/V "Norstar" "*, and that "Italy cannot, therefore, claim ignorance of the fact that Panama, as the flag State of the *M/V "Norstar",* contests the legality of the detention under the Convention" (paragraph 97). The Tribunal also notes that, except for one response issued by Italy, "[a]ll other communications sent to Italy remained unanswered" (paragraph 98). According to the Tribunal, "the notes verbales and other communications sent to Italy and the silence of Italy indicate that in the present case there is a dis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n points of law and fact" (paragraph 102). The Tribunal then "concludes that in the present case a dispute existed between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paragraph 103).

In order to ascertain whether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s the interpretation of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examines "whether a link exists between the Decree of Seizure against the *M/V "Norstar"* for its activities on the high seas and the request for its execution by the Prosecutor at the Court of Savona, and any rights enjoyed by Panama under the articles of the Convention invoked by it" (paragraph 111). Panama, in its Application, invokes articles 33, 73, 87, 58, 111, 226 and 300 and others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notes that Panama conceded during the oral proceedings that articles 73 and 226 of the Convention are not applicable. It also finds that articles 33 and 58 cannot be invoked and that article 111 is not relevant to the present case.

With regard to article 87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observes that this provision "concerns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provides that the high seas are open to all States and that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comprises, inter alia,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that "[t]he Decree of Seizure by the Public Prosecutor at the Court of Savona against the *M/V "Norstar"* with regard to activities conducted by that vessel on the high seas and the request for execution by the Prosecutor at the Court of Savona may be viewed a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Panama under article 87 as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paragraph 122). "Consequently, the Tribunal concludes that article 87 is relevant to the present case" (paragraph 122). Concerning article 300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considers that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Italy has fulfilled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by it under article 87 of the Convention" (paragraph 132). "Therefore,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article 300 of the Convention is relevant to the present case" (paragraph 132).

The Tribunal "rejects the objection raised by Italy based on non-existence of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paragraph 133).

Jurisdiction ratione personae

Italy submits that the Tribunal lacks jurisdiction *ratione personae* in the present case while Panama rejects this objection.

In its Judgment, the Tribunal examines whether Italy is the proper respondent in the proceedings. In the view of the Tribunal,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case indicate that, while the arrest of the *M/V "Norstar"* "took place as a result of judicial cooperation between Italy and Spain, the Decree of Seizure and the request for its enforcement by Italy were central to the eventual arrest of the vessel" (paragraph 165). The Tribunal notes that the detention carried out by Spain was part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proceedings conducted by Italy against the *M/V "Norstar"* and that Italy has held legal control over the *M/V "Norstar"* during its detention. Accordingly, "the Tribunal finds that the dispute before it concer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taly and that its decision would affect the legal interests of Italy" (paragraph 167). In the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Italy is the proper respondent to the claim made by Panama in these proceedings" (paragraph 168).

The Tribunal considers the argument of Italy that Spain is an indispensable party to the proceedings. It notes that the involvement of Spain in this dispute is limited to the execution of Italy's request for the seizure of the *M/V "Norstar"*. According to the Tribunal, it is the legal interests of Italy, not those of Spain, that form the subject matter of the decision to be rendered by the Tribunal on the merits of Panama's Application. The Tribunal notes that its decision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does not require the prior determination of Spain's rights and obligations" and therefore it is not indispensable for Spain to be a party to the present proceedings for the Tribunal to determine whether Italy violated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paragraph 173).

For these reasons, the Tribunal "rejects the objection raised by Italy based on lack of jurisdiction *ratione personae*" (paragraph 175).

Exchange of views under article 283 of the Convention

Italy submits that Panama has failed to appropriately pursue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by negotiations or other peaceful means under article 283 of the Convention. Panama contends that it has fulfilled its part of the obligation to exchange views with Italy.

In considering this objection raised by Italy, the Tribunal notes that it has already concluded that Mr Carreyóo was authorized to represent Panama in all exchanges relating to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V "Norstar"* and that, after the note verbale of 31 August 2004, Italy should have been fully aware of Panama's attempts to exchange views concerning issues arising from the detention of the *M/V "Norstar"* (paragraphs 206 and 212). The Tribunal considers that "the absence of a response from one State Party to an attempt by another State Party to exchange views on the means of settlement of a dispute arising between them does not prevent the Tribunal from finding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3 have been fulfilled" (paragraph 215). It is also of the opinion that "by disregarding correspondence from Panama concerning the detention of the *M/V "Norstar",* Italy in effect precluded possibilities for an exchange of views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Panama was justified in assuming

that to continue attempts to exchange views could not have yielded a positive result and that it had thus fulfilled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283 of the Convention" (paragraph 217).

"Accordingly, the Tribunal rejects the objection raised by Italy based on the failure by Panama to fulfil its obligations regarding an exchange of views under article 283 of the Convention" (paragraph 219).

Having rejected the three objections to jurisdiction raised by Italy, "the Tribunal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to adjudicate upon the dispute" (paragraph 220).

Objections to admissibility

Nationality of claims

Regarding Italy's objection to the admissibility of Panama's Application based on the nationality of claims, the Tribunal, relying on previous jurisprudence, finds that the *M/V "Norstar"*, flying the flag of Panama, is to be considered a unit and therefore the M*/V "Norstar*", its crew and cargo on board as well as its owner and every person involved or interested in its operations are to be treated as an entity linked to the flag State,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ies" (paragraph 231).

The Tribunal "rejects the objection raised by Italy based on the nationality of claims" (paragraph 232).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Noting that the Parties differ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295 of the Convention on the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the Tribunal examines its applicability in the present case. Having concluded that articles 87 and 300 of the Convention are relevant,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the right of Panama to enjoy freedom of navigation on the high seas is a right that belongs to Panama under article 87 of the Convention, and that a violation of that right would amount to a direct injury to Panama (paragraphs 269 to 270). It considers that "the claim for damage to the persons and entities with an interest in the ship or its cargo arises from the alleged injury to Panama". "Accordingly, the Tribunal concludes that the claims in respect of such damage are not subject to the rule of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paragraph 271).

For these reasons, the Tribunal "rejects the objection raised by Italy based on the non-exhaustion of local remedies" (paragraph 273).

Acquiescence, estoppel and extinctive prescription

The Tribunal notes that "the Parties do not dispute these principles" and that "their differences

relate to the application of such principles in the circumstances of the present proceedings" (paragraph 302).

Regarding acquiescence, the Tribunal notes that "[t]he argument of Italy that Panama remained silent over a number of years in prosecuting its claims that arose from the detention of the *M/V "Norstar"*, and that this silence amounts to acquiescence, is not substantiated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aking into account Italy's conduct of not responding to Panama's communications. The Tribunal holds that at no stage has the conduct of Panama given scope to infer that it has abandoned its claim or acquiesced in the lapse of its claim" (paragraph 304). The Tribunal, therefore, "rejects the objection raised by Italy based on acquiescence" (paragraph 305).

With regard to estoppel, the Tribunal considers that "the main elements of estoppel have not been fulfilled in this case". It states that "Panama has never made a representation, by word, conduct or silence, that it would abandon its claim if Italy failed to act on its claim within a specific time-limit". The Tribunal further states that "[i]t is true that there was a representation that Panama would commence legal proceedings if Italy failed to release the vessel and pay damages by a specified time and that no such proceedings were brought in spite of Italy's failure to respond to such represent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Tribunal "this cannot be taken as amounting to a clear and unequivocal representation that Panama would abandon its claim because of the non-response of Italy". The Tribunal adds that "Italy has not submitted any evidence to prove that it was induced by such representation to act to its detriment" (paragraph 307).

"For these reasons, the Tribunal rejects the objection raised by Italy based on estoppel" (paragraph 308).

As to extinctive prescription, the Tribunal notes that neither the Convention nor general international law provide a time-limit regarding the institution of proceedings before it (paragraph 311). The Tribunal finds that Panama has not failed to pursue its claim since the time when it first made it, so as to render the Application inadmissible (paragraph 313). The Tribunal "rejects the objection raised by Italy based on extinctive prescription" (paragraph 314).

Having rejected the objections to admissibility raised by Italy, "the Tribunal finds that the Application filed by Panama is admissible"

The operative paragraph of the Judgment in *The M/V "Norstar" Case (Panama* v. *Italy)* of 4 November 2016 reads as follows (paragraph 316):

"For the above reasons, the Tribunal

(1) By 21 votes to 1,

Rejects the objections raised by Italy to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and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to adjudicate upon the dispute.

IN FAVOUR: *President* GOLITSYN; *Vice-President* BOUGUETAIA; *Judges* CHANDRASEKHARA RAO, AKL, WOLFRUM, NDIAYE, JESUS, COT, LUCKY, PAWLAK, YANAI, KATEKA, HOFFMANN, GAO, PAIK, KELLY, ATTARD, KULYK, GÓOMEZ-ROBLEDO, HEIDAR; *Judge* ad hoc EIRIKSSON;

AGAINST: *Judge* ad hoc TREVES.

(2) By 20 votes to 2,

Rejects the objections raised by Italy to the admissibility of Panama's Application and finds that the Application is admissible.

IN FAVOUR: *President* GOLITSYN; *Vice-President* BOUGUETAIA; *Judges* CHANDRASEKHARA RAO, AKL, WOLFRUM, NDIAYE, JESUS, LUCKY, PAWLAK, YANAI, KATEKA, HOFFMANN, GAO, PAIK, KELLY, ATTARD, KULYK, GÓOMEZ-ROBLEDO, HEIDAR; *Judge* ad hoc EIRIKSSON;

AGAINST: *Judge* COT; *Judge* ad hoc TREVES.

Judges Cot and Heidar append declarations to the Judgment, Judges Wolfrum and Attard append a joint separate opinion to the Judgment and Judges Ndiaye and Lucky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Judgment. Judge *ad hoc* Treves appends a dissenting opinion to the Judgment.

The text of the Judgment, the declarations and opinions as well as a recorded webcast of the reading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Tribunal.

Note: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and are issu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the Tribunal's websites (http://www.itlos.org and http://www.tidm.org) and from the Registry of the Tribunal. Please contact Ms Julia Ritter at: Am Internationalen Seegerichtshof 1, 22609 Hamburg, Germany, Tel.: +49 (40) 35607-227; Fax: +49 (40) 35607-245; E-mail: press@itlos.org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상설중재재판소)

- *Duzgit Integrity 중재재판(몰타공화국 v. 상투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에 대한 판정

2016년 9월 12일, Duzgit Integrity 중재재판(몰타공화국 v. 상투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에 관해 재판소가 판정을 내렸다.

이 중재재판은 2013년 10월 22일, 몰타공화국이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 및 부속서 VII, 제1항에 따라 상투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에 대해 중재절차를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재판은 몰타 국적의 선박 Duzgit Integrity가 상투메의 군도수역에서 ship-to-ship 방식으로 화물을 옮기려고 시도하다가 상투메에 의해 나포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PCA가 이 중재재판의 사무국 역할을 하였다.

먼저,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이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몰타의 청구는 수락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Duzgit Integrity가 나포될 당시 상투메 군도수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조(영해,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의 법적지위) 및 제25조(연안국의 보호권)보다는 제49조(군도수역과 그 상공·해저 및 하층토의 법적지위)가 적용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

본안으로 들어가 재판소는 다수결로 상투메가 Duzgit Integrity 관련하여 부과한 처벌—선장과 배의 유치, 금전적 제재, 화물의 몰수 등—은 분쟁의 원인이 된 위반 행위(Duzgit Integrity가 상투메의 군도수역에서 ship-to-ship 방식으로 화물을 옮기려한 시도)와 상투메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해야 할 이익을 고려해 볼 때 비례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다수결로 이러한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은 유엔해양법협약 제49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책임과 양립하지 못하는 제재에 누적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다수결로 몰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결정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The Netherlands

Telephone : +31 70 302 4165
Facsimile : +31 70 302 4167
E-mail : bureau@pca-cpa.org
Website : www.pca-cpa.org

COUR PERMANENTE D'ARBITRAGE

Palais de la Paix, Carnegieplein 2,
2517 KJ La Haye, Pays-Bas

Téléphone : +31 70 302 4165
Télécopie : +31 70 302 4167
Courriel : bureau@pca-cpa.org
Site Internet : www.pca-cpa.org

PRESS RELEASE

DUZGIT INTEGRITY ARBITRATION

(THE REPUBLIC OF MALTA V. THE DEMOCRATIC REPUBLIC OF SÃO TOMÉ AND PRÍNCIPE)

THE HAGUE, 12 SEPTEMBER 2016

Arbitral Tribunal Renders an Award

The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Convention**") in the matter of the *Duzgit Integrity Arbitration* has issued an Award in respect of the dispute between the Republic of Malta ("**Malta**") and the Republic of São Tomé and Príncipe ("**São Tomé**"). The dispute concerns the arrest by São Tomé of a Maltese flagged vessel – the *Duzgit Integrity* – on 15 March 2013 when it attempted to undertake a ship-to-ship ("**STS**") cargo transfer in São Tomé's archipelagic waters, and the subsequent measures taken by São Tomé in relation to the vessel, its master, cargo, owner and charterer. Those measures included: the detention of the vessel and its master after 15 March 2013; the court-ordered imprisonment of the master and a EUR 5,000,000 fine against (jointly) the master, owner and charterer of the vessel (which fine also covered the second vessel); the court-ordered confiscation of the vessel and its cargo; a EUR 28,875 fine levied by São Tomé's Port and Maritime Institute ("**IMAP**"); and a customs fine of more than EUR 1,000,000 levied by São Tomé's Customs Directorate General.

In the Award, the Tribunal addressed all issues of jurisdiction, admissibility, liability, and entitlement to reparation.

São Tomé had objected to jurisdiction on the grounds that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did not concern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ão Tomé had also contended that Malta's claims were not admissible on the grounds that: Malta had failed to fulfil the Convention's requirement with respect to the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Malta had not sufficiently specified the grounds on which several of its claims were based; and Malta had failed to fulfil the Convention's requirement with respect to exchanging views regarding settlement of the dispute before resorting to arbitration. In addition, São Tomé had contended that Malta's claims for damages suffered by the owner of the *Duzgit Integrity* were not admissible as they were the object of a settlement agreement. Malta disputed all of São Tomé's objections regarding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With respect to the merits of the dispute, Malta had claimed, *inter alia*, that the measures taken by São Tomé violated Articles 2(3) and 25 of the Convention, which relate to the exercise of a State's sovereignty over its territorial sea, and Article 49(3) of the Convention, which relates to the exercise of a State's sovereignty over its archipelagic waters. Malta had also claimed that São Tomé breached Articles 192, 194, and 225 of the Convention, which relate to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when São Tomé undertook a subsequent transfer of the vessel's cargo. Malta had also invoked in relation to all of its claims Article 300 of the Convention which imposes upon States a duty of good faith and prohibits the abuse of rights. São Tomé opposed all of Malta's claims.

The Tribunal found, unanimously, that it had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and that Malta's claims were admissible. The Tribunal determined that Article 49 of the Convention was applicable (rather than

Articles 2(3) and 25) because the *Duzgit Integrity* was located in the archipelagic waters of São Tomé at the time of its arrest.

On the facts, the Tribunal found that the *Duzgit Integrity* did not have the prior authorization that was required under São Tomé's domestic law to undertake the intended STS transfer. The Tribunal also considered that the master of the *Duzgit Integrity* had indicated repeatedly his willingness to move to outside São Tomé's territorial sea to make the transfer.

The Tribunal noted that, under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measures taken by a coastal State in response to activity within its archipelagic waters are subject to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ness, which encompasses the general principles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The Tribunal found, unanimously, that the measures taken by São Tomé on 15 March 2013 – detaining the vessel, requesting the master to come onshore to explain the circumstances, and imposing the IMAP fine – fell well within the exercise by São Tomé of its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The Tribunal found, by majority, however, that the other penalties imposed by São Tomé – the prolonged detention of the master and vessel, the monetary sanctions, and the confiscation of the entire cargo – when considered together, could not be regarded as proportional when considering the original offence or the interest of ensuring respect for São Tomé's sovereignty. The Tribunal found, by majority, that the disproportionality was such that it rendered the cumulative effect of the sanctions incompatible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a State exercising sovereignty on the basis of Article 49 of the Convention. Consequently, the Tribunal held, by majority, that Malta was entitled to claim reparation regarding certain heads of claim in a later phase of this arbitration.

Having determined a breach of Article 49(3)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saw no need to determine a violation of Article 300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also dismissed Malta's claims under Articles 192, 194, and 225 of the Convention finding that, based on the evidence before it, Malta had not persuaded the Tribunal that São Tomé had exposed its marine environment to an unreasonable risk.

As regards the proceedings to date, the Tribunal ordered that the Tribunal's expenses be borne in equal shares by the Parties and that the Parties bear their own legal costs.

Judge Kateka attached a dissenting opinion in which he disagreed with the majority's finding that São Tomé had violated Article 49 of the Convention. Judge Kateka stated, *inter alia*, that each penalty imposed by São Tomé should be considered on its own merit, and in the context of its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the gravity of the violation. Judge Kateka disagreed with the majority's finding that Malta was entitled to claim reparation in a further phase of these proceedings.

* * *

The arbitral proceedings were instituted by Malta on 22 October 2013 against São Tomé under the Convention.

The Tribunal was constituted on 13 March 2014. On the basis of the Parties' agreement and Article 3 of Annex VII of the Convention, the Tribunal is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Professor Alfred H.A. Soons (President), Professor Tullio Treves, and Judge James L. Kateka.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cts as Registry in the arbitration.

After a full exchange of written pleadings, on 23 and 24 February 2016, a hearing was held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hearing pertained to all issues of jurisdiction, admissibility, liability, and entitlement to reparation.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case may be found at http://www.pcacases.com/web/view/53 or requested via e-mail.

* * *

Background o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he PCA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1899 Hague Convention on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Headquartered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the PCA facilitates arbitration, conciliation, fact-finding, and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among various combinations of States, State entitie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ivate parties.

Contact: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E-mail: bureau@pca-cpa.org

국제법 관련 국내법

〈 순 서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 2016. 9. 13, 시행 2016. 9. 13, 대통령령 제27493호, 일부개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 2016. 9. 13, 시행 2016. 9. 13, 외교부령 제42호, 일부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2016. 9. 29, 시행 2016. 9. 30, 법무부령 제874호,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공포 2016. 9. 29,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0호,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2016. 9. 29, 시행 2016. 9. 30, 법무부령 제875호, 일부개정)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공포 2016. 10. 5, 시행 2016. 10. 5, 외교부령 제43호,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 2016. 11. 1, 시행 2016. 11. 1, 대통령령 제27567호, 일부개정)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공포 2016. 12. 1,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651호, 일부개정
-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공포 2016. 12. 1, 시행 2016. 12. 1, 외교부령 제44호, 일부개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공포 2016. 12. 2,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47호,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공포 2016. 12. 2,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86호, 일부개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포 2016. 12. 2,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14호, 일부개정)
- 식물방역법 (공포 2016. 12. 2,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99호, 일부개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 2016. 9. 13, 시행 2016. 9. 13, 대통령령 제27493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수출 확대 및 중동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식약분야 및 산업통상자원분야 등의 주재관 5명(3·4급 1명, 4급 4명)을 증원하고, 외교부의 공공외교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외공관의 정원 1명(9등

급 1명)을 외교부로, 외교부 정원 1명(8등급 1명)을 재외공관으로 각각 재배정하며, 주뭄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안드라프라데시주를 제외하고 텔랑가나주와 마드야프라데시주를 추가하는 등 인도·베트남 주재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을 현지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에 재외공관 시설 안전 및 공관원 보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 2016. 9. 13, 시행 2016. 9. 13, 외교부령 제42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의 공공외교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외공관의 정원 1명(9등급 1명)을 외교부로, 외교부 정원 1명(8등급 1명)을 재외공관으로 각각 재배정하고,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에 재외공관 시설 안전 및 공관원 보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493호, 2016. 9.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외교부 공무원 정원 중 7등급 외무공무원 1명을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상당 별정직(비서) 1명으로 전환하며,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을 구분하여 정원표에 표기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장급 개방형 직위 중 주이란이슬람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장급 개방형 직위 중 교육운영과장을 직무연수과장으로 변경하며, 정책총괄담당관 소관이던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정책분석담당관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2016. 9. 29, 시행 2016. 9. 30, 법무부령 제874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 이전신고기관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73호, 2016. 5.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서식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공포 2016. 9. 29,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0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의 일부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출입국심사 시 출입국신고서 제출 및 심사인 날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입국심사 절차의 간소화(제1조, 제1조의2, 제15조, 제16조 및 제35조)

1)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기록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출입국 및 외국인의 출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에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시나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은 사전 등록절차 없이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등록사항 말소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제47조 신설)

1) 등록외국인이 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시기를 정함.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는 등록외국인대장에 말소의 사실을 기재하고,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외국인 말소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등록사항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

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대행사무 범위 등(제88조의10)

1)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인의 신원확인 등 심사,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교부, 수수료의 징수 등의 사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도록 함.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행한 사무의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범죄경력정보 등의 제공 요청 권한의 일부의 위임(제96조제1항)

출입국심사,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및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서 범죄경력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2016. 9. 29, 시행 2016. 9. 30, 법무부령 제875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하여 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등 일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0호, 2016. 9. 29. 공포, 2016. 9. 30.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 시 작성하는 각종 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록의무 면제자의 외국인등록 허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46조 삭제)

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본인 희망 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의무 면제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만을 부여했던 현행 조문을 삭제함.

나.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마련(안 제49조의3 신설)

등록외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함.

다.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9조의4 신설)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의3, 제23조, 제32조, 제37조, 제41조, 제42조, 제58조, 제69조 및 제74조)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내지"를 "~부터 ~까지"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함.

마.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 서류 간소화 및 별지 서식 정비(안 별표 5 및 별표 5의2, 별지 제4호서식 등)

1) 사증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를 규정한 별표 5 및 별표 5의2 가운데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삭제하고 민원인이 알기 쉽게 정비함.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별지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함. <법무부 제공>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공포 2016. 10. 5, 시행 2016. 10. 5, 외교부령 제43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심의의 효율화를 위하여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위원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공공외교대사 및 재외동포영사대사 등을 추가하고, 외교문서공개심의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의 사전 협의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 중 연임하는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 2016. 11. 1, 시행 2016. 11. 1, 대통령령 제27567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1. 7. 1.)부터 5년간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 12. 20.)부터 5년간 시행하도록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공포 2016. 12. 1,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651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정보기술 분야의 관세 장벽을 낮추어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으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가 개정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반도체, 전자기기 및 영상기기 등 834개 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2016년분 일반양허관세를 각각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공포 2016. 12. 1, 시행 2016. 12. 1, 외교부령 제44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敍勳)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두는 공적심사위원회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던 것을 6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도록 조정하고, 공무원 위원을 국립외교원장 등 7명으로 하던 것을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 위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그 연임 제한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공포 2016. 12. 2,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47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테러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제항해여객선의 범위 등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검색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민등록법 (공포 2016. 12. 2,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86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이 법에 따른 주소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포 2016. 12. 2,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14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식물방역법 (공포 2016. 12. 2,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99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또는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작물의 재배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를 하여 병해충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발생 신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보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 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인 종자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입검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제2조제7호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수입되는 일반 물품 중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외래 흰개미 등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 등의 현장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확인(제7조의3제3항 및 제4항)

1)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현장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식물검역관이 선박·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만으로는 검역대상 물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검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2) 식물검역관이 선박·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현장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외에 화물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현장 검사를 통하여 수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도입(제8조 및 제28조제1항·제2항)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국가간 약정을 한 경우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외에도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수입 또는 수출 검역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라.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 제도 마련(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1) 유해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발송된 식물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재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2) 수입 금지품 중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만 수입하는 식물로서 병해충의 비산(飛散)·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다시 포장·가공할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 등 농산물 가공 산업 분야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금지품의 유출·반출 금지(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금지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수입하는 금지품을 허가 시 제한한 장소 밖으로 유출·반출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1) 우편 외에 국제 탁송을 통한 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탁송품의 수입자가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검역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서 식물검역관이 해당 탁송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탁송품으로 들어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검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의 도입(제12조의4 신설)

1) 식물 검역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식물 검역 신고를 부실하게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하

게 발생함에 따라 검역 수요자들의 불만과 검역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 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식물 검역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등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

3) 올바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 부과(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 신설)

1) 격리재배 대상 식물 중 묘목의 경우에는 격리재배지 밖으로 불법 반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묘목에 수입 이력을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가 기재된 꼬리표를 묘목에 부착하도록 하고, 꼬리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폐기·반송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입 묘목의 수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격리재배 대상 묘목의 불법 반출을 방지하여 검역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제15조의2 신설)

1) 현재 수입 식물의 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식물검역기관에서 모두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검역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검역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지연 등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 식물 검역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설비,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역에 필요한 바이러스검사, 세균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수입 물품의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차.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의무 부과(제28조의3 및 제48조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 신설)

목재포장재의 수출과 관련한 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수출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출할 때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를 한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를 하여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카. 수입국별 맞춤형 수출검역 제도 실시(제28조의4 신설)

1) 각 국의 검역 조건이 다변화됨에 따라 일반적인 수출검역만으로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를 지정하여 각 단지별로 지속적으로 검역 관리 및 식물의 재배지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타. 농작물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식물의 재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임차농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를 명확히 함(제30조의2 신설, 제38조 및 제50조). <법제처 제공>

국제법 관련 판례

〈 순 서 〉

○ 헌법재판소 판결

▶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게 되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 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사례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10, 2016.9.29.)

○ 대법원 판결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두5644, 판결)

▶ 과세관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본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수증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한·룩 조세조약 제21조 제1호에 위반된다거나 소득구분에서 조세조약의 우선적용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9.8, 선고, 2016두39290, 판결)

▶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상속재산회복,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기타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甲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사증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16.9.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 항소)

▶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한 외국선박 선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선박을 몰수한 사례 (외국선박의 대한민국 영해 내 어로행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3814 판결)

▶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게 되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 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사례(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10, 2016.9.29.)

【 전 문 】

사 건 2016헌바10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신○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태용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5라2105 소송비용담보제공

【 주 문 】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 제1항 전문 중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2014. 12.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바, 류○현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12. 류○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1371).

류○현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여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1. 3.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소송비용의 담보로 4,8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카담10132).

청구인은 위 담보제공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고(부산지방법원 2015라2105) 항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5카기10154), 2015. 12. 22. 위 항고 및 신청이 기각되자, 2016. 1. 4.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청구인이 그 위헌성을 다투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 제1항 전문 중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 심판대상조항 】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국내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를 두지 아니한 원고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되며, 국내에 주소 등을 둔 원고와 비교할 때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11헌바57 결정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이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 법원이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도록 한 구법 조항은,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을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로 한정하고, 담보제공은 금전·유가증권의 공탁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제출로도 가능하며(제122조),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제117조 제3항), 자력이 부족한 원고는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를 받는 방식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도 있는 등(제129조 제1항 제3호), 자력이 부족한 원고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원고의 재판청구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구법 조항은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만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원고와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는 국내에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 국내에서 생활이나 업무·영업을 하지 않아서 피고가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어려운 점, 비록 국외에 원고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적 재판관할권 문제, 비용이나 절차 문제 등으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재판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유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선례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 취지는 결국 '재판청구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금전 등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으로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과 다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헌재 2011. 12. 29. 2009헌마354 참조),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과는 무관하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여 헌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록상 불분명할 뿐 아니라,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게 되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 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므로(헌재 2001. 12. 20. 2001헌바25),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관계에서 위 헌법규정의 보호법익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이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공탁 외의 방법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 및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방식의 소송구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조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③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두5644, 판결)

【판시사항】

[1]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 검증 제도를 둔 취지 /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것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내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스위스 업체인 乙, 丙이 생산한 제1금괴 및 丁이 생산한 제2금괴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자 스위스 관세당국이 제1금괴에 대하여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라고 회신하고 제2금괴에 대하여는 회신기간인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각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제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회신기간이 경과한 뒤 스위스 관세당국이 丙이 생산한 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지만 乙이 생산한 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이고 丁이 생산한 금괴는 일부의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내용으로 최종회신을 한 사안에서, 스위스 관세당국이 각 금괴에 관한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데에 위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고 한다)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은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회신인 경우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데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의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검증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사정과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에서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 검증 제도를 둔 취지를 종합하여 회신 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한다.

[2] 국내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스위스 업체인 乙, 丙이 생산한 제1금괴 및 丁이 생산한 제2금괴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자 스위스 관세당국이 제1금괴에 대하여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라고 회신하고 제2금괴에 대하여는 회신기간인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각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제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회신기간이 경과한 뒤 스위스 관세당국이 丙이 생산한 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지만 乙이 생산한 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이고 丁이 생산한 금괴는 일부의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사안에서, 당초 회신 이후 대한민국 관세청이 스위스 관세당국의 丁에 대한 최종검증 과정에 참관하였을 때 당초 회신 내용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 관세청은 각 금괴의 원재료와 완제품이 동일한 HS 세번에 해당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적인 의견까지 제시하였으므로, 관할 세관장이 회신기간을 넘겨 스위스 관세당국의 추가 회신을 기다리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스위스 관세당국이 각 금괴에 관한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데에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호(현행 제37조 제4호 참조),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6항, 제7항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호(현행 제37조 제4호 참조),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6항, 제7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골드앤인베스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 24. 선고 2013누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가.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고 한다)의 적용제한에 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호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회신 기간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 제10.2조는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4조는 원산지 신고서의 검증에 관하여 제6항에서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7항에서 검증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회신인 경우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데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와 같이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의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그 검증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사정과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 검증 제도를 둔 취지를 종합하여 그 회신 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나.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수출자인 홍콩 스탠다드 은행을 통하여 스위스 업체인 아르고와 발캄비가 생산한 이 사건 제1금괴 및 메탈러가 생산한 이 사건 제2금괴를 각 수입하면서, 원산지가 스위스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금괴에 관하여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자, 스위스 관세당국은 당초 아르고와 발캄비가 생산한 이 사건 제1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므로 원산지신고서가 잘못 발행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 사건 제2금괴에 대하여는 회신기간인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에 피고는 2008. 9. 2. 이 사건 제1금괴에 대하여 그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정세율의 적용을 제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고, 2009. 7. 29. 이 사건 제2금괴에 대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④ 회신기간이 경과한 뒤 스위스 관세당국은, 발캄비가 생산한 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지만 아르고가 생산한 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내용으로 당초 회신을 번복하는 한편, 메탈러가 생산한 금괴는 그 일부의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최종회신을 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회신기간인 10개월 내에 회신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회신기간 경과 후에 보내온 이 사건 최종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① 당초 회신 이후 대한민국 관세청이 스위스 관세당국의 메탈러에 대한 검증 과정에 참관하였을 때 당초 회신 내용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 관세청은 이 사건 각 금괴의 원재료와 완제품이 동일한 HS 세번에 해당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적인 의견까지 제시하였으므로, 피고가 회신기간을 넘겨 스위스 관세당국의 추가 회신을 기다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아르고와 발캄비가 스위스 관세당국을 상대로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에 당초 원산지 불충족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지만, 스위스 관세당국은 그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상소심 계속 중에 뒤늦게 자체 검증을 실시한 후 아르고가 생산한 금괴는 특정 공정으로 인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최종회신을 하였으므로,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을 지연·번복한 데에 소송의 제기 등 외부적 요인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러한 상황이라면 스위스 관세당국으로서는 이 사건 최종회신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과 증빙자료의 제시가 더욱 필요하였는데도 주장 내용을 담은 회신 외에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송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제26조가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비밀에 대하여 당사국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단지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판정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스위스 관세당국이 이 사건 각 금괴에 관한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데에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에 관하여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의 해석 및 충분한 정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요지는, 이 사건 각 금괴의 원산지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는데도, 원심이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그 처분사유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판단에 덧붙인 가정적 또는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스위스로부터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가 문제 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처분의 대상, 처분사유, 처분일자 등이 서로 달라 동일한 목적의 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소송 중 그 대상인 과세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원고로 하여금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조세소송에서의 필요적 전치주의의 완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 과세관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본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수증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한·룩 조세조약 제21조 제1호에 위반된다거나 소득구분에서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9.8, 선고, 2016두39290, 판결)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한 경우,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 제21조 제1호에 위반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 수증소득이 실제 과세된 바가 없는 경우, 위 협약에 따라 비과세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및 그 의정서(1986. 12. 26.)는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의 과세권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조정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소득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 각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양도소득 및 수증소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가치증가액에 상응하는 자본이득을 수증법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이하 '본문 조항'이라 한다)은 수증법인이 그 주식을 양도할 때에 그와 같은 자본이득이 수증법인에게 실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증여재산 자체의 가치에 대하여 증여를 과세의 계기로 삼아 수증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본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수증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한·룩 조세조약 제21조 제1호에 위반된다거나 소득구분에서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이하 '단서 조항'이라 한다)는 문언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증법인이 양도하는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의 시가로 정하면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 범위를 수증소득이 과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수증소득이 실제 과세된 바가 없다면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더라도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제1호, 제93조, 제9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 제21조 제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0. 선고 2014누71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9호 등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제9호 (가)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10호 (다)목에서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은 제1호 단서에서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관하여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본문 조항'이라 한다)에서 '수증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에서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1조 제1호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과 같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선행 제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룩 조세조약에 대한 의정서(1986. 12. 26.) 제3조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룩 조세조약 및 그 의정서는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의 과세권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조정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소득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 각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양도소득 및 수증소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가치증가액에 상응하는 자본이득을 수증법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이 사건 본문 조항은 수증법인이 그 주식을 양도할 때에 그와 같은 자본이득이 수증법인에게 실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증여재산 자체의 가치에 대하여 그 증여를

과세의 계기로 삼아 수증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본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수증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한·룩 조세조약 제21조 제1호에 위반된다거나 소득구분에 있어서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서 조항은 그 문언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증법인이 양도하는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의 시가로 정하면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적용 범위를 수증소득이 과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수증소득이 실제 과세된 바가 없다면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더라도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룩셈부르크 법인 Delphi International S.ar.l.이 미국 법인 Delphi Automotive Systems (Holding), Inc.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이 사건 본문 조항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조약의 기본법리 및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단서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계특례자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6.9.23, 선고, 2014두40364, 판결)

【판시사항】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계특례자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제12조,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5. 4.) 제3조,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부칙(2010. 12. 31.) 제5조의 문언·체계·연혁 등에 비추어,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계특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10년 국적법 개정 이후에도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된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母)로 하여 출생한 자에게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위 부칙 조항의 입법 목적과 국적법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이하 '모계특례자'라 한다)도 실질에서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달리 보기 어렵고,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국적법 부칙(2010. 5. 4.) 제3조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 부칙(2010. 12. 31.) 제5조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의무가 유보된 사람은 종전의 유보된 기간 내에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함께 고려하면, 위 각 부칙 규정의 취지는 2010년 개정된 국적법이 구 국적법과 달리 외국 국적 포기의무 유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되었던 자들에게 개정된 국적법하에서도 구 국적법상 유보된 기간 동안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된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한편 국적법이 새롭게 규정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종전에 유보된 기간 동안에는 국적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이들 중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자로 나열하고 있는 사항에 모계특례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나, 국적법 제11조의2는 복수국적자에 관하여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국적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모계특례자가 당연히 복수국적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제12조,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5. 4.) 제3조,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부칙(2010. 12. 31.) 제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9. 선고 2014누45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위 개정 전 국적법 제2조 제1호가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모가 신고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부칙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모계특례자'라 한다).

(2)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이 원칙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미성년인 사람'을

구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되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 국적법 제12조는,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이중국적자 중의 하나로 규정하였는데, 구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3조, 법 제4조, 법 제8조, 법 제9조 또는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을 이중국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구 국적법 제12조는 이러한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되(제1항),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등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2항).

(3) 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국적법 제10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하면서도(제1항), 개정 전 구 국적법 제10조 제2항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되도록 정한 것과는 달리, 개정된 국적법 제10조 제2항은 각 호가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도록 규정하고, 만약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은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복수국적자로 규정하면서,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제1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제2호),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제3호)만을 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구 국적법 시행령 제16조가 이중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던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을 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국적법 제12조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제외)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2항과 유사하게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적법 부칙(2010. 5. 4.) 제3조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적법 시행령 부칙(2010. 12. 31.) 제5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의무가 유보된 사람은 종전의 유보된 기간 내에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

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관련규정의 문언·체계·연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계특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10년 국적법 개정 이후에도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부칙 조항은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된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게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입법목적과 국적법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모계특례자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달리 보기 어렵고,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국적법 부칙(2010. 5. 4.) 제3조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 부칙(2010. 12. 31.) 제5조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의무가 유보된 사람은 종전의 유보된 기간 내에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함께 고려하면, 위 각 부칙 규정의 취지는 2010년 개정된 국적법이 구 국적법과 달리 외국 국적 포기의무 유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되었던 자들에게 개정된 국적법하에서도 구 국적법상 유보된 기간 동안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된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한편 국적법이 새롭게 규정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종전에 유보된 기간 동안에는 국적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이들 중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자로 나열하고 있는 사항에 모계특례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나, 국적법 제11조의2는 복수국적자에 관하여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국적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모계특례자가 당연히 복수국적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칙 조항에 의하여 모계특례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실질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모계특례자인 원고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복수국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처분은 현행 국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신뢰보호 원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이다.

설령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원고로서는 국적법 제12조가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뢰보호 원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판시사항】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5. 1. 22.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헌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88조의2 제2항,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2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88조의2 제2항,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공1996상, 745)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8. 선고 2013나2027716, 2027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캐나다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7. 6. 1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07. 7.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07. 7. 4.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거소로 한 거소이전신고를 마쳤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③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피고의 아내 소외 2와 딸 소외 3은 2007. 7. 19. 이 사건 아파트를 거소로 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 15309호로 진행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2012. 5.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임차인인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우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고 한다)은,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국내체류지 등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위와 같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8조의2 제2항).

또한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은,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외국국적동포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하고(제2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이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에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다.

②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와 재외동포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에 비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의 경우에도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만 허용되어 그 공시기능은 부동산등기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등록 등과 비교한 공시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데 그친다.

한편 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할 의무를 지우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위와 같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제도를 신설하면서, 외국인(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도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시켰다(제3조의6). 이는 주민등록과 외국인등록부 등의 제한된 공시 기능을 보강하고자 한 것이고, 이로써 확정일자부에 의한 임대차계약 공시의 효과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새로 도입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하여 비로소 외국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공시방법이 마련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기왕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효력이 있는 것을 보완하여 공시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정신은 재외국민의 가족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아울러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주거의 안정과 보호의 필요성은 본질적으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주거생활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 및 법리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위와 같은 헌법적 이념이 가능한 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그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5. 1. 22.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외국민인 피고의 동거 가족으로서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 및 딸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거소로 하여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피고는 동거 가족인 배우자 및 딸의 위와 같은 국내거소신고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가 행한 국내거소신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 파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상속재산회복,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다.

남·북한주민 사이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북한주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나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의 회복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뿐 아니라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며, 결국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의 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가족관계와 재산적 법률관계의 차이,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적 처리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며, 따라서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사람(이하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서까지 단순히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니 상속권이 소멸한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와 부합하지 않고, 남·북한주민 사이에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에 행사기간에 관한 특례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흠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유추하여 흠결된 부분을 보충하는 법률해석이 가능하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은 남한의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되어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4조, 제36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999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453 판결(공1983, 348),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공1994하, 307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공1995하, 390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공1996하, 3602)

【전 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망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6. 19. 선고 2014나2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

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참조).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 역시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참조), 그중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3년의 단기 제척기간과 달리 상속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

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그에 따라 남북가족특례법은 남한주민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혼인 중의 자 또는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 민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한편 남북이산 후 남북가족특례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를 받은 북한주민이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악의인 상대방에 대한 재산의 반환범위를 기본적으로 현존이익으로 제한하고(제10조 제1항, 제2항),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이처럼 남북가족특례법의 규정들은 남·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권리 행사로 인하여 남한주민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남·북한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남북가족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라 할 것이다.

가족관계는 개인적 신분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사법적(私法的) 및 공법적(公法的)

법률관계도 가족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헌법 제36조가 국가로 하여금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는 가족관계의 존부 내지 형성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그치는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남북가족특례법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를 이유로 들어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하여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법률의 해석은 해당 법규정이 속하는 법체계 전체의 논리적 맥락에 따라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법률에 사용된 개념과 문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단절된 현실에서 남한주민과의 가족관계에서 배제된 북한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남·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을 해석·적용할 때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한주민 사이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북한주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나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의 회복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뿐 아니라 그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및 그 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마.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의 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가족관계와 재산적 법률관계의 차이,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적 처리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소외 2는 1950. 9.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가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한 북한주민으로서 부친 소외 3의 사망 시점인 1961. 12. 13. 당시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한편 소외 3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 23. 남한에 있던 소외 3의 처 및 자녀들인 소외 4, 소외 1, 소외 5, 소외 6, 소외 7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소외 2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소외 2의 딸인 원고가 소외 2의 상속권이 침해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10. 26.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남북가족특례법에서 정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4.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 남한의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다수의견의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

가. (1)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 우리 대한국민은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그동안 이산가족의 상봉과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주민 사이의 신분 및 재산관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현실화된 것을 계기로 남·북한주민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남·북한 사이의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북가족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남북가족특례법의 법률규정들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남·북한주민이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2조 역시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2) 상속권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혈연관계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존중과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혈연적 유대를 보호함에 있어서 국적이나 정치적 성향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북한주민의 상속권도 인정되고, 대법원도 일찍부터 북한 거주 상속인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453 판결 참조).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참조) 재산권의 주체인 이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국가의 헌법적 요청에서 제외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6·25 사변으로 인해 남북이산의 아픔을 겪은 지 60년 이상 경과하였다.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해 민간 차원의 교류가 단절되고 북한 사회에서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강하게 통제됨으로써 이 기간 동안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설령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남한의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민법에 의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아직도 북한주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하거나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상속재산의 회복에 적극 협력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이산의 아픔을 겪은 남한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이 법원에도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역시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사람(이하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서까지 단순히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니 상속권이 소멸한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와 부합하지 않고, 남·북한주민 사이에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에 행사기간에 관한 특례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와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당초의 남북가족특례법안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남북 분단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가 단절된 현실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하여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소의 제기에 장애가 없어지기 전에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위 기간이 3년 미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경우를 포함)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두었다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규정은 삭제되었다. 그 대신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은 법안의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에서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 제정·시행되었다.

남북가족특례법이 제11조 제1항에서 '민법 제999조'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음에도 '민법 제999조 제1항'만을 명시한 것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함으로써 북한주민이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제척기간의 경과로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부당함과,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남한주민이 입게 되는 불측의 손해 및 법적 안정성의 침해라는 상호 상반되는 이해가 충돌하는 국면에서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법률해석에 유보해 둠으로써 합리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상반되는 이해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남한주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즉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 상태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은 남한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남한의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분 상당의 가액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다른 공동상속인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북한주민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아 상속권 침해 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일률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대다수의 북한주민은 더 이상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갖지 못하는 반면, 민법상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남한의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는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남한의 다른 공동상속인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기여분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남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비해 북한주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남한주민의 신뢰나 거래의 안전은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행사기간을 제한하거나 회복청구의 상대방이나 회복범위를 제한하는 등 권리의 내용을 제한해석함으로써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남·북한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참칭상속인인 남한주민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진정한 권리자인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외면하는 것이다.

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흠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유추하여 흠결된 부분을 보충하는 법률해석이 가능하다. 이때 유추 적용한다는 취지는, 특정 사항에 관한 다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규율의 내용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다른 조항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어느 규정을 어느 범위에서 유추 적용할 것인지는 북한주민의 상속권 행사의 장애를 제거하여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단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신뢰한 남한 상속인의 법적 안정성의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남북 분단의 장기화'라는

국가적·역사적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유추 적용하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입국함으로써 남한 내 존재하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해석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논의는 북한주민의 상속권 보호라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에 기인한 것인데,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북한주민 중에서도 상속권의 보장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사람은 남한에 입국하여 남한 내 존재하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이 남한 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북한으로 가져가더라도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의 정치현실상 그 재산이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북한당국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이 자유로운 왕래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북한주민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재산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이 행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장래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나 통일 등에 대비한 권리보전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남한 내 상속재산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에게까지 남한주민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 북한주민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하다.

(2) 다음으로 권리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을 유추 적용하여 북한주민이 남한에 입국한 때에 민법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민법 제999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상속권 침해 시부터 10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타당하다.

북한주민이 남한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나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관계에 관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아야 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이 신분관계를 회복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신분관계를 회복한 후 상속회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2년보다 긴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 남한에 입국한 때에는 가장 먼저 혈육을 찾고 상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사람에 대하여 3년을 제척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에 의하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은 남한의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되어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편 북한주민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은 남북가

족특례법의 입법 과정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규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간 연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다수의견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제척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법률해석의 영역으로 남겨 두기보다는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 둔다.

마.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비록 망 소외 2의 상속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은 1978. 1. 23.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원고는 남한에 입국한 2009. 6. 11.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0.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남북가족특례법에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별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어 망 소외 2의 상속회복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남북가족특례법상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옳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신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서울 용산구 등에서 거주하는 甲 등이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법 2016.9.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서울 용산구 등에서 거주하는 甲 등이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라 한다)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Yongsan Relocation Program, 이하 'YRP 협정'이라 한다)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이하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이라 한다)하자 서울 용산구 등에서 거주하는 甲 등이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방부장관과 미국을 대표한 미국 국방부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현재 위치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이지 국방부장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정의 근거 법규인 YRP 협정 등에는 한미연합사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인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에게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졌으므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으로 귀속되는 국방부장관의 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합헌성과 합법성의 기준만으로 결정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제19조, 제38조 제1항

【전 문】

【원 고】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외 2인)

【피 고】

국방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3인)

【변론종결】

2016. 7.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4.에 한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승인처분 및 동두천 210화력여단 잔류 승인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LPP 협정과 LPP 개정협정의 체결

1) 피고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국방부장관은 2001. 11.경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이라 한다)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2) 피고와 주한미군사령관 등은 2002. 3. 29. 전국 28개 주한미군기지 및 시설과 경기도 내 3개 주한미군 훈련장 등 총 4,114만 평(총 공여지의 55.3%)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and Partnership Plan, 이하 'LPP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하였고, LPP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2002. 10. 31. 발효되었다.

3) 피고와 주한미군사령관 등은 2004. 10. 26. 전국 34개 주한미군기지 1,218만 평과 3개 주한미군훈련장 3,949만 평 등 모두 5,167만 평(총 공여지의 64%)을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의정부, 동두천, 파주, 춘천, 부산 등 5개 도시의 도심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2005년까지 조기 반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LPP 협정(이하 'LPP 개정협정'이라 한다)에 서명하였고, LPP 개정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2004. 12. 17. 발효되었다. LPP 개정협정은 반환 대상에 미군 제2사단 210화력여단(이하 '210화력여단'이라 한다)이 주둔한 동두천시 소재 '캠프 케이시'를 추가하는 한편, 미군 제2사단 전투부대들의 '캠프 험프리'로의 실제 이전은 양 당사국 국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2항).

나. YRP 협정의 체결

1)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은 2003. 5.경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하였다.

2) 피고와 주한미군사령관 등은 2004. 10. 26.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라 한다) 및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Yongsan Relocation Program, 이하 'YRP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하였고, YRP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2004. 12. 17. 발효되었다.

3) YRP 협정은, ①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는 평택 지역으로 이전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며(제2조 제2항), ② 서울 지역에 소재한 유엔사·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에 요구되는 임무와 기능이 적정한 시설로 이전된 후, 미국은 서울 지역에 소재한 유엔사·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시설 및 구역을 신속히 반환하고(제2조 제9항), ③ 양 당사국은 이전의 시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고 이전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으며(제2조 제5항), ④ 유엔사·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하고, 이 잔류부대의 규모·범위 및 위치는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제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46차 SCM 공동성명 발표

피고는 2014. 10. 24.(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2014. 10. 23.) 제46차 SCM에서 미국 국방부장관과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한미연합사 본부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현재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하였다.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한미연합사 잔류 결정'이라고 한다).2) 양 장관은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한국군의 동 전력증강 계획이 완성 및 검증되면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피고는 2020년경까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증강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다(이하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이라 하고, 한미연합사 잔류 결정과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 34, 원고 35(별지 원고 목록 순번 34번, 35번)는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별지 원고 목록 순번 1번부터 33번까지)은 서울 용산구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29호증, 을 제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대상적격 인정 여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등 참조). 또한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고권적 또는 일방적 행위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결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피고와 미국을 대표한 미국 국방부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와 210화력여단을 현재 위치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이지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정을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적격 구비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결정의 관련 법규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원고들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환경권 등이 제한을 받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①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②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③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설령 이 사건 각 결정이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결정의 근거 법규인 YRP 협정과 LPP 개정 협정에는 원고들과 같이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위와 같은 인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조약들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 또는 군사적 협력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16호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결정은 이미 서울 용산구에 주둔한 한미연합사와 동두천시에 주둔한 210화력여단의 잔류를 결정한 것이지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정을 하기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은 이 사건 각 결정의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군사기지법 제1조는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23조는 '군사기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5조 제1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매설물 등의 설치 등이 금지되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공작물·매설물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기지법 관련 규정들과 군사기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등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뿐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익은 군사기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정으로 인하여 군사기지법에 규정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주둔으로 지정된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각 결정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역 발전이 지체되거나 주한미군 범죄 및 환경오염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4) 따라서 원고적격이 없는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각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참조).

2) 헌법은 대통령에게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 등을 지도록 하는 한편(제66조 제2항)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권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대한 권한과 함께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제66조 제1항, 제73조),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60조 제2항).

이 사건 각 결정과 같은 외국군대의 국내 주둔에 관한 결정은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헌법도 외국군대의 국내 주둔에 관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외국군대의 국내 주둔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이 사건 각 결정과 같은 외교 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이나 국회와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이 사건 각 결정과 같은 사안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처럼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외교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법한지 여부, 즉 국가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나 법률유보 원칙,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에 관한 조약인 YRP 협정과 LPP 개정협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피고는 미국을 대표한 미국 국방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쳐 YRP 협정 제2조 제5항에 따라 한미연합사의 이전계획에 필요한 조정으로서 한미연합사 잔류 결정을 하고, LPP 개정협정 제1조 제2항에 따라 210화력여단의 실제 이전 시기를 정하는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YRP 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근거하여 위 조약들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주둔지를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결정에 대하여 별도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와 미국을 대표한 미국 국방부장관의 합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졌으므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으로 귀속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이 합헌성과 합법성의 기준만으로 이 사건 각 결정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므로 자제되어야 한다(설령 법원이 이 사건 각 결정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여 그 확정판결이 피고를 기속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합의인 이 사건 각 결정이 국제법 차원에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사법심사가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

판사 호제훈(재판장) 이민구 이정훈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甲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사증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16.9.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甲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사증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甲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甲이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인데, 甲이 입국하여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어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게 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정한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고, 입국금지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유효한 이상, 입국금지조치를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제3항,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한 외국선박 선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선박을 몰수한 사례 (외국선박의 대한민국 영해 내 어로행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3814 판결)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14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피 고 인 띵○○○ (DING ○ ○, 1971. 8. 10.생), 선장
주거 중국 길림성 화룡시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검 사 김동희(기소), 이동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수(국선)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녕성 대련시 선적의 통발 어선인 선명미상 중국어선(30톤급 목선, 이하 '위 선박'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고,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16:00경 중국 산동성 영성시 용수도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통발 어구 1,000개를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2016. 6. 12. 12:00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11해리 해상(북위 38도 01분, 동경 124도 23분)에서 통발 어구 200개를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10경 대한민국 영해 약 1.5해리를 침범한 위 백령도 북서방 약 10.5해리 해상(북위 38도 01분, 동경 124도 24분)에서 투망을 완료한 후, 2016. 6. 13. 10:00경 위 투망 완료 위치에서 양망을 시작하여 같은 날 10:30경 양망을 완료하는 등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짜○○○, 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황보고서, 나포중국어선 검거 증거사진, 적발경위서, 나포상황도, 선명미상(무등록중국어선), 현장확인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선박 위탁관리에 대한), 선박인수증, 압수물보관서약서,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면허 없이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에 대한 전반적 권한을 행사하고, 조업지 결정, 항해 및 선원들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미등록 선박으로 크기가 작아 별도로 항해사와 기관사를 두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통발어구를 투망하고 양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거되어 포획한 어획물이 없었고, 나포 당시 해경의 지시에도 순응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 _____

새소식 요약

| 기간 : 2016. 9. 1 ~ 2016. 11. 30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O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성장 전문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는 9.5(월)-9.9(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Global Green Growth Week)”을 개최하였다.

O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2016년 9월 7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6년 국제법 학술대회를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 개최하였다.

O 정부는 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6.9.9.(금)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을 임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O 지난 9.4.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직에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前 인권대사)가 9.13.(화) 임명되었다.

O 윤병세 외교장관은 9. 19.(월) 제71차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난민 및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에스토니아 대통령, 조지아 총리,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와 함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6 관련 고위급 행사」를 공동 주최하였다.

O 9.23(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우리 국민들의 외교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이슈 공개 강연회(IFANS Talks)’를 개최하였다.

O 윤병세 외교장관은 9. 20.(화) 유엔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난민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O 윤병세 외교장관은 9. 21.(수) 제7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 개최된 「인권 주류화를 통한 분쟁 예방 고위급 회의」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행동을 요청하였다.

O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참석 계기 9.22(목)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 북한의 5차 핵실험 문제 △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난민 문제 등 유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외교부 주관 「2016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사업에 선발되어 활동 중인 국민 공공외교단 대상 공공외교 아카데미가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O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제60차 총회(9.26~30, 비엔나)에서,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지난 9.9 5차 핵실험까지 북한의 5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 비핵화 공약에 따라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전 회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새소식 요약

O 외교부 및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6연임 되었다고 밝혔다.

O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0.5(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관련 회의(Brussels Conference on Afghanistan)에 참석하여, 국가재건 과정에 있는 아프간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2017-2020년간 국내 절차에 따라 총 1.2억달러를 기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NA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의 특별 초청으로 10.6(목)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본부를 방문하여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NATO 협력관계에 대해 연설하고「엔스 스톨텐베르그」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O 2016.10.6.(목)-7.(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O 우리나라는 금년도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의장국 자격으로 10.13(목)-14(금) 프랑스 파리에서 2016년도 제2차 MOPAN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의장: 이용수 개발협력국장)하였다.

O 우리 정부는 지난 10.4(화) 허리케인 Matthew가 강타하여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아이티에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O 외교부는 10.14(금)자로 주요 국가시책인 일·가정양립제도의 이행을 인사 등 조직 운영 측면에서 보다 체계화하고, 가정친화적 업무문화를 조성해나가기 위하여, '일·가정양립 고충심의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O 외교부는 2016년도「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 Junior Professional Officer)」선발시험 시행계획을 10.14(금) 공고하였다.

O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는 10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외교의 새로운 기록과 증언'이라는 주제 하에 연례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O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제71차 유엔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 한국협회 주최로 10.24(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는'제71회 유엔의 날 기념 오찬'에 참석하여 유엔의 날과 아울러 금년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25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시행할 예정이다.

O 외교부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국제정세, 우리 정부 외교 정책 기조와 주요 외교 활동 등을 종합 수록한「2016 외교백서」를 발간하였다.

O 외교부는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10.25(화) "한국과 OECD – 과거, 현재, 미래"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O 우리나라는 2016.10.25.(화)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017년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새소식 요약

O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10월 26일 (수)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격동기 세계질서와 한국의 새로운 외교전략”을 주제로 「2016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10.26(수) 서울에서 「한-카리브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제6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였다.

O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는 우리 젊은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016년도 국제기구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O 외교부는 2016.11.2.(수) 서울에서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를 개최하였다.

O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11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일자(뉴욕 현지시간 11월 3일 오전)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O 제3차 유엔 평화유지 기술협력 심포지움(The Third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echnology in Peacekeeping Symposium)이 외교부, 국방부, 국토연구원 및 유엔의 공동주최로 11.7(월)-11(금)간 서울시 신청사에서 개최되었다.

O 뉴욕 유엔 본부에서 11.3(목)(현지시간) 실시된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위원(임기2017-21년) 선거에서 현 위원인 우리나라의 박기갑 교수(고려대)가 재선되었다.

O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27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한미우주협력협정)”이 11월 3일 공식 발효되었다.

O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파리협정 발효(’16.11.4) 이후 첫 당사국 총회인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었다.

O 외교부는 2016.11.8.(화)-9.(수)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3회 한·일·중 3국 협력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O 국립외교원은 11.11(금) 10:30~17:00, 본 원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핵정책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6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국’ 기념 세미나 겸 한국핵정책학회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O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8.1(월) 임기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1.16(수)부터 11.23(수)까지 방한하였다.

O 국립외교원은 11.18(금) 16:00~17:30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군축·비확산을 통한 평화 증진(Enhancing peace throug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을 주제로 ‘제5차 국립외교원 강연(KNDA 렉처) 시리즈’를 개최하였다.

새소식 요약

O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구조팀은 2016.11.14.~18일간 진행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주관의 인증평가에서 최상급(Heavy) 등급을 받아 그 역량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

O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11.7(월)-18(금)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11.19(토) 새벽 3시 경(모로코 현지시각 기준) 폐막하였다.

O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11월 24일(목) 국립외교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제인권규약 채택 5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209차 이사회에서 11.21.(캐나다 현지시간) 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위원 선거가 실시되어 우리나라의 유경수 現 위원이 재선되었다.

O 11.23(수)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는 정례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김현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UN대사)를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O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1.25(금)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비확산·이주·평화유지군·난민·테러리즘·정책 혁신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적 지원 및 회원국간 결속 강화를 위한 믹타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O 국제해사기구(IMO)는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11.21-25, 런던)에서 금년 들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정회람문 (Circular)을 11.25(금) 채택하였다.

O 대한민국이 동북아 국가중 최초로 전세계 80여개국이 참여하고 2억7,400만명의 불어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불어권 국제기구(OIF)에 옵서버로 가입하였다.

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 11.30(수) 23:09(11.30(수) 09:09(뉴욕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9.9)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확대·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성장 종합 국제행사 제주도에서 개최 (2016. 9. 1)

□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성장 전문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는 9.5(월)-9.9(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Global Green Growth Week)"을 개최할 예정이다.

○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은 GGGI가 국제기구 출범 후 4년간의 성과를 집약·홍보하고 국제사회의 녹색성장을 가속화하는데 기여코자 기획한 첫 종합 국제행사로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고위인사를 포함하여 1,2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효과의 극대화(Maximizing Impact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Green Growth)"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는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 행사는 총 60여개의 세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행사로는 △녹색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할 고위급 행사인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lobal Green Growth Summit; GGGS)", △포용적 녹색성장 관련 지식과 모범사례를 공유할 "글로벌 녹색성장 지식플랫폼(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 연례회의", △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고위급 회의인 "아시아 지역 정책 대화(Asia Regional Policy Dialogue)", △GGGI의 2017-18년 운영방안을 논의할 "GGGI 제 5차 총회 및 제9차 이사회", △르완다, 몽골, 피지 등 개도국별 "녹색성장정책 설명회" 등이 개최된다.

○ 또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녹색기후기금(GCF),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세계야생동물기금(WWF), 제주도,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녹색기술센터 등의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 박람회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상세 행사 계획은 www.GGGWeek2016.org 참조

□ 외교부는 행사 준비를 위한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참가하여 동 행사를 지원해왔으며, 9.8(목)에는 외교부 2차관 주최로 GGGW 폐회 만찬을 개최할 예정이다.

○ 동 행사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해법들을 도출하여 전지구적 녹색성장의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교부-대한국제법학회 공동주최 2016 국제법 학술대회 개최 (2016. 9. 7)

□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2016년 9월 7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2016년 국제법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동 국제법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국제법학자들이 모여 '글로벌 이슈의 동향과 국제법의 대응'이라는 주제하에 △'초국경적 글로벌 이슈와 국제법 형성' 및 △'동북아 지역 글로벌 이슈의 재검토'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번 학술대회에는 170여명의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 및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개회사), 신각수 국제법센터 소장(만찬사) 등이 참석하였다.

□ 제1세션 '초국경적 글로벌 이슈와 국제법 형성'에서는 사이버공간/국제테러에 대하여 박노형 교수(고려대)와 토마스 리 교수(포담대)가 각각 발제를 진행하였다.

○ 박노형 교수는 '국제사이버법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와 중국 및 러시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국제규범화 경쟁 상황(사이버안보 vs. 정보안보)에서 한국

이 취할 수 있는 입장, △정보안보 유엔정부전문가 그룹의 활동, △사이버 공간과 경제·무역 관련 데이터 수출에 대해 국제적 규율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하여 다각도에서 설명하였다.

- 토론시간에는 사이버법 관련 용어번역과 국제사이버법의 범위, 미국의 사이버 전략, 국제사이버법과 정보법(lex informatica)과의 관계, 사이버테러에 대한 무력충돌법상 원칙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적 질의 및 논평이 이어졌다.

○ 토마스 리 교수는 '국제테러와 법'에 대하여 △테러리즘의 정의, △테러리즘의 유형, △테러리즘 규제와 관련된 조약 및 관습법, △미국법상 테러리즘 규제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 토론시간에는 테러와의 전쟁 종결시기 및 적전투원 석방 문제, 미국법상 테러 피해자의 실제적 피해보상과 구제효과, 사이버 테러, 동아시아 지역의 테러 및 대응법률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평과 질의가 있었다.

□ 제2세션에서는 '동북아 지역 글로벌 이슈의 재검토'를 주제로 북한인권/ 초국경적 환경문제에 관한 발제를 백범석 교수(경희대)와 정서용 교수(고려대)가 각각 진행하였다.

○ 백범석 교수는 '북한인권 핵심가해자의 책임규명'과 관련하여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상 관련 쟁점들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로마규정 제53조상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정의(the interests of justice)와 평화(the interests of peace)의 개념 구별 필요성, △통일 후 전환기 정의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 정서용 교수는 초국가적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지역에서의 협약중심 환경보호 체계, 동북아지역의 효과적인 다자 및 양자 환경협력 사례를 소개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제도의 중요성과 △제도 중심의 환경보호 지향 필요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 협약의 보완 활용가능성, △국가행위의 변화를 위한 경제적 동기 부여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금번 학술대회는 국제법 역량강화와 이해제고를 도모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 동 학술대회 자료집(만찬사 포함) 전문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이슈별자료실>조약과 국제법>국제법 참고자료)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임명 관련 대변인 논평 (2016. 9. 10)

1. 정부는 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6.9.9.(금)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을 임명한 것을 환영한다.
   ※ Zeid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과 사라 후세인(Sara Houssain) 변호사를 책임규명 독립전문가로 지명
2. 정부는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이 북한인권과 국제법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민생은 도외시한 채 희소한 재원을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주민들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14. 2월 발표)에서 북한에서

광범위하며,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오고 있고, 많은 경우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결론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참고사항

1. 설치 근거

□ 제31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16. 3. 23.)된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제안*을 반영하여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설치를 결정

* 다루스만(Darusman) 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6. 2월 제31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동 전문가 그룹 설치 제안

2.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개요

□ 임기: 6개월

□ 임무

○ 북한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모색할 적절한 방법 모색

○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포함하여 실용적인 책임규명 메커니즘 권고

※ 북한인권 침해의 가해자/기관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책임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임무

□ 활동 결과: 제34차 인권이사회('17. 3월)에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 구성원: 2명

○ 소냐 비세르코(세르비아, 48년생, 여)

- '71-'91 유고슬라비아 외교부 근무
- '13-'14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위원
- '94- 현재 세르비아 헬싱키위원회(Helsinki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Serbia)* 창립자 겸 회장

* 헬싱키 위원회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설립·활동 중인 인권 NGO

○ 사라 후세인(방글라데시, 64년생 추정, 여)

- 방글라데시 인권변호사,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위원
- '97-'03 국제인권보호센터(INTERIGHTS) 남아시아 법무담당
- '16 미국무부 International Women of Courage Award 수상. 끝.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정훈 前 인권대사 임명 (2016. 9. 14)

1. 지난 9.4.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에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前 인권대사)가 9.13.(화) 임명되었다.

※ 북한인권법: 제9조2항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이정훈 대사는 2013.8.1. 인권대사(대외직명대사)에 임명된 이래 3년간 인권외교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북한인권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엔 메카니즘의 국제회의, 민간세미나, 인권행사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에 기여해 왔다.

3. 앞으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양자·다자 무대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세미나, 설명회 등 해외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장관, 난민·이주민 고위급 회의 및 SDG 16 고위급 행사 참석 (2016. 9. 20)

1. 윤병세 외교장관은 9. 19.(월) 제71차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난민 및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에스토니아 대통령, 조지아 총리,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와 함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6 관련 고위급 행사」를 공동 주최하였다.
   ○ 난민 문제는 금년도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9.19 및 9.20 이틀 연속 유엔총회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각각 주최하는 난민 및 이주민 관련 최고위급 차원의 회의가 연이어 개최됨.
   ○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은 금년도 유엔총회의 주제로서 우리는 지난 1년간(2015.7-2016.7) SDG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으로서 SDG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SDG 16 :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2. 윤 장관은 「난민 및 이주민 고위급 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현재 난민 및 이주민 이동 규모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고 그 발생 원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포괄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난민과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단기적으로 인도적 지원의 확대와 함께 난민 처리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 및 정당한 사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가 중요하며, 우리가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여 난민 심사 및 처우를 체계화하였고, 2015년 난민 재정착 사업을 실시하였음을 설명함.
   ○ 장기적으로는 난민의 자립을 위해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지난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 지원을 10배 증대하고, 교육, 보건, 직업 훈련 제공을 통해 인도적 지원 및 개발을 연계시키고 있음을 설명함. 또한, 작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에 따라 특히 여성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소개함.
3. 한편, 윤 장관은 "203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인 제도: E-거버넌스, 투명성과 공공서비스" 주제 하에 개최된 「SDG 16 관련 고위급 행사」에서 SDG 16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 국제사회는 지난 15년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추진해 오면서 올바른 제도가 구축되어야만 빈곤 종식 등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2030 개발의제에 목표 16으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
   ○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SDG 16은 그 자체로서 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의 달성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소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함.
   ○ 특히, 윤 장관은 △국제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온 E-거버넌스 분야에서 우리의 전자정부 시스템 관련 노하우를 개도국들과 공유하고, △전자정부시스템 사용자인 글로벌 시민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SDG 16 거버넌스 부분 이행을 돕기 위해 △UNDP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거버넌스 신탁기금'에 300만불을 조만간 기여할 것임을 발표함.

국립외교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이슈 공개강연회 개최 (2016. 9. 20)

□ 9.23(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우리 국민들의 외교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이슈 공개 강연회(IFANS Talks)'를 개최 할 예정이다.

※ 2013년 5월 이후로 개최 되어온 IFANS Talks는 이번이 13번째 강연회로서 국제이슈, 공공외교, 국제기구진출 등에 관심 있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로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및 외교단 등 평균 약 300여명 참석예정

※ 강연자 및 주제

- 클레어 펀리(Clare Fearnley), 주한 뉴질랜드 대사
  「경제적으로 통합된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An economically integrated and peaceful Asia-Pacific」
- 다토 로한나 람리(Dato Rohana Ramli),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말레이시아의 여성 'Women in Malaysia'」
- 엠마 프랑수와즈 이숨빙가보(Emma-Francoise Isumbingabo), 주한 르완다대사
  「르완다, 1994 대학살, 22년 그 후 'Rwanda, 22years after 1994 Genocide'」

□ 이번 공개강연회는 9.23(금) 14:30~16:30,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되며, △클레어 펀리(Clare Fearnley) 주한 뉴질랜드대사, △다토 로한나 람리(Dato Rohana Ramli)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엠마 프랑수와즈 이숨빙가보(Emma-Francoise Isumbingabo) 주한 르완다대사 등 3명의 여성 대사들이 연사로 참석하며,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강연 및 연사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금번 공개 강연회(IFANS Talks)의 강연 내용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www.ifans.go.kr) 및 유투브 채널(www.youtube.com/kndalive)을 통해 게재되며, 국립외교원 공식 페이스북 및 트위터의 링크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윤병세 외교장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2억 3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발표 (2016. 9. 21)

1. 윤병세 외교장관은 9. 20.(화) 유엔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난민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 9. 19.(월) 「유엔 난민 및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이어 개최된 금일 회의에는 50여개 국가들이 참석하여 난민 지원 방안을 발표함.
   ※ 금번 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여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에티오피아, 요르단, 멕시코 및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 주최하고, 약 50개 국가가 참석
2. 윤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2014. 12월 요르단 자타리 소재 시리아 난민캠프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하는 인도주의 외교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 전쟁 당시 대량 피난민 등 우리의 경험을 통해 전세계 난민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안전, 그리고 인간 존엄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국제 난민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14. 12월 윤 장관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운영한 자타리 난민캠프를 방문하여 시리아 난민들을 격려하고, 자타리 난민캠프에 약 100만불의 인도적 지원 제공
3. 윤 장관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 기여 방안으로 향후 3년간 2억 3천만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아울러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난민법과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난민 재정착 사업을 통해 난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행동 촉구 (2016. 9. 22)

1. 윤병세 외교장관은 9. 21.(수) 제7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 개최된 「인권 주류화를 통한 분쟁 예방 고위급 회의」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행동을 요청함.
   ※ 동 행사는 스위스와 독일 외교장관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윤 장관 이외에 Zeid 인권최고대표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하고 라트비아, 아르헨티나,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조지아 외교장관 등 참석
   ※ 동 회의 주제인 '인권 주류화를 통한 분쟁 예방'은 분쟁 발생이 일어난 많은 경우 인권 침해와 억압이 원인이었던 점에 주목하여,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
   - 금년 6. 1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우리를 비롯한 70여개 국가들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권과 분쟁 예방에 관한 6·13 호소문' 발표
2. 윤 장관은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 악화될 경우 분쟁상황으로까지 이를 수 있음을 지적한 뒤, 국제사회가 금번 유엔 총회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청함.
   ○ 윤 장관은 특히, 최근 북한이 최악의 홍수 피해 가운데에서도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은 도외시한 채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평범한 주민들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평범한 북한 주민들임을 잊지 않고,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대량 인권 침해는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함.
3. 참석자들은 북한 등에서 인권 침해가 분쟁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이전에 유엔이 인권 유린 상황에 처한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유엔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함.
4. 윤 장관의 금번 패널리스트 참석은 인권이사회 의장국이자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유엔내 인권 주류화 노력을 통한 분쟁 예방 필요성 및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윤병세 외교장관, 유엔 총회 참석 계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2016. 9. 23)

1. 윤병세 외교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참석 계기 9.22(목)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 북한의 5차 핵실험 문제 △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난민 문제 등 유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윤 장관은 반 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5차 핵 실험을 즉각 규탄한 것을 평가하고, 금번 유엔 총회에서 개막 이틀 만에 20여 개국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할 정도로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강력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 반 총장은 유엔 안보리가 단합하여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 반 총장은 9.21 작일 개최된 「파리협정 발효를 위한 고위급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메시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바, 윤 장관은 우리 정부가 관련 국내 비준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윤 장관은 우리나라는 그간 ECOSOC 의장으로서 지속가능개발(SDGs)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및 검토 체제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동 분야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윤 장관은 또한 우리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2억 3천만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공약하였음을 설명하였다.

5. 윤 장관은 반 총장이 지난 10년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증진, 난민 문제 및 유엔 개혁 등 분야에서 남긴 많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 반 총장은 그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임기 중 한국 정부와 국민의 성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끝.

공공외교 아카데미 열띤 호응속 성황리 개최 (2016. 9. 26)

□ 외교부 주관 「2016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사업에 선발되어 활동 중인 국민 공공외교단 대상 공공외교 아카데미가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금번 아카데미는 국민 공공외교단을 대상으로 외교, 문화, 방송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및 토론을 통해 국민 공공외교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외교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단간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 올해 초 △국민, △청년, △시니어 등 분야별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민간인 25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 공공외교단은 국내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1회차 아카데미(9.9(금),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는 120여명이 참석, 2회차(9.23(금))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2회차에는 추가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카데미 종료 후에는 수료식도 개최되었다.

□ 동 아카데미에는 나승연 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 및 일리야 벨랴코프 방송인을 포함하여, 외교, 문화, 언어, 방송, ICT 융복합 콘텐츠 등 각 분야 전문가 6인이 참여하여 주제별 강연과 더불어 외교단과 직접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 2016 공공외교 아카데미 초청 전문가 6인 명단 : 외교(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존 라일리 주한뉴질랜드대사관 참사관), 문화(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언어(나승연 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 방송(일리야 벨라코프 방송인 'JTBC 비정상회담' 등 출연), ICT 융복합 콘텐츠(이재우 닷밀 대표)

○ 방송·문화 분야 전문가이자 멘토로 1회차 아카데미에 참석한 일리야 벨랴코프(방송인, KF 홍보대사)씨는 "공공외교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가간 문화의 상호 이해라고 생각한다. 방송활동을 통해 경험한 문화의 이해와 소통의 방법을 오늘 외교부 국민 공공외교단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다. 민간인들이 외교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더욱 많은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 며 참석한 국민 공공외교단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 최영삼 문화외교국장은 2회차 마지막 시간인 공공외교 아카데미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 공공외교단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금번 아카데미에서 각자 국민 외교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더욱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당부하였다.

○ 이날 시니어 공공외교단을 대표하여 수료증을 받은 최하경 단장(73세)은 "현재 시니어 외교단은 총 37명이 활동 중인데, 사회 각 분야에서 쌓은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들로서 이제 외교 분야에서 경험을 활용하고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 또한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청년

등 다른 그룹에서 활동 중인 외교단과의 만남도 뜻깊었다. 향후 활동에 있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60차 IAEA 총회, 역대 가장 강력한 북핵 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 (2016. 10. 1)

1.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제60차 총회(9.26~30, 비엔나)에서,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지난 9.9 5차 핵실험까지 북한의 5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 비핵화 공약에 따라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전 회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 결의 주도국인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등 우방국 외에도 금번 결의에는 케냐,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이 최초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바, 작년보다 공동제안국이 증대(2015년 63개국→2016년 70개국)
2. 이번 결의는 금년 북한의 재처리 활동 재개 사실을 명시하고, 이를 포함 △영변 5MW(e)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 시설의 확장·가동 등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등 작년 결의보다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번 결의에 새로이 반영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한층 강화된 용어로 규탄('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표현 사용) ↔ 작년 결의에서는 '규탄'(condemns) 표현
   ○ 금년 재처리 활동을 포함해 북한이 핵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강력히 개탄(strongly deplores)
      - △IAEA 사무총장 보고서 상 북한의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가 있었음을 주목하고, △북한이 스스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였고,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 아울러, IAEA 사무총장 보고서 상 '방사화학 실험실'(Radiochemical Laboratory)이 '재처리 시설'(Reprocessing Facility)임을 명기하고, 동 재처리 시설의 재개 및 가동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강력히 개탄
   ○ 아울러, 북한이 9.19 공동성명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take concrete steps)을 강력히 촉구
   ○ 또한 북한이 금년 1.6 '수소 폭탄'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9.9 표준화된 핵탄두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3. 1993년부터 채택되어 온 IAEA 북핵 결의는 북한이 금년 들어 2차례 핵실험(1.6, 9.9)을 감행한 엄중한 상황 하에서 전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채택된바, 북한의 핵실험 및 불법적 핵활동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게 된 계기로 평가된다.
4. 우리나라는 금번 제60차 IAEA 총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 9.27(화) 기조연설을 통해 IAEA 회원국들이 강력한 북핵결의 채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되고 강력한 의지를 발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특히, 윤병세 외교장관이 최근유엔총회에서 북한이 유엔역사상 전례없이 안보리 결정을 포함한 유엔헌장상 의무를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북한의 행태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각히 검토해야한다고 제기한바 있음을 상기한바, 이러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이번에 강력한 결의 문안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42개 국가가 對北경고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으며, 동 계기 우리 주도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43개국이 참가한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와 5개국 MIKTA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단호하고 강력한 대북메시지가 발신된바, 이번에 핵 기술 및 검증을 다루는 국제기구인 IAEA총회에서도 168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북핵결의가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구에 대해 「전체 국제사회 對 북한」 구도가 보다 공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다시 한번 세계 하늘의 주역이 되다 - 우리나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6연임 성공 - (2016. 10. 5)

□ 외교부 및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6연임 되었다고 밝혔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1947년 설립,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 이사국 5연임 중

□ 10월 4일 14:00(현지시각) 치러진 이사국(파트 III)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2개 국가중 총 146표를 얻어 역대 2번째로 높은 득표수로 이사국 6연임에 성공하였다.

* Part III 이사국 당선국 : 쿠바(160표), 케냐(159표), 터키(156표), UAE(156표), 알제리(151표), 탄자니아(150표), 대한민국(146표), 콩고(136표), 카보베르데(136표), 에콰도르(133표), 우루과이(133표), 파나마(130표), 말레이시아(129표) / 낙선국 : 인도네시아(96표)

** 역대 대한민국 득표수 : '01년 109표, '04년 125표, '07년 124표, '10년 141표, '13년 156표

□ 우리나라는 지난 1년간 전 재외공관을 통한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추진하였으며,

○ 금번 총회에 국토교통부, 외교부 및 국내 항공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만관 합동 대표단(수석대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그간 우리나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국가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막바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다.

○ 또한 선거 전날인 10월 3일 저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주최 '한국의 밤' 리셉션을 개최하여 각국 대표단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는 자리를 만들어 큰 호응을 받았다.

□ 우리나라는 '01년 최초로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전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공분야 무상교육훈련 실시, 안전기금 지원, ICAO 사무국에 우리나라 전문가 파견,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 이번에 6연임에 성공함으로써 국제 항공사회에서 리더 국가로서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 이번 ICAO 이사국 6연임은 대한민국이 국제항공사회에서 명실상부하게 지도국가의 위치를 확보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 등 우리 항공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UN 전문기구인 ICAO는 국제항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47년 설립되었으며, 국제항공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표준 및 글로벌 항공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특히, ICAO 이사회는 매 3년 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피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국제

항공에 적용되는 항공운송 관련 각종 기준을 제·개정 하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이다.

윤병세 장관, 아프간 관련 브뤼셀 회의 참석결과 - 아프가니스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 (2016. 10. 6)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0.5(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관련 회의(Brussels Conference on Afghanistan)에 참석하여, 국가재건 과정에 있는 아프간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2017-2020년간 국내 절차에 따라 총 1.2억달러를 기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우리 정부의 경제·사회 분야 연간 기여액 3,000만 달러는 국제사회의 연간 공약액 약 38억 달러(4년간 총 152억 달러)의 0.78% 수준
   - 연간 미국 10억불, 독일 5억불, 일본 2.6억불, 영국 2.5억불, 호주 0.8억불 등
   ※ 금번 아프간 관련 브뤼셀 회의는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최고행정관을 포함, 75개국 대표 및 25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 그간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재건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프가니스탄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 협의
   - 미국, 독일 등 26개국 외교장관 등 50여개국 각료급 인사 참석
2. 윤 장관은 상기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 9월 유엔총회에서 논의된 '평화의 지속화'가 아프간 안정화와 직결되며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안보, 개발, 인권이 함께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인권의 주류화를 통해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구체적으로 금년 5월 세계 인도지원 정상회의시 발표된 "인류애를 위한 의제(Agenda for Humanity)"를 달성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기치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정신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함.
   ○ 한국의 경우, 특히 작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구상에 따라 아프간 소녀 및 여성의 보건, 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3. 이번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아프간 전환기(2015년-2024년) 동안 아프간의 평화,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프간 국민이 주도하는 국가 및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참여국들은 2020년까지 국제사회의 지원과 재정기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평화와 화해, 폭력 근절, 경제 개발, 역내 경제협력 등을 위한 국제사회와 역내 국가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함.
4. 아프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은 아프간이 국가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예방적 대응은 물론 경제·사회 발전을 통해 난민 발생 방지 및 인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프간은 이라크에 이어 전세계 테러빈발국 제2위 국가로서, 2015년 탈레반은 1,093건의 테러를 자행, 4,512명이 사망
   ※ 아프간 難民은 전세계 難民의 약 20%(260만명)를 차지

윤병세 외교장관, NATO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면담 및 북대서양이사회 연설 (2016. 10. 7)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NATO의 최고의사결정기

관인 북대서양이사회의 특별 초청으로 10.6(목)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본부를 방문하여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NATO 협력관계에 대해 연설하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 북대서양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 : 집단방위기구인 NATO의 최고 의사결정기관(principal decision-making body))으로 통상 28개 회원국 상주 대사들의 참석(NATO 사무총장 주재)하에 NATO 회원국의 평화·안보 관련 모든 이슈들에 대해 협의

※ 한국은 2006년 이후 NATO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관계 구축

2. 윤 장관은 북대서양이사회 연설을 통해 28개 NATO 회원국 대표들에게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시급성 및 엄중성과, △북한의 셈법 변화 유도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와 함께 인권, 해외노동자 문제,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holistic)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사회 對 북한 구도"하 대북 압박 및 억제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NATO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 특히 새로운 안보리 결의는 2270호의 빈틈을 메우고 기존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신규 요소를 도입해야 하며 유엔 헌장 41조에 따른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효과적 압박과 제재는 강력한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NATO와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공유를 제안하였다.

3. 윤 장관은 또한 한-NATO 협력이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역사적 관계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함께 기여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하였음을 평가하고, 향후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관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4. 참석 NATO 회원국 대사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금번 연설이 북핵·미사일 문제의 엄중성, 시급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한-NATO간 협력을 강화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회원국 대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및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특히 NATO 회원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NATO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였다.

○ 동 대사들은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와 분리할 수 없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외교관계를 포함한 대북 제재 및 압박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5. 한편, 윤 장관은 동 연설 직전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북핵·미사일 등 한반도 정세 및 NATO 정세에 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으며, △한-NATO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윤 장관은 특히 그간 북한 핵·미사일 도발시 강력한 규탄 성명 발표 등 NATO가 보여준 전폭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NATO가 대북 압박 및 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NATO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규탄 성명 총 17차례 발표(올해만 5차례 발표)
- 금년 7.8-9 바르샤바 정상회의 코뮤니케에 북핵 문제 조항(67항) 포함 등

○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관련 대북 압박 및 제재에 적극 동참할 의지를 표명하고, 이와 관련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 또한, 금번 면담을 통해 한-NATO 양측은 사이버 등 신안보위협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6. NATO는 한미동맹과 함께 2차대전 후 가장 오래되고 성공적인 동맹으로서 금번 윤 장관의 방문

및 연설을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NATO의 적극적인 지지 및 협력의지를 확인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대북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NATO는 한국전쟁 당시 12개 창설국 중 11개국이 전투병력, 의료 또는 물자 지원을 통해 참전하는 등 한국과 긴밀한 역사적 인연을 가졌으며, 특히 금년은 한-NATO간 공식 협력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로서, 금번 외교장관의 NATO 방문과 연설은 2005년 12월 반기문 전 외교장관과 2010년 5월 유명환 전 외교장관에 이어 3번째이다.

※ 한국은 2006년 이후 NATO와 공식적인 파트너십 관계 구축

7. 아울러, 금번 북대서양이사회 연설과 NATO 사무총장 면담은 10.5(수) EU 방문 및 모게리니 EU 고위대표 면담과 함께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유엔 총회에서의 대북 압박 외교에 이어, 하반기 전략적 로드맵에 따른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 압박 및 억제 모멘텀을 지속·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최초로 한국 외에서 개최 (2016. 10. 8)

1. 2016.10.6.(목)-7.(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개최되었는데, 한국 외에서 개최된 것은 금번이 처음이다. 최근 급격히 악화된 역내 안보 환경에도 불구하고, 참여국 정부 대표 및 민간 전문가들을 비롯해 약 120명이 참석하여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협력의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실시한 헤더 히긴바텀 미 국무부 부장관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논의가 '협력의 보금자리(habitat for cooperation)'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으며, 신동익 외교안보소장은 개회사에서 역내 국가들 간에 '포용적인 정체성(inclusive identity)'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다자협력 참여국들의 굳건한 의지(firm commitment)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첫날 오전에는 랄프 코사 미 CSIS 퍼시픽포럼 소장의 주재로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김성한 교수(한국), 존 햄리 미 CSIS 소장(미국), 빅터 차 교수(미국), 쑨 저 교수(중국), 요시히데 소에야 교수(일본),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러시아), 담바 간바트 교수(몽골) 등 각 국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참석하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이후 오후에 개최된 분과회의 중 원자력 안전 세션에서는 동북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원자력 발전소 현황을 감안,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설립을 위한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과 한일중 3국협력을 주축으로 하여 원자력 안전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 재난관리 세션에서는 각 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관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민간, 학계, 시민사회 등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금년에 최초로 개최된 신뢰구축조치 세션에서는 동북아 지역에 신뢰구축조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사무국 설치 등의 제도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EU 등 기존의 다자협력체제의 경험을 토대로 동북아만의 신뢰구축조치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 한편, 김형진 차관보와 성 김 미 동아태부차관보

가 주재한 제3차 정부간 협의회에서는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평가하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참여국별 중점 협력 희망 분야 등의 논의를 통해 결과 문서인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을 채택하였다.

○ 의장요약문의 주요 내용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 △기능별 협력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추진, △2017년 제4차 정부간 협의회 개최 합의 등이다.

3. 또한, 김형진 차관보는 성 킴 미 동아태부차관보와 함께 공식 만찬을 주재하고, 정부 대표 및 민간 전문가 등 참석자들과 역내 다자협력 및 동북아 안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 김 차관보는 만찬사를 통해 그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성과를 설명하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역내 다자협력을 촉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4. 이번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최초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참여국 6개국 중 하나인 미국에서 개최되어 동 구상에 대한 관련국들의 주인의식(co-ownership)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동 회의를 여타 참여국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국, 다자기구의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에 주도적 역할 (2016. 10. 11)

□ 우리나라는 금년도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의장국 자격으로 10.13(목)-14(금) 프랑스 파리에서 2016년도 제2차 MOPAN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의장: 이용수 개발협력국장)한다.

※ 제1차 회의는 5.10(화)-11(수) 서울에서 개최

○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는 개발협력 및 인도지원 다자기구의 조직효과성 및 개발효과성(Organisational/Development Effectiveness) 평가를 위해 2002년 설립된 17개 공여국간 네트워크로, 한국은 2008.12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2016.1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UNICEF(유엔아동기금), World Bank(세계은행) 등 12개 다자기구*에 대한 2015-16년간 평가 결과보고서 발간 계획 △향후 2년간 MOPAN이 평가할 14개 다자기구 선정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출범 등 글로벌 개발협력의 진화에 따른 MOPAN의 중장기 전략 및 방향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MOPAN은 2015-16년간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GFATM(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 ILO(국제노동기구), UN Habitat(유엔인간정주계획), UNAIDS(유엔에이즈계획), UNDP(유엔개발계획), UNEP(유엔환경계획), UNOCHA(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등 12개 기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각 기구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는 2017년 초 MOPAN 홈페이지(www.mopanonline.org)에서 공개 예정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출범 원년인 2016년은 새로운 평가방법론이 도입되고 평가대상기구가 기존 3-4개에서 12개로 확대되는 등 MOPAN에 도전적인 한해였으나, 우리나라는 MOPAN 의장국 활동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다자기구 평가 및 효과성 제고에 관한 선진 공여국간 논의를 주도하고 모범적 공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MOPAN은 세계 다자원조의 95%를 제공하는 선진 공여국간 네트워크이며, MOPAN 운영위원회는 동 네트워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우리나라를 포함, 17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 17개 회원국 현황: 한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아이티 허리케인 피해에 50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제공 (2016. 10. 12)

1. 우리 정부는 지난 10.4(화) 허리케인 Matthew가 강타하여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아이티에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10.10(월) 기준 아이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372명, 이재민 17만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 규모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언론은 900-1,000여명 사망 추정
2. 아이티 정부는 10.8(토)-11(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제기구 및 EU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아이티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 국제사회 지원동향(10.12. 현재) : △EU 175만 유로, △미국 150만불, 항공모함, 해군 △영국 500만파운드, △캐나다 400만캐나다달러, △스위스 200만프랑, △ 베네수엘라 의료진, △프랑스 구호물품, 헬기, 구호대, △국제기구(WFP, WHO 등) 구호 물품 지원 등
3.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난민, 자연 재해 등 인도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번 지원을 통해 아이티가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외교부, '일·가정양립 고충심의위원회' 신설- 가정친화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노력 - (2016. 10. 14)

□ 외교부는 10.14(금)자로 주요 국가시책인 일·가정양립제도의 이행을 인사 등 조직 운영 측면에서 보다 체계화하고, 가정친화적 업무문화를 조성해나가기 위하여, '일·가정양립 고충심의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 일·가정 양립고충심의회*는 함께 설치된 '고충접수 전용창구'를 통해 접수된 직원들의 관련 고충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 심의하여 인사위원회 등 의결기구에 회부 예정
   * 동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제도 담당 과장 및 사안별 대표성을 지닌 일반직원이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한 가운데 참여하며, 외부인사로 관계부처(여성가족부 등) 담당관이나 민간전문가도 초빙 예정

□ 이는 외교부가 최근 신규채용 직원중 여성 비율이 70%에 이르는 등 여성 비율이 정부 부처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특히 장기해외근무가 반복되는 외교관으로서의 직무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과 가정 양립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개인역량, 나아가 외교부 전체의 업무역량과도 직결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한 고려입니다.

□ 전용 고충접수창구 및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진솔한 고충과 건의를 수렴,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들을 발굴, 시행해나감으로써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바람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외교부가 이미 시행중인 일·가정 양립정책 : 출산장려금 지원, 자기주도근무시간제 도입, 집중근무시간 운영, 유연근무 및 연가사용 활성화, 임신 직원 배려 정책(당직 제외, 전용휴게실

운영, 모성보호시간 장려 등), 심리상담센터(마음쉼터) 운영 등

국제기구로 가는 지름길, JPO에 도전하세요! (2016. 10. 14)

1. 외교부는 2016년도「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 Junior Professional Officer)」선발시험 시행계획을 10.14(금) 공고하였다.
2.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제도는 정부의 경비 부담 하에 우리 국민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최대 2년간 파견함으로써 국제적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1996년 도입 이래 JPO 근무 종료자의 약 80%가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등,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특히 지금까지는 외교부가 JPO를 직접 선발해왔으나, 금년부터는 국제기구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직접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제기구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기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파견대상 국제기구 직위 총 10개를 선정하였으며, 파견대상 분야를 기존의 개발, 정무, 인권 등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기후변화 데이터 분석, 양성평등, 테러리즘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유엔 정무국(DPA)(미국 뉴욕) 및 대테러사무국(CTED)(미국 뉴욕), 유엔 Global Pulse(우간다 캄팔라), UNDP 모잠비크 사무소(모잠비크 마푸토), UNEP 본부(케냐 나이로비), UNFCCC 본부(독일 본), OECD 본부(프랑스 파리), UNHCR 요르단 사무소(요르단 암만), IOM 세네갈 사무소(세네갈 다카), UNESCO 본부(프랑스 파리) 등 총 10개 직위 선정
4. 외교부는 JPO 파견 이외에도 국제기구 인사센터 운영과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코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제9차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2016.6.30 서울시청, 7.1 부산시청 개최)에는 유엔사무국, ICC, UNDP, UNHCR, UNV, OECD 등 총 6개 국제기구 인사담당자들을 초청하였으며, 총 2,200여명 참석(라이브모파 조회수 14,000여명)
   ※ 이외에도 UN ESCAP(3월), UNICEF(4월), UNFPA(6월) 초청 국제기구 진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2-3차례 추가 개최 예정
5. 2016년 JPO 선발시험에 유능하고 진취적인 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 문의 :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 이메일 : UNrecruit@mofa.go.kr / 홈페이지 : http://unrecruit.mofa.go.kr

'한국외교의 새로운 기록과 증언' 학술회의 개최 (2016. 10. 17)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는 10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외교의 새로운 기록과 증언'이라는 주제 하에 연례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베트남 공관원 석방교섭과 1980년대 중반 한미관계를 검토하고, 미수교국 수교교섭과 통상 협상 등의 협상 사례를 통해 한미관계와 한-베트남관계, 그리고 외교협상의 전략과 교훈을 논의한다.

□ 이번 회의에는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조성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조동준 서울대 교수, 정하용 경희대 교수, 박구병 아주대 교수, 엄정식 공군사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며, 국립외교원에서는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조양현 외교사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외교사연구센터는 공개 외교문서와 외교관 구술

로 한국외교를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매년 개최해왔으며, 이를 통해 외교사 연구 활성화와 외교사 교육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제71차 유엔의 날(10.24) 계기 기념행사 개최 - 윤병세 외교장관 '유엔의 날 기념오찬' 연설 - (2016. 10. 23)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제71차 유엔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 한국협회 주최로 10.24(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는'제71회 유엔의 날 기념 오찬'에 참석하여 유엔의 날과 아울러 금년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25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시행할 예정이다.

○ 동 행사에는 주한 국제기구 대표, 주한 외교단,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 약 1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도 상영될 예정

※ 유엔의 날 기념 오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10.24.(월) 12:00-14:00,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 주최 : 유엔한국협회
- 프로그램 : 유엔한국협회 회장 개회사, 유엔 사무총장 영상메시지, 외교부 장관 기념 연설 등

※ 유엔 총회는 유엔 헌장이 발효된 날(1945. 10.24.)을 기념하기 위해 10.24.을 '유엔의 날(UN Day)'로 지정

□ 아울러, 금번 유엔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한국협회 주최 기념 오찬 외에도 10.24.(월) 저녁에는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과 경희대학교 등 주관으로 '유엔 오케스트라 평화음악회'와 '국제기구 전시회'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 국제기구 전시회에는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도 참여하여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

※ 유엔 오케스트라 평화음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0.24.(월) 19:35-21:00,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 주최 :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유엔 오케스트라 등
- 참석 규모 : 4,000여명

※ 국제기구 전시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0.24.(월) 14:00-19:00,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1층 로비)
- 참여기관 :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WFUNA △UNHCR △UNDP △WFP △IMO △UNESCAP △UNCITRAL 등 10여개 기관

□ 금년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개최되는 이번 제71차 유엔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25년간 발전시켜온 한-유엔 관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향후 유엔과의 협력방향을 생각해 보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2016 외교백서」 발간 (2016. 10. 25)

1. 외교부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국제정세, 우리 정부 외교 정책 기조와 주요 외교 활동 등을 종합 수록한 「2016 외교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 금번 발간되는 외교백서는 총 499면으로 △2015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경제 협력 역량 강화,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대국민 서비스 확충, △효과적인 신뢰외교 수행 체제 구축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미 신원자력협력협정 발효,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 한·중 FTA 발효, 주요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심화·발전 등 작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외교 사항에 대해 수록

3. 동 외교백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이슈별 자료실> 주요발간물)에 게재되어 있으며, 정부 주요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4. 금번 외교백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도 날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의 전방위 외교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결과 (2016. 10. 25)

1. 외교부는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10.25(화) "한국과 OECD – 과거, 현재, 미래"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 우리 정부 인사와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사무총장, 「린타로 타마키(Rintaro Tamaki)」 사무차장 등 OECD 고위급 인사, 그리고 주한 대사 등 외교단 및 경제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동 세미나는 1996.10.25. OECD 가입 협정 서명일에 맞추어 개최
   ※ 세미나 개요
   - 일자 및 장소 : 2016. 10. 25(화) 10:30-18:00,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 프로그램 (별첨 3)
     • 개회식 : 국무총리 축하 영상메시지, 외교부 제1차관 개회사, OECD 사무총장 기조연설, OECD BIAC(경제산업자문위원회) 회장 축사
     • 1세션 :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 변화상
     • 2세션 : 중장기적 경제 도전과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OECD의 역할
     • 3세션 :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과 OECD의 기여
2. 세미나 개회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OECD 가입 이후 한국 경제·사회 분야의 발전과정에서 OECD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금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과 OECD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하였다.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OECD 가입 이후 한국이 OECD의 정책권고와 국제기준 수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해 왔다고 하고, 이제 한국이 중견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 녹색성장,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OECD 주요 정책 및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임 차관은 저성장 및 생산성 저하 등 당면과제에 대응함에 있어 혁신, 구조개혁 등 분야에서 향후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또한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탁월한 개발정책을 시행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 여타 개도국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높이 평가하고, OECD 가입 이후 한국이 동남아지역프로그램 지원, DAC 가입 및 관련 논의 참여, 2015년 과학기술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2011년 부산 글로벌 파트너쉽 채택 및 후속 포럼 개최 노력 등을 통해 OECD의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무총장은 한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령화,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 노동시장 양극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의 도전 과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 개회식에 이어 3개로 나누어 진행된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 변화상과 △중장기적 경제 도전과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OECD의 역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과 OECD의 기여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각 세션에는 현정택 KIEP 원장, 김준경 KDI 원장, 현오석 국립외교원 석좌교수,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윤종원 주OECD 대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박태호 서울대 교수, Christoph Heider 주한EU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등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3. 금번 세미나는 △지난 20년 간 한국과 OECD 간 이루어진 협력을 재점검함과 동시에 △양측 간 국·내외적 도전과제들에 대응함에 있어 향후 협력을 어떻게 심화·확대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제 △중견 회원국이 된 한국의 OECD 내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OECD 외교에 대한 국내의 이해와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우리나라, 세계유산분야 리더가 되다 (2016. 10. 27)

□ 우리나라는 2016.10.25.(화)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017년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폴란드와 함께 내년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2017.7월, 폴란드 크라코프) 종료시까지 부의장국으로서의 임무 수행 예정

□ 우리나라는 지난 2007-2008년 간 제32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이어, 이번에 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됨으로써 세계유산 제도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재차 인정받게 되었다.

□ 총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심사 및 세계유산 목록 등재 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세계유산 제도의 핵심 기구로서, 우리나라는 향후 동 위원회의 부의장국으로서 세계유산 제도의 지속 및 발전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로, 우리나라는 1988년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2건의 세계유산을 등재한 바 있다.

※ UNESCO 등재 우리나라 세계유산

- 문화유산(11건): 석굴암 및 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경주역사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 자연유산(1건): 제주도 화산섬 및 용암동굴(2007)

"격동기 세계질서와 한국의 새로운 외교전략" (2016. 10. 27)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10월 26일 (수)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격동기 세계질서와 한국의 새로운 외교전략"을 주제로 「2016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동 컨퍼런스는 IFANS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제회의임.

□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익의 공통된 정의가 "생존(survival)"이라면서 우리 외교가 지향해야 할 길은 국익 증진을 위한 대외환경,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 ▲세계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이라고 강조하였다.

○ 특히 윤덕민 원장은 주변 국가가 패권국으로 부상했을 때 한반도가 위험에 처했던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후 미국 주도의 안정적 균형 질서 유지가 우리

의 중요한 국익이라고 역설하였다.

○ 윤덕민 원장은 또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굳건한 국제공조를 통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제재 레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스티븐 크래스너 교수(스탠포드대)는 "미국의 대전략: 실용적 관여" 제하의 강연에서 ▲러시아의 체제 불확실성 ▲중국의 지역 패권 추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위기' 현상 등의 위협들에 직면한 미국이 향후 '실용적 관여(pragmatic engagement)' 정책을 대전략(grand strategy)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크래스너 교수는 상기 위협들에 대한 '실용적 관여' 정책으로 ▲NATO와의 협력 및 공동 대응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 강화 ▲예방적 조치 강화를 언급하였다.

○ 크래스너 교수는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패배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유세 과정에서의 그의 대외정책 발언들(방위비 분담, FTA 재협상 등)은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았다.

□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게이오대)는 "격변기 국제정세 속에서의 한·일 관계" 제하의 강연에서 향후 ▲한·일 관계는 역사·영토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어 나가고,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유연한 봉쇄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오코노기 교수는 안타깝게도 한·일 간에 역사 및 영토 문제 인식 상의 갭(gap)이 존재하나, 이 문제들을 더 이상 확대시켜 나가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생존 및 체제유지를 위해 계획성 있게 추진(예고 후 실행)되어 왔으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체제 유지 및 생존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만으론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윤덕민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 외교의 도전과 과제, 그리고 전략" 제하의 제2세션에서는 ▲북핵 문제 ▲중국의 부상 문제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북핵 문제와 관련,

- 하영선 이사장(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수십년간의 '강경' 또는 '온건'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복합 대응 방식의 '제3의 길'(제재+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윤영관 명예교수(서울대)는 '관여 정책' 만으론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포기시키기 힘든 시점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무장이 생존 및 체제 유지 수단이 아니다"라는 점을 깨닫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문정인 명예교수(연세대)는 이란의 경우와 달리 북한은 이미 제재에 내성(耐性)이 쌓여져 있고, 또한 제재로써 새롭게 타격을 받을 계층은 별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북한 내에 제재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중산층)의 숫자가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 천영우 이사장(한반도 미래포럼)은 제재와 압박이 없으면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북한이 전략적 계산 방식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압박과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중국의 부상 문제와 관련,

- 하영선 이사장은 중국이 미국과는 경쟁과 협력의 '신형대국관계'를 유지해나가겠지만,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해서는 핵심이익 중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평가하였다.
- 윤영관 명예교수는 상승 대국(중국)이 기존 대국(미국)에 세계 질서의 변화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당장 미

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패권국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 문정인 명예교수는 중국 공산당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겠지만, 일관된 대전략은 부재한 상황으로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대응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하였다.
- 천영우 이사장은 중국이 '화평굴기'는 외교적 수사(修辭)일뿐, 실제로는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았다.

○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관련,

- 하영선 이사장은 냉전적 또는 탈냉전 시각 일변도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세계정치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늑대거미' 또는 '3층 다보탑 쌓기' 형의 '한국 외교 3.0'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윤영관 명예교수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보다 더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 문정인 명예교수는 기존의 대외정책에 ▲글로벌 책임 외교 및 ▲국제적 공헌 외교도 포함시켜야 함을 역설하였다.
- 천영우 이사장은 한반도를 포함한 지정학적 게임에서 세력균형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 스스로 지역 패권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는 '한미동맹'이라고 말하였다.

□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주한 외교관들과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전략의 탐색" 제하의 제3세션에서는 북핵 문제 대응의 실용적 방안을 찾는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는 되돌릴 수 없는 위기에 처할 것인바,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을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주한 외교관들과 청중 간 토론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의 핵무장화 의도는 공격적인 측면이 강한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는 이뤄져야 하지만, 다른 해결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현재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재의 허점이 있는 점을 감안해 더욱 강화된 안보리 및 독자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 만약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그에 상응한 유인책으로 무엇을 주어야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카리브 국가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2016. 10. 27)

□ 외교부는 10.26(수) 서울에서 「한-카리브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제6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였다.

○ 금번 포럼에는 수리남 외교장관, 바하마 농업해양자원부 장관, 도미니카연방 보건환경부 장관 등 카리브지역 7개국 고위급 인사와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카리브공동체(CARICOM) 기후변화센터장,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를 비롯하여 KOICA, 기상청, 농촌진흥청,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 카리브 지역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카리브 지역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희망하였다.

○ 우리 기상청에서는 글로벌 기후변화문제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공조 노력을 설명하였

으며, 이어진 자유토론 세션에서 포럼 참석자들은 한-카리브 지역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기상과학 기술 전수, △전문가 파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2세션은 「식량안보 증진 협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카리브 지역의 농업 생산성 저하 등 역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데 공감하고, 카리브 지역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농산물 품종 개량, △소규모 스마트 농업 노하우 전수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가 과거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경험과 △개도국의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 전개중인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현황 등을 소개하고, 카리브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다.

□ 한편, 김용현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0.25(화) 동 포럼에 참석한 주요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에 관해 브리핑한 바, 김 단장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카리브지역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 또한, 김 단장은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족한 재원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을 환기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카리브지역 국가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 우리 정부는 금년 6월 '한-중남미 함께가는 미래 포럼', 9월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개최에 이어 이번에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 중남미·카리브 지역 외교를 다층적·체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중남미·카리브 지역과의 상호관심 사항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메커니즘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6회 국제기구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2016) (2016. 10. 31)

1.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는 우리 젊은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016년도 국제기구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2. 금번 공모전에는 인턴 및 봉사활동 등을 포함, 다양한 국제기구에서의 경험을 보유한 모든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는 동 수기를 접수하여, '16.12월중 최종 5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공모 기간 : 2016.10.31.(월)-11.30.(수) 자정
   ○ 접수 방법 :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http://UNrecruit.mofa.go.kr)를 통해 접수
   ○ 공모 대상 : 국제기구 근무 경험자(JPO, UNV, 국제기구 인턴십 수료자 등)
   ○ 결과 발표 : 12월 중순, 국제기구 인사센터 및 외교부 홈페이지
   ※ 기타 상세정보는 상기 홈페이지 「국제기구 체험수기 공모전」 메뉴 참조
3. 당선작 출품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며, 당선작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및 '국제기구 진출 가이드북'에 게재될 예정이다. 끝.

우리나라, 세계유산 해석 분야 국제적 논의 주도 -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개최(11.2) - (2016. 11. 2)

□ 외교부는 2016.11.2.(수) 서울에서 문화재청, 유

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를 개최하였다.

○ 조현동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별첨)를 통해 ①금번 국제회의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유산해석 문제에 있어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들의 기여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②작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시 일본 정부가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행한 약속을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2015.7.5.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시 일본은 한국인 등이 일본근대산업시설에서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

○ Mechtild Rössler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 Stephen Morris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국장, Birgitta Ringbeck 독일 외교부 담당관, Guo Zhan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중국위원회 부위원장 등 11명의 국내외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세계유산 분야에 관심 있는 청중 약 100여 명이 참석

※ 전문가별 발표주제 별첨

□ 또한, 이번 회의에는 21개 세계유산위원국 주유네스코대사 중 14개국 대사(이병현 한국대사 포함)들도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세계유산 해석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 외교부는 대사들에게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별도의 브리핑을 제공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세계유산 등재) 및 한양도성(2017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시찰을 지원

□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5일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세계유산 분야에서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금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중인 7월 13일, 약 200명이 참가한 세계유산 해석 관련 세미나를 부대행사로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의 기반 위에 금번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유산 분야 논의의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되며, 참석 국가 대사들은 세계유산을 포함한 유네스코 현안 전반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의의 결과 보고서는 유네스코 등과 공유되며 동 분야 논의 및 연구에 활용될 예정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 (2016. 11. 3)

1.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11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일자(뉴욕 현지시간 11월 3일 오전)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임.

○ 작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금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10월 5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비준서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12월 3일 발효하게 됨.

* 주요 비준국(온실가스 배출 비중 %) : 중국(20.1), 미국(17.9), 인도(4.1), 독일(2.6), 브라질(2.5), 캐나다(2.0), 멕시코(1.7), 프랑스(1.3) 등

* 주요 미비준국(온실가스 배출 비중 %): 러시아(7.5), 일본(3.8), 영국(1.6), 이란(1.3), 터키(1.2), 이탈리아(1.2), 폴란드(1.1), 아르헨티나(0.9), 스페인(0.9) 등

2.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의 교토 기후체제(2020년 만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는 보편적(universal)이

고 포괄적인(comprehensive) Post-2020의 신기후체제의 근간을 마련한 다자조약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모든 협정 당사국들은 자율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이와 같이 제출된 각국의 이행 실적들은 전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에 활용되며, 그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여야 함.

○ 모든 협정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재원을 제공하고 기술과 역량 배양을 지원해야 함.

3. 우리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15년에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음.

○ 또한, 금년 6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소관분야는 각 부처에게 책임을 두는 관장부처 책임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 우리나라가 작년 6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4. 우리 정부는 금번 파리협정 비준을 통해 앞으로 신기후체제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임.

○ 국제적으로는 녹색기후기금(GCF) 및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국 유치,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 의장 선출 등 그간 기후변화 분야에서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 나갈 예정임.

5. 정부는 제22차 기후총회(COP22, 11.7-18 모로코 마라케시) 이전에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이번 기후총회 계기 개최되는 파리협정 당사국회의부터 본격화될 후속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예정임.

○ 후속협상은 국별 감축목표(NDC) 제출시 포함해야 할 정보, 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산정방식 등 2020년부터 적용될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2-3년 간 진행될 예정임. 끝.

제3차 유엔 평화유지 기술협력 심포지움 서울 개최 (2016. 11. 4)

1. 제3차 유엔 평화유지 기술협력 심포지움(The Third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echnology in Peacekeeping Symposium)이 외교부, 국방부, 국토연구원 및 유엔의 공동주최로 11.7(월)-11(금)간 서울시 신청사에서 개최된다.

※ 제1차 심포지움(2014)은 이탈리아 브린디시에서, 제2차 심포지움(2015)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

○ 11.7(월)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황인무 국방차관,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등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고, 「에르베 라두스(Hervé Ladsous)」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 사무차장 및 「아툴 카레(Atul Khare)」 유엔 현장지원국(DFS) 사무차장의 환영사는 영상메시지로 전달될 예정

※ 주최 : 유엔, 외교부, 국방부, 국토연구원

※ 주관 : 서울시 / 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상세 프로그램(안) 별첨

- 국내 참석자는 당일 현장 등록 가능(참석비 면제)

2. 동 심포지움에는 유엔 회원국, 유엔 평화유지군(PKO) 임무단 관계자,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정보서비스(GIS), △감시정찰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우리의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및 정책 추진 방향을 국내외 참석자들에게 소개할 계획

3. 한편, 우리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3년 유엔 소말리아 평화유지단(UNOSOM II)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래 지금까지 총 18개 PKO 임무단에 14,000여명을 파견하였고, 현재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 및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에 동명부대와 한빛부대를 각각 파견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아울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연 1,600억원을 기여('15년 기준)하는 등 PKO 예산 분담률은 전체 12위 수준

"박기갑 고려대 교수,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재선" (2016. 11. 4)

□ 뉴욕 유엔 본부에서 11.3(목)(현지시간) 실시된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위원(임기2017-21년) 선거에서 현 위원인 우리나라의 박기갑 교수(고려대)가 재선되었다.

○ 7석이 배정된 아시아 지역은 총 10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한 경합 양상을 보였으며, 박기갑 교수는 193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당선

- 총 46개국이 입후보하여 34명 위원 선출

※ 지난 2002-06년간 故지정일 교수(한양대)가 우리나라의 첫 ILC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두번째 ILC 위원으로 2011년 처음 당선되어 지난 5년간 활동해왔음.

□ ILC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목표로 1947년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간 주요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법 분야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 외교부는 그간 박기갑 교수의 당선을 위해 주유엔대표부를 비롯하여 전 재외 공관을 통한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전개해왔다.

□ 우리 인사의 ILC 위원 재선을 계기로 국제법 발전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법 분야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우주협력협정 공식 발효(11월 3일) (2016. 11. 4)

□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27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한미우주협력협정)"이 11월 3일 공식 발효되었다.

□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우주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이래 양국 간 우주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될 동 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금번 협정의 발효로 양국 간 본격적인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다.

○ 동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으로, 한·미 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 미국이 정부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한 국가(11) :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 또한,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의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것은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보유하고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 우주기술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분야를 망라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행기관의 지정, 기술 및 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 각종 행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양국 이행기관 간 체결하게 될 약정 및 양해각서가 동 협정의 산하 약정 및 양해각서로 간주되어 관계기관 검토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인바,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NASA를 비롯한 미국의 우주관련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략 50여개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함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나, 동 협정의 발효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 우선적으로,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 간에 추진중인 달 탐사 협력 약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간 달 탐사 협력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합의한 이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달 탐사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협력 약정을 준비 중에 있다.

□ 또한, 양국은 지난 4월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한국천문연구원과 미 NASA 간 태양물리환경 연구에 관한 연구자간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그 밖의 협력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왔던바, 이번 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협력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 이번 한미우주협력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한미 양국관계는 군사안보,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 이미 성숙한 관계가 형성된 분야에 더불어 우주분야에서도 더욱 확대·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협정 본격 이행을 위한 제22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 (2016. 11. 6)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파리협정 발효('16.11.4) 이후 첫 당사국 총회인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 이번 회의는 '신(新)기후체제'의 토대인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지구촌의 역량을 결집하는 자

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11월 3일 파리협정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유엔(UN)에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임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요 이슈는 국가결정기여(NDC), 투명성체계, 국제 탄소시장, 전지구적이행점검, 재원 등이며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참고: 후속협상의 주요 내용〉

- (NDC) 차기 국가결정기여(NDC) 제출시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산정규칙
- (투명성체계) 선, 개도국 구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보고, 점검체계의 세부 운영 방안
- (탄소시장) 당사국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계 방안
- (전지구적 이행점검) 의욕수준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의 시행방식
- (재원)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재원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
- (기타) 이행·준수 촉진 메커니즘, 기술 프레임워크, 역량배양 파리위원회 등 신설 제도의 구체화

□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EIG) 그룹과 공조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선, 개도국 공통의 투명한 보고·점검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선, 개도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 조경규 장관은 11월 15일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창조적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기후변화는 위기가 아닌 기회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 조경규 장관은 기후재원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녹색기후기금(GCF)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당사국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탄소시장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 더불어 한중일 3국간 장관급 면담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환경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조경규 장관은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라고 말하고, "이제는 이행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우리나라가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청년, 미래 동북아 3국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다" - 제3회 한·일·중 3국 협력 논문 경진대회 개최 - (2016. 11. 8)

□ 외교부는 2016.11.8.(화)-9.(수)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3회 한·일·중 3국 협력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한·일·중 3국 협력 발전 방안'을 주제로 작성한 논문을 현장 심사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 외교부 장관 명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참여 논문들은 북한 문제, 역사, 평화·안보 관련 3국 협력 등 기존 관심 분야뿐만 아니라, 3국간 원자력, 식량 문제, 개발협력, 창업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올해 3회째를 맞는 '한·일·중 3국 협력 논문 경진대회'는 외교부'한·일·중 청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한·일·중 3국 협력 방안에 대한 미래 세대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3국 협력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한층 제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미래 3국 협력을 이끌어나갈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증진을 통해 3국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16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국' 기념 특별세미나 겸 한국핵정책학회 연례학술회의 개최 (2016. 11. 10)

□ 국립외교원은 11.11(금) 10:30~17:00, 본 원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핵정책 동향과 과제' 라는 주제로 '2016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국' 기념 세미나 겸 한국핵정책학회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 본 회의는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 세션에 걸쳐 ▲핵안보 레짐에서의 한국의 기여방향과 차후과제, ▲북핵문제 및 차후 한국의 대응방향, ▲동북아 원자력 안전과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이번 회의는 국내 핵문제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핵정책학회, 한국원자력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핵정책 관련 전문가와 정부 인사 및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금번 학술회의는 핵안보 문제 등 한국의 핵정책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차후 정책적 제언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신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첫 방한 예정 (2016. 11. 15)

1.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8.1(월) 임기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1.16(수)부터 11.23(수)까지 방한할 예정이다.

○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은 내년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각각 제출하게 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중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 인사와의 면담, ▲북한인권 기록센터 방문, ▲탈북민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

○ 이번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은 11.22(화) 개최 예정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2004/1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북한 인권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 수행

-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문타폰(Muntarbhorn) 특별보고관 및 다루스만(Darusman) 특별보고관에 이은 3번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지난 7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

2.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번이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첫 방한인 점을 감안, 11.16(수)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여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며, 심각한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3. 한편, 특별보고관의 방한과 별도로 유엔 인권이사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이 11.21(월)부터 25(금)까지 방한하여,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인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 이들 독립전문가 그룹은 북한인권 침해 관련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내년 3월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킨타나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부록 형식으로 제시 예정

※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 구성 :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현 '세르비아 헬싱키위원회(인권 NGO)' 회장), 사라 후세인(Sara Hossain) 변호사)
- 금년 3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6개월 임기 활동후 결과 보고서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

'제5차 국립외교원 강연(KNDA 렉처) 시리즈' 개최 "군축·비확산을 통한 평화 증진" (2016. 11. 17)

□ 국립외교원은 11.18(금) 16:00~17:30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군축·비확산을 통한 평화 증진(Enhancing peace throug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을 주제로 '제5차 국립외교원 강연(KNDA 렉처)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 이번 강연 시리즈에서는 김원수 유엔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가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여 유엔의 군축·비확산 활동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사회), 박흥순 선문대 교수(한국유엔체제학회), 한용섭 국방대 교수(한국핵정책학회)가 참여하여 군축·비확산을 통한 평화 증진 방안과 한국에 주는 함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번 강연 시리즈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 이번 강연 시리즈는 국립외교원, 한국핵정책학회, 유엔협회세계연맹이 공동 주최하며, 학계 전문가, 주한외교사절단, 대학·대학원생 등이 청중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국립외교원 강연(KNDA 렉처)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외교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UN 최상급 실력 인정 (2016. 11. 18)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구조팀은 2016. 11.14.~18일간 진행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주관의 인증평가에서 최상급(Heavy) 등급을 받아 그 역량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

○ KDRT 구조팀은 2011년 최초 인증평가를 통해 세계에서 17번째로 최상급(Heavy) 등급을 받은 바 있다.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재난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파견되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

- 외교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앙119구조본부,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 INSARAG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 : 유엔 산하에서 운영되는 재난관련 전문가 네트워크(1991년 창설)

□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은 세계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각국 국제구조대를 역량에 따라 Heavy, Medium, Light 3등급으로 나누어 매5년마다 평가·승인하고 있으며, 최상급(Heavy) 구조팀은 해외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최우선 지역에 우선 접근권을 갖는다.

○ 동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평가단은 2016.11.14.-18일간 방한하여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구조팀의 인증평가를 실시하였다.

○ 최상급(Heavy) 등급의 구조대는 재해국 도움 없이 자급자족하며 10일 동안(매일 24시간) 두 곳의 재난현장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현재 29개국 총 32개 국제구조대가 최상급(Heavy) 등급 보유

※ 평가는 해외긴급구호대의 조직·육성, 출동, 활동, 관리능력 등 15개 분야 60개 항목으로, 최상급 등급을 위해서는 각 항목 모두 통과 필요

□ 우리 정부는 1997년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현장을 시작으로 2015년 네팔 지진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해외재난 발생시 구조대를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긴급구조 활동에 적극 동참해 왔다.

□ 금번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구조팀의 최상급(Heavy) 등급 재승인을 계기로, 앞으로 KDRT가 지구촌 재난 현장에서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에 보다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협정 이행 논의를 위한 첫 기후총회(COP22) 폐막 (2016. 11. 20)

□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11.7(월)-18(금)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11.19(토) 새벽 3시 경(모로코 현지시각 기준) 폐막하였다.

○ 금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만 5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제22차 기후총회(COP22)의 의의]

□ 금번 COP22 회의는 파리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총회로서, 파리협정의 실제적 이행 기반을 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후 행동" 총회(COP for Action)로서 의미를 갖는다.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금번 총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이제는 효과적인 기후 정책과 행동으로 옮겨야 가야 할 때이며, 지구촌 모든 국가와 사회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COP 의장국인 모로코의 모하메드(Mohammed) 6세 국왕은 이번 COP22 회의가 파리협정의 내용을 실천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COP22의 주요 성과물]

□ 금번 회의는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사국들은 앞으로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 일정과 계획 등을 합의하였다.

○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DC),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 활동, △국별 기후행동 약속의 이행을 점검하는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기후변화 노력 이행점검 체제,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국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마련하였다.

○ 구체적으로, 각 국가들은 2018년까지 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분야별로 자국의 이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제안서를 2017.5월 차기 협상회의* 전까지 사무국에 제

출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 협상그룹을 통해 심층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기후변화 협상회의는 일반적으로 상반기(5-6월)에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에서, 하반기에는 기후총회(COP) 계기 COP 의장국에서 개최

○ 또한, COP22 의장국인 모로코는 기후변화 이슈가 시급한 우선적 사안으로서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빈곤퇴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Marrakech Action Proclamation for Our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

[COP22 계기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개최]

□ 파리협정이 지난 11.4(금) 정식 발효됨에 따라, 금번 COP22 회의 계기에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가 11.15(화)-18(금)간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 금번 CMA1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이 조기에 발효됨에 따라 이행지침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CMA1을 종료하지 않고 정회(suspend)하기로 하였다. 당사국들은 2017년 기후총회(COP23)시 CMA1을 재개하여 1년간의 논의 진전사항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 정회한 후 2018년에 CMA1을 재개하여 세부 이행규칙을 최종적으로 채택키로 하였다.

○ 내년도 제23차 기후총회(COP23)은 피지(Fiji) 공화국이 의장국이 되어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피지의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개최지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으로 결정하였다.

[주요인사 및 주요국 발언]

□ 금번 총회 계기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에 따른 이행은 불가역적(irreversible)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 John Kerry 미 국무장관도 금번 COP22에 참석하여 공개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파적(partisan)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북한 최명남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BAU 8% 무조건적 감축,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을 경우 40%까지 감축)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최 차석대사는 최근 수년간 북한내 산림복구운동에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재차 강조하였다.

[환경장관 및 대표단 활동]

□ 우리나라 대표단은 COP22 참가에 대비,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공동 입장을 기초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 마련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다.

* 우리나라,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하 부속서 I국가(선진국)와 비부속서 I국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그룹으로서 중재적 역할 수행

□ 조경규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11.16(수) 국별

발언을 통해 파리협정 조기 발효를 축하하고, 한국도 11.3(목) 파리협정을 비준하였으며, 범부처적으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행중임을 강조하였다.

□ 이 외에도 조 장관은 11.16(수) "탄소시장에 관한 선언 부대행사"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있어 탄소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중·일 3국 환경장관과 함께 "동아시아 NDC 이행 및 경험공유를 위한 부대행사** 에 참석하여 3국간 기후변화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동일 부대행사 개최 전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중국에 온실가스 감축이 동북아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함을 설명하고 한중 양국은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뉴질랜드 환경부, 환경보호펀드(EDF),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공동주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공동주최

□ 또한, 조 장관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이란·미얀마·네팔 환경장관, EU 기후변화총국장, IPCC 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환경협력 방안과 향후 기후협상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 환경건전성그룹 각료급 만찬회의를 통해 NDC 지침, 탄소시장, 투명성, 적응, 전지구적 점검을 5대 관심의제로 선정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개도국 기후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 국가지정기구(NDE)인 미래창조과학부는 COP22 계기 11.16(수) EU 및 7개국 NDE와 함께 유엔 기후변화협약 하 기술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이행기구인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에 2,300만불을 공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우리나라는 금번 총회시 CTCN에 처음으로 재정기여를 하면서 이탈리아와 함께 신규 공여국이 되었으며, 9개국 중 유일한 비부속서 I 국가로 세계 다른 국가들의 개도국 기술지원에 대한 재정 기여 동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우리나라는 총회장에 국가관(파빌리온)을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기후변화적응계획, 배출권거래제,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기술 홍보와 정부·지자체·산업계·NGO 주관 14개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총회기간 중 12,000여명이 한국관을 관람하였다.

□ 모로코 홍보관에서는 11.14(월) 모로코 주재 KOICA 사무소와 모로코 에너지부 산하 태양신에너지연구소 간 "그린빌딩 연구개발 플랫폼 건립사업" 협의의사록에 서명하였다.

○ 이 사업은 모로코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빌딩공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KOICA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립외교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개최 (2016. 11. 22)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11월 24일(목) 국립외교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제인권규약 채택 5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환영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격려사), 나경원 국회의원(오찬연설), 신각수 국제법센터 소장, 니나 조겐슨 홍콩중문대학교 교수, 스리프라파 펫차라메스리 태국 마히돌 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 인권·평화학 국제박사과정 소장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 금번 회의에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채택 50주년을 맞아 동 국제규약의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고, 보편적 인권규범의 발달 전망에 대해 의논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 기구의 설립 모색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금번 학술회의가 인권규범의 발전 및 아시아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체제 구축 논의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위원 재선" (2016. 11. 22)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209차 이사회에서 11.21.(캐나다 현지시간) 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위원 선거가 실시되어 우리나라의 유경수 現 위원이 재선되었다.

○ 항행위원회는 ICAO 이사회를 보조하는 상설위원회로서, 19인의 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되며, 국제항행 및 항공기술분야의 모든 정책 및 규칙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세계항공 분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017~2019 임기 항행위원 당선국(19):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스페인, 그리스, 아이슬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니제르, 우간다, 사우디아라비아

- 항행위원은 ICAO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번 선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 전문가들이 입후보했으나 이집트·나미비아 후보가 선거전에 자진 철회함에 따라 19개국 후보들이 거수투표방식으로 만장일치로 선출

□ 이번에 재선된 유경수 위원은 항공기술·안전분야 정책과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항공전문가로서 '14년 8월부터 항행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 특히, '의사절차전원워킹그룹(ANC Working Group on Procedural Matters)' 의장, '스탠다드입안특별워킹그룹(Ad hoc Working Group on Standards for Standards)' 의장을 맡는 등 항행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옴에 따라 이사국 대표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제39차 ICAO 총회 선거에서 6회 연속 이사국으로 당선된 데 이어, 5회 연속 항행위원으로 선출된바, 이는 국제 민간항공외교 분야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 및 적극적인 기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금번 항행위원 재선은 국제 민간항공 분야에서 우리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종 前 통상교섭본부장 WTO 상소기구 위원 진출 (2016. 11. 24)

□ 11.23(수)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는 정례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김현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UN 대사)를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공식 임명함.

○ 이에 따라 김현종 교수는 오는 12.1 부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 예정

* 김현종 위원과 더불어 중국의 Zhao Hong 위원도 동 회의시 신규임명

□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이며(상세개요 붙임자료 참조), 상소기구 위원은 WTO 분쟁의 최고 판단자로서 그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임.

○ 현재 상소기구 위원(정원 7명 중 현원 5명) 출신국은 미국, EU(벨기에), 인도, 모리셔스, 멕시코의 5개국 이며, 금번 임명은 2개의 공석(중국 Zhang 전 위원 및 한국 장승화 전 위원 후임)

에 대해 실시

* 장승화 전 위원은 '16.5월 미국측의 연임 반대로 인해 '16.5.31 임기가 종료

□ 금번 결과는 우리나라 인사가 상소기구 위원직에 연속 진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 후보자의 자질과 정부의 지원이 조화된 결과로 평가함.

○ 김현종 교수는 WTO 사무국 근무, 통상교섭본부장 및 UN대사 역임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소기구 위원으로서의 적격성과 타 후보자 대비 차별화 된 자질을 WTO 회원국들에게 성공적으로 피력

* 김현종 교수는 10.8-26 동안, 스위스, 벨기에, 미국 등 주요국을 방문하여 WTO 차원의 인터뷰, 주요인사 면담 등 선거운동 활동을 수행

○ 정부도 산업부, 외교부, 재외공관 등의 협업 하에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확보 노력, 주요국 통상장관 접촉(오슬로, 10.21-22), FTA 협상 계기 통상당국 접촉(한-중미 FTA, 10.24-31) 등을 통해 적극지원

○ 또한 우리나라는 다수의 WTO 회원국으로부터 장승화 전 위원의 연임관련 절차에서 다자체제를 존중하는 대응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대응이 금번 후임 선출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인사의 WTO 상소기구 위원 진출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공석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했던 상소기구를 정상화하여 최근 격화되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서 WTO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제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11.25) 참석 결과 (2016. 11. 25)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1.25(금)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비확산·이주·평화유지군·난민·테러리즘·정책 혁신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적 지원 및 회원국간 결속 강화를 위한 믹타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금번 회의는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이 주재하고, 윤 장관 외에 레트노 마르수디 인니 외교장관, 아흐멧 일드즈 터키 외교 부장관 알베르또 데 이까사 멕시코 차관 등이 참석

2. 믹타 회원국들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및 신고립주의 강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음에 우려를 같이 하고, 이런 때일수록 국제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다자주의 및 유엔헌장 등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한 믹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믹타가 유엔과 WTO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어젠다 설정(agenda-setter), △국가 그룹간 가교 구축(bridge-builder)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규범 선도(rule-maker)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특히 G20에서 믹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

○ 이에, 믹타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처 및 국제무역질서 강화를 위해 믹타가 건설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G20에서 믹타의 기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3. 북한 문제와 관련, 믹타 회원국들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빈도가 증가하고, 특히 이러한 행위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을 감소시킨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유엔헌장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자체를 저해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러한 내용을 회의 결과문서인 '공동 커뮤니케'에 명시하였다.

○ 상기 '공동 커뮤니케' 내용은 북한의 도발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자체를 훼손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사례인 한편,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최초로 명시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11.15 채택) 내용을 동 결의안 채택 직후에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더욱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4. 그 외에도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및 믹타 회원국간 외교적 결속과 영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5. 2013년 출범한 믹타는 금년에만 외교장관회의 2회, 제2차 국회의장회의 및 G20 믹타 셰르파회의 3회 개최했을 뿐 아니라 유엔, 제네바 등 세계 각지에 소재한 믹타 재외공관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다층적 협의채널을 통한 상시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북핵문제 외에도 제반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보조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중견국 외교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금년도 공동보조 현황 : △북한 핵실험 관련 공동성명 2건, △인도주의 관련 공동성명/공약 등 2건, △국제안보(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등) 관련 공동성명/국제회의 공동발언 등 3건, △인권 관련 공동발언 3건 등 10건(11월 기준)

6. 믹타 회원국들은 내년에도 차기 의장국인 터키의 리더십 하 믹타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회의 후 공동 커뮤니케 채택 및 공동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정회람문 채택 (2016. 11. 26)

1. 국제해사기구(IMO)는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11.21-25, 런던)에서 금년 들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정회람문(Circular)을 11.25(금) 채택하였다.

○ IMO 해사안전위원회 결정회람문 주요 내용 : △ 북한의 항행경보(navigational warning) 없는 미사일 발사가 해사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우려 △ IMO의 관련 문서(결의 및 과거 결정회람문)의 중요성과 유효성 확인 △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가 IMO 관련 문서의 위반임을 인정 △ 회원국의 항행안전 위협 행위 금지와 관련한 협약 및 결의 준수 촉구

※ IMO의 결정회람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해사관련 사항에 관한 해석·판단 및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IMO 회원국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

※ IMO 관련 협약 및 결의 규정

-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SOLAS 협약) 부속서 제5장 제4규칙 : 선박항행상의 위험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관련국에 통지할 의무
- 범세계 항행경보서비스에 관한 결의 706(17) : 미사일 발사 등 항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지정된 조정국에 통보 필요

2. 국제 해사안전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IMO 해사안전위원회가 채택한 금번 결정회람문은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 행위가 국제 항행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이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입장을 분명하게

북한에 전달한 데 의미가 있다.

○ 특히,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1998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채택된 금번 IMO 결정회람문은 처음으로 회람문 내에 북한 국명을 명시하여 항행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북한은 IMO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결정회람문 채택에 반대하는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사안전위원회에서의 관련 논의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이 북한의 항행경보없는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정회람문 채택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반면, 북한측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는 북한 이외에 단 한 나라도 없었는바, 이는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4. 우리나라는 지난 9월 금번 결정회람문 채택을 제안하는 의제문서를 IMO 사무국에 제출하고, 동 회람문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미국, 일본, 프랑스, 마샬 아일랜드와 함께 동 회람문 채택을 주도하였다.
5. 우리 정부는 북한측이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금번 IMO 해사안전위원회 결정회람문 채택을 통해 표출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국제해사안전을 위한 IMO 협약 및 결의상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불어권 국가와 신뢰의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2016. 11. 28)

1. 대한민국이 동북아 국가중 최초로 전세계 80여개국이 참여하고 2억7,400만명의 불어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불어권 국제기구(OIF)에 옵서버로 가입하였다.

※ 불어권 국제기구(OIF) 가입 현황(현재 전세계 80여개국이 참여)

- 회원국(54개국) : 유럽 14개국, 미주 6개국, 아시아 4개국, 아프리카 30개국
- 준회원국(3개국) : 사이프러스, 가나, 카타르
- 옵서버(23개국) : 유럽 16개국, 미주 4개국, 아시아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2. 11.26(토)-27(일)간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 개최된 제16차 불어권 정상회의 전체세션에서는 대한민국의 불어권 국제기구(OIF) 옵서버 가입이 회원국 정상들의 컨센서스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리의 옵서버 가입과 관련하여 불어로 특별 연설을 실시하였다.

※ 격년마다 개최되는 불어권 정상회의는 불어권 국제기구(OIF :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회원국 정상들이 OIF 주요정책 및 신규 회원국·옵서버 가입 여부 결정

※ 최 특사는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 전산학 박사학위 취득(1984)

○ 최 특사는 특별 연설에서 불어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 수호 및 △개발협력 및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 공동의 평화와 미래 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여 회원국 대표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특히, 옵서버 가입 확정 전후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은 최 특사에게 악수를 청하며, 우리의 옵서버 가입을 축하하면서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

※ 불어권 국제기구(OIF)는 1970년 불어권 국가들간 △민주주의 확립, △법치 및 인권 증진, △문화와 문명간 대화 심화, △경제부흥 등을 목적으로 창설

- △프랑스어 증진 및 문화·언어다양성 촉진, △평화·민주주의·인권수호, △교육·연수·고

등교육·연구 지원,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및 경제발전 장려 등의 임무 수행

3. 금번 우리나라의 불어권 국제기구(OIF) 옵서버 가입은 동북아 국가 중 최초인 바, 금번 가입을 통해 불어권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불어권 국제기구(OIF)의 최다 회원국을 보유한 아프리카와의 관계증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등 우리의 중견국 외교 지평이 불어권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연합(AU) 특별 연설에서 언급한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지를 금번 특사 파견을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對 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신뢰 제고
   ○ 또한, 지난 6월 프랑스 국빈 방문시 박 대통령이 표명한 OIF 옵서버 가입 의사를 이행함으로서 수교 130주년을 맞아 심화된 한-불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다차원적으로 더욱 도약하는 계기
4. 한편, 최 특사는 마다가스카르 방문 계기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및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지난 7월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 개설과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한 양국간 관계 증진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금번 대통령 특사 방'마'는 우리 정부 역대 최고위급 인사 방문
   ○ 특히,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호협정 등 양국간 경제·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협정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인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대북 공조 의지 표명
5. 또한, 최 특사는 「아다마 우안」 불어권 국제기구(OIF) 사무차장과 면담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교육, ICT, 과학 등 협력의 여지가 큰 분야에서 구체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 OIF 사무차장은 우리 특사의 옵서버 가입 관련 특별연설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언급하고,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OIF의 협력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 줄 것을 요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2016. 11. 30)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 11.30(수) 23:09(11.30(수) 09:09(뉴욕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9.9)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확대·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신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50개항 및 5개의 부속서로 구성
      ※ 금번 결의는 과거 4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5번째 대북 제재 결의
   ○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로는 1695호(2006년), 2087호(2013년)가 있으며, 2087호에 제재 요소 일부 포함
2. 금번 안보리 결의는 중국·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는바, 이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즉각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북한 정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놓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금번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의 틈새(loophole)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

이 포함되었다.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결의 2270호와 함께 북한 관련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인 결의로 평가된다. 결의 2270호에 포함되었던 일부 예외조항 마저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상습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중 처벌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금번 결의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statue)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약 8억불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 조치,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WMD 연관성 조건 삭제), 대북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WMD 연관성 조건 삭제) 등 금융통제 조치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자금원 및 조달 채널을 차단하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 아울러,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하고,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문안이 결의 본문에 포함되었다.

○ 금번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북한 정권에 더욱 큰 고통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금번 결의의 분야별 주요 내용 및 의미는 아래와 같다.

[석탄 수출 상한제]

- 북한 석탄을 연간 약 4억불 또는 750만톤 중 보다 낮은 쪽(2015년 대비 38%)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해 수출하는 것을 금지
- 수출 허용 요건도 강화하여 △WMD 개발과 무관하며, △오직 북한 주민의'민생목적'으로, △제재 대상 및 관련자들과 무관한 거래만을 허용
- △월별 수입통계 집계, △수입국 확인서 제출 등 메커니즘을 도입, 결의 이행 확보 조치도 보강

* 북한은 2017년부터 약 4억불 또는 750만톤까지만 석탄을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 대비 약 7억불의 외화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2015년도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약 10.5억불(1,960만톤))

[WMD 및 재래식 무기 관련 제한]

- 특별 교육·훈련 금지 분야(고등 산업공학, 고등 전기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재료공학) 추가
-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 재래식무기 관련 이중용도품목 이전 금지(구체 목록은 제재위가 결의 채택후 15일내 지정)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직접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연관 분야까지 기술협력 금지를 확대하여, 북한의 WMD 기술 습득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

* 재래식무기 생산·개발에 활용 가능한 상용물품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재래식무기 능력 증강 억제

[검색 및 차단]

- 북한인의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대상임을 명확화
-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강조
- 제재 대상 개인의 공항 경유 금지 명시
- 제재위가 의심선박의 기국취소(de-flagging), 특정 항구 입항 명령, 입항금지, 자산동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개인 수화물을 이용한 현금 이전·WMD 물품조달·마약밀수 등 불법 활동을 방지하고, 철도·도로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를 명확히하여, 해상·항공 교역은 물론 육상 교역에 대한 통제도 강화
  *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외국 입국은 물론 경유까지 금지
  * 제재대상 선박 목록의 수시 갱신을 통해 제재 회피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재대상 선박 운항 및 적재 화물 통제의 실효성 제고

[운송]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민생목적 예외 삭제)
-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북한선박에 대한 인증·선급·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민생목적 예외 삭제)
-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재등록 금지 의무화(결의 2270호에서는 촉구 조항)
- 북한 항공기 이착륙시 화물검색 의무 강조 및 북한행·발 제3국 기착 민간 항공기에 필요이상의 항공유를 제공치 않도록 주의 촉구
- 회원국 선박·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 금지

  * 북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운항 통제를 강화하여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조달 및 외화 획득 채널 차단
  * 북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등록, 보험·재보험 제공, 승무원 공급 등의 지원 금지를 통해 북한의 교역·운송 능력을 제한하고, 북한의 승무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 차단

[대외 교역]

- 수출 금지 광물 추가 - 은, 동, 아연, 니켈
  ※ 기존 금지 광물: 석탄, 철, 철광석(민생예외 허용),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 북한의 조형물(statue) 공급·판매·이전 금지
- 북한에 신규 헬리콥터, 선박 공급·판매·이전 금지
  * 추가 광물 금수를 통해 약 1억불 이상 외화수입 감소 예상
  *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 중 하나인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조형물(statue) 수출을 금지시킴으로써 자금줄 차단
  * 북한 신규 헬리콥터·선박 조달 금지를 통한 운송능력 제한

[금융]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
- 대북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 추방
-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 표명
  *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WMD 연관성 조건을 삭제하여 북한내 제3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및 대북 무역 금융지원 전면 금지
  *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관련 인사에 대한 추방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위장 금융활동 방지
  *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문제를 결의 본문에 최초로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제재조치 도입의 근거 마련

[외교 활동]

- 회원국내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 회원국이 WMD 프로그램 또는 불법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한 북한인사, 관료, 군인의 자국내 입국 또는 경유 거부
- 북한 공관 및 공관원당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
- 비엔나 협약에 따라 북한 공관원의 외교임무 이외 활동이 금지됨을 강조
-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
  * 북한의 회원국내 외교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고립 심화
  * 외교관의 특권을 남용한 외화벌이 등 불법 활동 차단
  * 북한이 추가도발 감행시 유엔 회원국 권리·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

[인권]

- △북한 주민의 고통에 우려 표명,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 △주민의 복지와 존엄성 보장 필요 강조
  *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 중 최초로, 결의 본문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향후 동 문제에 개입할 근거 마련

[제재 이행 강화]

- 전문가 패널 보고서 연 2회 제출
- 제재위의 제재이행 특별회의 개최
  * 대북제재위 및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강화하여 철저한 제재이행 확보 도모

[통제품목 및 사치품 확대]

- 핵·미사일 관련 15종, 화학·생물무기 관련 3종 통제품목 추가
- 양탄자 및 본차이나 식기류를 사치품 예시목록에 추가
  * 금번 조치로 △통제품목은 핵·미사일 관련 34종, 화학·생물무기 관련 7종으로 확대 △사치품 예시목록은 총 14개 품목으로 확대

[제재 대상 개인·단체 확대]
(개인 39명, 단체 42개로 확대)

- 북한의 WMD 개발 관여 대사급 외교관 및 정부핵심인사, 북한 무기수출 업무 관련자 등 개인 11명 추가
- WMD 개발을 위한 금지품목 조달 핵심 기관, WMD 개발 자금 및 통치자금 조달 단체 등 단체 10개 추가
  * 금번 조치로 안보리 제재대상이 개인 39명, 단체 42개로 확대
  ※ (개인) ①박춘일 주이집트 대사, ②김성철 KOMID 주수단 대표, ③손정혁 KOMID 주수단 대표, ④김세건 원자력공업성 관계자, ⑤리원호 주시리아 보위부 직원, ⑥조영철 주시리아 보위부 직원, ⑦김철삼 대동신용은행 대표, ⑧김석철 前주버마 대사, ⑨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⑩조춘룡 제2경제위 위원장, ⑪손문산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 (단체) ①조선통일발전은행, ②일심국제은행, ③조선대성은행, ④신광경제무역총회사, ⑤대외기술무역센터, ⑥조선부강무역회사, ⑦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⑧대동신용은행금융, ⑨태성무역회사, ⑩조선대성총무역회사

5.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감안하여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조

치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고강도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총력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직후부터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제재 요소 초안을 미리 작성하여 한·미간 협의 진행

○ 한·미간 공조 하에 중·러 등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유엔총회를 비롯한 CTBT 우호국 장관회의(9.21), NATO 북대서양이사회(10.6)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북 규탄이 이루어지도록 전방위적인 노력 전개

○ 또한 NSC를 중심으로 유관 부서간 긴밀히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 주재 「외교부 북핵 대응 T/F」 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뉴욕 및 주요 안보리 이사국 수도를 연결하는 비상 협의 체제 가동

○ 아울러, 북한의 △해운·항공 활동 차단, △대외 군사협력 단절, △국제금융망 이용 차단, △대외교역 제한, △불법 행위 연루 북한인 추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에 있어 가시적 성과도 도출

6.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금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외교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우리의 독자제재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의 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호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관련한 최신 도서 및 학술논문을 소개합니다.

주해서

Forrest, C.J.S., *International Law and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bingdon, Routledge, 2010.

Hoffman, B.T. (ed), *Art and Cultural Heritage : Law,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Nafziger, J.A.R., R.K. Paterson and A.D. Renteln (eds.), *Cultural Law: International, Comparative, and Indigenou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도서

Blake, J., *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Cameron, C. and M. Rössler, *Many Voices, One Vision: the Early Year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Farnham, Ashgate, 2013.

Chechi, A.,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Dispute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Daher, R. and I. Maffi (eds.), *The Politics and Practices of Cultural Heritage in the Middle East*, London; New York, I.B. Tauris, 2014.

Dromgoole, S.,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etrovic, J, *The Old Bridge of Mostar and Increasing Respect for Cultural Property in Armed Conflict*, Leiden, Nijhoff, 2013.

학술논문

Kearney, 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lobal Awareness and Local Internet", in L. Smith and N. Akagawa (eds.), *Intangible Heritage*, London, Routledge, 2009, pp. 209-225.

Kouroupas, M.P.,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a Tool of International Public Diplomacy", in J.A.R. Nafziger (ed.), C*ultural Heritage Issues: the Legacy of Conquest, Colonization and Commerce?*, Leiden, Nijhoff, 2009, pp. 325-334.

Renold, M.A., "Stolen Art: the Ubiquitous Question of Good Faith", in *Resolution of Cultural Property Disputes*,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pp. 251-263.

Scovazzi, T., "La Convention pour la sauvegarde du patrimoine culturel immatériel", in B. Vukas (ed.), *International Law: New Actors, New Concepts, Continuing Dilemmas: Liber Amicorum Božidar Bakotić*, Leiden, Brill, 2010, pp. 301-317.

Srinivasan, M., S.R. Pandian and A. Enoch, "International Crimes: Cyber Crime, Crimes against Cultural Heritage, Environmental Crimes, and Money Laundering", in S. Kethineni (ed.),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cing, Justice, and Transnational Crime*,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10, pp. 385-408.

Symeonides, S.C., "A Choice-of-Law Rule for Conflicts Involving Stolen Cultural Property",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8 (2005), No. 4, pp. 1177-1198.

Vrdoljak, A.F., "Unravelling the Cradle of Civilization 'Layer by Layer': Iraq, its Peoples and Cultural Heritage", in M. Langfield, W. Logan and M.N. Craith (eds.), *Cultural Diversity, Heritage and Human Rights: Intersections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2010, pp. 62-82.

Warren, J., "War and the Cultural Heritage of Iraq: a Sadly Mismanaged Affair", in S. Barakat, *Reconstructing Post-Saddam Iraq*, Abingdon, Routledge, 2008, pp. 251-266.

정기간행물 및 연속간행물

Aedon: rivista di arte e diritto on line
Art, Antiquity and Law
DePaul-LCA Journal of Art & Entertainment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Yearbook of Cultural Property Law

참고문헌

Bruhn, P., Beutekunst: Bibliographie des internationalen Schrifttums über das Schicksal des im Zweiten Weltkrieg von der Roten Armee in *Deutschland erbeuteten Kulturgutes*, München, Otto Sagner, 2003.

Fiedler, W. and S. Turner, *Bibliography on the Law of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Berlin, De Gruyter, 2003.

Statius Muller, M. and H. Thyssen, "Selected Bibliography", in *The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Leiden, Nijhoff, 2008, pp. 883-1037.

데이터베이스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Cultural Heritage, by Francesco Francioni.

〈국제회의〉

○ **Call for Papers: Spaces and Places of the Journey to the UK – Assessing the Legal Framework for People Fleeing Conflict.**

This conference is motivated by the plight of people fleeing conflict, attempting to reach Europe, and more specifically, the UK. How does the UK government govern (globally) for refugees and how should it govern for refugees? We invite engagement from theoretical, legal and empirical research into refugee journeys to the UK. From the plight of people affected by conflict, to refugee camps, perilous water crossings, the Jungle, UK Border Force and the process of seeking asylum on arrival in the UK (including UK detention centres). This conference will establish an evidence base to help practitioners and to highlight issues specific to the UK government in the current 'crisis'.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ox.ac.uk/news/2016-11-25-call-papers-spaces-and-places-journey-uk-assessing-legal-framework-people-fleeing 참조.

○ **Call for Papers: ESIL Annual Conference, Naples.**

The 13th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ill take place in Naples, Italy, on 7-9 September 2017. The conference will be hosted by the University of Naples Federico II, the oldest public university in the world. The theme of the conference is "Global Public Goods, Global Commons and Fundamental Values: The Responses of International Law". The Call for Papers is now open.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abstracts is 31 January 20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esil-sedi.eu/node/1444 참조.

○ **International Immunities: Law in a State of Flux? Conference.**

On 15-16 December 2016, the Ghent Rolin-Jaequemyns International Law Institute (GRILI) at Ghent University will be hosting an international two-day conference entitled 'International Immunities: Law in a State of Flux?' The aim of the conference – organized in partnership with the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ULB),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KUL), and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UCL) – is to take stock of recent evolutions pertaining to international immunities and to offer a comprehensive tour d'horizon of outstanding challenges and controversies. The conference will bring together distinguished scholars as well as practitioners, civil servants and other experts (e.g. ICC, ILC, EU, Foreign Affairs), to broach the various issues at stake. Presentations will be grouped into four clusters: jurisdictional immunities; immunity from execution; immunities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immunities of the armed forces/in armed conflict. The conference will also feature a roundtable on the immunities of foreign officials, during which the ILC Special Rapporteur Concepción Escobar Hernández will present her views and engage with expert respondents. The conference will conclude with a keynote lecture by Judge Christine Van den Wyngaert of the ICC.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grili.ugent.be/research-publications/conference-international-immunities-law-in-a-state-of-flux 참조.

○ **ADC-ICTY Annual Conference.**

The ADC-ICTY will hold its annual conference

titled "Quo Vadis, International Criminal Law? – Current challenges of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at the Marriott Hotel, The Hague, on 3 December 2016. The ADC-ICTY represents defence counsel practising before the ICTY and MICT. This conference will feature four distinguished panels on: Positive Complementarity – National Jurisdictions and Effective Sanctions; Transitional Justice – Experience of Implementing IHL in Ukraine; Relocated Justice –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and, Non-Judicial Mechanisms as an Alternative or Complementary to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The welcome remarks will be delivered by ADC President Branko Lukic. Panellists will include renowned Defence Counsel, Judges and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including ICTY/MICT Judge Christoph Flügge and Dr Fidelma Donlon, Registrar of the Kosovo Specialist Chambers.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dc-icty.org/training 참조.

○ **After Chilcot: Evaluating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Iraq Inquiry.**

A one-day symposium to explore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Chilcot Report will be held on Thursday 8 December 2016 at University of Liverpool London Campus, 33 Finsbury Square, London, EC2A 1AG. The symposium is free of charge but spaces are limited. Sign up by 30 November to secure your place.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iverpool.ac.uk/law-and-social-justice/conferences-and-events/after-chilcot/ 참조.

○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s Dispute Resolution Interest Group and th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Call for Papers.**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s Dispute Resolution Interest Group and th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have called for papers for a conference on the duties, rights, and powers of arbitrators in investor-state cases. The conference will take place on 19 September 2017. Paper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may be published in a special issue of The Law & Practi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 peer-reviewed journal published by Brill. The deadline to submit proposals is 31 December. Proposals must consist of an extended abstract (at least 1000 words) or an unpublished full paper.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sil.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FP%20Arbitrator%27s%20duties.pdf 참조.

○ **Brexit,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The City Law School is hosting a panel discussion on 6 December 2016 organized under the aegis of the Jean Monner Chair in European Law on the topic of "Brexit: Implications for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The event takes place at City, University of London, College Building, St John Street, Room A130 at 18:00, and will be followed by a wine reception. Attendance is free.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ty.ac.uk/events/2016/december/brexit-implications-for-scotland-and-northern-ireland 참조.

○ **ICTY Legacy Dialogues Call for Papers.**

As the Tribunal prepares to close in December 2017, ensuring that the work and achievements of

the ICTY are accessible and impactful for stakeholders in the region of the former Yugoslavia – and abroad – is more important than ever. In order to best utilise this crucial remaining time, the ICTY is seeking to hold high-profile events, including a Legacy Conference in Sarajevo during the week of 19 June 2017.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abstracts is 15 December 2016, with papers due by 15 April 20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cty.org/en/press/international-criminal-tribunal-for-the-former-yugoslavia-calls-for-papers-for-june-2017 참조.

○ **Brexit and the Future of European Criminal Law Workshop.**

This Workshop will be hosted on 17 January 2017 at the Technologie & Tagungszentrum Marburg, Software Center 3, 35037 Marburg, Germany (Room Pascal I). After the Brexit vo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 and the UK must be radically redefined. This holds also true for the broad field of (European) Criminal Law. What will be the legal and practical effects of the Brexit on EU-derived criminal laws? Will, can and should the UK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European system of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How will Brexit impact on European Institutions like Europol and Eurojust? This international workshop does not pretend to give definitive answer to these questions, but will bring scholars and students from various countries together for a brainstorming exercise, hoping for a fruitful dialectical exchange which might produce some ideas on a possible future after Brexit.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department-ambos.uni-goettingen.de/ 참조.

○ **Maastricht Panel on Brexit.**

This panel will be hosted on 25 November 2016. The panel convener is Prof Jure Vidmar (Maastricht). The speakers are Prof Christina Eckes (Amsterdam), Dr Josephine van Zeben (Oxford) and Ines Willemyns (KU Leuven). The panel will be held on 25 November 2016 at 2 pm, at the Hotel Van der Valk, Maastricht.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uscommune.eu/html/activities/2016/2016-11-24/workshop_12.pdf 참조.

○ **Call for Papers: Quality Control in Preliminary Examination: Reviewing Impact, Policies and Practices.**

Preliminary examination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yet crucially understudied areas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The Grotius Centre and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Research are seeking submissions for the second phase of the "Quality Control in Preliminary Examination" project which seeks to identify approaches to preliminary or pre-investigation examination, review ICC and national policies and practices, and provide lessons from countries where the ICC has engaged. Papers will be discussed in a project conference to be held in The Hague on 13-14 June 2017, and considered for publication in an anthology to be edited by Professors Carsten Stahn and Morten Bergsmo.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postconflictjustice.com/call-for-papers-quality-control-in-preliminary-examination-reviewing-impact-policies-and-practices/ 참조.

○ **Michigan Law School Third Annual Young Scholars' Conference.**

The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will be

hosting its Third Annual Young Scholars' Conference on 31 March – 1 April 1 2017. The conference brings together promising junior scholars to present their work and receive feedback from prominent Michigan Law School faculty. It aims to promote fruitful research collaboration between its participants and to encourage their integration in a community of legal scholars. The Young Scholars' Conference is intended for junior faculty, doctoral students, lecturers, fellows, and individuals in other academic capacities (with an academic appointment of no more than four years) in law and law related disciplines. It also is open to exceptionally promising aspiring legal scholars who are currently engaged in legal practice, and who wish to present a substantial piece of scholarly work in preparation for the entry level teaching market. We are very excited that this year, the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intends to publish selected papers from the conference.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umich.edu/events/young-scholars-conference/Pages/default.aspx 참조.

○ **Chatham House Mee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HRL and IHL.**

The International Law Programme at Chatham House is hosting a meeting which will provide practical gu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meeting will coincide with the launch of the 'Practitioners' Guide to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hathamhouse.org/event/practitioners-guide-human-rights-armed-conflict 참조.

○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all for Submissions.**

To mark 15 years since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Statute of the ICC on 1 July 2002,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s pleased to announce a forthcoming symposium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Policies and Strategies' to be published in July 2017. The Court and its various organs have continually issued a number of documents explaining the Court's policies on numerous distinct issues as well as its strategies for the future. The Journal's Editorial Committee believes that the time has come to take a closer and systematic look at these documents, looking at the choices made thus far, the level of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as well as suggesting avenues to strengthen the overall effectiveness and credibility of ICC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strategies.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jicj.oxfordjournals.org/content/14/4/1041.full 참조.

○ **Cambridge International Law Journal Call for Submissions.**

The Editors of the Cambridge International Law Journal (CILJ) and Conference Convenors welcome submissions for the Cambridge International and European Law Conference 2017, which will be held in the Faculty of Law, the University of Cambridge on 23 – 24 March 2017. The theme of the conference is 'Transforming Institutions.' This is intended to stimulate the exploration of interactions between law and institutions in transformative contexts. Broadly conceived, transformation may refer to: (1) the manner in which the functions of institutions may change over time; (2) how

institutions may act as agents of transformation; and (3) how institutions themselves can be subjected to transformation. The organisers invite submissions to consider how structures and norms under European and International Legal systems relate to, influence and are affected by 'transforming institutions'. Abstracts of no more than 300 words should be submitted by 25 November 2016. The authors of selected papers will be required to submit a 2000 word extended abstract by 24 February 2017. Authors who present at the Conference will also be invited to submit their papers for publication in Volume 6(2) of the CILJ, to be published in the summer of 20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cambridgejournalofinternatlandcomplaw.submittable.com/submit 참조.

○ **International Network on Transnational Legal and Political Theory Call for Papers.**

International Network on Transnational Legal and Political Theory has issued its Call for Papers for its 4th Annual Conference. The conference will be hosted by Bar-Ilan Faculty of Law, Israel, 7-8 May 2017. The conference aims to provide scholars with an opportunity to present and discuss work in progress on key questions faced by transnational legal and political theory. The field of transnational and political theory is undergoing major changes. As trends of globalization intensify, cross-border lega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other) links increase, scholarship in the field is rapidly expanding and diversifying. Such times invite a reflection on the state of the field – mapping the main topics of discussion, assessing its major contributions thus far, identifying existing gaps, and critically thinking about possible trajectorie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transnationaltheorynetwork.com/ 참조.

○ **ESIL – AAIL Symposium: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Migration: African and European perspectives.**

The Afric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Law (AAIL) and the Europ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ESIL) will hold a joint symposium on the theme of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Migration: African and European Perspectives". Date: Friday 14 October 2016. Venue: 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 Turfmarkt 147, 2511 DP The Hague,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esil-sedi.eu/sites/default/files/14Oct2016-ESIL-AAILConference%20program.pdf 참조.

〈국제학술아카데미〉

○ **Harvard Law School Human Rights Program Visiting Fellowships for 2017-2018.**

Harvard Law School's Human Rights Program invites applications for its Visiting Fellows Program in the 2017-2018 academic year. The Visiting Fellows Program gives individuals with a demonstrated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 opportunity to step back and conduct a serious inquiry in the human rights field. Visiting Fellows are usually scholars with a substantial background in human rights, experienced activists, or members of the judiciary or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here. Typically, fellows come from outside the U.S., and spend from one semester to a full academic year in residence at Harvard Law School, where they devote the majority of their time to research and writing on a human

rights topic. The Program currently has a preference for fellows working on the UN Treaty Bodies in their research, though applications are not limited in this regard. The Human Rights Program does not generally fund fellows. However, applicants who are nationals of low or middle income countries are eligible for the Eleanor Roosevelt Fellowship, which offers a stipend to help defray the cost of living. Fluent spoken English is essential. The deadline to submit applications is 1 February 20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hrp.law.harvard.edu/fellowships/visiting-fellowships/ 참조.

○ **International Law Lectures.**

The Europ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re happy to introduce a new project – International Law Lectures. The project takes off in Russia where it will take place in cooperation with leading Russian universities. The Higher School of Economics (Moscow) has sponsored and co-organized the first lecture of the series, with Prof. Martti Koskenniemi. Anne Orford, 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Philippe Sands, Anthea Roberts, Marko Milanovic and other top international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are among the first to confirm their visit to Russia with lectures and seminars during the 2016/17 and 2017/18 academic years. This is the first ever initiative of this kind and at such a scale in Russia. The organizers are constantly working on the composition of the programme.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ternationallawlectures.com/ 참조.

〈국제법 관련 강의 및 기타 안내〉

○ **New additions to the UN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

The Codification Division of the UN Office of Legal Affairs has added new lectures to the UN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 website, which provides high quality international law training and research materials to users around the world free of charge. The latest lectures were given by Professor Christian J. Tams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Obligations Erga Omnes in International Law".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org/law/avl/ 참조.

○ **Launch of the Young Public International Law Group.**

The Young PIL Group ("YPILG") is a newly-established network of public international law practitioners from law firms, the ba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governments and academic institutions. It aims to connect early to mid-career public international law practitioners, to facilitate knowledge-sharing and to promote the next generation of PIL professionals. YPILG will host a number of PIL-focused events throughout the year: a drinks reception to launch the group will take place on 29 November 2016 at the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Professor Vaughan Lowe will be the guest speaker at the reception.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ypilg.com/ 참조.

○ **Lieber Society on the Law of Armed Conflict Francis Lieber Prize.**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s

Lieber Society on the Law of Armed Conflict awards the Francis Lieber Prize to the authors of publications that the judges consider to be outstanding in the field of law and armed conflict. Both monographs and articles (including chapters in books of essays) are eligible for consideration — the prize is awarded to the best submission in each of these two categories. Any work in the English language published during 2016 or whose publication is in proof at the time of submission may be nominated for this prize. Entries may address topics such as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the conduct of hostilities during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ected persons and objects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 the law of weapons, operational law, rules of engagement, occupation law, peace operations, counter-terrorist operation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Other topics bearing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during armed conflict or other military operations are also appropriate. Submissions, including a letter or message of nomination, must be received by 9 January 20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sil.org/sites/default/files/documents/Lieber%20Prize%20Announcement%202016.pdf 참조.

이번 호에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유엔의 주요 일정을 소개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유엔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유엔 홈페이지(http://conf.un.org/DGAACS/meetings.nsf)를 참고.

2017년 1월

- Advisory Board on Disarmament Matters, Sixty-seventh session, Geneva, 25 - 27 January
-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Winter session, New York, 23 January - 28 April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Forty-third session, New York, 30 January - 17 March
-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gular session, New York, 30 January - 8 February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eventy-fourth session, Geneva, 16 January - 3 February
- Conference on Disarmament, First part, Geneva, 23 January - 31 March
- Disarmament Commission, Organizational session, New York, 17 Januar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Youth forum, New York, 30 - 31 January
- Executive Board of UNDP/UNFPA/UNOPS, Election of Bureau, New York, 16 January
- Executive Board of UNDP/UNFPA/UNOPS, First regular session, New York, 30 January - 3 Februar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Situations, Nineteenth session, Geneva, 23 - 27 January
- ICAO, Committee Phase, 210th session, Montreal, 9 - 27 January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118th session, Vienna, 30 January - 3 February
- Military Staff Committee (once every fortnight thereafter), New York, 13 January - December
- UN-Women, Executive Board, Election of the Bureau, New York, 9 January
-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37th meeting, Nairobi, 16 January
- UNICEF, Executive Board, Election of Bureau (1 meeting), New York, 10 January
-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Special session, New York, 16 January
-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Special session, New York, 20 January
-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working group, New York, 16 - 20 January
-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Indigenous Populations, Board of Trustees, Thirtieth session, Geneva, 23 - 27 January
- WHO, Executive Board, 140th session, Geneva, 23 January - 2 February
-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in Practice, Eighteenth session, New York, 23 - 27 January
- Working Group on Reimbursement of Contingent-Owned Equipment, New York, 16 - 27 January
-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Award, Organizational meeting, New York, January
-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negotiate a legally-binding instrument to prohibit nuclear weapons, Organizational meeting (1 day), New York, January/February

2016년 11월

-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Fifty-fifth session, New York, 1 - 10 February
- Committee against Tortur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irty-first session, Geneva, 13 - 17 February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e-sessional working group, Sixtieth session, Geneva, 27 February - 3 March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ixtieth session, Geneva, 20 - 24 February
-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gular session, New York, 21 February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ixty-sixth session, Geneva 13 February - 3 March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Thirty-seventh session, Geneva, 7 - 10 February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e-sessional working group, Seventy-sixth session, Geneva, 6 - 10 Februar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ubstantive session, Operational activities for development segment, New York, 28 February - 2 March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Third session, Geneva, 20 - 24 February
- Human Rights Committee, pre-sessiona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119th session, Geneva, 27 February - 3 March
-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Eighteenth session, Geneva, 20 - 24 February
- Human Rights Council, Thirty-fourth session, Geneva, 27 February - 24 March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Twentieth session, Geneva, 13 - 17 Februar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Enforced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s, 111th session, Seoul, 6 - 10 Februar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Sixteenth session, Geneva 13 - 17 February
- ICAO, Council Phase, 210th session, Montreal, 20 February - 10 March
- IFAD, Governing Council, Fortieth session, Rome, 15 - 16 February
-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Thirty-seventh session New York, 15 - 17 February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ssembly, Legal and Technical Committee, Kingston, 20 February - 3 March
- Investments Committee, 232nd meeting, New York 6 February
-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Working Group B and informal/expert meetings, Forty-eighth session, Vienna, 20 February - 3 March
- 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its Working Group, Substantive session New

York, 21 February - 17 March
- Special Committee o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n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New York, 21 February - 1 March
- Special Committee on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First part, New York, 23 February
- UN-Women, Executive Board, First regular session (To be confirmed), New York, 13 - 14 February
- UNCITRAL, Working Group II (Dispute Settlement), Sixty-sixth session, New York, 6 - 10 February

2017년 3월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Sixtieth session, Vienna, 13 - 17 March
-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Sixty-first session, New York, 13 - 24 March
-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Nineteenth session, New York, 20 - 24 March
-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Twelfth session, Geneva, 6 - 17 March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e-sessional working group, Sixty-eighth session, Geneva, 6 - 10 March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Legal Subcommittee, Fifty-sixth session, Vienna, 27 March - 7 April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sessional working group, Seventh session, Geneva, 13 - 20 March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venteenth session, Geneva, 20 March - 12 April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explore all options regarding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review mechanism f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Protocols thereto, Third session (To be confirmed), Vienna, 20 - 24 March
- General Assembly, Fifth Committee, First resumed session (4 weeks), New York, March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e Opera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United Nations Standardized Instrument for Reporting Military Expenditures, Second session, New York, 20 - 24 March
- Human Rights Committee, 119th session, Geneva, 6 - 29 March
-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6 - 10 March
- ICSC, Eighty-fourth session, New York, 20 - 31 March
- Informal Consultative meetings of the High-level Preparatory Group on a treaty banning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First meeting, New York, 2 - 3 March
-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irtieth annual meeting, Geneva, 6 - 8 March

- Preparatory Committee establish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entitled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ird session, New York, 27 March - 7 April
- Special Committee on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First part, New York, 22 March
- Statistical Commission, Forty-eighth session, New York, 7 - 10 March
- UNEP, Annual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Fourth session, Nairobi, 6 - 9 March
-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38th meeting, Nairobi, 10 March
-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negotiate a legally-binding instrument to prohibit nuclear weapons, leading towards their total elimination, First session, New York, 27 - 31 March
- UPU, Postal Operations Council and Council of Administration, Bern, 20 March - 7 April
-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oard of Trustees, Forty-fourth session, Geneva, 13 - 17 March
-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Award, First regular meeting, New York, March
- Committee on the Exercise of the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Capacity-building Seminar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Staff of the State of Palestine (3 days), Beirut, March
- ILO, Governing Body and its committees, 329th session, Geneva March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Executive Council, Eighty-fourth session, The Hague, March
- Tenth Joint Annual Meetings of the African Union Conference of Ministers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ECA Conference of African Ministers of Finance,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Addis Ababa, March

● 국제법 동향과 실무 ● 2016, Vol. 15, No. 4 통권 제43호

발행일 2016년 12월 25일
발행처 외교부 국제법률국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전화 : (02)2100-7529
전송 : (02)2100-7967
전자우편 : kimsongeun@mofa.go.kr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260000-000161-08

인쇄처 주식회사 크로스디비 (02)2275-8603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본지와 관련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외교부 국제법규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